

보고서
공개 여부
공개

#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역할과 정책과제: 부가가치 추정을 중심으로

2010. 10

성명재  
홍승현  
김지영  
이만우  
박기백  
김현숙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역할과 정책 과제』의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성명재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홍승현 전문연구위원

김시영 전문연구위원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현숙 숭실대학교 교수

2010년 8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 요 약

## 1. 분석의 목적과 분석대상

- 본 연구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추정하는 데 주된 목적
  
- 경제적 기여도의 종류
  - 부가가치 비중
  - 성장기여도
  - 공공재·공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사회후생 증대
  - 정부업무의 대행·위탁관리
  - 자연독점 폐해의 완화·방지
  - 기타 효과 등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계하는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 가운데 일부분에 국한됨에 유의할 필요
  - 회계학적 측면에서의 부가가치를 의미
  - 기회비용 등을 반영한 경제적 효율성 또는 잠재적 최대효율 등과는 차이가 존재
  - 한국은행이 추계하는 부가가치(GDP) 추계에 준하여 분석
  
- 분석대상: 공공기관
  - 공공기관: 2010년 현재 총 286개 (2008년에는 297개)
  - 분석대상 기간: 2005~2008년
    - 2007~2008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기준 297개 기관
    - 24개 공기업

- 273개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중 225개 기관
  - 21개 기관은 자회사로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공기업에 포함
  - 27개 기관은 자료추적 · 수집이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제외
- 2005~2006년: 2007~2008년과 동일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 기존 연구: 사공일(1979), 송대희 · 송명희(1988) 등

## 2. 분석범위 및 분석방법

### 가. 부가가치의 개념

□ 거시경제학적으로 균형 상태에서 수식 ( $Y = C + I + G$ )로 표현 가능(해외 부문 제외)

○ 상기 식 좌변 = 최종생산물, 우변 = 최종수요

□ 양변에서 중간투입이 생략:  $Y + \text{중간투입} = C + I + G + \text{중간투입}$

○ 좌변 = 총산출

○ 우변 = 부가가치와 중간투입의 합

○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바는 우변의 부가가치

□ 부가가치 추정방법

○ 산출접근법: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추정

- 산출물과 중간투입물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을 가지는 경우

- 부가가치 = 총산출(output) - 중간투입

○ 비용접근법: 부가가치를 구성항목별로 합산하여 추정

- 산출물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부가가치는 투입된 총비용으로 집계하며,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로 구성

- 일반적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영업잉여 제외
- 금융공기업이나 각종 기금의 투자수익은 포함

□ 공공기관 유형별 부가가치 추정방법

- 분석기관 수: 249개 기관(+21개 공기업 자회사)
  - 27개 기관은 자료추적·수집 불가로 분석에서 제외
- 산출접근법 적용기관: 총 77개 기관 (자회사 포함시 98개 기관)
  - 공기업 24개 기관 (자회사 21개는 통합하여 분석)
  - 준정부기관 중 16개 기관
  - 기타공공기관 중 37개 기관
- 비용접근법 적용기관: 총 172개 기관
  - 준정부기관 중 49개 기관
  - 기타공공기관 중 123개 기관

### 3. 부가가치 추계결과

#### 가. 공기업 부가가치 추계결과

- 2005년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는 12.5조~13.4조원으로 24개 공기업 부가가치 총액의 약 절반 정도를 점유
  - 이런 추이는 2006~2007년에도 유사
- 2008년 한전의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
  -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발전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력가격 동결 또는 인상억제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영업손실에 기인
  - 이에 따라 2008년 공기업 중 한전의 부가가치 비중은 1/3 정도로 급격하게 축소

- 2008년 24개 공기업(21개 자회사 포함) 부가가치는 21.4조~23.7조원으로 추정
  - 2008년 GDP (1,026.5조원) 대비 2.1~2.3% 수준
  - 2005년 (24.5조~25.8조원)에 비해 약 2조~3조원 감소
    - 2005년의 경우 공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8~3.0%
  
- 2005~2008년 동안 공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은 감소(-0.7%p)
  -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폭이 상당히 커, 통계학적 관점에서도 그런 변화가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추정
  - 2008년의 부가가치 감소의 원인은 유가급등 및 전기가격 인상억제 등에 주로 기인하며 세계적 경제위기도 또 다른 요인

<표 1> 공기업의 부가가치 추정결과(집계표 및 GDP 대비 비중)

	분류미상항목 중간투입 반영비율	GDP	0%	25%	50%	75%	100%
GDP · 부 가가치 (억원)	2005	8,652,409	257,700	254,497	251,294	248,091	244,889
	2006	9,087,438	272,077	268,411	264,744	261,077	257,410
	2007	9,750,130	277,686	272,344	267,002	261,660	256,317
	2008	10,264,520	237,343	231,484	225,625	219,766	213,906
증감률 (%)	2005	-	-	-	-	-	-
	2006	5.0	5.58	5.47	5.35	5.23	5.11
	2007	7.3	2.06	1.47	0.85	0.22	-0.42
	2008	5.3	-14.53	-15.00	-15.50	-16.01	-16.55
GDP 대비 비중 (%)	2005	-	2.98	2.94	2.90	2.87	2.83
	2006	-	2.99	2.95	2.91	2.87	2.83
	2007	-	2.85	2.79	2.74	2.68	2.63
	2008	-	2.31	2.26	2.20	2.14	2.08

주: 2007~2008년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당시에 지정된 297개 공공기관 중 2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추정한 것임. 2005~2006년의 경우에는 2007~2008년의 기관을 역추적한 것.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당시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 나.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부가가치

-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2005년 14.1조~14.7조원
  - 2006~2007년에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12.5조~13.5조원으로 소폭 감소
  
- GDP 대비 비중은 준정부기관의 경우 2005년 0.88~0.92%에서 2008년 0.87~0.89%로 소폭 감소
  - 기타공공기관은 같은 기간 0.75~0.77%에서 0.35~0.43%로 크게 감소
  
- 전반적으로 비용접근법 추계 기관은 부가가치의 변동이 작은 반면 산출접근법 추계 기관은 변동(감소)이 심한 편
  - 후자의 경우에는 영업잉여 등이 경기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
  
- 2008년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감소 원인은 유가급등, 세계금융위기 등이 주 요인
  - 장기적으로는 공기업 민영화의 지속적 추진, 민간부문의 성장 등도 한 요인으로 추정
  - 구체적인 감소요인 분석은 부가가치 추정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바,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연구가 필요

<표 2> 준정부/기타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정결과

(단위: 억원)

2005년	0%	25%	50%	75%	100%
준정부기관(산출법)	56,592	55,640	54,689	53,737	52,786
준정부기관(비용접근법)	23,229	23,229	23,229	23,229	23,229
준정부기관 합계	79,821	78,870	77,918	76,966	76,015
기타공공기관(산출법)	54,353	53,956	53,559	53,162	52,765
기타공공기관(비용접근법)	12,503	12,503	12,503	12,503	12,503
기타공공기관 합계	66,856	66,460	66,063	65,666	65,269
준정부/기타 합계	146,678	145,329	143,981	142,632	141,284
2006년	0%	25%	50%	75%	100%
준정부기관(산출법)	51,028	49,774	48,521	47,267	46,014
준정부기관(비용접근법)	25,518	25,518	25,518	25,518	25,518
준정부기관 합계	76,545	75,292	74,038	72,785	71,532
기타공공기관(산출법)	57,526	56,892	56,256	55,620	54,984
기타공공기관(비용접근법)	12,735	12,735	12,735	12,735	12,735
기타공공기관 합계	70,261	69,627	68,991	68,355	67,719
준정부/기타 합계	146,807	144,919	143,029	141,140	139,250
2007년	0%	25%	50%	75%	100%
준정부기관(산출법)	53,956	53,414	52,871	52,329	51,786
준정부기관(비용접근법)	28,319	28,319	28,319	28,319	28,319
준정부기관 합계	82,275	81,732	81,190	80,647	80,105
기타공공기관(산출법)	51,034	48,910	46,786	44,662	42,538
기타공공기관(비용접근법)	12,706	12,706	12,706	12,706	12,706
기타공공기관 합계	63,740	61,616	59,492	57,368	55,244
준정부/기타 합계	146,015	143,348	140,682	138,015	135,349
2008년	0%	25%	50%	75%	100%
준정부기관(산출법)	61,654	61,130	60,605	60,081	59,556
준정부기관(비용접근법)	29,649	29,649	29,649	29,649	29,649
준정부기관 합계	91,303	90,779	90,254	89,730	89,205
기타공공기관(산출법)	30,142	28,005	25,868	23,731	21,594
기타공공기관(비용접근법)	13,880	13,880	13,880	13,880	13,880
기타공공기관 합계	44,023	41,885	39,748	37,611	35,474
준정부/기타 합계	135,326	132,664	130,002	127,341	124,679

#### 다. 공공기관 부가가치 종합

-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2005년 38.6조~40.4조원으로 추정
  -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4.5~4.7%
  
- 2008년에는 33.9조~37.3조원으로 GDP(1,026.5조원) 대비 3.4~3.6% 점유
  
-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2006~2007년 동안 증가하였으나 2008년 국제유가 급등 및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
  - GDP 대비 비중은 2007년 4.1~4.4%에서 3.3~3.6%로 급전직하
  
- 전반적으로 산출접근법 추정 기관들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
  - 국제유가의 급등은 중간투입(비용)을 크게 상승시킴
  - 경기여건 등의 악화로 산출이 크게 감소
  - 따라서 양자간 차이로 정의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

<표 3> 공공기관 전체의 부가가치 추정결과

(단위: 억원)

연도	0%	25%	50%	75%	100%	경상GDP
<b>2005년</b>						
공기업	257,700	254,497	251,294	248,091	244,889	
준정부기관	79,821	78,870	77,918	76,966	76,015	
기타공공기관	66,856	66,460	66,063	65,666	65,269	
전체	404,378	399,827	395,275	390,724	386,172	8,652,409
<b>2006년</b>						
공기업	272,077	268,411	264,744	261,077	257,410	
준정부기관	76,545	75,292	74,038	72,785	71,532	
기타공공기관	70,261	69,627	68,991	68,355	67,719	
전체	418,884	413,329	407,773	402,217	396,661	9,087,438
<b>2007년</b>						
공기업	277,686	272,344	267,002	261,660	256,317	
준정부기관	82,275	81,732	81,190	80,647	80,105	
기타공공기관	63,740	61,616	59,492	57,368	55,244	
전체	423,700	415,692	407,683	399,675	391,666	9,750,130
<b>2008년</b>						
공기업	237,343	231,484	225,625	219,766	213,906	
준정부기관	91,303	90,779	90,254	89,730	89,205	
기타공공기관	44,023	41,885	39,748	37,611	35,474	
전체	372,669	364,148	355,627	347,106	338,586	10,264,520

<표 4>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GDP 비중

(단위: %)

2005년	0%	25%	50%	75%	100%
공기업	2.98	2.94	2.90	2.87	2.83
준정부기관	0.92	0.91	0.90	0.89	0.88
기타공공기관	0.77	0.77	0.76	0.76	0.75
전체	4.67	4.62	4.57	4.52	4.46
2006년	0%	25%	50%	75%	100%
공기업	2.99	2.95	2.91	2.87	2.83
준정부기관	0.84	0.83	0.81	0.80	0.79
기타공공기관	0.77	0.77	0.76	0.75	0.75
전체	4.61	4.55	4.49	4.43	4.36
2007년	0%	25%	50%	75%	100%
공기업	2.85	2.79	2.74	2.68	2.63
준정부기관	0.84	0.84	0.83	0.83	0.82
기타공공기관	0.65	0.63	0.61	0.59	0.57
전체	4.35	4.26	4.18	4.10	4.02
2008년	0%	25%	50%	75%	100%
공기업	2.31	2.26	2.20	2.14	2.08
준정부기관	0.89	0.88	0.88	0.87	0.87
기타공공기관	0.43	0.41	0.39	0.37	0.35
전체	3.63	3.55	3.46	3.38	3.30

#### 4. 기존 연구와의 비교

- 기존 연구는 사공일(1979), 송대희·송명희(1988)가 대표적
  - 사공일(1979)은 재무제표 분석 및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
    - 산업분류가 정확히 공공기관 분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연관분석시 오차 개입 가능성
  - 송대희·송명희(1988)는 재무제표로부터 추정
  
- 본 연구: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은 평균적으로 3.3~4.7% (2005~2008년)
  
- 공공기관 부가가치 비중

- 사공일(1979): 공기업(공공기관) 부가가치 GDP 비중

1960	1970	1973	1975	1977
6.7%	9.2%	8.7%	8.3%	8.0%

- 송대희·송명희(1988): 1985년 GDP 대비 9.4%

- 공기업부문(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자회사 등, 즉 현재의 공공기관 전체에 대응) 부가가치 GDP 대비 비중

1970	1975	1980	1985
9.2%	8.3%	9.1%	9.4%

- 정부투자기관(현재의 공기업에 대응) 부가가치 GDP 대비 비중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3.2%	3.2%	4.6%	5.0%	5.7%	6.3%	6.5%

- 추계방법, 자료 및 분석대상기간, 경제발전 단계 및 그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 등의 차이로 인해 기존 연구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큰 의미 없음
  - 포항제철(POSCO), 한국통신(KT),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등 규모가 큰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직접 비교는 곤란
  -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서도 공기업 GDP 비중이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2005~2008년의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GDP 비중이 3.3~4.7%로 1960~1980년대의 수치보다는 확연하게 낮은 수치를 시현

- 공공기관 부가가치 비중 감소의 요인

-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
- 민간부문의 급성장
-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와 유가 급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

- 전반적으로 공기업(공공기관) GDP 비중이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5. 경제적 기여도 관점에서의 성과평가 관련 정책과제

### 가. 공기업(공공기관)의 목적(존재이유)과 성과평가

- 공공의 이익증대, 독과점 폐해 방지, 시장의 실패 교정,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 정부업무의 대행 등
  
- 이 중 공공의 이익증대와 관련해서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영활동이 '(국민)후생극대화'로 볼 수 있음.
  - '이윤'도 총체적으로 후생의 일부분인 만큼 '이윤극대화'도 공기업(공공기관)의 기본목적이 될 수 있으나,
  - 현실에서는 다른 목적이 우선시되는 것이 일반적
  
- '후생극대화'의 예
  - 소비자 측면: 소비자잉여의 극대화
  - 여타 부문 생산자 측면: (공기업 산출물 투입비용 감축을 통한) 생산자 잉여의 극대화
  
- 예: 자연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전력요금의 하향평준화
  - 이 경우 민간 경쟁기업에 비해 이윤 등 부가가치가 작게 평가
  - 이 경우 소비자후생의 극대화, 산업부문의 원가절감효과 등 이차적 파급효과의 중요성이 간과
  
- 공공기관의 주된 존재이유·목적이 공공성·공익성인 만큼,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경제적 기여도는 기관 외부에 대한 파급효과가 대부분을 차지
  - 예: 소득분배·재분배, 소비자후생, 타 산업·타 부문의 생산자잉여 증대, 생산성 증대, 원가절감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등
  
- 따라서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는 공공기관의 설립취지나 기능·

역할 등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

- 예: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공공기관의 GDP 기여도의 합
- 공기업(공공기관)의 부가가치(GDP)는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
- 그러나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등은 현금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추정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수요·공급 함수에 대한 추정이 필수적
  - 그러나 수요·공급곡선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

□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계량평가를 시행중

- 부가가치는 비용접근법에 의거하여 투입비용분을 중심으로 추계

□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외부적 성과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관 내부의 성과평가에 주력하는 경향

- 외부적 성과와 내부 성과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음.
- 예: 내부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독점력을 강화하면 기관 내부의 부가가치는 증대되지만, 외부효과인 소비자잉여의 축소와 원가상승으로 인한 타부문의 경쟁력 약화 효과가 상충

□ 그러므로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평가와 내부 평가(예: 부가가치 등)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경영평가체계의 개선 요망

- 현재 기초연구가 부족: 수요·공급 분석(소비자·생산자잉여 등), 공공요금 귀착, 타부문 원가·생산성 영향 분석 등

## 나. 정책과제

□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는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설립목적이나 취지, 기능·역할 등에 입각하여 해당 목적이 잘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

-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는 여러 가지로 평가 가능
  - 예: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공공기관의 GDP 기여도의 합
  - 공기업(공공기관)의 부가가치(GDP)는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
  - 그러나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등은 현금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수요·공급 추정이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 만약에 현금화(또는 quantify)가 가능하더라도 기여도의 성과에 대한 비교형량이 어렵고 절대적 기준설정도 곤란하여 평가가 쉽지 않은 상황
  
- 일반적으로 경제시장에서 기업활동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1인당) 부가가치 또는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설립취지·존재목적·주요 기능이 시장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성에 기초한 부가가치만으로는 성과평가가 제한적
  
-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의 경영성과와 파급효과를 적절히 결합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 주요 정책과제 목록
  - 외부 파급효과 측정지표의 개발
    - 소비자후생·소비자잉여: 수요·공급·생산함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필요
    - 타부문·타기업 생산자잉여: 외부기관, 공급·생산함수 분석,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필요
    - 소득분배 및 재분배: 공공요금 등의 귀착 분석 필요
  - 내부성과 평가 개선·보완
    - 현행 제도(부가가치 계량평가)의 개선: 정책 부가가치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기관의 시장성·자율성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 평가지표의 적용 범위, 비중, 정성·정량평가의 여부 등에 대한 개선 요망

- 아울러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및 결합지표 개발이 긴급요

□ 부가가치만을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공공성·공익성에 기반한 외부 파급효과 측정 지표와의 연계 바람직

○ 현재 경영평가체계하에서 부가가치를 계량평가

- 정책적으로 미리 결정되는 부분이 많아 정량평가지표로는 다소 부적절

- 정량평가를 정성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외부 파급효과 측정지표와 연계하여 새로운 평가방법·지표 개발

○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외부 파급효과가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내부 평가(예: 부가가치)와 외부 파급효과 평가지표를 결합한 지표 개발이 요청

- 외부 파급효과의 종류

· 소비자후생(또는 소비자잉여)

· 타부문 생산자잉여

· 생산성

· 원가절감 효과 등

□ 부가가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외부적 요인(예: 공공요금 규제와 같은 정책가격적 요소, 예산편성시 인건비 등 투입비용분의 상당 부분이 예산편성단계에서 미리 결정되는 경우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

□ 그러므로 기관의 유형·성격·역할·기능 등에 따라 재분류하여 성과지표로서의 부가가치 역할을 차등화할 필요

□ 다만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는 공공기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투명성 등도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정량지표에 대해서도 개발 노력이 부단히 경주될 필요

# 목 차

I. 서론 .....	1
II. 공기업 개관 및 시대적 변천 .....	4
1. 공기업 정의 및 분류 .....	4
가. 정의 및 일반 논의 .....	4
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	12
2. 우리나라 공기업의 변천 .....	47
가. 시대별 구분·변천 .....	47
나. 특징 .....	53
III. 공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	55
1. 공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	55
가.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 일반론 .....	55
나.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 이론적 고찰(외부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56
다. 분석의 범위 .....	58
라. 부가가치의 개념 .....	59
2. 한국은행 부가가치(국내총생산) 추계방식 .....	60
3.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계방법 .....	61
가.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산출방법 .....	61
나. 공기업 부가가치 산출시 유의사항 .....	64
4. 공기업 기관별 산출방법 .....	66
가. 개요 .....	66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68
다. 부산항만공사 .....	69
라. 인천항만공사 .....	70
마. 인천국제공항공사 .....	71
바. 한국공항공사 .....	72

사. 한국철도공사	73
아. 한국석탄공사	75
자. 한국석유공사	76
차. 한국도로공사	77
카. 한국수자원공사	79
타. 한국방송광고공사	81
파. 산재의료원	83
하. 한국관광공사	84
거. 한국조폐공사	86
너. 대한주택보증	88
더. 대한주택공사(통합전)	89
러. 한국토지공사(통합전)	92
머. 한국전력공사	94
버. 한국가스공사	95
서. 한국지역난방공사	96
어. 한국광물자원공사	97
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9
처. 한국감정원	99
커. 한국마사회	100
5. 공공기관 유형별 산출방법: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101
가. 분석대상 기관	101
나. 부가가치 추정방법	103
다. 산출접근법 추정	103
라. 비용접근법 추정	106
6. 추정결과: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 부가가치와 비중	110
가. 공기업	110
나. 준정부기관	115
다. 공공기관 종합	130
7. 주요 공기업의 산업내 부가가치 비중 비교	133
8. 기존 연구와의 비교	135

<b>IV. 경제적 기여도 관점의 성과평가 관련 정책과제</b> .....	<b>140</b>
1. 배경 .....	140
가. 공공기관의 목적·존재이유와 역할 .....	140
나.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와 성과평가 .....	141
2. 공공기관 성과평가 관련 쟁점 .....	142
가. 공공기관의 목적에 비추어본 성과의 종류 .....	142
나. 부가가치의 의미 .....	143
다. 문제 제기: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특성 .....	144
3. 공공기관 성과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148
가. 현황과 특성 .....	148
나. 핵심정책과제 .....	149
<b>V. 맺음말</b> .....	<b>153</b>
<b>참고문헌</b> .....	<b>156</b>
<b>부록: 개별공기업 현황</b> .....	<b>158</b>
1. 한국전력공사 .....	158
2. 한국가스공사 .....	187
3. 한국철도공사(KORAIL) .....	204
4. 한국도로공사 .....	214
5. 인천국제공항공사 .....	222
6. 한국산업은행 .....	230
7. 한국토지공사(통합전) .....	252
8. 한국주택공사(통합전) .....	263

## 표목차

<표 II-1> 공공기관의 법률 체계 .....	14
<표 II-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구분 (2010년 1월말 현재 기준) .....	22
<표 II-3> 2010년 지정 공공기관 .....	22
<표 II-4> 재화의 성격에 따른 공기업 분류 .....	26
<표 II-5> 산업구조에 따른 공기업 분류 .....	29
<표 II-6> 공기업과 재화 수요자 특성 .....	32
<표 II-7> 공기업과 수익률 구조 .....	34
<표 II-8> 공기업 수입 중 정부지원 비중 .....	35
<표 II-9>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임원 임명절차 .....	50
<표 II-10>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의 특성 ..	51
<표 III-1> 공기업의 자회사 현황(2009년 현재) .....	68
<표 III-2>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분류 .....	72
<표 III-3> 한국도로공사의 사업 분류 .....	78
<표 III-4>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분류 .....	80
<표 III-5>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분류 .....	85
<표 III-6> 한국조폐공사의 사업 분류 .....	86
<표 III-7> 대한주택보증의 사업 분류 .....	88
<표 III-8> 대한주택공사(통합전)의 사업 분류 .....	90
<표 III-9> 한국토지공사(통합전)의 사업 분류 .....	92
<표 III-10> 복리후생비의 급여성·비급여성의 구분 .....	107
<표 III-11>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손익계산서 .....	109
<표 III-12> 공기업의 부가가치 추정결과(개별기업 단위) .....	111
<표 III-13> 공기업의 부가가치 추정결과(집계표 및 GDP 대비 비중) .....	115
<표 III-14> 준정부기관 부가가치 추정결과(산출접근법) .....	116

<표 III-15> 준정부기관 부가가치 추정결과(비용접근법) .....	119
<표 III-16> 기타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정결과(산출접근법) .....	120
<표 III-17> 기타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정결과(비용접근법) .....	124
<표 III-18> 준정부/기타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정결과 .....	129
<표 III-19> 공공기관 전체의 부가가치 추정결과 .....	131
<표 III-20>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GDP 비중 .....	132
<표 III-21>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전년 대비 증감률 .....	132
<표 III-22> 주요 공기업 부가가치의 해당 산업내 비중 비교 .....	134
<표 III-23> GDP 및 공기업 부가가치 추이 .....	136
<표 III-24> 공기업 부문 부가가치의 GNP 점유율 .....	137
<표 III-25> 정부투자기관 부가가치의 GNP 점유율 .....	138
<부표 1> 전력정산단가 항목 및 내용 .....	162
<부표 2> 정산요소별 정산단가 추이 .....	164
<부표 3> 단위출력당 기준용량가격(초기 디자인) .....	171
<부표 4> 발전업자별 설비용량 및 점유비율 .....	175
<부표 5> 전력공급능력 .....	176
<부표 6> 한전의 주요사업 영역 .....	177
<부표 7> 한전의 재무구조(1999~2008) : 비연결재무제표 .....	179
<부표 8> 한전의 재무구조(1999~2008) : 연결재무제표 .....	184
<부표 9> 천연가스 공급량 증가 추세 .....	191
<부표 10> 계절별 수요격차 .....	192
<부표 11> 도시가스의 용도별 수요추이 .....	192
<부표 12> 가스공급 시장점유율 (2009년 기준) .....	193
<부표 13> 주요판매 제품의 구성 및 실적 (2008년) .....	193
<부표 14> 도시가스용 가격변동 추이 .....	194
<부표 15> 발전연료용 가격변동 추이 .....	194
<부표 16> 기지별 생산설비 추이 .....	195
<부표 17> 기지별 생산설비 추이(계속) .....	196
<부표 18>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1999~2008) .....	197

<부표 19> 1차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 .....	200
<부표 20> 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의 장기계약 사례 .....	202
<부표 21> 타법인 출자현황 .....	206
<부표 22> 인원현황 .....	208
<부표 23> 주요사업의 운영현황 .....	209
<부표 24> 한국철도공사의 재무제표 .....	211
<부표 25>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	211
<부표 26>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 .....	212
<부표 27> 부채비율 .....	212
<부표 28> 최근 5년간 수송실적 추이 .....	213
<부표 29> 최근 5년간 인력추이 .....	213
<부표 30> 최근 3년간 인건비 추이 .....	214
<부표 31> 납입자본금 및 주주현황 .....	215
<부표 32> 타법인 출자현황 .....	215
<부표 33> 최근 3년간 인력추이 .....	216
<부표 34> 최근 5년간 인건비 추이 .....	216
<부표 35> 인원현황 .....	216
<부표 36> 주요사업의 운영현황 .....	218
<부표 37>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제표 .....	219
<부표 38>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	220
<부표 39> 영업이익증가율과 ROE .....	221
<부표 40>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의 추이 .....	221
<부표 4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량 .....	221
<부표 42> 발행주식 및 납입자본금 현황 .....	223
<부표 43> 투자 및 출자현황 .....	223
<부표 44> 인원현황 .....	224
<부표 45> 주요사업의 현황 .....	225
<부표 46>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제표 .....	227
<부표 47>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	227
<부표 48>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 .....	228

<부표 49>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채비율 .....	229
<부표 50>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근 3년간 수송실적 .....	229
<부표 5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근 4년간 인력추이 .....	230
<부표 5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근 4년간 인건비 추이 .....	230
<부표 53> 한국산업은행의 대주주 (2008년 12월 31일 현재) .....	231
<부표 54> 한국산업은행의 역할 변화 추이 .....	232
<부표 55>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조달 추이 .....	233
<부표 56> 본점 조직의 기능적 변천 .....	234
<부표 57>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점 현황 (2009년 2월 28일 현재) .....	236
<부표 58> 한국산업은행의 지점 변천 .....	236
<부표 59>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 수 .....	237
<부표 60>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변동현황 .....	237
<부표 61> 한국산업은행의 수익성 .....	244
<부표 62> 한국산업은행의 생산성 .....	244
<부표 63> 한국산업은행의 건전성 .....	245
<부표 64> 한국산업은행의 유동성 .....	246
<부표 65> 한국산업은행의 B/S상 자기자본 .....	246
<부표 66> 한국산업은행의 BIS상 자기자본비율 .....	247
<부표 67> 한국산업은행의 BIS상 자기자본 .....	247
<부표 68> 한국산업은행의 리스크별 익스포져 및 위험가중자산 현황 .....	248
<부표 69> 한국산업은행의 트레이딩 목적 자산·부채 현황 .....	248
<부표 70> 한국산업은행의 영업규모 .....	249
<부표 71> 한국산업은행의 신용평가등급 .....	250
<부표 72> 한국산업은행의 요약대차대조표(은행계정) .....	251
<부표 73> 한국산업은행의 요약손익계산서(은행계정) .....	251
<부표 74> 2008년 한국토지공사의 사업별 경영목표 (토지의 면적 기준) .....	257
<부표 75> 기본 재무 현황 (1999~2008) .....	258
<부표 76> 대한주택공사 임직원 현황 .....	264
<부표 77> 택지매수 현황 (취득방법별) .....	265
<부표 78> 택지매수 현황 (지구별) .....	266

<부표 79> 아파트 건설 현황 .....	267
<부표 80> 아파트 분양 및 임대 현황 .....	268
<부표 81> 아파트 관리현황 .....	269
<부표 82> 대한주택공사의 자산·부채 추이 .....	271
<부표 83> 대한주택공사의 손익 추이 .....	272
<부표 84> 대한주택공사의 경영지표 추이 .....	273
<부표 85> 대한주택공사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77

## 그림목차

[그림 II-1] 공공부문 분류 .....	5
[그림 II-2] 재화성격과 산업구조에 따른 사업분류 .....	36
[그림 II-3] 재화성격과 수요자에 따른 사업분류 .....	37
[그림 II-4] 재화성격과 수익성에 따른 사업분류 .....	38
[그림 II-5] 재화성격과 정부지원사업 비중에 따른 사업분류 .....	39
[그림 II-6] 산업구조와 수요자에 따른 사업분류 .....	40
[그림 II-7] 산업구조와 수익성에 따른 사업분류 .....	41
[그림 II-8] 산업구조와 정부지원사업 비중에 따른 사업분류 .....	42
[그림 II-9] 수요자와 수익성에 따른 사업분류 .....	43
[그림 II-10] 수요자와 정부지원사업 비중에 따른 사업분류 .....	44
[그림 II-11] 수익성과 정부지원사업 비중에 따른 사업분류 .....	45
[그림 III-1] 공기업 가격규제와 균형: 최종소비자 단계 .....	57
[그림 III-2] 공기업 가격규제와 균형: 타부문 생산자 단계 .....	58
[부그림 1] 우리나라 전력도매거래 시스템 .....	161
[부그림 2] 계통한계가격 추이 (2009년 4월) .....	164
[부그림 3] 에너지 시장의 SMP 결정과정 .....	166
[부그림 4] 부하지속곡선에 기초한 한계가격결정 .....	167
[부그림 5] 인프라 마진과 희소성 렌트 .....	169
[부그림 6] 연도별 발전량 변화 추이 .....	172
[부그림 7] 우리나라 전원수급계획 결정과정 .....	173
[부그림 8] 연도별 발전설비 규모의 변화추이 .....	174
[부그림 9] 연도별 발전설비 점유율의 추이 .....	175
[부그림 10] 발전원별 발전설비 비중 (2009년 4월 기준) .....	176

[부그림 11] 한전의 수익성 지표변화 (1999~2008) .....	180
[부그림 12] 한전의 안전성 지표 변화 (1999~2008) .....	181
[부그림 13] 한전의 성장성 지표 변화 (1999~2008) .....	182
[부그림 14] 한전의 수익성 지표변화 (2001~2008) : 연결재무제표 .....	185
[부그림 15] 한전의 안전성 지표변화 (2001~2008) : 연결재무제표 .....	186
[부그림 16] 한전의 성장성 지표변화 (2002~2008) : 연결재무제표 .....	186
[부그림 17] 한국가스공사 계통도 .....	190
[부그림 18] 가스공사의 수익성 지표변화 (1999~2008) .....	198
[부그림 19] 가스공사의 안정성 지표변화 (1999~2008) .....	199
[부그림 20] 가스공사의 성장성 지표변화 (1999~2008) .....	199
[부그림 21] 발전연료별 온실가스 배출수준 .....	201
[부그림 22] 발전용 월별 수요 전망 .....	202
[부그림 23] 도시가스용 월별 수요 전망 .....	203
[부그림 24] 한국철도공사 조직도 .....	207
[부그림 25]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직도 .....	224
[부그림 26] 한국산업은행의 조직: 9본부 2센터 9부 12실(22분실) .....	235
[부그림 27] 부채와 자산의 변화 .....	260
[부그림 28] 수익성 관련 지표들 .....	261
[부그림 29] 성장성 관련 지표들 .....	262
[부그림 30] 안정성 관련 지표들 .....	263
[부그림 31] 대한주택공사의 성장성 지표 .....	274
[부그림 32] 대한주택공사의 안정성 지표 .....	275
[부그림 33] 대한주택공사의 수익성 지표 .....	276
[부그림 34] 대한주택공사의 생산성 지표 .....	276
[부그림 35] 대한주택공사 고객만족도 결과 추이 .....	277

## I. 서론

- 본 연구의 제목은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역할과 정책과제: 부가가치 추정을 중심으로’임.
  - 포괄범위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것임.
  -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는 공공재 또는 국가 기간재·서비스 등의 안정적 공급,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 운용, 정부업무의 대행(산업진흥, 위탁·집행·관리, 기금관리 등 포함), 고용, 성장, 부가가치 증대 등 다양
  
-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공공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추계하는데 주된 목적을 둠.
  - 공공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국민총생산(또는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에 대한 연구는 사공일(1979)과 송대회·송명희(1988)가 있으나 이미 오래 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만큼 최근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함.
  
- 요약하면 본 연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포함)의 부가가치 기여도, 즉 GDP 비중 추계를 기본 목적으로 함.
  - 경제적 기여도라고 하면 부가가치 비중, 성장기여도, 공공재·공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사회후생 증대, 기타의 효과 등 매우 다양
  -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GDP) 규모(비중) 추정에 특화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는 일종의 생산 또는 산출로 볼 수 있는 만큼 최근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공공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지의 적정성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허와 실을 함께 살펴봄.

- 현재 공공기관(2008년 현재 297개, 2010년 현재 286개) 대상의 부가가치 추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은행에서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를 추계하기도 하지만,
  - 기관별 차원에서의 부가가치 산출은 미시행
  
- 분석대상은 본 연구 착수시점 기준으로 최신 연도인 2008년을 대상
  - 공기업(24개), 준정부기관(80개), 기타공공기관(193개)의 297개 기관 대상
  - 추세분석을 위해 29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5~2007년에 대해서도 동일기관을 대상으로 추정·비교
  - ※ 2010년 현재 공공기관은 총 286개이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이 2008년 이므로 당시의 297개 기관을 대상으로 GDP 추계
  
-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부가가치(GDP)는 회계학적 측면에서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기회비용 등을 반영한 경제적 효율성 또는 잠재적 최대효율 등을 의미하지는 않음에 유의할 필요
  - 한국은행이 추계하는 부가가치(GDP) 추계에 준하여 분석
  
- 원리적 측면에서는 산업단위의 부가가치 추계와 기업단위의 부가가치 추계가 논리상 동일하지만 실제 추계시에는 양자간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여 세밀한 주의가 필요
  - 예: 동일업종내 아웃소싱을 통한 임금지급
    - 산업(업종)단위의 경우 양자간의 구분은 무의미
    - 반면 기업단위의 경우 아웃소싱의 경우라면 해당 기업의 중간투입에 해당하게 되어 부가가치에서 제외
      - 외부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의 부가가치로 귀속
      - 만약 동일 비용을 외부업체가 아닌 내부직원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에 포함

□ 보고서의 구성

- 제Ⅱ장은 공공기관 현황과 변천을 고찰
- 제Ⅲ장은 부가가치의 개념과, 일반적 부가가치의 추정방법, 공공기관 기관별·유형별 부가가치의 구체적 추정방법 및 추계결과를 설명·소개
- 제Ⅳ장은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의 관점에서 공공기관 성과평가지표 개발, 부가가치의 평가지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개선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논의함.
- 제Ⅴ장은 본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향후 보완과제 등을 간략히 논의함.
- 부록에서는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영역, 재무구조 등을 살펴봄.

## II. 공기업 개관 및 시대적 변천

### 1. 공기업 정의 및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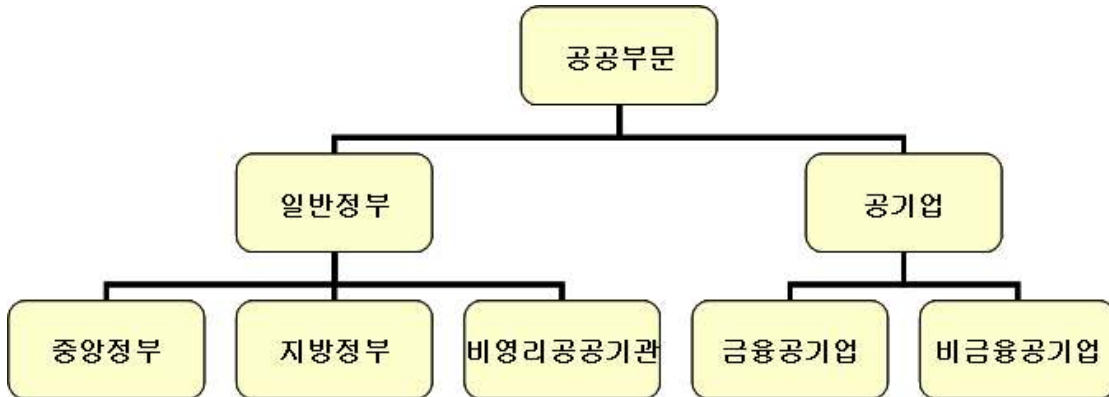
#### 가. 정의 및 일반 논의

##### 1) 국제기구 기준 정의

- 공공부문 논의의 출발점은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정부부문(general government sector)
  - 한 나라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통계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방식
  
- SNA는 국민경제를 5개의 부문(sector)으로 분류
  - 비금융기업(non-financial corporations)
  - 금융기업(financial corporations)
  - 일반정부
  - 가계(households)
  - 가계지원 비영리기관(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
  
- SNA는 기본적으로 회계가 아닌 조직, 즉 ‘제도단위’를 중심으로 구분
  - ‘제도단위’란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경제활동 및 거래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적 실체를 의미
  
- IMF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부문(public sector)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성(GFSM;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 공기업은 다시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으로 구분

- GFSM은 정부의 범위를 ①정부 및 ②정부가 통제하고 주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모든 비영리기관으로 정의
  - ‘일반정부’는 각급 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으로 구성
  - 공공부문이지만 기업적(영리) 성격을 띠는 공기업은 일반정부에서 제외
  
- 기업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불분명
  - EU가 사용하고 있는 매출액이 생산비용의 50%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일반적으로 적용

[그림 II-1] 공공부문 분류



- 기업으로 분류되는 제도단위들 중에서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제도 단위들은 공기업
  - 정부소유보다는 정부통제가 공기업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기준
  - 통제란 당해 기관의 일반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경영자를 지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지분소유와 무관하게 특별한 입법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2) 공기업의 필요성

- 공기업의 존재 필요성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 역사적으로 보면 공기업은 담배처럼 수입을 증진하거나
- 도자기처럼 기술적 진보를 위해 설립
- 독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국유화가 진행
  - 이에 따라 18세기 후반에 철도와 지역 교통기업이 국유화
- 기초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야기하는 민간기업을 공공부문이 인수
- ① 사회의 안정과 공공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
  - 전력, 통신, 철도, 우편, 상하수도, 가스 등은 사회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민간기업이 보유하기에는 부적절
- ② 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산업 육성
  -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높아서 국가 경제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민간기업이 직접 담당하기 곤란한 경우
  - 국가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경우 : 군수산업
- ③ 독과점의 억제 및 경제력 집중의 완화
  - 자연독점 성격, 특히 네트워크 산업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두드러진 산업에서는 기술적 성격상 여러 개의 기업이 하나의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며 영업하기 힘들며, 먼저 진출한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독점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
- ④ 재정적 수요의 충족: 담배, 석유 등
- ⑤ 낙후지역의 개발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농업, 광업 등 경쟁력이 낮은 산업

### 3) 공공가격 결정

- 일반적으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다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
  - 가격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널리 사용
  - 그러나 민간의 가격결정 방식과는 달리 공공분야에서는 주로 공공가격

(public price)을 사용

○ 보통 필수적인(essential)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가격이 주로 사용

□ 현재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실패’가 공공가격 책정의 논리

○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기업보다는 한 개의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민간에 맡겨 둘 경우에는 가격을 적정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므로 민간기업을 규제하거나 공기업을 설립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으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하고, 안정적 공급을 보장

○ 둘째는 가격 진폭을 조정하기 위한 것

- 농산물이나 의료 서비스 등은 단기 가격탄력성이 낮으므로 규제가격이 없을 경우 가격의 진폭이 지나치게 커지게 됨.

- 택시요금도 동일한 문제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규제

□ 공공가격을 책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득분배라는 정책목표 때문

○ 우유와 같은 생필품 가격이나 임대료 통제가 대표적인 예

○ 가치재(merit goods)에 대한 공공가격 결정도 유사한 논리

○ 이에 따라 초등 및 중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박물관 등 문화 관련 기관의 관람료를 낮게 책정

□ 결과적으로 공공가격이 사용되는 이유는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의 관점에서 논의 가능

○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인프라(Infrastructure) 기능을 하기 때문

○ 또한 분배적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재화 및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생필품(necessities of life) 기능을 하기 때문

○ 이러한 경우 정부는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

① 공공 소비재(public utilities) : 에너지, 교통 및 통신 분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가격을 사용

- 전기, 가스, 수도

- 전화, 우편요금
  - 라디오, TV
  - 항공, 철도, 시내교통, 통행료
  - 가축 사육, 쓰레기 수거
- ② 기초 산업 (basic goods industries) : 석탄, 원유, 핵에너지, 철강 생산을 하는 분야로 주로 유럽 국가에서 국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은 공기업이 생산한 경우도 있으나 현재는 민영화되어 국영기업이 없는 상태
- ③ 금융(finance): 저축은행은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이자율은 공공가격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공공부문이 소유한 은행이 있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도 대출 이자율 및 예금 이자율을 규제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자율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국책은행은 아직도 존재
  - 은행이 아닌 민간이나 공공부문이 소유한 보험사에 대해서도 요율이나 계약조건 등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다수
- ④ 농업 : 유럽에서 농업은 규제된 기업에 의해 수행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쌀 수매가격을 정부가 결정
  -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우유가격을 규제
- ⑤ 교육 및 보건
- 공공부문이 소유한 학교 및 병원의 학비나 요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규제
  - 공공보험 체계하에서 진료 및 약품의 가격도 대부분 규제

□ 가격을 P, 생산 및 수요량을 Q, 화폐로 표시한 효용을 U, 수입을 R, 고정비용을 F, 가변비용을 C라고 하면, 소비자잉여와 기업의 이익(수입 - 비용)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시 가능

(1) 소비자잉여 :  $CS = U(Q) - P \times Q$

생산자잉여 :  $PS = R(Q) - C(Q) - F$

- 민간기업의 경우 소비자잉여를 고려하지 않고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MR)이 한계가변비용(Marginal Cost: MC)과 만나는 점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이윤을 극대화
  - 만약 독점이 아닌 경쟁시장인 경우에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수입은  $R(Q) = P \times Q$
  - 따라서 민간기업은 추가적인 생산에 드는 비용이 가격과 같아질 때까지 생산하고  $P = MC$  (한계비용이 가격)
  
-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효율적인, 또는 가장 바람직한 가격은 소비자잉여와 기업의 이익(생산자잉여)을 최대화하는 것
  - 즉, 민간기업이 생산자잉여만 최대화한다면 공기업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

가) 단일가격(Uniform)

- 일반적으로 한계비용을 가격으로 책정하는 방식( $MC = P$ )이 생산자 및 소비자잉여의 손실(Deadweight loss)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므로 가장 효율적
  - 다만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즉, 수입( $P \times Q$ )보다 비용( $C + F$ )이 더 클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있어 한계비용이 체감하는 속성
  - 이러한 경우에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고정비용이 없는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
  -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세금을 통하여 조달되므로 결국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되어 부분균형하에서 최적이 될 수 있어도 일반균형하에서 최적이 불가능
  
- 한계비용 방식을 사용하지만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경우
  - 특히, 수요가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 다르고, 일정 수요 이상이 되면 추

- 가적인 고정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동수요요금제(peak load pricing)가 사용
  - 이 경우에도 한계비용을 가격으로 책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한계비용이 한계가변비용과 한계고정비용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차이
  - 전력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야간 시간에는 낮은 가격이 적용
- 예산제약 등 제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차선책이 더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다수
- 일반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이 사회적 최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최선책(first-best)
  - 반면 일정 제약조건하에서 최적을 달성하는 방식이 차선책(second-best)
  -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도 수지 균형과 같은 제약이 가능
-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잉여(CS; consumer surplus)를 최대화하는 방식

(2)  $\max CS \quad \text{s.t.} \quad PS = F$

- 수식 (2)의 결과를 보면 수요가 가격비탄력적 분야에 대해 높은 가격을 부과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수요가 가격탄력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낮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
-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가격의 변화에 민감한 분야는 소비자잉여도 민감
- 따라서 한계비용 이상의 가격을 책정할 때 수요가 가격에 민감한 분야는 조금 올리고, 가격에 덜 민감한 분야는 많이 올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
- 이러한 역탄력성에 의한 가격책정 방식은 Ramsey 방식이라고 불림.
- 공공부문에서는 한계비용을 이용한 Ramsey 방식이 아닌 비용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방식도 사용
- 합리적인 분배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한계비용이 아닌 평균비용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 나) 복수가격(Non-uniform)

- 변동수요요금제(peak load pricing)처럼 시장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복수의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음.
  - 실제로 공공가격의 경우 소비량당 가격이 동일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 가장 잘 알려진 예가 단위요금제(block tariff)와 이중요금제(two-part tariff)
  
- 단위요금제는 수요량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 일반적으로 몇 가지 수요량 단위를 정한 다음(예: 10, 100, 1000, 1000 이상) 수요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비용은 감소하도록 가격을 책정(예: 10, 8, 5, 3).
  -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이유는 첫째, 대규모 고정비용을 회수하고, 둘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임.
  -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단위의 증가가 소비자 복지수준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음(Leland and Meyer(1976)).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차별가격제이며 가격탄력적이지 않은 소비자를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비판
  
- 선택적 이중부과방식
  - 이중부과방식은 기본료와 사용료로 구성
  - 즉,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량에 관계없는 가입비가 있고, 사용량에 비례하는 사용료가 있음.
  - 사용료(running charge)는 보통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책정
    -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복지(welfare) 관점에서 최적(Spremann, 1978)
  
- 선택적 이중요금제는 낮은 수준의 가입비와 높은 단위가격을 부과하는 방식

과 높은 가입비와 낮은 단위가격을 부과하는 방식 중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낮은 기본료에 높은 단위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은 실제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미국의 지역전화나 독일의 전력 및 가스 가격 결정이 대표적인 예

## 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 1)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규정

#### 가) 개요

#### □ 기존 논의에서 나타난 정의

- 정갑영 외(1996):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 그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정의
- 유훈(20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정의
- 윤성식(1998):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과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기업처럼 대가를 받고 판매”라고 정의

####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설립은 설립근거 법률<sup>1)</sup>에 의하지만,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공공기관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률로 그 설립근거를 마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

#### □ 대부분의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있으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

---

1) 예를 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 환경관리공단법 등이 있다.

한 법률'이 있음.

- 공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공기업형의 국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그 설립근거가 되는 개별법 이외에 일반법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공기업 이외에 대하여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그 감독 및 통제가 이루어져 왔음.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1962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1973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1983년에 공기업의 기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되어 제정
  
- 공운법이 2007년에 제정되면서 두 법률은 폐지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공기관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표 II-1>과 같음.

<표 II-1> 공공기관의 법률 체계

주 체	설립·운영관련 법령		
	성 격	분 야	법 률 명
국가	일반법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병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별법	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각 개별 공사, 공단 등 설립법률
지방자치단체	일반법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일반 공공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지방공기업법」
	개별법	공사, 공단 등	○ 지방자치단체별 공사·공단 등의 설립조례

나) 공기업 등에 대한 관련 법규정

□ 공기업 등에 대한 관련 법규정은 공운법 이외에 ‘정부기업예산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등이 있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음(제1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sup>2)</sup>에 대하여 적용함(제2조).
  
-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며(제8조),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결산서·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고객만족도 조사결과·경영실적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
  - 이사회 회의록·감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필요한 서류는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제11조).
  
- 공기업·준정부기관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 의장은 시장형 공기업에는 선임비상임이사가 되고,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는 기관장이 됨(제20조).
  - 시장형 공기업에는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를 필수기관으로 두며, 준시장형은 법규에 따라 임의기관으로 둘 수 있음.
  - 준정부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이,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지만 공기업의 장과 감사는 대통령이 임명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제39조),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제43조).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기관장의 계약내용 이행보고서와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제147조), 이를 기초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을 평가(제48조)
  
-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와 평가결과를 기초로 한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표하여

---

2) 동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야 함(제49조).

## (2) 정부기업예산법

□ 정부기업의 복식회계처리방식에 의한 기업회계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61년말 기업예산회계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률은 2009년도 개정에 의하여 정부기업예산법으로 개칭

□ 정부기업예산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함(제2조).

□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하며(제3조), 이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제4조)

□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제15조).

□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제16조).

□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sup>3)</sup>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

---

3) 국가재정법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구할 때에는 다음의 각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제17조).

-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 전전년도 재정운영표·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
- 재고의 증감명세서

□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제18조).

- 해당 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
-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 차입금 명세서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명세서

□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함.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음(제21조).

□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음(제22조).

-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수리 또는 조달
-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

한다.

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정부조직 가운데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자 동법을 1999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법률은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제26조),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도 ‘정부기업예산법’에 우선하여 적용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에 속하나, 운영의 면에서는 정부기업에 해당(동법 제30조)
- 책임운영기관은 해당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별하고, 사무성격에 따라 행정형 책임운영기관,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제2조)
-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채용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기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며(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며(제12조),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둔(제49조).
- 정부기업과 달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관리하고(제29조), 또한 기관장은 초과수입금을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에 사용할 수 있음(제35조).
-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이월 사용이 가능하고(제37조),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를 정리하며, 이월결손도 가능함(제38조).

-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정부운영시스템에 민간기업의 경영기업인 성과원리를 도입하여 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이 가능한 간접경비 중의 하나로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를 인정하고 있음(제25조).

#### (4)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더욱 앞당기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공기업들을 조속히 민영화하기 위하여 정부규제를 축소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되었음(제1조).

-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적용대상(제2조)

-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 한국중공업주식회사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 민영화법은 투명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음(제5조).

- 사장 대상기업별로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제12조), 사장은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제13조).

-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

사원법에 의한 직무감찰을 배제하고 있음(제15조).

- 정부의 주주권 행사 및 소수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민영화법은 민영화를 촉진하면서도 동일인과 외국인의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제19조).
- 또한 정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을 위탁·대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매수자격과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으며(제20조), 적정수준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민영화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제21조).

## 2) 우리나라 공기업/공공부문 법률적 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제4조)
  - ①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② 정부지원액<sup>4)</sup>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③ 실질적으로 지배(지분이 50% 이상이거나, 지분이 30% 이상이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기관,
  - ④ 공공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공공기관의 분류는 공운법 제5조에 규정
- 2009년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수가 총 297개였으나 2010년 1월 29일 286개로 조정되어 지정 (신규 18개, 해제 9개, 변경 27개)
  - 2009년의 경우 공기업 24개(시장형 6개, 준시장형 18개), 준정부기관 80개(기금관리형 16개, 위탁집행형 64개), 기타공공기관 193개 등 총 297개

---

4)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 2010년 1월 주무부처에서 통보한 18개 기관을 새로이 공공기관으로 지정
  -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실익이 없는 9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
  - 기지정된 35개 기관을 15개 기관으로 통합
  
-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이 시장형 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8개 기관이 시장형 공기업
  - 나머지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기관
  
-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 16개 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등 63개 기관
  
-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각종 국책연구소, 산업은행 등 185개 기관
  
- 따라서 준정부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의 일부는 정부기관의 예산 심의와 유사한 통제가 필요
  - 현실에 있어서 기관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는 기관의 경우는 사실상 예산 심의의 대상

-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률, 즉 국가의 강제에 의한 세입을 가진 경우로 한정

<표 II-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구분 (2010년 1월말 현재 기준)

유형	분류기준	
공기업	자체수입/총수입 $\geq$ 50%	
	① 시장형 (8개)	자체수입/총수입 $\geq$ 85% 자산 2조원 이상
	② 준시장형 (14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지정	
	① 기금관리형 (16개)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관리(위탁포함)하는 기관
	② 위탁집행형 (6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185개)	

주: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자료: 기획재정부

<표 II-3> 2010년 지정 공공기관

구분	기관명 (286)
시장형 공기업(8)	(지경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4)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농림부) 한국마사회 (지경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노동부) 한국산재의료원 (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과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행안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문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지경부)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구 분	기관명 (286)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3)	(교과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문광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어촌공사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경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과부)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구 분	기관명 (286)
기타공공 기관 (185)	<p>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평생교육진흥원</p> <p>(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p> <p>(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p> <p>(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p> <p>(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p> <p>(문광부)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명동·정동극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재)체육인재육성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p> <p>(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p> <p>(지경부)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별정우체국연합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p> <p>(복지부)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p>

구 분	기관명 (286)
기타공공 기관 (185)	<p>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p> <p>(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p> <p>(노동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p> <p>(국토부)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투어서비스(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보안(주), 부산항만보안(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p> <p>(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p>(보훈처) 88관광개발(주)</p> <p>(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p> <p>(산림청) 녹색사업단</p> <p>(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진흥원</p> <p>(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단법인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p> <p>(식약청) 한국희귀의약품센터</p> <p>(금융위) 한국자산신탁(주), (주)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산은금융지주,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p> <p>(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p>

3) 공기업/공공부문 특성에 따른 분류<sup>5)</sup>

가) 재화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은 다양

- 재화의 성격이 공공재나 외부성이 큰 재화의 생산이라면 일단 그 재화나 서비스는 공기업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일차적인 근거 보유
-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공기업 을 분류하면 <표 II-4>와 같음.

<표 II-4> 재화의 성격에 따른 공기업 분류

재화/서비스의 성격	해당 공기업 및 사업
공공재	수자원공사(댐관리), 농기반(대단위사업, 농지, 용수), 조폐(화폐주조), 관광(홍보, 관광단지), 무공, 도공, 토공, 인천공항(공항관리,건설), 한국공항(공항관리), 부산항만, 인천항만
네트워크 외부성	한전(송전), 지역난방(배관), 가스(배관), 수자원(상하수도), 철도(선로건설, 유지)
취약계층 지원 및 특정산업 지원	유통(수출진흥, 유통, 용자), 주공(임대주택), 석공, 수출입(용자, 원조),산은, 기업(중기지원), 자산관리(기금,위탁), 투자공사(정부자금관리)
자원확보 및 가격안정기능	석유공사(비축, 탐사), 광진공(광물개발), 유통(비축)
대체재가 없는 사적재화	한전(발/배전)
대체재가 있는 사적재화	철도(수송), 지역난방(열공급), 가스(소매), 관광(면세점, 골프), 주공(일반분양주택), KOTRA(정보제공 민간 자체조달), 조폐(메달사업), 감정원(평가,특수사업), 기업(일반여신), 자산관리(채권관리), 인천공항(임대), 한국공항(임대), 주택보증, 주택금융, 88관광

□ 공공재를 공급하는 기업들로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조폐공사, 관광공사, 무역진흥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공항과 항만관련 공기업 존재

5) 주로 박기백·김현숙·민희철 공저인 『공기업 민영화 연구』(2006)의 내용을 참조

-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인천공항, 한국공항, 부산항만, 인천항만이 수행하는 물관리, 대단위 토지간척사업, 도로건설 및 택지개발 사업, 공항관리 및 건설, 항만관련시설은 모두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
  - 위와 같은 사업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과소 공급될 가능성 존재
  - 조폐공사가 제공하는 화폐주조 관련 업무는 인쇄제조업에 해당되기는 하나 화폐제조에 대한 보안과 정부의 공적 권한이 내포되어 있는 재화인 화폐의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를 생산하는 것으로 분류
  - 무역진흥공사의 무역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사업은 민간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인프라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 창출로 인식할 수 있으며, 관광공사의 관광홍보사업이나 관광단지 조성 역시 정부업무의 대행으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
- 네트워크 관련 산업들은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상 외부성을 가지고 있어 민간에 맡길 경우 시장의 실패 초래
- 네트워크의 외부성은 전력산업의 송전망처럼 일부 송전망의 불안정성이 시스템 전체를 파괴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전력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와, 생산한 재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종합적인 운영이 필수적(가스배관, 지역난방배관, 철도선로 등)
  - 또한 대부분의 네트워크 외부성은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 독점적인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진 재화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그 사업으로는 한국전력(송전부문), 지역난방공사(배관), 가스공사(배관), 수자원공사(상하수도), 철도공사(선로건설 및 유지)

- 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 석탄공사가 존재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무 중 수출진흥, 유통중개, 용자사업은 농어민에 대한 소득보전이나 지원형태의 성격이 강함.
  - 농수산물의 수출진로를 확대하고, FTA 등의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수산물 판로개척은 정부 차원의 농업정책이기도 하나 주요한 내용은 농어민에 대한 보호와 수익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원조
  - 주택공사의 사업 중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운영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석탄공사의 석탄채굴사업은 사양사업화한 석탄이라는 광물의 채굴을 통한 자원확보의 개념이 아니라 탄광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와 소득보전을 위해 채굴사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에 가까움.
  - 그러나 이러한 소득재분배 관련 사업들도 반드시 공기업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가능
  - 또한 특정한 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출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원조를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행하는 것임.
  - 투자공사의 정부자금관리 업무는 정부자산을 직접 운영하여 금융수익을 확보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연구하는 것으로 특정한 산업과 연관된 것
  
- 또 다른 공기업의 역할로 국가산업에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들 수 있음.
  - 석유개발공사(비축, 탐사), 광업진흥공사(광산개발), 농수산물유통공사(비축)가 이에 해당
  - 석유개발공사의 비축사업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쌀을 비롯한 비축사업은 재화의 수급여건에 따른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여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사업들로 공적인 기능으로 분류

나) 산업구조에 따른 분류

- 공기업의 존재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해당 재화 관련 산업구조
  -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자연독점인 산업은 공기업이든 민간이든 독점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하게 되는데 공기업으로 운영할 것인가 민간독점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규제 관련 정보인프라 수준 등에 영향을 받음.
  - <표 II-5>는 산업구조와 공기업을 연계하여 분류한 정보를 나타냄.

<표 II-5> 산업구조에 따른 공기업 분류

산업구조	해당 공기업 및 사업
자연독점	수자원공사(댐건설), 농기반(대단위사업, 농지, 용수), 한전(송전), 가스(배관), 지역난방(배관), 철도(선로건설)
자연독점은 아니나 독점유지	조폐(화폐주조), 관광(홍보), 무공, 석유공사(비축), 유통(비축, 수출진흥), 인천공항, 한국공항, 부산항만, 인천항만, 수출입, 자산관리(기금,위탁), 투자공사, 감정원(특수일부), 주택보증(분양/임대), 주택금융
국내에서는 독점, 해외에서는 민간과의 경쟁 도입	철도(선로건설, 유지,수송), 수자원공사(상하수도), 토공, 주공(임대주택), 한전(배전), 가스(소매)
국내에 이미 민간기업 진입	도공, 석유공사(탐사), 광진공(광물개발), 지역난방(배관), 관광(관광단지), 석공, 유통(유통, 용자), 지역난방(열공급), 관광(면세점, 골프), 주공(분양주택), 무공(정보제공 민간 자체 조달), 조폐(메달), 88관광, 주택보증(하자/시공), 감정원(평가), 기업은행, 자산관리(부실채권)
국내 타 공기업 및 공공 기관과 경쟁	농기반과 수자원(용수), 한전, 수자원과 농기반(수력댐), 수자원과 지자체(상하수도), 도공과 토공(택지내 도로사업), 관광과 토공(단지개발), 유통과 무공(수출지원), 유통과 농협(유통, 비축, 용자)

주: 1. 지역난방(배관)은 기술상 자연독점이나 이미 민간기업도 지역난방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적인 배관망을 구축  
 2. 타 공기업과의 경쟁은 반드시 현재의 공기업이 그 사업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향후 공기업 구조개편이나 통합 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3. 철도(선로건설)는 기술상으로는 자연독점이며 해외에서는 민간으로 기능 이양한 사례 있음  
 4. 한전의 발전 및 배전에는 캐너택 등 구역전기사업자가 소매시장 경쟁의 형태로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도매시장에서는 독점형태

- 기술적으로 자연독점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독점의 형태로 유지됨.
  - 현재 자연독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은 수자원공사(댐건설유지), 농기반(대단위사업, 농지,용수), 한전(송전), 가스(배관), 지역난방(배관), 철도청(선로건설) 등
  - 이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을 가진 사업이거나 대단위 사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보유
  
- 기술적으로는 독점의 형태를 유지할 근거가 없으나 독점적인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로는 조폐공사(화폐주조), 관광공사(홍보), 무역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비축), 농수산물유통공사(수출진흥, 비축), 항만 및 공항,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기금,위탁), 투자공사, 감정원(특수사업 일부), 주택보증(분양/임대), 주택금융이 존재
  - 관광공사와 무역진흥공사의 업무는 정부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독점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고, 석유개발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sup>6)</sup>는 각각 원유와 농산물의 비축을 통해 가격안정화 기능을 수행
  - 항만 및 공항은 수송관련 사회 인프라의 공급과 유지관리를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자산관리공사와 투자공사, 감정원의 일부 사업은 정부의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
  - 주택보증의 분양 및 임대보증은 법적인 독점에 의해 민간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분야이며 주택금융도 MBS 발행 등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
  
- 국내에서는 독점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나 해외사례를 보면 민간기업이 진입하여 경쟁하거나 아예 관련 공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들도 존재
  - 철도공사의 선로건설 및 유지사업의 경우, 영국에서는 철도시설은 레일 트랙이라는 민간회사가 인수하였고, 선로유지개량 관련 업무는 13개 회사가 분할하여 인수하였음. 또한 수송을 담당하는 철도차량은 3개의 회사

---

6)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더불어 농협협동중앙회도 쌀 비축을 담당하고 있다.

가 소유

- 수자원공사의 상하수도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사례가 다수
  - 노르웨이, 잉글랜드, 웨일즈,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하수도 사업에 참여
  - 가스산업의 경우에는 일본 등지에서 소매부문에는 민간기업들이 대량 진출해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
  - 전력산업의 발전 및 배전부분은 영국,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 국내에 이미 민간기업이 진입하여 공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향후 민영화가 다른 사업들보다는 다소 용이할 것으로 판단
- 도로건설사업에는 최근 들어 천안-논산, 서울-춘천 등의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민간기업이 진출
  - 석유개발공사(탐사)와 광업진흥공사(광산개발)의 사업에도 이미 민간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석탄공사의 석탄채굴사업에는 동원탄좌, 경동탄좌, 삼척탄좌 등 여러 민간기업들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광된 상태로 석탄공사의 도계, 장성사업소 등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음.

다) 재화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분류

-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는 공기업의 역할과도 관계가 깊으며 향후 경쟁체제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영향
- 만약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유일한 수요자라면 굳이 민영화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는(outsourcing) 형태가 더 바람직

- <표 II-6>은 재화나 서비스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공기업의 분류를 나타냄.

<표 II-6> 공기업과 재화 수요자 특성

재화/서비스 수요자	해당 공기업 및 사업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	조폐(화폐), 관광(홍보), 수자원(댐관리), 토공(국토정책), 자산관리(기금, 위탁)
정부와 민간혼합	무공(무역진흥), 농기반(대단위사업, 용수, 농지정리), 유공(탐사 비축), 광진공(광물개발), 석공(석탄채굴), 유통(수출진흥, 비축), 관광(관광단지), 도공, 토공(지역개발), 수출입, 감정원, 산은, 인천공항, 한국공항, 인천항만, 부산항만, 주택금융(기금)
일반 소비자/ 특정소비자	수자원공사(상하수도), 철도, 한전, 지역난방, 가스, 주공(임대, 일반주택분양), 유통(유통, 용자), 관광(면세점, 골프장), 조폐(메달), 자산관리(부실채권), 주택보증, 주택금융(MBS, SLBS)

- 정부만이 유일한 수요자
  - 조폐공사의 화폐주조 기능이나 수자원공사의 다목적 댐관리 등은 결국 화폐나 댐관리가 일반 국민의 후생을 위한 것이지만 정부가 일차적인 수요 대상
  - 토지공사의 국토관리정책도 정부가 전 국토에 대한 이용계획이나 토지개발계획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토지공사를 통해 수행
- 정부와 민간 양자가 모두 수요자인 사업들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인 사업들과 비교하여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동시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요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역할을 중복적으로 수행
  - 무역진흥공사의 무역진흥 및 홍보기능은 정부의 수출정책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무역진흥공사가 수집한 정보를 이용
  - 농업기반공사의 새만금 간척지 사업이나 용수사업도 모두 정부의 토지

개척사업이면서 동시에 농지 등을 확장함에 따라 농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

- 석유공사의 탐사, 광업진흥공사의 광물개발 역시 정부의 자원확보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민간에 자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 일반소비자나 특정 계층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존재

- 수자원공사의 상하수도 사업은 국가 차원의 물관리,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나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 전체가 소비자
- 네트워크 산업인 전력, 가스, 지역난방, 철도 모두 일반 국민이 소비자
- 주택공사의 임대주택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체제 확립이나 용자사업은 저소득층과 농어민이라는 특정계층을 수혜자로 하는 사업
- 자산관리(부실채권), 주택보증, 주택금융(MBS, SLBS)의 경우 민간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로 공기업이 반드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근거는 다소 약한 분야

#### 라) 수익성에 따른 분류

□ 기업의 수익성에 따른 분류는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을 시장형과 비시장형으로 나누는 기준 중 하나로 이용되는 기준

- 자본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일반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업성 측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표 II-7>은 순이익률에 따라 공기업을 분류

<표 II-7> 공기업과 수익률 구조

자기자본 순이익률 (04,05년 평균)	<0%	한국방송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서울신문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인천항만, 주택금융, 철도공사, 주택금융
	0~10%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 88관광,
	10~20%	중소기업은행, <b>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공사</b>
	20%~	<b>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기업은행</b>
매출액 순이익률 (04,05년 평균)	<0%	한국방송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서울신문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금융
	0~10%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감정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금융, 부산항만, 인천항만,
	10~2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공항공사, <b>한국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기업은행</b>
	20%~	<b>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88관광</b>

주: 석탄공사는 자기자본을 잠식하여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양(+)의 값으로 나타남.  
기업은행, 부산항만, 인천항만, 주택보증, 주택금융, 투자공사, 88관광, 철도공사, 교  
육방송은 2005년 수익률에 근거

- 자기자본과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20% 이상인 기업은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민영화나 경쟁환경 조성에 있어 유리
  -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경쟁환경 조성에 있어 불리

마) 정부지원 비중에 따른 분류

-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지원, 법적인 독점체제로 인한 렌트에 따른 영업이익,

법적 위탁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크다면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 해도 경쟁환경에 노출될 경우 동일한 수준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자체수입의 비중이 크고, 사업규모도 크며, 수익성도 좋은 기업들이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의 가능성이 큰 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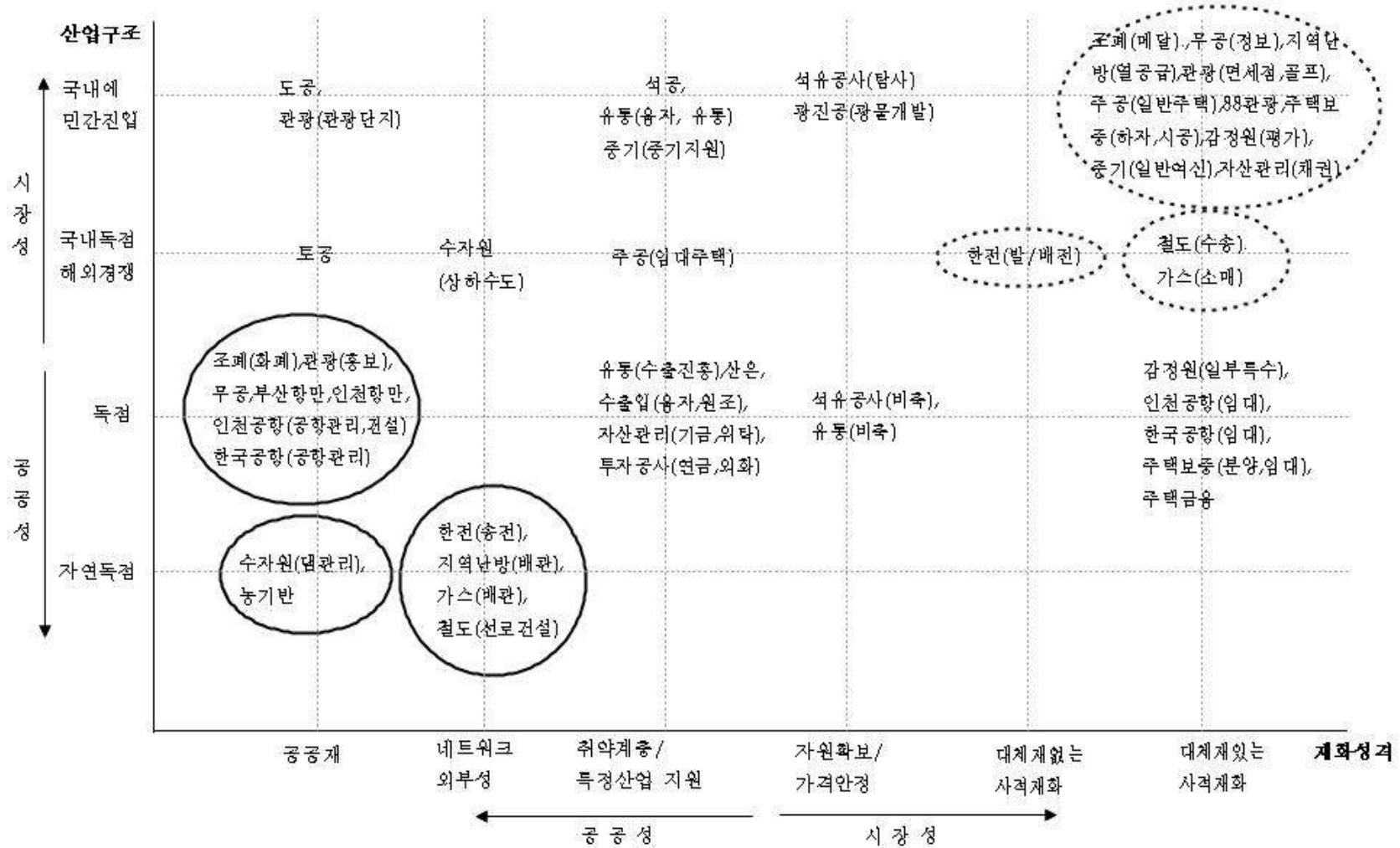
<표 II-8> 공기업 수입 중 정부지원 비중

위탁+독점 + 재정지원 비중	<5%	한국감정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송공사, 한국토지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금융
	5~50%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 인천항만, 철도공사, 교육방송
	50~80%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주택보증,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보증
	80%~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농업기반공사, 투자공사, 88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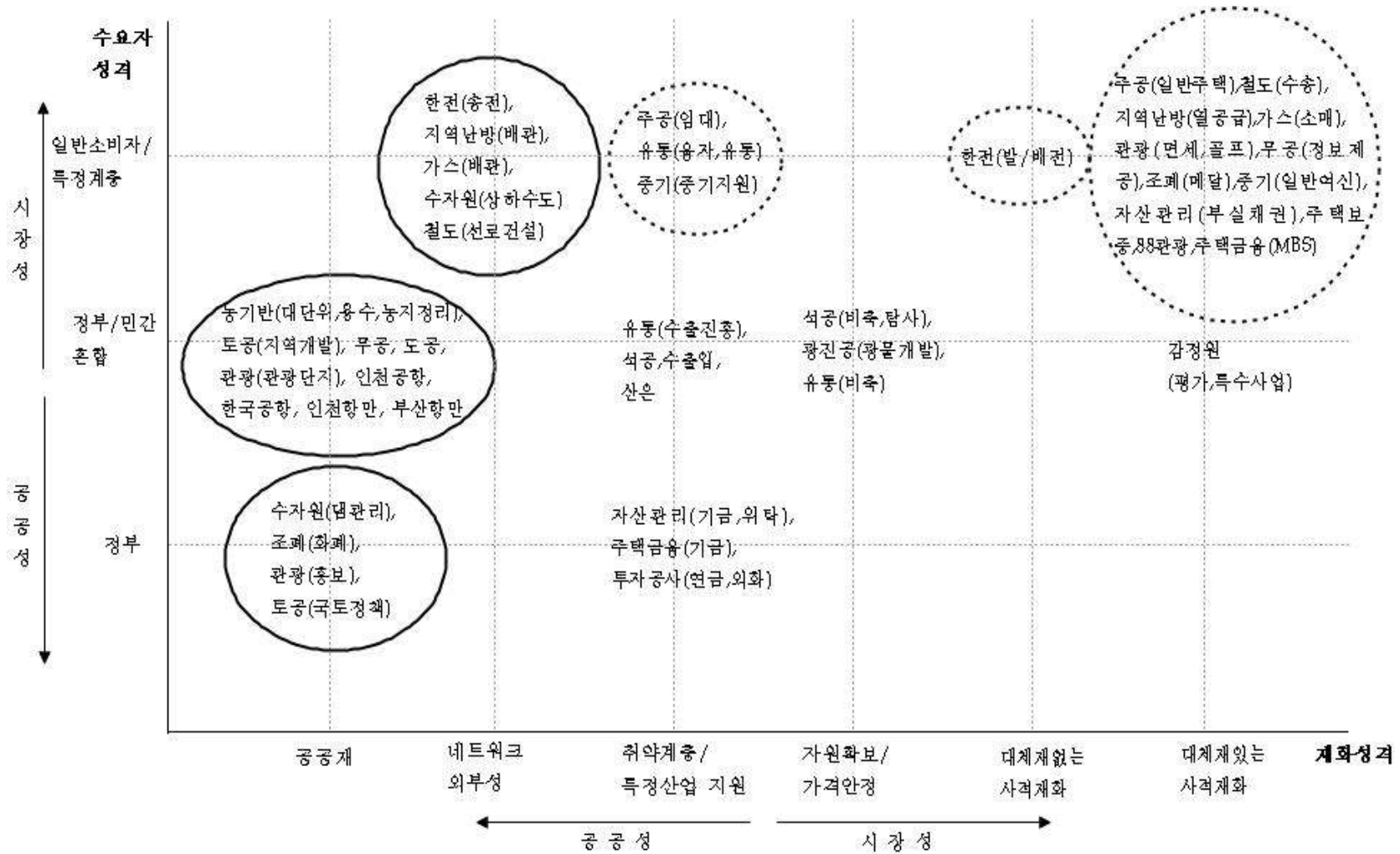
바) 상기 기준에 따른 유형분류

- 위의 공기업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들의 유형을 여러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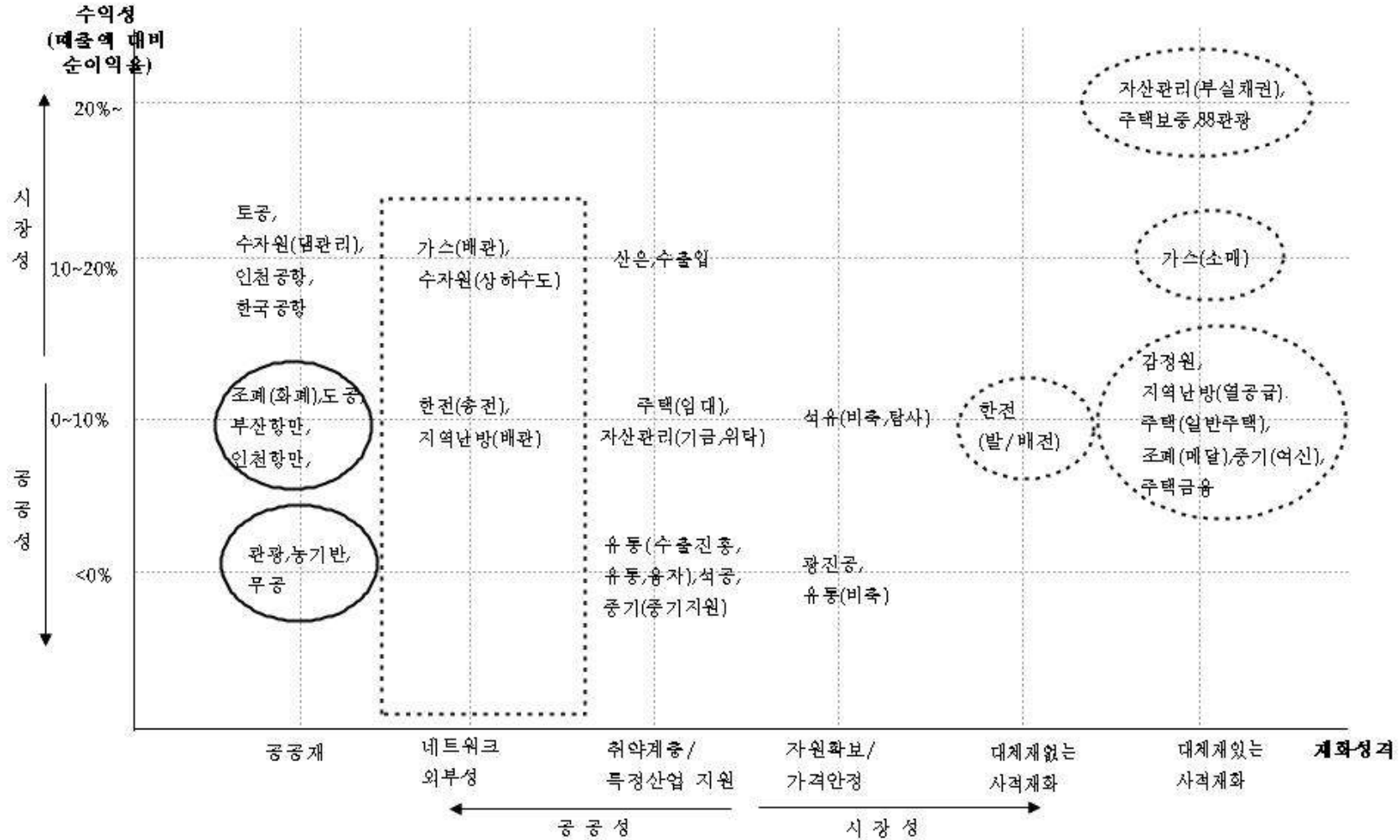
[그림 11-2] 재화성격과 산업구조에 따른 사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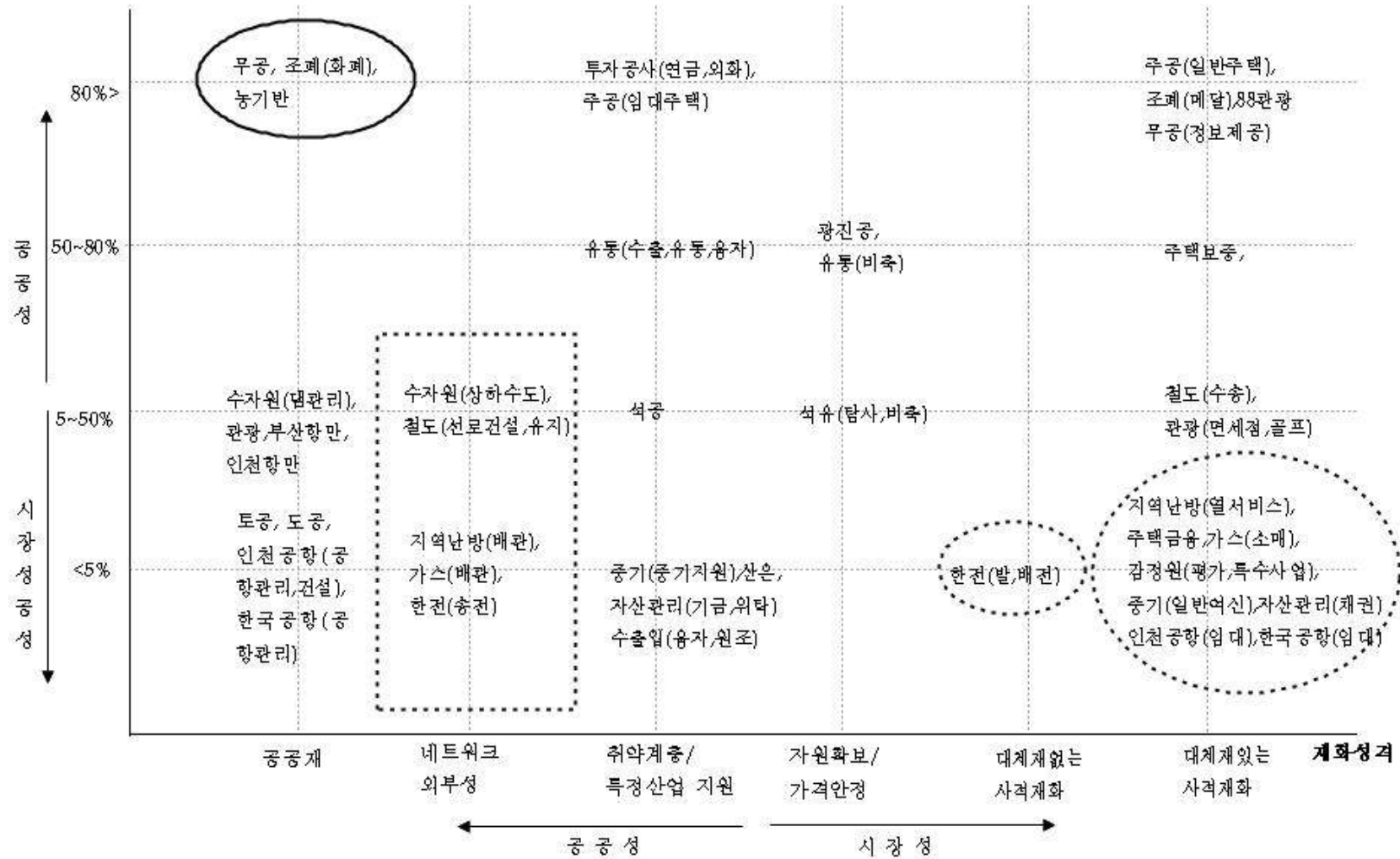
[그림 11-3] 재화성격과 수요자에 따른 사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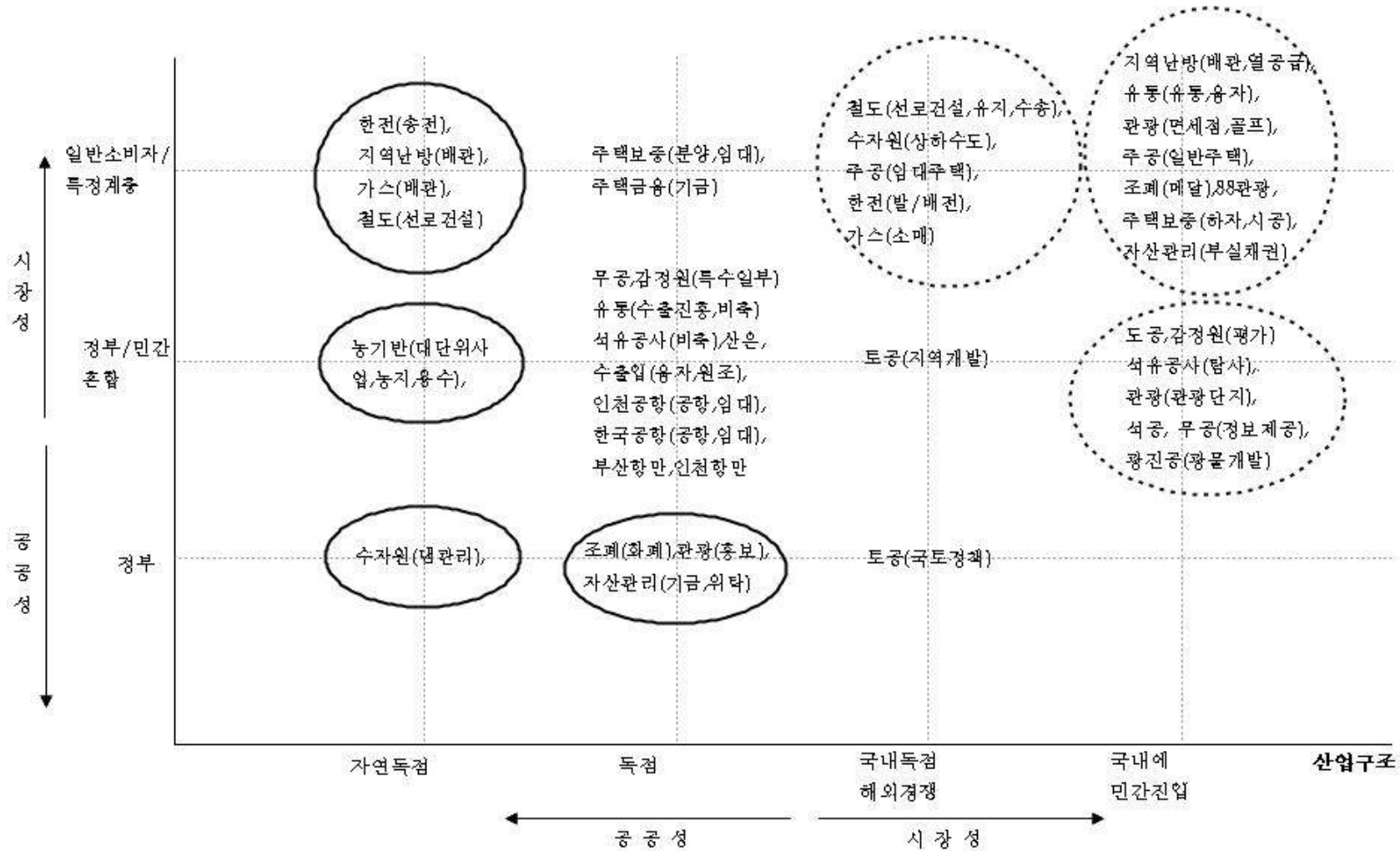
[그림 11-4] 재화성격과 수익성에 따른 사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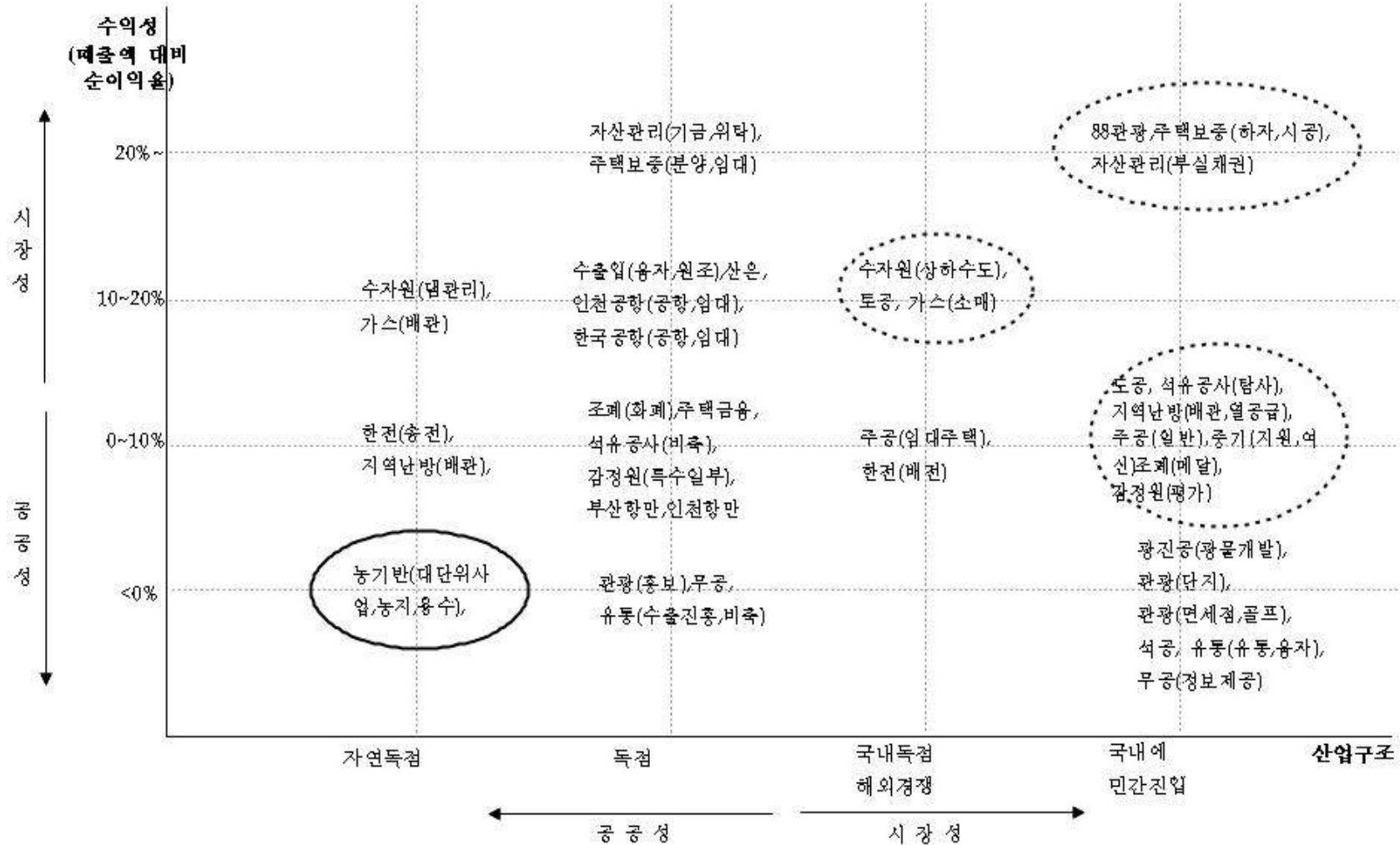
[그림 II-5] 재화성격과 정부지원사업 비중에 따른 사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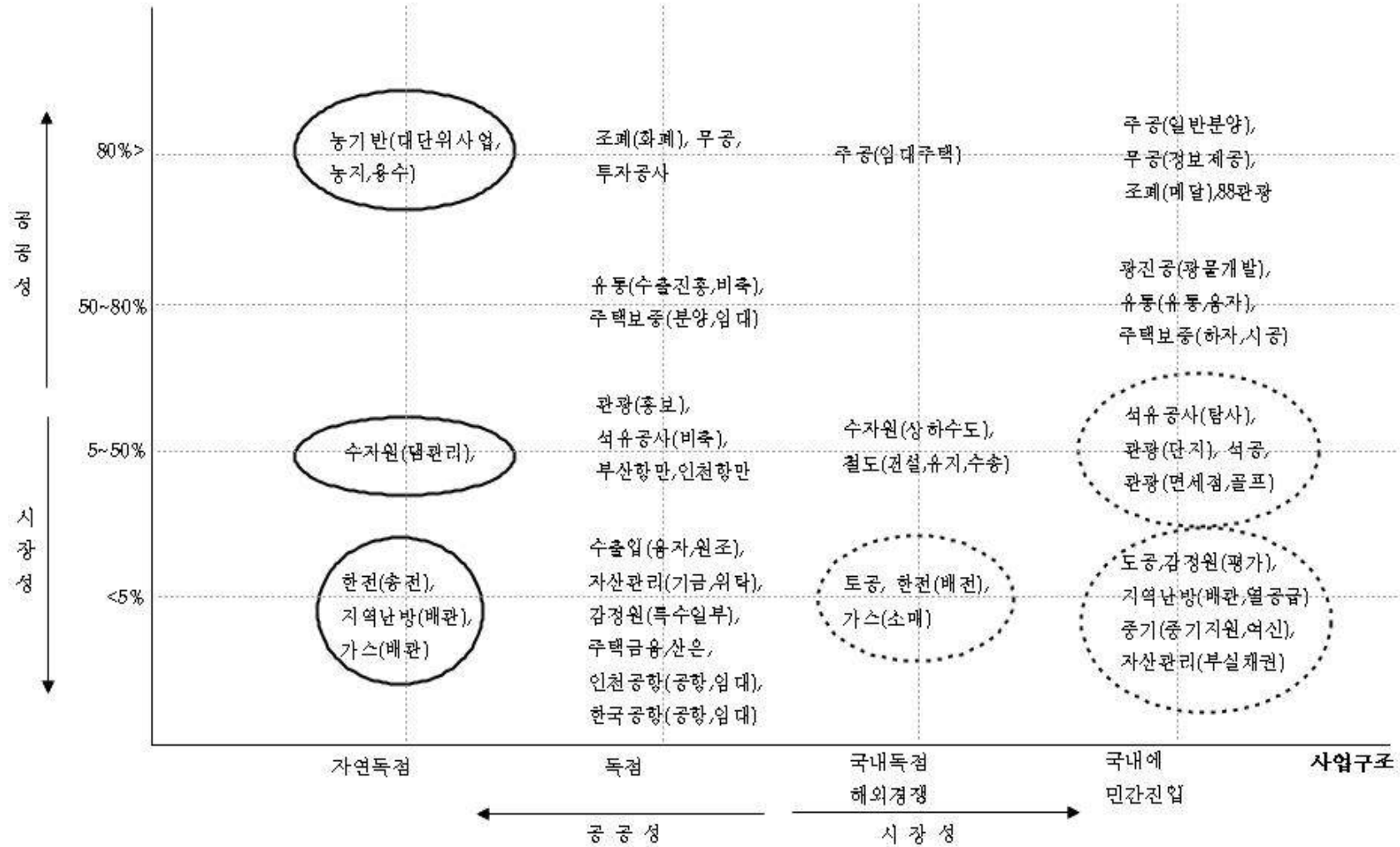
[그림 11-6] 산업구조와 수요자에 따른 사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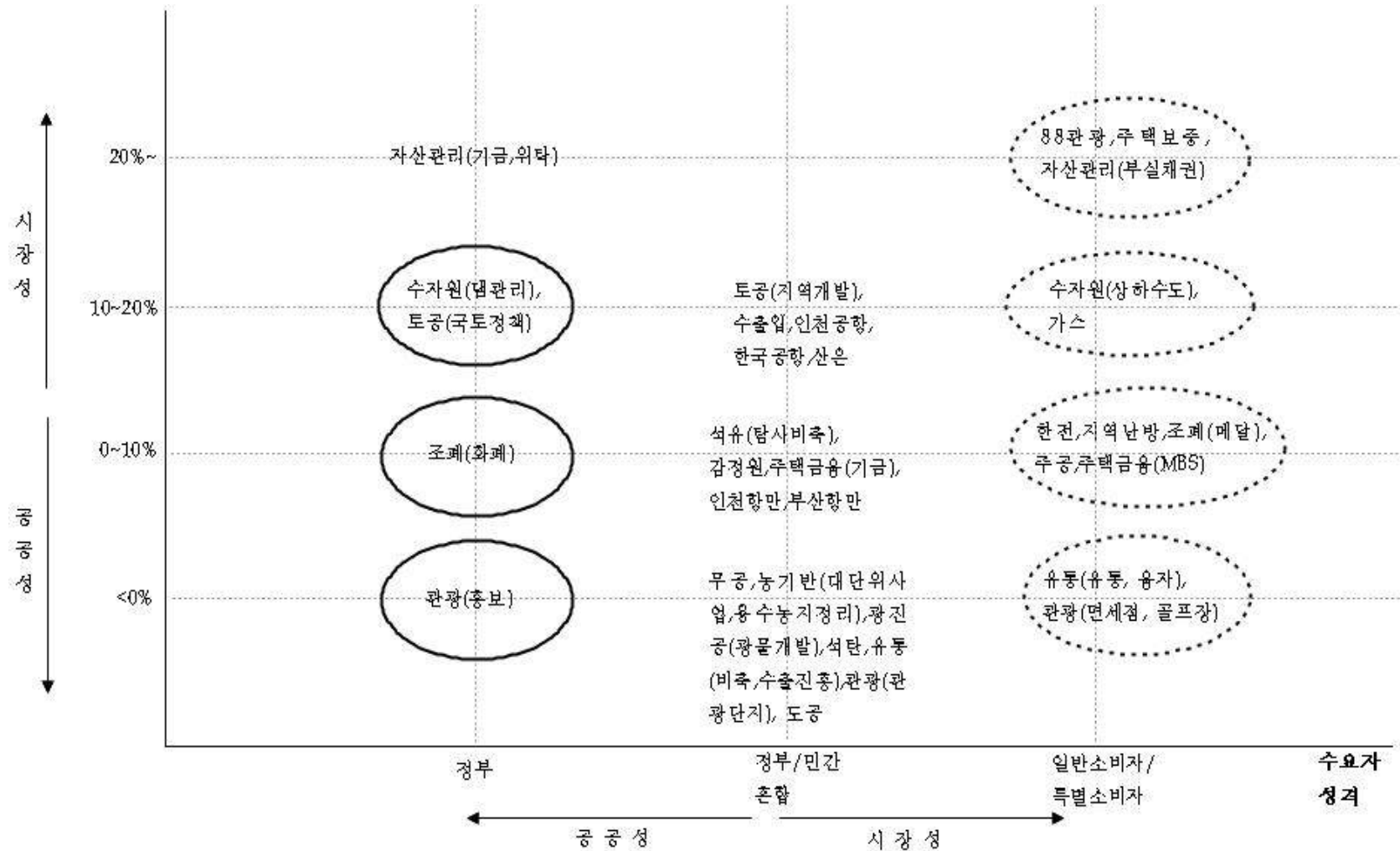
[그림 11-7] 산업구조와 수익성에 따른 사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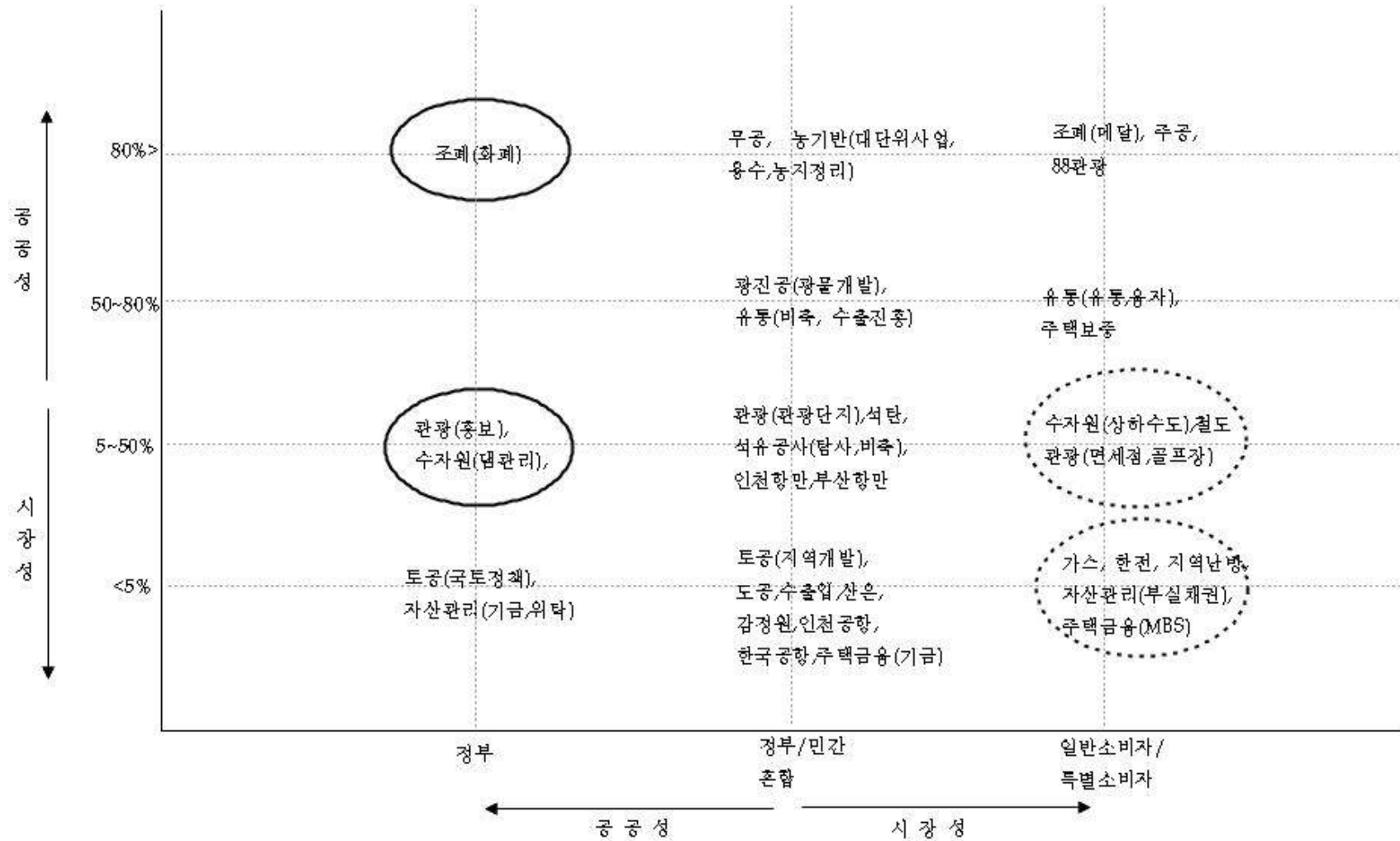
[그림 11-8] 산업구조와 정부지원사업 비중에 따른 사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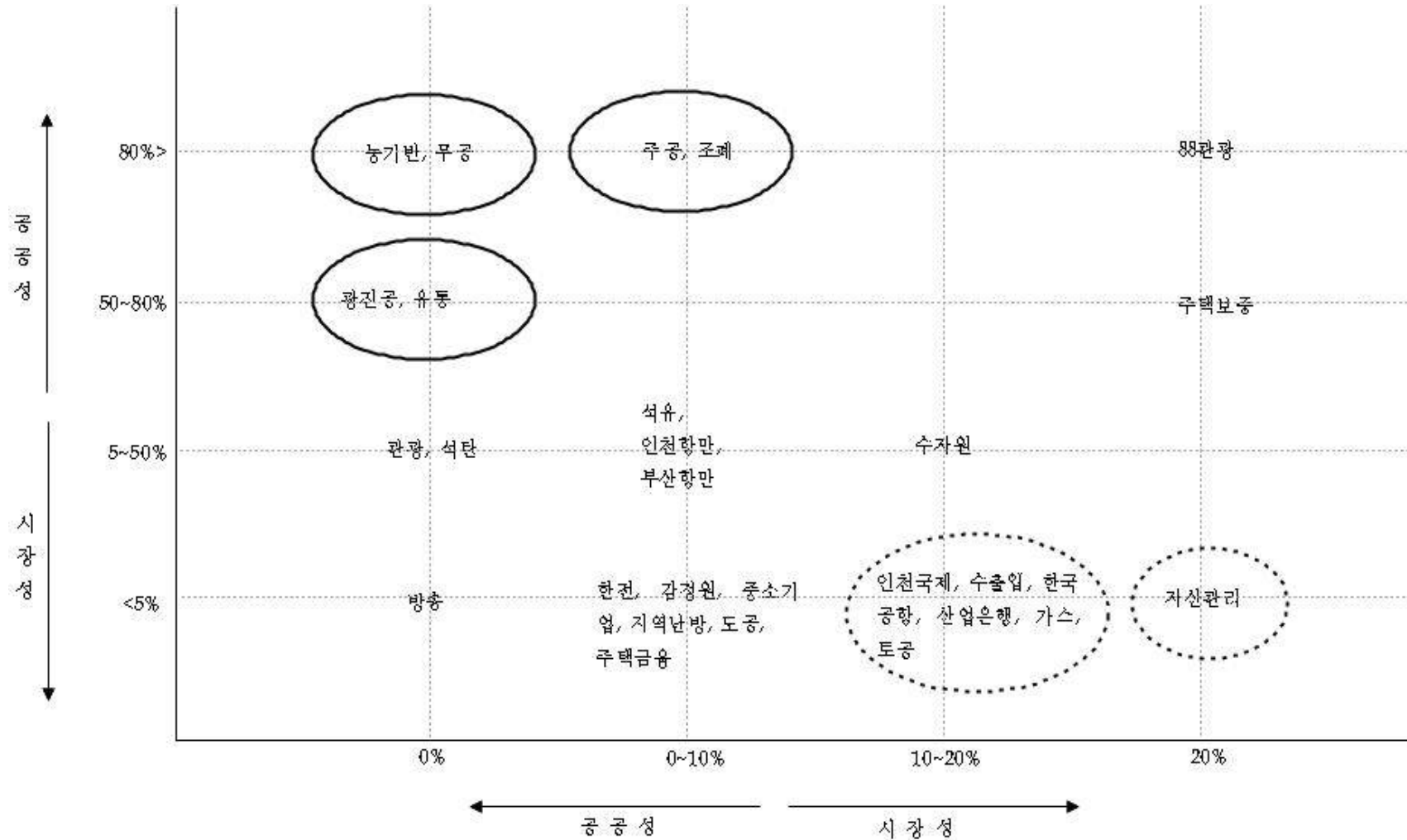
[그림 11-9] 수요자와 수익성에 따른 사업분류



[그림 11-10] 수요자와 정부지원사업 비중에 따른 사업분류



[그림 11-11] 수익성과 정부지원사업 비중에 따른 사업분류



- 그림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 II-3]은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과 산업의 구조에 따라 공기업의 사업을 분류
  - 조폐(메달), 무공(정보), 관광공사(면세점, 골프장), 감정원(평가), 기업은행(일반여신) 등은 대체재가 있는 사적재화를 공급하며 시장에서 민간과도 이미 경쟁하고 있는 사업 분야로 공기업의 업무로 보기 어려움.
  - 평면의 남서쪽에 위치할수록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를 공급하며 시장형태도 자연독점 혹은 독점형태를 띠고 있어 공공성이 강한 사업분야로 분류
  - 예를 들어 항만과 공항, 수자원공사의 댐관리 기능, 네트워크 산업의 네트워크 관련 사업들이 이에 해당
  
- [그림 II-4]는 재화의 성격과 최종수요자의 성격에 따른 분류로 일반 민간소비를 대상으로 한 재화를 생산할수록, 사적재화일수록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
  - [그림 II-3]과 비교해보면 시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된 항목들이 거의 유사하며,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된 항목들도 흡사하여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림 II-3]의 조합과 유사하여 최종수요자의 성격과 산업구조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암시
  
- [그림 II-7]은 산업구조와 소비자의 성격을 이용한 것으로 [그림 II-3], [그림 II-4]와 비교할 때 시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보다 포괄적인 반면, 공공성이 큰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앞의 두 그림에 비해 적음.
  - 예를 들어 석유공사의 탐사사업은 재화성격상 분류에서는 재화의 안정적 공급과 자원확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장구조상 이미 민간기업도 참여하고 있으며, 재화의 최종소비자에 일반 소비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면에서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
  - 반대로 공항이나 항만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림 II-7] 평면에서는 공공성의 순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표시

- 수익성지표를 이용한 [그림 II-11]은 재화성격, 산업구조, 수요자의 기준을 이용한 경우와 다소 다른 결과 제시
  -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는 높은 수익률과 높은 자체수입 비중으로 인해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화의 성격과 같은 기준을 이용한 경우 공공재로 분류되어 공공성이 큰 것으로 분류
  -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토지공사 역시 수익성 측면에서는 시장성이 크나 재화성격이나 시장구조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공공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자산관리공사나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모두 시장성이 큰 것으로 분류
  
- 따라서 위의 다섯 가지 기준 중 재화성격, 산업구조, 수요자의 성격을 이용한 경우와 수익성을 이용한 경우 일부 기관은 수익성은 높으나 생산하는 재화의 성격이나 산업구조상 공공성이 큰 사업이나 기업도 존재하였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
  
- 또한 (재화성격, 산업구조), (재화성격, 수요자)의 조합을 이용할 경우가 (산업구조, 수요자) 조합을 이용할 경우보다 시장성이 높다고 분류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사업군이 더 적음.

## 2. 우리나라 공기업의 변천

### 가. 시대별 구분·변천

- 1948년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성격과 특성을 시대별로 구분해보면 대체로 5개의 기간으로 구분 가능 (한국조세연구원, 2009 제II장 참조)

- 제1기: 정부수립후~1962년 7월
  - 공공기관에 대한 뚜렷한 통제 관련 법규가 없었던 시기로 통제가 비교적 느슨하였던 시기
  
- 제2기: 1962년 8월~1984년 2월
  -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던 시기로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기업의 역할·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히 컸던 기간
  - 1962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1973년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정으로 공기업을 경제개발전략수단으로 적극 활용
    - 민간의 부족한 저축·투자여력을 공공부문(공기업)에서 대체
  - 1968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제도를 최초 도입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1972년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시행
  
- 제3기: 1984년 3월~1999년 1월
  - 1983년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 제고를 도모
  - 정부투자기관들의 경영 신축성과 창의성 보장 및 방만경영 방지가 주된 제정 목적
  - 주요내용
    - 예산편성·조정 권한을 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정부투자기관에 이양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화하여 이사회를 별도로 설치·운영
    - 1984년 경영평가제도를 본격 도입·시행
  
- 제4기: 1999년 2월~2007년 1월
  - 19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기업지배구조 부분을 전면 개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목적)

- 정부의 당연직 이사제도 폐지
- 사장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장추천위원회(구성: 비상  
임이사, 민간위원) 도입
-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사장과 의 계약제와 인센티브 상여금 제도를 도  
입하고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
-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중요 정보를 국민에 제공
- 2003년 12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투자기관 이외에  
출연기관, 출자기관, 보조기관, 업무위탁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관  
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제5기: 2007년 1월~현재

- 2007년 1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해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과 정부산하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총망라하여 운영성격에 따라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 두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은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 공운법상의 기관유형별 관리·운영체제는 ‘외부감독·평가시스템’ ‘내부  
견제·균형장치’ ‘임원인사시스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계
  - 외부감독·평가시스템: 외부감독을 경영감독과 사업감독으로 구분
    - 공기업: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감독, 주무부처가 사업감독
    - 준정부기관: 주무부처가 경영감독과 사업감독을 모두 담당
  - 내부견제·균형장치: 이사회 독립성, 내부감사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
    - 시장형 공기업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비상임이사가 되고 감사위원  
회를 둬.
  - 임원인사시스템: 임원 임명절차 개선
    -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에 비해 주무부처와의 연계성이 높은 방향으  
로 개선

<표 II-9>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임원 임명절차

유 형		관리·운영체계 설계방향
공기업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무부처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공기업의 장 임명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준정부기관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주무부처 장관 임명
	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준정부기관의 장 제청 → 주무부처 장관 임명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무부처 장관 임명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표 II-10>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의 특성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사회회장	선임 비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위원회	위원회 설치 가능	위원회 설치 가능	
감사위원회	설치 필수	다른 법률에 의해 가능	
선임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중 기재부장관이 운영위 심의, 의결 거쳐 임명	비상임이사 중 호선	비상임이사 중 호선
비상임이사 권한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 가능 기관장에게 자료 요구 가능		
임원 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임원추천위 추천-운영위 심의,의결-주무기관 제청-대통령 임명</li> <li>- 상임이사: 임원 추천위 추천-공기업 장이 임명</li> <li>-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 추천-운영위 심의,의결-기재부장관 임명</li> <li>- 감사: 임원추천위 추천-운영위 심의,의결-기재부장관 제청-대통령 임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임원추천위 추천</li> <li>- 주무기관장이 임명</li> <li>- 상임이사: 임추위 추천-기관장 제청-주무기관장이 임명</li> <li>- 비상임이사 : 임추위 추천-운영위심의,의결-주무기관장이 임명</li> <li>- 감사: 임추위 추천-운영위 심의,의결-기재부 장관 임명</li> </ul>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불가능 이사회 선임 위원 정수는 임추위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 임추위 위원장은 임추위 위원인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중 호선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하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 권의 가능		
경영실적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		
경영평가단운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 수행과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연구, 자문 위하여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경영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다음에 대한 경영지침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및 주무기관장에게 통보 - 조직 운영, 정원·인사 관리,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관계 행정기관장은 경영지침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감독 주무기관장은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장이 공기업에 위탁한 사업,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등		주무기관장은 법령에 따라 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등 경영지침 이행 여부 감독
감사원 감사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 실시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9).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공공기관 선진화' (1기)

○ 4대 원칙

- ‘작은 정부 큰 시장’: (민간이양 등) 공정경쟁, 자율·창의 통한 시장경제
- 공기업 선진화: 개혁 통한 국민부담 저감
- 고용불안 감소: 민영화 대상기관 ‘고용 승계’ 통폐합 및 자연감소 원칙
- 노조·이해관계자 등 충분한 의견수렴·국민적 합의 통한 민주적 선진화

○ 4대 추진방향

- 민영화
- 통폐합
- 기능조정
- 경영효율화

○ 주요 내용

- 1~3차 (2008.8~10):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108개 기관)

선진화 계획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경쟁도입	효율화	계
1차(8.11)	27	2→1	-	12	-	-	41
2차(8.26)	1	29→13	3	7	-	-	40
3차(10.10)	10	7→3	2	1	2	8	30
계	38	38→17	5	17*	2	8	108*

- 4차 (2008.12): 조직 인력 예산 등 경영효율화(69개 기관)
- 5차 (2009.1): 출자회사 지분매각, 청산 폐지, 통폐합(130개 기관)
- 6차 (2009.3): 정원 감축 등 경영효율화(60개 기관)

□ ‘공공기관 선진화’ (2기): 질적 선진화 추구

○ 3대 거품 빼기

- 임금구조: 저위험-고보상 체계
- 조직구조: 과도한 간부비율 개선, 평판화와 광역화 필요
- 사업구조: 필요성, 효율성(민간위탁의 경우 대비)

○ 노사관계 선진화

- 경영권 침해, 무노동·무임금 원칙 무시, 과도한 연장 근로수당 등
-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필요

- 일류서비스로 진화
  -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 제고

## 나. 특징

-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시기로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시작한 시기
  - 부족한 민간의 투자여력을 공기업 중심으로 보전
  - 비료, 철강 등 당시 각종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문에 공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면서 경제개발을 선도하였던 것이 특징적
  
- 1980년대는 3저 호황기로 대변되는 고도성장기,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는 경제발전 성과의 확산기로서,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정밀한 관리·감독체계가 확립되면서 경영효율, 자율권·책임성이 동시에 강조되기 시작
  - 정부투자기관 대상의 경영평가제도 도입·시행을 통해 성과·경영효율 제고를 도모한 것이 최대의 특징
  
-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이후는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 등의 고도화를 도모한 시기로 평가 가능
  - 경영공시제도, 경영평가제도의 보다 엄정한 적용·활용을 통한 투명성·책임성·자율성이 강화된 시기
  
- 특히 2000년대 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가 본격 진전되면서 경영효율 개선, 자율성·책임성·시장성이 공히 크게 강조
  - 6차에 걸친 1기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정원감축 등에 주력
  - 2기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중점 추구: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역할 증대에 대한 시대적 요구 증대

-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율·책임경영 확산 및 시장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경영자율권 확대를 위한 시범기관을 선정
  - 선정기관(4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선정된 기관에 해외개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조직 신설, 직위·직급 운영 등에 자율권 부여
  - 1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자율권 확대 연장, 기관장 연임 건의, 직원성과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보통기관: 자율권 확대 1년 연장
    - 부진기관: 자율권 회수, 기관장 자진사퇴, 직원 성과급 삭감 등
  - 모범사례 구축 후 확대 시행 계획

### Ⅲ. 공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 1. 공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 가.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 일반론

□ 경쟁시장에서는 자율적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공급되기 어려운 공공재·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생산·공급, 각종 생산·지원활동을 통한 국민소득 증대, 자연독점적 규모의 경제 특성을 지닌 산업에 대한 독과점 폐해의 방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규제가 요구되거나 기타 공공·공익적 목적의 활동 등을 공기업의 경제적 기여도라고 할 수 있음.

□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 종류

- ① 공공재·공공서비스, 국가 기간재 등의 원활하고 안정적 공급
- ② 공공성·공익성 보장(공공목적)
- ③ 자연독점적 폐해 방지·완화
- ④ 소비자후생(소비자잉여) 극대화, 소득분배 및 재분배
- ⑤ 산업지원, 저렴한 전력·수자원 공급 등을 통한 타 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총체적 생산자잉여 증대)
- ⑥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업·투자
- ⑦ 고용, 복지, 부가가치 창출, 자본축적 등
- ⑧ 기타

□ 경제적 기여도의 물리적 특성

○ 가시적 기여도의 종류: 주로 ⑦번

- 수량화·계량화·금전화를 통한 측정·평가가 용이

○ 비가시적 기여도의 종류: 나머지 대부분

- 수량화·계량화·금전화 불가능 또는 매우 어려워 현실 적용 곤란

□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 중 상당 부분은 기관 내부의 성과보다는 기관 외부의 후생·성과·생산성 향상에 있음.

○ 따라서 공기업의 성과 평가시에는 내부평가만으로는 부족

○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 평가가 필수적

나.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 이론적 고찰(외부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공기업은 자신의 '이윤극대화'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극대화를 도모하는 등 일반 기업과 차별화된 기능·역할 수행

○ 공기업(공공기관)의 성과는 기관 내부의 경영효율(성과)와 함께 기관 외부로의 파급효과의 두 가지로 구성

□ 그러므로 공기업의 성과는 양자를 포괄적으로 고찰·분석할 필요

□ 외부적 파급효과의 예: 독점 규제를 통한 공급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 또는 타 산업·기업의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 유발

□ 자연독점적 산업 특징을 지닌 공기업(또는 시장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윤극대화 원칙( $MR=MC$ ,  $E_2$  균형)'을 포기하고  $P=MC(E_1, \text{균형})$  또는  $P=AC(E_0 \text{ 균형})$ 로 가격을 규제(통제)하는 경우 균형소비량(Q) 및 소비자잉여 모두 증대([그림 II-1] 참조)

○ 독점균형( $MR=MC$ ) 대신 경쟁균형( $P=MC$ )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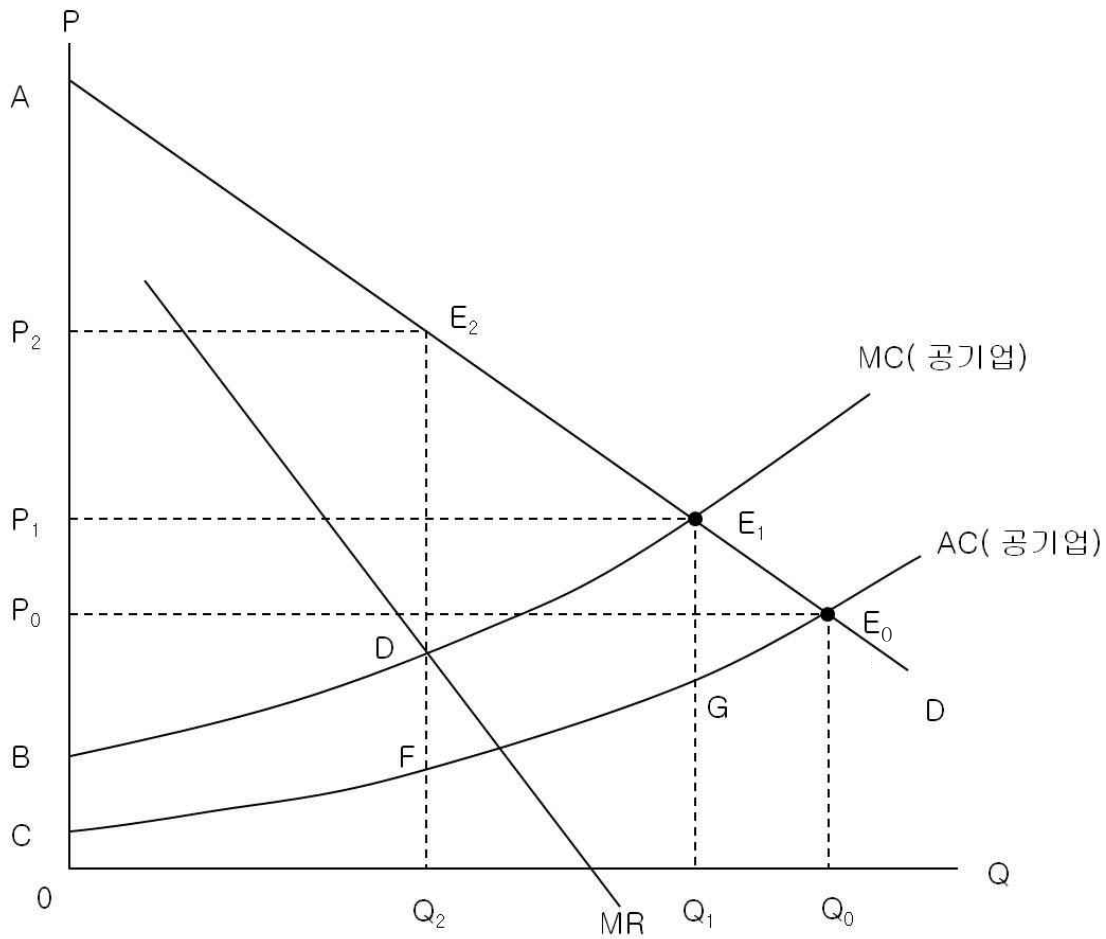
- 공기업의 생산자잉여(부가가치의 한 요소) 감소:  $P_2E_2DB \rightarrow P_1E_1B$

- 소비자잉여 증대:  $AE_2P_2 \rightarrow AE_1P_1$

□ 수요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 가격규제로 인한 공기업의 생산자잉여 감소효과

- 가 균형량 증가로 인한 생산자잉여 증가효과를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
- 이 경우 해당 공기업의 부가가치는 필연적으로 감소
- 그러나 공기업 부가가치의 감소분보다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후생은 증가

[그림 III-1] 공기업 가격규제와 균형: 최종소비자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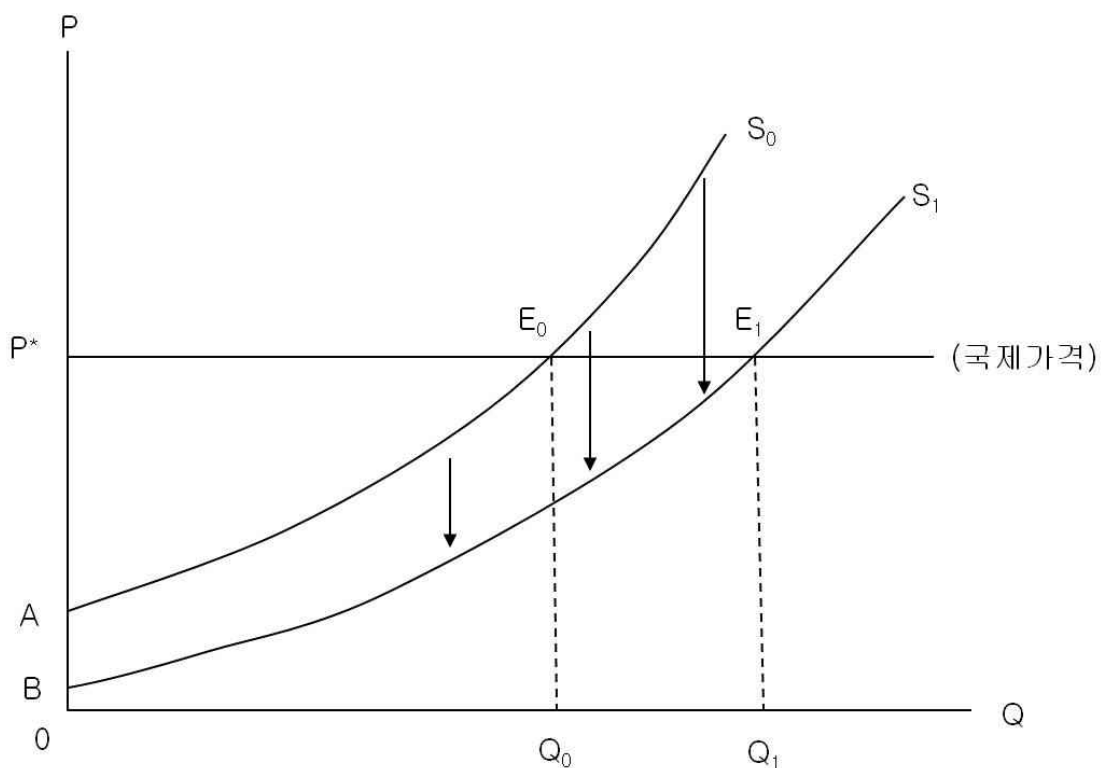


- 공기업이 저렴하게 財를 공급하여 해당기업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생산자잉여 확대에 기여([그림 II-2] 참조)
  - 타부문 생산자잉여의 증대:  $P^*E_0A \rightarrow P^*E_1B$
- 그러나 이러한 기여도(소비자잉여, 타부문 생산자잉여의 증가)는 공기업의

부가가치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부가가치에 부(-)의 효과를 나타냄.

-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직접 창출한 부가가치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성과 중 일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총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외부 파급효과도 함께 추정·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III-2] 공기업 가격규제와 균형: 타부문 생산자 단계



#### 다. 분석의 범위

- 본 연구의 기본목적은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전술하였듯이 대부분의 효과가 수량화·계량화·금전화가 어려워 실측이 곤란
  - 경제적 기여도의 수량화·계량화·금전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장기적 기

### 초연구가 필요

- 소비자후생, 생산자잉여 추정을 위한 수요·공급·생산함수의 분석
- 공공요금 등의 소득귀착 분석 등
- 현재 상태에서 객관적·금전적으로 평가·측정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로는 부가가치 창출액이 대표적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다양한 경제적 기여도 가운데 공기업의 각종 생산활동의 결과로서 국민소득(보다 정확히는 국내총생산) 구성 규모·기여도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즉, 공기업(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산출을 주목적으로 함.
  
- 공공부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공기업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함.
  - 아울러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도 분석대상에 포함

### 라. 부가가치의 개념

- 거시경제학적으로 균형 상태에서의 흔히 수식  $Y = C + I + G$ 으로 표현 가능(단, 논의의 편의상 해외부문은 제외)
  - 상기 식에서 좌변은 최종생산물, 우변은 최종수요를 나타내며,
  - 양변이 서로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이 성립
  
- 상기 식은 양변에 중간투입이라는 동일 항이 상쇄된 형태
  - 따라서 중간투입을 양변에 합산하면 하기의 식으로 정리
  - $$Y + \text{중간투입} = C + I + G + \text{중간투입}$$
  
- 상기 식에서 좌변은 총산출, 우변은 부가가치와 중간투입의 합을 의미
  - 총산출 = 부가가치 + 중간투입
  - 본장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바는 우변의 부가가치임.

- 부가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산출접근법과 비용접근법의 두 가지 개념이 많이 사용
  - 산출접근법은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는 방법을 일컫으며,
  - 비용접근법은 부가가치를 구성항목별로 합산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일컫음.
  
- 산출접근법
  - 산출물과 중간 투입물의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산출에서 중간 투입을 차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총산출(output) - 중간투입 = 부가가치
  
- 비용접근법
  - 산출물에 대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용방향으로 접근하여, 부가가치와 중간투입을 합산하여 총산출을 추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부가가치 + 중간투입 = 총산출
  - 부가가치는 투입된 총비용으로 집계하며,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로 구성

## 2. 한국은행 부가가치(국내총생산) 추계방식<sup>7)</sup>

- 생산물, 중간 투입물에 대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의 존재 여부가 부가가치(국내총생산)의 산출 방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됨.
  - 부가가치 추계 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산출접근법’,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용접근법’을 사용

- 한국은행에서는 각 산업별 총산출물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를 나누고<sup>8)</sup> 총산

7) 2010년 2월 2일 한국은행 이주영 과장(국민소득팀)의 “한국은행 GDP 추계 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추계방법을 정리함.

8)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출물의 성격에 따라 산출방법을 결정

-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정부서비스 부문은 비용접근법을 사용
- 다른 시장성이 있는 산출물의 경우 대부분 산출접근법을 채택

□ 명목(당해 연도 가격평가)가치뿐 아니라 실질 부가가치를 추계하는 것이 경제적 역할과 기여도를 연구하는 데에 의미가 있음.

- 실질화 방법은 명목금액( $P*Q$ )을 가격( $P$ )과 물량( $Q$ )으로 분리해 내는 작업
-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산출접근법을 사용하는 산출물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화가 비교적 용이
  - 존재하는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물량( $Q$ )을 간접 추정
- 비용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량( $Q$ )을 직접적으로 추정
  - 부가가치의 명목가치를 구한 후, 각각의 요소별로 물량을 추정
  - 예를 들어 피용자보수의 실질가치는 직원 수를 계산하여 산정

### 3.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계방법<sup>9)</sup>

#### 가.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산출방법

□ 전절에서 보았듯이 부가가치 산출방식은 크게 산출접근법과 비용접근법의 두 가지로 대별

- 한국은행의 경우 산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추정하는 반면,
- 공기업의 부가가치 추정을 위해서는 기업별(또는 기관별) 부가가치를 개별적으로 산출한 후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

□ 기업별(또는 기관별) 부가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산업별 산출과 달리 구

---

사회복지,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등으로 산업을 나누어 추계하고 있음.

9) 한국은행의 부가가치(국민총생산) 추계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추정하고자 함.

## 체적인 기술방법상 다소의 차이를 내포

- 공공기관에 대한 부가가치 산출방법 또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공기업의 경우 산출접근법으로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비용접근법으로 각각 부가가치를 산출할 필요
  -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준에 맞추어 분류하는 작업이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함.
  
-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접근법을 많이 사용
  -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
  - 특히 이 방법은 실질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많이 활용
  - 부가가치세를 구성요소별로 추정·합산하는 방법보다는(총산출-중간투입)의 방법이 보다 일반적
  
- 정부부문(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비용투입분을 부가가치로 간주하여 직접 계산(비용접근법)
  -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격이나 최종생산물(최종산출) 또는 중간투입 등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투입분을 직접 부가가치로 간주
  
- 공기업은 대부분 산출접근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추정
  -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 기능에 대한 부분은 비용접근법으로 추정
  -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는 시장기능과 공공재 공급 기능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런 경우에는 부문의 특성에 따라 부문별로 두 가지 방법 중 적정 방법을 선택하여 부가가치를 산출 후 양자를 합산
  
- 산출접근법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 각 기관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통해 총산출물은 총매출을 통해

집계

- 중간 투입의 경우 기관의 산업,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간 산출에 해당하는 계정을 집계
  - 총매출에서 중간 투입을 차감하여 명목부가가치 추계
  - 산출접근법의 경우 각 기관의 중간 투입을 집계하는 것이 관건
- 비용접근법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경우)
-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판매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사회정책 목적상 대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회 전체 또는 개별 가계에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
  -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영업잉여를 갖지 않음.
  - 부가가치는 일반적인 부가가치 항목에서 영업잉여를 제외한 피용자 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 생산세를 합하여 집계
- 공공기관의 특성상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거래가격이 존재하더라도 이 가격이 완전한 경제적 시장가격이라 할 수 없음.
- 그러므로 명목부가가치보다는 실질부가가치가 경제적 기여도를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음.
  -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정책적으로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별 가격이 고려되는 명목부가가치보다 실질부가가치가 공기업의 국내총생산에서의 기여도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음.
  - 2008년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가격 통제로 인해 고유가의 영향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여 약 4조원의 경상손실을 시현
  - 한국은행 추계 전기·가스·수도사업의 명목 국민총생산과 실질 국민총생산을 살펴보면 명목의 경우 2007년 191,553억원, 2008년 163,986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실질의 경우 2007년 190,262억원, 2008년 199,973억원으로 증가

## 나. 공기업 부가가치 산출시 유의사항

- 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경우와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경우에 전자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추계방법 및 항목상 다소의 차이가 발생
  - 일례로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내부직원에게 의해 수행된 경우라면 총산출에 포함되지만,
  - 만약 동일업종의 외부로부터의 아웃소싱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별 추계시 동종 산업 내에서 합산·차감을 통해 상쇄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 기업 단위에서는 해당기업의 부가가치에서 제외되는 만큼 중간투입으로 간주하여야 하는바, 재무제표로부터 이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구별해야 하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
  
-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각종 공공재·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또는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를 추계하는 경우 해당 생산물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매출 또는 산출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존재
  -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도로사용료 수입은 일반 기업의 영리행위에 대응되는 개념이므로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산출이 용이하나,
  - 도로건설의 경우 건설된 도로는 산출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후 도로공사가 직접 보유함에 따라 도로 가격이나 매출 등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산변동분(감가상각분 포함)을 부가가치에 추가하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
  - 도로건설 등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인 경우 해당 산출물에 대한 특정연도에의 부가가치 귀속이 용이하지 않음.
    - 한 기관이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을 별개로 관리하여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외부로부터 기업내부로 유입된 이전소득은 일반 기업의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닌 한 부가가치에서 제외
  -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재·서비스를 무상 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로 인한 원가보전 또는 통상적 수준의 이윤보장을 위해 수취하는 이전소득은 성격상 민간기업의 매출과 대응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부가가치로 간주하여 합산
  - 공기업·공공기관 중 그런 성격의 이전소득이 전체 이전소득 중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
  
- 영업외수입·영업외비용의 포함 여부
  - 이자수익, 배당수익, 이자비용 등은 부가가치 계산에 포함
  - 환차익, 평가차익 등은 부가가치 계산에 불포함
  - 보조금과 장려금의 경우 총산출에 포함
    - 다만 공기업마다 보조금 및 장려금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
  - 기부금은 중간투입에 불포함
  
- 철도산업의 경우 운영상으로는 철도시설 부분이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기능상 한국철도공사와 통합하여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음.
  - 시나리오를 나누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하나의 기관으로 하여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다른 시나리오로 나누어 측정해보는 것도 장차 시도해볼 만한 사항
  - 두 기관을 통합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경우라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공단에 중간투입으로 지불하는 차량비, 시설사용료 계정의 경우 중복계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4. 공기업 기관별 산출방법

### 가. 개요

- 본장에서는 공기업의 부가가치 산출방법을 소개
  - 공기업은 대부분 일정한 산출물을 시장에 공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를 추정
  
- 산출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매출-매입)의 방법으로 추계
  - 원론적으로 매출은 총산출, 매입은 중간투입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으나
  - 감가상각, 재고변동, 자가소비(또는 자가생산물 소비 또는 재투입), 아웃소싱, 가격의 변동, 이전소득 등의 존재로 인해 일반 민간기업과는 추계방법상 큰 차이를 내포
  
- 일부 공기업의 경우 산출물을 시장을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출 대신에 (유형)고정자본형성 또는 그 가치의 변동분 등을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
  
-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부 산출물이 비교적 분명하고 시장이 존재하여 산출접근법을 통해 부가가치를 추계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투입분을 부가가치로 간주하여 비용접근법으로 추정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를 추정하는 경우 재무제표로부터 총산출과 중간투입에 대한 해당항목 선정 및 산출이 필요한데,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다수 존재
  
- 총산출
  - 각 공기업의 산업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총산출 계상방법이 정해짐.

- 특정 공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음.
- 재무제표상 구체적인 정보의 구분이 되지 않아 중간투입 항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존재
  - 집합계정이 대표적인 예: 집합계정으로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계정을 의미
  - 집합계정의 예
    - 원가부문: 보상비, 업무추진비, 시설부담금, 간접비 등
    - 판매관리비 부문: 업무추진비, 포상비, 협력비, 개발비, 연구비, 경상공발비, 판매촉진비
- 각 공기업마다 집합계정명과 정의가 상이함에 따라 각 공기업마다 세부사항 파악 후 판단이 어려운 계정에 대한 선택 및 설명 필요
  - 중간투입 항목에 포함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중간투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산출시 최대치·중간치·최소치의 세 가지 방안으로 처리
    - 중간투입 최대치: 집합계정의 100%를 중간투입으로 처리
    - 중간투입 중간치: 집합계정의 50%를 중간투입으로 처리
    - 중간투입 최소치: 집합계정의 0%를 중간투입으로 처리
- 273개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가운데에는 24개 공기업의 자회사로 분류된 기관이 21개 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의 경우에는 중복계상 등을 피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기업에 통합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함.
  - 공기업 자회사 목록은 <표 III-1> 참조

<표 III-1> 공기업의 자회사 현황(2009년 현재)

모회사	자회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보안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보안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	인천종합에너지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트랙(주)

□ 아래에서는 공기업(공공기관)의 유형별·기관별 구체적 산출방법을 요약하여 제시

○ 단, 부가가치의 추정대상 기간은 2008년이므로 2009년 및 그 이후에 통폐합 등 변동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총산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서비스업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사업별 총매출액을 총산출로 계산

- 총매출은 부두시설 사용료, 접안료로 구성

□ 영업외 수익과 비용

다.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는 운수창고통신업 중 수상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 취급업 및 터미널 시설 운영업 등의 운영관련 서비스업을 행하는 기관

- 주요 사업(수입원)은 수상운송보조서비스(건물/시설임대업)로서 시설사용료 등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 총산출 = 임대수익 + 항만시설사용료수입 + 기타수입

- 부산항만공사는 서비스업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사업별 총매출액을 총산출로 계산

- 총매출은 임대료수익, 항만시설사용료수익, 기타수익으로 구성

- 임대료수익: 지성대부두,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감만부두 종합운영건물, 신감만부두, 우암부두, 3부두, 4부두, 중앙부두, 감천중앙부두에 대한 임대료 수입

- 항만시설사용료수익: 접안료, 화물료, 야적장사용료, 창고사용료, 전용사용료, 하역장비사용료, 하역장비사용료, 터미널이용료 등으로 구성

- 중간투입: 생산과정에서 투입물로서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 가액

-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매출원가부분과 판매관리비 부분에서 해당항목을 구하여 계산

- 매출원가 부분

- 항만수도광열비, 항만시설보험료, 항만관리용역비, 항만시설검사비, 항만보수공사비 등

- 판매관리비 중 중간투입이 확실한 계정: 복리후생비(비급여성), 여비교통

비, 통신비, 업무추진비, 수도광열비, 위원회운영비, 지급임차료, 사무시설 관리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행사비, 판매촉진비, 선박비<sup>10)</sup>

- 판매촉진비의 경우 외국항만과의 경쟁을 위해 일정 컨테이너 선적량 이상의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계정으로 매출할인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 경우 음(-)의 매출액을 나타내어 회계상으로는 비용 처리되지만 기관의 생산 측면에서는 매출액으로 잡히는 행위와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비용처리하지 않음.
- 포상비의 경우 현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중간투입에 포함되지 않음.
- 조정운영비 항목은 조정운영회 활동을 하는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중간투입에 포함되지 않음.

#### 라.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는 서비스업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사업별 총매출액을 총산출로 계산
  - 주요 사업(수입원)은 수상운송보조서비스(건물/시설임대업)로서 시설사용료 등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 총산출 = 임대료수입 + 항만시설 사용료수입 + 관문수관리수익
  - 임대료수입: 부대임대료(부지임대, 석탄부두, 기타임대 등)
  - 사용료수입: 접안료, 정박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수입 등
  - 갑문수탁관리수익: 기타수입
- 중간투입: 생산과정에서 투입물로서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 가액
  - 모든 중간투입 항목은 확실한 중간투입 해당항목과 집합계정으로서 그

---

10) 부산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의미함.

성격이 모호한 계정들을 나누어 계산

- 매출원가: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시설관리유지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행사비, 소모품비, 피복비, 지급수수료, 항만관리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광고선전비 등
- 판매관리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위원회운영회비, 지급임차료, 시설관리유지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조직관리비, 도서인쇄비, 행사비, 소모품비, 피복비,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광고선전비 등
-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 중간투입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계정
  - 매출원가: 협력비, 기타 잡비
  - 판매비와 관리비: 단체협력비, 부서운영비, 잡비

□ 영업외수익/비용에서 고려할 계정

- 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 비용: 이자비용, 항만보안협력비

마. 인천국제공항공사

□ 총산출

- 한국운송보조서비스 산업(건물/시설임대업)으로서 서비스업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수행
- 당해연도의 사업별 총매출액을 총산출로 계산
- 총매출: 공항수익, 임대수익, 시설이용수익, 통신사업수익, 기타수익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 중간투입

- 모든 중간투입 항목은 확실한 중간투입 해당항목과 집합계정으로서 그 성격이 모호한 계정들을 나누어 계산
- 매출원가 부분의 회의비, 대내조직관리비, 잡비를 애매한 계정으로 분류
- 판매비 부분의 회의비, 대내조직관리비를 애매한 계정으로 분류

- 영업외수익/비용에서 고려할 계정
  - 수익: 이자수익, 원석판매대금, 잡이익
  - 비용: 이자비용

바. 한국공항공사

- 총산출: 한국운송보조서비스 산업으로서 서비스업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사업별 총매출액을 총산출로 계산
  - 한국공항공사는 시설임대 및 공항사용료 등이 주수입원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표 III-2>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분류

사업	산업분류
임대사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
공항사업	운수업, 시설이용수익

- 총산출 = 임대수익 + 공항수익 + 시설이용수익 + 기타수익
  - 임대수익: 토지임대료, 건물임대료, 공작물임대료, 물품대여료
  - 공항수익: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 사용료 등
  - 시설이용수익: 국내여객공항이용료,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주차장사용료, 유료대합실사용료, 시설관리유지료 등
  - 기타수익
- 중간투입: 모든 중간투입 항목은 확실한 중간투입 해당항목과 집합계정으로 서 그 성격이 모호한 계정들을 나누어 계산
  - 매출원가 부분: 시설관리비의 중간투입
    - 피복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sup>11)</sup>, 지급수수료, 연료비, 보험료,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차량

11)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뿐 아니라 상품판매를 위해 쓰는 광고선전비, 접대비도 포함됨(우리나라 국민계정 p.64)

비, 시설관리유지비 등

○ 판매비와 관리비

- 피복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연료비, 보험료,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차량비

○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 중간투입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계정

- 매출원가 부분: 회의비, 조직관리비, 잡비
- 판매비와 관리비: 회의비, 조직관리비

□ 영업외수익/비용에서 고려할 계정

○ 한국공항공사의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관광기금대행수익, 기상정보료대행수익, 빈곤퇴치기여금대행 수익, 잡이익, 국고보조금

○ 잡이익과 국고보조금은 애매한 계정으로 분류

- 국고보조금: 가격안정화 등 산업정책상 회사의 산출에 상응하는 매출을 얻을 수 없을 때 지급되는 경우 보조금이 총산출로 계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총매출에 포함되지 않음.
- 보조금은 그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애매한 계정으로 분류

○ 영업외비용: 관광기금판매비용, 빈곤퇴치기여금판매비용

## 사.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

○ 철도운송사업을 주산업으로 하며 기타 부대/수탁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서비스업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사업별 총매출액을 총산출로 계산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 총산출 = 운송사업수익 + 부대사업수익 + 수탁사업수익

○ 총수익

- 운송사업수익(고속철도여객수익, 일반철도여객수익, 광역철도여객수익)

익, 화물수익, 기타수송수익, 정부보상수익)

- 부대사업수익(광고사업수익, 유통사업수익, 임대료 수익)
- 수탁사업수익(일반수탁수익, 유지보수수탁수익, 개량수탁수익, 관제업무수탁수익, 방호업무수탁수익)

○ 총산출의 형태가 모두 서비스업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수익의 총합을 총산출로 계상

#### □ 중간투입

○ 매출원가 부분(총괄명세서): 여비교통비, 통신비, 동력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시설사용료(일반철도시설사용료, 고속철도시설사용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운반및보관료, 광고선전비

○ 매출원가 부분의 조사분석비, 연구비, 경상공발비의 정의

- 조사분석비: 조사연구분석 및 자료수집비로 법률자문용역, 컨설팅비용, 기타 평가 용역 등의 비용이므로 중간투입 항목에 해당
- 연구비: 신제품 또는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집합계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매한 계정으로 분류
- 경상공발비: 신제품 또는 신기술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단계에서 지출한 비용 중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애매한 계정으로 분류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부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기타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 중간투입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계정

- 매출원가: 협력비, 연구비, 경상공발비, 기타경비
- 판매비와 관리비: 연구비, 협력비, 경상공발비

#### □ 영업외수익/비용

○ 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수익, 정부정책지원금(보조금), 지원·

장려수익, 잡이익 등

- 잡이익은 분류가 애매한 계정으로 분류

○ 비용: 이자비용

#### 아. 한국석탄공사

□ 한국석탄공사는 석탄 생산·가공·판매업

○ 국내 장성, 도계, 화계 지역에서 생산한 석탄과 수입한 석탄을 판매하여 광업 및 석탄 도매업무가 함께 이루어짐.

○ 당해 생산 국내 생산 석탄량과 당해 매출 수입 석탄량이 총산출의 대상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 정책상 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석탄공사에 가격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입을 유지하고자 가격정책지원금(생산안정지원금, 산재보험료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지급되며 이는 공사의 산출에 포함

○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석탄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원가상승분에 대하여는 가격안정지원금을 통해 보조

○ 가격안정지원금의 종류: 직접보조 형태의 생산안정지원금과 간접보조 형태의 산재보험료보조금

- 생산안정지원금: 정부의 무연탄 최고판매가격 고시제도에 따라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차이 보전분을 일정액씩 지원하며, 매년 지원단가가 변경

○ 공사의 총산출은 각각 계산된 국내탄 산출액, 수입탄산출액과 탄가보조금의 합으로 구성

□ 총산출 = 국내산출석탄량\*기준단가 + 수입탄 당해 매출 + 탄가보조금  
+ 안정지원금 + 산재보험료

○ 생산량\*기준단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장성탄, 도계탄, 화순탄

- 수입탄: 당해 매출
- 탄가보조금
  - 석탄의 경우 기준 시장가격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탄가보조금이 지급
  - 탄가보조금 단순 합계
- 안정지원금, 산재보험료

□ 중간투입

- 모든 중간투입 항목은 확실한 중간투입 해당항목과 집합계정으로서 그 성격이 모호한 계정들을 나누어 계산
- 제조원가: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여비교통비, 전력및수도료, 피복비, 수선유지비, 차량비(차량비에서 세금과 공과제외) 보험료,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통신비, 광고선전비, 등기소송비, 소운반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도급작업비 등
- 판매비와 관리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운반및보관료, 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조사분석비, 등기소송비, 연구비, 외주용역비, 운반보관비 등
-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 중간투입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계정
  - 판매비와 관리비: 연구비, 일반관리잡비

자. 한국석유공사

-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석유개발사업, 국내석유개발사업, 시추선 운영사업, 석유비축사업, 석유정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해외석유개발산업이 주요 사업
  - 해외석유광구는 자회사, 지사(branch) 형태 등으로 운영

□ 총산출

- 총매출 구성항목

- 상품 및 제품 매출액(해외유전에서 개발한 상품 및 석유로 제조한 각종 제품에 대한 판매)
- 금융사업 수익
- 유류 저장 및 비축 시설 대여 및 시추선 용역사업수익으로 이뤄지는 임대알선 이용사업 수익
- 따라서 총산출 = 상품 및 제품 매출액 + 순금융사업수익(금융사업수익-금융비용) + 임대알선 사업 수익
- 사업 특성상 해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대부분이나 상세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총산출에 반영하지 않음.
- 영업외비용 부분에서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를 총산출에 포함

#### □ 중간투입

- 매출원가상 중간투입
  - 매출원가상 중간투입 비용은 당기 매입원가와 재고액 변동량을 반영
  - 금융원가부문은 총산출에서 순금융사업수익을 합산하였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 임대알선이용사업에서는 시추선사업비, 비축사업비를 반영
- 판관비상 중간투입
  - 명확한 비용항목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 불명확한 비용항목: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조사분석비, 포상비, 경상개발비, 잡비, 영업외 비용상 잡손실
  - 사업특성상 복리후생비, 경상개발비 등도 해외부분과 많이 연관되어 있으나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처리

#### 차.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도로사업, 부대사업, 지원사업, 도로건설사업

- 앞의 3개 부문은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건설된 도로를 공사가 직접 보유함에 따라 그 자체로서의 매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자산의 변동분(감가상각 포함)을 매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총산출에 포함

<표 III-3> 한국도로공사의 사업 분류

사업	산업분류
도로사업	서비스업
부대사업	서비스업
지원사업	서비스업
도로건설사업	건설사업

- 총산출 = 지원사업수익 + 도로관리사업수익 + 부대사업수익 + 건설중인 자산의 변동분 + 유형자산의 건설에 해당하는 계정의 변동분 + 이자수익 + 배당금 수익 + 임대료
  - 지원사업수익: 국가에서 관광공사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으로 전액 계상
  - 도로관리사업수익: 총수익 + 매출에누리 + ABS통행료
    - 고속도로 관리를 통한 통행료 수익
  - 부대사업수익: 부대사업운영수익 + 기타부대사업수익
    - 고속도로 휴게소, 정비소 사용료 수익, 기타부대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설계 및 타기관 용역에 대한 수익
  - 건설중인 도로는 자산(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
    - 총산출: 건설중인 자산의 변동분 + 유형자산의 건설에 해당하는 계정의 변동분<sup>12)</sup>
  - 영업외 수익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12) 토지 및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건설과 관계없이 증가하는 유형자산 제외

## □ 중간투입

### ○ 각 사업별 손익계산서 존재

- 각 사업별 손익계산서의 합이 전체 손익계산서와 동일하므로 총괄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중간투입 산출
- 판매비와 관리비상의 중간투입: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등기소송비

### ○ 매출원가

- 도로관리사업비 : 고속도로 관리상의 유지보수비, 전액 중간투입에 계상, 본사에 포함되어 있는 유료도로관리권 상각비 제외
- 부대사업비 : 주유소 시설유지, 설계용역 및 평가, 전문가과건용역에 대한 비용 등 대부분 외부의 전문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전액 중간투입에 포함
- 지원사업비 : 국가의 보조금을 전액 설계 및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이를 중간투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각 매출원가 명세서에는 상세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명세서를 통하여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와 위의 내용을 토대로 중간투입 산출

### ○ 영업외 비용

- 이자비용

### ○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 중간투입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계정

- 조사분석비, 잡비

## 카.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단지분양, 건설(수자원 개발, 지방상하수도 건설 등), 관리(댐관리, 수도사업 등), 부대사업(골재사업, 수탁사업 등)

###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표 III-4>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분류

사업	사업명	산업분류
단지분양		건물건설
건설사업	수자원개발사업, 지방상하수도건설사업	기타토목건설
관리사업	댐운영관리사업, 수도사업, 지방상수도운영사업, 하수도운영사업	수도업 및 서비스업
부대사업	해외사업, 골재사업, 수탁사업	

□ 총산출

○ 제품매출

- 단지분양매출액 + 단지분양매출할인

○ 건설사업수익

- 건설중인 자산의 변동분 + 유형자산의 건설에 해당하는 계정의 변동분<sup>13)</sup>

○ 관리사업수익

- 댐운영관리사업수익
- 수도사업수익: 급수수익실적<sup>14)</sup>으로 산출
- 지방상수도운영사업수익
- 하수도운영사업수익

○ 부대사업수익

- 해외사업수익
- 골재사업수익
- 수탁사업수익

○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임대료

□ 중간투입

- 수도업 및 사업별 관리비의 기준연도 중간투입은 결산서의 판관비를 통

13) 토지 및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건설과 관계없이 증가하는 유형자산 제외

14) 수자원공사에 급수수익실적 요청

해 추계

-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목비, 도서 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조사분석비, 등기소송비, 일반관리잡비, 판매선전비,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판매잡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중간투입

- 단지분양원가 : 공사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 제품 이외 원가<sup>15)</sup> : 공사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조사분석비, 재료비, 기타비용

○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 중간투입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계정

- 포상비, 협력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타. 한국방송광고공사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 총산출 = 방송광고료 수입 + 시설판매수익 + 시설임대수익 + 해외광고수탁수수료 + 이자수익

○ 총수익

- 방송광고료: 방송광고공사는 방송사로부터 방송시간을 사고 광고회사로부터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방송광고료는 수익이 되며 방송시간을 구매한 것은 매출원가상 중간투입에 계상
- 시설판매수익: kobako연수원의 매출액을 말함.

15) 제품(단지분양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타냄. 수도사업, 댐운영관리사업, 댐건설사업, 지방상하수도사업, 해외사업, 골재사업, 수탁사업

- 연수원의 경우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익과 연수원 내 음식점 등의 판매수익을 포함
- 시설임대수익: 한국광고문화회관의 매출액을 말함.
  - 시설판매수익과의 차이는 시설임대수익의 경우 순수 문화회관의 임대로 인한 수익을 말하며 시설판매수익을 이용에 대한 대가 및 음식 등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포함하는 것을 말함. 두 가지 수익을 구분하기 위해 판매수익과 임대수익으로 분리하여 계상
- 해외광고수탁수수료: 해외광고수탁수수료는 국내공공기관이 해외에 광고를 원하는 경우 외국의 방송사와 국내의 광고주 사이에서 대행하는 것을 나타냄.
  - 외국에 지급하는 광고료를 제외하고 국내에 머무르는 산출이 수수료라고 볼 때 총산출은 수탁수수료로 측정
-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 □ 중간투입

- 매출원가상의 중간투입
  - 방송광고 매입비: 방송사에 광고시간을 구매하고 지급하는 금액
  - 위탁대행수수료: 방송광고료 수입의 11%를 수수료로 광고회사에 지급
  - 시설판매원가: Kobaco연수원 내 식당의 재료비 등 판매하는 제품의 원가, 인건비나 공과금 등의 관리비는 판관비상에 포함
- 판매비와 관리비상의 중간투입
  -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임차료, 수선유지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차량비, 교육훈련비, 포상비, 심의비, 행사비
- 영업외 비용
  - 이자비용
- 세부사항 확인(한국방송광고공사 회계팀 최영순 대리와의 통화)
  - 교육훈련비: 강사료, 외부위탁교육에 대한 비용

- 조사분석비: 시청률 조사자료, MRC자료 등 자료 구입비용
  - 포상비: 꽃다발이나 상패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팀별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상금을 나누어 갖는지, 회식에 사용하는지는 재량에 달려 있어 포상비의 경우 중간투입으로 모두 계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심의비: 공익광고협의회 등 광고에 대한 심의나 회의할 때 사용되는 비용
  - 교류협력비: 연구위원실의 책자를 구매하거나 연회비 납부에 사용되는 비용
  - 회의비: 심의에 대한 회의 외에 팀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에 대한 비용으로 식대, 다과 등의 용도로 사용
  - 잡비: 기타 위의 계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집합하고 있는 계정
- ☞ 포상비와 잡비를 제외한 나머지 계정은 중간투입으로 볼 수 있음.

#### 파. 산재의료원

##### □ 산재의료원은 비영리단체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 □ 총산출 = 의료수익 + 보장구제작보급수익 + 연구용역사업수익 + 산재장애인복지사업수익 + 경상보조수익 + 이자수익

##### ○ 총수익

- 의료수익
- 보장구제작보급수익
- 연구용역사업수익
- 산재장애인복지사업수익
- 경상보조수익(재활사업, 직업성폐질환연구사업, 보장구제작사업, 산재장애인복지사업, 본부경상비보조)

##### ○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 중간투입

- 의료사업, 연구용역, 경상보조사업에 관한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음.
- 보장구제작보급 및 산재장애인복지사업은 경상보조사업에 포함되어 명세서를 작성하므로 각각의 원가명세서를 이용하여 중간투입 산출
- 의료사업비 명세서상 중간투입
  - 재료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운반보관료, 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포상비, 등기소송비
- 연구용역사업비 명세서상 중간투입
  - 재료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운반보관료, 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포상비, 등기소송비
- 경상보조사업비명세서
  - 재료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운반보관료, 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포상비, 등기소송비
-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 여러 가지 항목이 집합되어 있는 계정
  - 잡비, 포상비

하.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은 제품판매, 임대알선이용사업, 지원사업, 부대사업, 기타로 관련되는 업종은 도소매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매우 다양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표 III-5>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분류

사업	산업분류
제품판매	도소매업
임대알선이용사업	부동산업
지원사업	서비스업
부대사업	서비스업
기타사업	서비스업

□ 총산출 = 상품매출액 + 지원사업수익 + 부대사업수익 + 기타사업수익 + 임대알선이용사업수익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 제품판매
  - 상품매출액: 외국상품, 국산품, 양주 등 상품판매 매출액
- 지원사업, 부대사업, 기타사업, 임대알선이용사업
  - 지원사업수익: 국가에서 관광공사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및 기금을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으로 전액 계상
  - 부대사업수익: 관광매장과 면세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 기타사업수익: 교육원 운영, 컨설팅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 임대알선이용사업: 부동산임대, 골프장운영, 매점운영,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수익
-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 영업외수입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 중간투입

- 제품판매사업
  - 매출원가: 제품구입 원가
- 지원사업, 부대사업, 기타사업, 임대알선이용사업의 매출원가 명세서 필요
  - 일차적으로 매출원가상의 인건비를 차감하고 중간투입으로 계상
- 판매비와 관리비

-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운반및보관료, 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포상비, 등기소송비, 개발비, 판매선전비,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운반보관료, 포장비
- 영업외 비용
  - 이자비용
-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 중간투입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계정
  - 포상비, 잡비: 집합계정으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측에서도 정의(구분)하기 어렵다고 함.

#### 거.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주요 사업내용은 상품/제품판매 및 기타 사업으로 분류
  - 기타 사업
    - 연구개발수익(기술판매수익, 수탁연구수익, 수탁분석수익)
    - 기타의 사업수익

<표 III-6> 한국조폐공사의 사업 분류

사업	산업분류
화폐, 유가증권, 용지, 압인제품, 신분증 제조 사업	제조업

- 총산출
  - 사업 매출의 총계를 총산출로 함.
  - 제품산출
    - 당해 물품별 생산량 \* 평균판매가격  
(은행권제품, 보안인쇄제품, 보안용지제품, Mint 제품, ID제품 등)
  - 상품판매
    - 당기총매출 - 매입단가

- 기타사업수익
  - 매출을 총산출로 간주
- 당기 생산량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제공되지 않았으며, 추후 생산량이 제공될 경우 정확한 산출 가능
- 영업외 수익:
  - 당기 거래 및 처분 수익의 총계를 총산출에 포함(평가 및 환산 수익은 제외)
  - ‘전기오류수정이익, 통화선도거래이익, 기타잡이익’의 경우 집합계정이므로 총산출 포함 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별하여 계산하였음(0%, 10%, 25%, 50%, 75%, 100%로 5가지 방법으로 계산).
  - 해외사업 부문의 총이익도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분

#### □ 중간투입

- 일반적으로, 세금, 인건비, 감가상각, 대손상각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중간투입으로 계상
- 세부사항 부족으로 중간투입 여부 판단이 어려워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별하여 계산한 계정
  - 조사분석비, 경상개발비, 판매촉진비 등은 세부사항이 부족한 집합계정이므로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분하였음.
- 기타조정사항
  - 2008년 기준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전체 복리후생비의 약 24%였음.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중간투입에서 제외
  - 업무추진비는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므로 중간투입에 모두 포함
  - 포상비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되어서 중간투입에서 제외
- 영업외 손실
  - 당기 거래 및 처분 손실의 총계를 총산출에 포함(평가 및 환산 수익은 제외)
  - 대손상각비, 기부금, 현금지출성 손해배상금도 제외하였음.

- ‘기타잡손실, 통화선도거래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경우 집합계정이므로 중간투입 포함 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별하여 계산(0%, 10%, 25%, 50%, 75%, 100%로 5가지 방법으로 계산)

#### 너. 대한주택보증

- 대한주택보증은 보증, 건설, 위탁사업이 주된 사업영역
  - 산출접근법으로 추정

<표 III-7> 대한주택보증의 사업 분류

사업	산업분류
보증사업 (분양, 임대, 하자보수 및 기타보증)	부동산 관련 서비스
건설사업	건설업 (보증이행을 위한 건설 및 하자보수)
위탁사업	국가,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서비스

- 총산출
  - 총산출: 각 사업 영업수익의 총계
  - 영업외수익
    - 당기 거래 및 처분 수익의 총계를 총산출에 포함(평가 및 환산 수익은 제외)
    - ‘잡수익’의 경우 집합계정이므로 총산출 포함 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별하여 계산(0%, 10%, 25%, 50%, 75%, 100%로 5가지 방법으로 계산)
- 중간투입
  - 일반적으로 세금, 인건비, 감가상각, 대손상각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중간투입으로 계상

-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 중간투입 여부 판단이 어려워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별하여 계산한 계정
  - 업무추진비와 판매촉진비는 주로 법인카드로 결제된 접대비로 보이나 확실하지 않고, 비용 중 현금 지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간투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불분명한 계정으로 분류
  - 2005년과 2006년 복리후생비는 세부내역 부족으로 불분명한 계정으로 분류
- 기타 조정사항
  - 포상비와 학자금은 대부분이 급여 성격이므로 중간투입에서 제외
  - 2007~2008년은 복리후생비의 세부사항이 제공
  - 후생비는 비급여성 비용으로, 임직원 학자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총액을 중간투입에 포함
  - 조사연구비는 대부분이 내부 DB 및 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이므로 조정하지 않았음.
  - 국제교류비는 국제교류 관련 행사 지원비이므로 조정하지 않았음.
- 영업외 손실:
  - 당기 거래 및 처분 손실의 총계를 총산출에 포함(평가 및 환산 수익은 제외)
  - 대손상각비, 기부금, 현금지출성 손해배상금도 제외
  - '기타잡손실, 전기오류수정분'의 경우 집합계정이므로 중간투입 포함 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별하여 계산(0%, 10%, 25%, 50%, 75%, 100%로 5가지 방법으로 계산)

#### 더. 대한주택공사(통합전)

- 대한주택공사(통합전)의 사업부문은 크게 주택/대지사업, 부대사업, 임대사업의 세 가지로 분류
  - 준시장형 공기업
  - 일반적인 형태로서 산출접근법(총산출-중간투입)으로 부가가치 추정 가능

- 다만 주택/대지사업의 경우 장기간의 부동산 개발 과정이 연계되는바 실제 매출발생시점과 생산시점 사이에 괴리 발생

<표 III-8> 대한주택공사(통합전)의 사업 분류

사업	산업분류
주택/대지	부동산 개발업
부대	부동산업 (중개, 감정, 관리 등의 각종 부대 서비스)
임대	부동산업 (임대 서비스)

□ 총산출

○ 주택/대지사업

- 당기에 실제 매출이 발생한 제품의 판매가액이 총산출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 “당기 총매출액”을 고려하였으나, 업무특성상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기 재고자산 증가액을 총산출로 계상
- 단, 당기 재고자산 증가액은 매출이익(mark-up)이 제외된 금액임. 주택상품의 특성상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품의 가격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출이익은 제외
- 건설된 제품의 55%는 공원, 도로대지 등으로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제품도 원가에 공급
- 총생산된 제품의 5% 정도만 감정가에 공급

○ 부대/임대사업

- 각 사업의 용역 매출 총계를 총산출
- 임대 및 리스 자산의 당기 증가액도 총산출에 포함

○ 영업외 수익

- 당기 거래 및 처분 수익의 총계를 총산출에 포함(평가 및 환산 수익은 제외)
- ‘기타잡이익’의 경우 집합계정이므로 총산출 포함 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별하여 계산(0%, 10%, 25%, 50%,

75%, 100%로 5가지 방법으로 계산)

□ 중간투입

- 일반적으로, 세금, 인건비, 감가상각, 대손상각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중간투입으로 계상
-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 중간투입 여부 판단이 어려워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별하여 계산한 계정
  -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접대성 현금 지불인 경우, 중간투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불분명한 계정으로 분류
  - 정상개발비 중 세금과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중간투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불분명한 계정으로 분류하였음.
- 기타 조정사항
  - 2008년 기준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전체 복리후생비의 약 16%였음.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중간투입에서 제외하였음.
  - 조사분석비에 국외조사경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액이 작아 무시하였음.
  - 제조원가상의 포상비는 대부분이 포상금이어서 중간투입에서 제외하였음.
  - 판매관리비상의 포상비는 종업원 등에 대한 상금이 대부분이고 기타 상품 제작비가 약 10%임. 상금 부분은 중간투입에서 제외하였음.
  - 2008년 기준 연구비에는 인건비가 약 20% 포함되어 있음. 인건비 부분은 중간투입에서 제외하였음.
- 영업외 비용
  - 당기 거래 및 처분 손실의 총계를 총산출에 포함하였음(평가 및 환산 수익은 제외하였음).
  - 대손상각비, 기부금, 현금 지출성 손해배상금도 제외하였음.
  - '기타잡손실'의 경우 집합계정이므로 중간투입 포함 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별하여 계산하였음(0%, 10%, 25%, 50%, 75%, 100%로 5가지 방법으로 계산).

러. 한국토지공사(통합전)

- 한국토지공사(통합전)의 사업부문은 크게 토지, 지원/수탁, 임대사업의 세 가지로 분류
  - 준시장형 공기업
  - 일반적인 형태로서 산출접근법(총산출-중간투입)으로 부가가치 추정 가능

<표 III-9> 한국토지공사(통합전)의 사업 분류

사업 분류	산업분류
토지사업	토지/도시/부동산 개발업
지원/수탁 사업	부동산업 (중개, 감정, 관리 등의 각종 부대 서비스)
임대사업	부동산업 (임대 서비스)

- 총산출
  - 토지사업
    - 당기에 실제 매출이 발생한 제품의 판매가액이 총산출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 “당기 총매출액”이 고려되었으나 업무특성상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기 재고자산 증가액을 총산출로 계상
    - 단, 당기 재고자산 증가액은 매출이익(mark-up)이 제외된 금액
    - 토지상품의 특성상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품의 가격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출이익은 제외
  - 지원/수탁/임대 사업: 각 사업의 매출 총계를 총산출로 계상
  - 영업외 수익
    - 당기 거래 및 처분 수익의 총계를 총산출에 포함(평가 및 환산 수익은 제외)
    - ‘기타잡이익’의 경우 집합계정이므로 총산출 포함 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별하여 계산(0%, 10%, 25%, 50%, 75%, 100%로 5가지 방법으로 계산)

## □ 중간투입

- 일반적으로, 세금, 인건비, 감가상각, 대손상각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중간투입으로 계상
- 제조원가 중 용지제세 및 개발부담금은 세금의 성격이므로 중간투입에서 제외
-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 중간투입 여부 판단이 어려워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별하여 계산한 계정
  - 보상비: 용지 매입 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불된 금액인 경우 중간투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불분명한 계정으로 분류
  -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접대성 현금 지불인 경우, 중간투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불분명한 계정으로 분류
  - 원가부문: 보상비, 업무추진비, 시설부담금, 조사설계용역비, 개발부담금, 확정측량비, 간접비
  - 관관비 부문: 업무추진비, 포상비, 협력비, 개발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판매촉진비
- 기타 조정사항
  - 시설부담금 중 보상비 성격으로 지출된 금액이 있었으나 총액의 0.2% 수준이어서 부가가치 산출에 반영하지 않음.
  - 간접비 중 해외사업 관련이 있으나 금액이 작아 부가가치 산출에 반영하지 않음.
  - 2008년 기준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전체 복리후생비의 약 22%이므로 복리후생비의 22%는 중간투입에서 제외
  - 포상비는 종업원 등에 대한 상금이 대부분이고 기타 상패 제작비가 약 10%(2008년 기준)이므로 상금부분인 90%는 중간투입에서 제외
- 영업외 비용
  - 당기 거래 및 처분 손실의 총계를 총산출에 포함(평가 및 환산 수익은 제외)
  - 대손상각비, 기부금, 현금지출성 손해배상금도 제외

- ‘기타잡손실’의 경우 집합계정이므로 중간투입 포함 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불분명한 계정으로 구별하여 계산(0%, 10%, 25%, 50%, 75%, 100%로 5가지 방법으로 계산)

#### 머. 한국전력공사

#####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가스공급업으로 분류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 □ 총산출 계산방법

- 자회사들은 주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팔고, 한전은 전기를 구입하여 송/배전망을 통해 전기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
- 자체 소비에 대해서 한전이 스스로 전력을 발전하는 경우도 있음.
- 연결재무제표상에서 한전의 총매출은 전력 판매량과 부대사업수익으로 구성(부대사업 수익의 경우 해외사업, 북한 원전사업등이 있어 환율 등을 고려해야 하나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므로 부대사업 매출액으로 계산)
- 영업외 이익 중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수입이 포함되며, 잡이익도 불명확한 이익으로 포함

##### □ 총산출

- 한전 총매출 + 한전자회사 6개 총매출
-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전력거래소 거래수수료, 이자수익 및 배당금 수익을 합산
- 발전자회사: 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 □ 중간투입 산출방법

- 부가가치는 총산출 - (자회사 제조원가명세서상 비용항목 + 한전 제조원

가명세서상 비용항목 + 한전 구매전력 중 자회사 제외한 민간회사 발전  
구입량+관관비상 비용항목)으로 구성

- 한전 및 자회사 제조원가 명세서상 비용항목
  - 명확한 항목: 복리후생비(비급여 계정), 광고선전비, 도서 및 인쇄비, 등기소송비, 보험료,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여비교통비, 연료 및 유지비, 운반 및 보관료, 재료비, 전력수도료,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차량비, 통신비, 피복비(부대사업 및 전기사업 부분 공히 적용)
  - 불명확한 집합계정: 조사분석비, 경상개발비, 포상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잡비
-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자회사에서 구매한 전력은 비용처리가 안 되며, 단 민간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한 전기는 비용으로 차감할 필요
- 통상 한전의 매출원가 중 구입전력비용의 12%가 민간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한전 확인)
- 관관비상 비용항목
  - 명확한 항목: 복리후생비(비급여 계정),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료, 등기소송비, 보험료,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여비교통비, 연료유지비, 운반 및 보관료, 전력 및 수도료,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차량비, 통신비, 피복비(이상 관관비 계정), 이자비용
  - 불명확한 비용: 조사분석비, 경상개발비, 포상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잡비, 판매비, 잡손실(영업외 비용계정)

## 버.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는 전기가스공급업으로 분류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 총산출 = 가스공사 총매출 + 재고변동 +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 + 배당금 수익 + 임대료 수익 + 잡이익(불명확한 수익으로 가정시나리오에 따라 0~100%를 포함)

○ 총매출 = 가스제품매출액 + 설비이용수익 + 부산물매출액

□ 중간투입

○ 가스공사의 부가가치는 총산출 - (제조원가명세서상 비용항목 + 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으로 구성

○ 제조원가명세서상 비용항목

- 명확한 항목: 복리후생비(비급여성)<sup>16)</sup>,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보험료,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여비교통비, 연료유지비, 이동충전사업비, 전력수도료,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차량비, 통신비, 피복비

- 불명확한 항목: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잡비, 포상비

○ 손익계산서상 중간투입 항목

- 명확한 항목: 복리후생비(비급여성),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등기소송비, 보험료,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연료유지비, 임차료, 잡비, 전력수도료, 지급수수료, 차량비, 통신비, 피복비(이상 판관비 계정), 이자비용, 배당수익, 임대료 수익(영업외 비용 계정)

- 불명확한 항목: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잡비, 포상비, 경상개발비, 자원개발비, 판매비, 포상비, 잡손실(영업외 비용)

○ 가스공사의 경우 해외사업소 인건비의 문제가 있으나, 문의 결과 상세 명세서는 구할 수 없으므로 일반 인건비로 처리

서.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공사는 전기가스공급업으로 분류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 총산출 = 열판매 수입 + 전기판매 수입 + 이자수익

---

16)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2008년 자료밖에 없으며, 매년 그 비중이 유사하고 2008년 기준 전체 복리후생비의 29.3%를 기준으로 곱해서 산출함.

-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에서 판매
-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열, 전기, 냉수, 태양광전기의 판매 매출액을 모두 더하고 추가적으로 이자수익을 더한 것이 지역난방공사의 총산출 (잡수익도 불명확한 이익으로 합산)

□ 중간투입

- 지역난방공사의 부가가치는 총산출 - (제조원가명세서상 비용항목 + 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으로 구성
- 제조원가명세서상 중간투입 항목
  - 명확한 항목: 도서인쇄비, 보관료운반비, 보험료,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재료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통신비
  - 불명확한 항목: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잡비, 조사분석비
- 판관비상 중간투입 항목
  - 명확한 항목: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보관료운반비, 보험료, 사옥관리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통신비(이상 판관비 계정), 이자비용(영업외 비용 계정)
  - 불명확한 항목: 경상개발비, 조사분석비, 판매촉진비, 연구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잡비, 잡손실(영업외 비용)

어.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금융서비스업으로 분류

- 주사업은 금융업(국내기업이 해외자원탐사 및 개발에 융자금 지원)과 지원사업(교육 및 각종 자원탐구 조사 및 탐사), 개발사업(직접 개발 사업) 3가지로 구성
-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 추정

□ 총산출 = 금융수익 + 지원사업수익 + 개발사업 수익 + 영업외이자수익

□ 중간투입

○ 광물자원공사의 부가가치는 총산출 - (매출원가상 금융사업비용 중 비용항목 + 지원사업 비용 중 비용항목 + 지원사업비용 중 비용항목) - 판관비상 비용 항목으로 산출

○ 매출원가상 비용항목

- 확실한 비용항목

- 금융업 매출 원가 중 이자비용, 기타 금융비용
- 지원사업 매출원가 중 재료비, 복리후생비(비급여성),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 개발사업 매출원가 중 재료비, 복리후생비(비급여성),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 불확실한 비용항목: 지원사업/개발사업 중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조사분석비, 경상공발비, 잡비

- 지원사업/개발사업은 세부항목에 대해 2007~2008년 자료밖에 없음.
- 따라서 2005~2006년의 경우 전체 개발/지원사업 중 중간투입비용 항목의 비율을 계산하여 확실한 항목의 비율 65%, 불확실 비율 10%로 정하여 계산

○ 판관비 비용항목

- 확실한 비용항목: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운반 및 보관료, 광고선전비, 등기소송비, 이자비용(영업외 비용)
- 불확실한 비용항목: 조사분석비, 연구비, 경상공발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포상비, 잡비, 잡손실(영업외 비용)

## 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총산출 산출 방법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주사업은 면세점 운영사업
- 2007년 이후 첨단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에 대한 사업 시작
- 총매출은 면세점 운영수익과 분양매출이 대부분을 구성
- 옥외광고수익, 출연금수익, 기타수익이 총산출을 구성
  - 여기에 이자수익과 잡이익 추가

### □ 중간투입산출방법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크게 면세점사업과 분양사업
- 부가가치는 총산출 - (면세점사업의 매출원가 중 당기제품매입액 + 분양매출원가) - 관관비상 비용항목으로 구성
- 매출원가상 비용항목 : 당기제품매입액, 분양매출원가
  - 분양매출원가는 2007년부터 존재
- 관관비상 비용항목
  - 확실한 비용항목: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포장비, 운반 및 보관료, 광고선전비, 위탁사업비, 피복비, 이자비용(영업외 비용)
  - 불확실한 비용항목 : 잡비, 조사분석비, 포상비, 판매선전비,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조직관리비, 행사비

## 저. 한국감정원

### □ 총산출 산출 방법

- 한국감정원의 주요사업은 감정평가사업, 지가조사사업, 특수사업수익(컨설팅 등)
- 총산출: 사업 수익의 총합과, 건물 임대수입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영업외 수익 중 이자수익과 잡수익(불확실계정)을 포함

- 건물임대수익의 경우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은 아니나, 감정원에서 총 매출로 잡고 있으므로 매출로 계산

□ 중간투입산출방법

- 감정원의 부가가치 = 총산출 - 관리비상 비용항목
- 한국감정원 또한 제조업이 아니므로 매출/제조원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관리비 항목으로 들어감.
- 관리비상 비용항목
  - 확실한 비용항목: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도서신문비, 등기소송비, 보험료,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여비교통비, 연료비, 운반보관료, 임차료, 전력수도료, 전산업무비, 지급수수료, 차량비, 통신비, 피복비, 복리후생비(비급여성)(이상 관리비계정), 이자비용(영업외 비용)
  - 불확실한 비용항목: 조사분석비, 포상비(관리비 계정), 잡손실(영업외 비용)

커. 한국마사회

□ 총산출 산출 방법

- 마사회의 기본수입은 마권판매비와 경마장 입장료로 구성
- 그 밖에 특별회계상의 사업수익, 여기에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와 잡이익(불확실 계정)이 존재
  - 특별회계상의 사업수익은 정부가 지원하는 승마사업, 승마장 운영 등과 관련된 수익
  - 2008년부터는 구별없이 통합회계로 구성

□ 중간투입 산출 방법

- 부가가치 = 총산출 - (매출원가 중 비용부문) - (판관비 중 비용부문)
- 매출원가 중 비용항목
  - 매출원가: 경마상금, 마권제세, 환급금 3가지로 구성

- 환급금: 마권 구매자가 상금을 받을 때 지급하는 금액
- 경마상금: 1위를 한 말의 주인과 기수에게 주는 금액
- 마권제세: 마권 발생시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 매출원가 중에서는 환급금과 경마상금을 비용으로 계산
- 판관비상 비용항목
  - 명확한 항목: 피복비, 용역비, 임차료,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마필관리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차량비, 보험료, 도서인쇄비
    - 마필관리비: 마사회 자체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말에 대해 들어가는 관리비용으로 사료비를 비롯한 각종 잡비
  - 불명확한 항목 : 업무추진비, 특별경마비, 행사비, 포상금, 잡비, 잡손실(영업외 비용)
    - 특별경마비의 경우 해외 초청 경마대회 등 주로 행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행사비와 그 성격이 유사

## 5. 공공기관 유형별 산출방법: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 가. 분석대상 기관

- 조사대상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총 273개 기관 중에서 공기업의 자회사인 21개를 제외한 252개 기관이 부가가치 추계의 기본대상이며, 이 중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27개 기관을 제외한 225개 기관 대상 부가가치 추계
  - 기관이 통합되거나 회계장부 기재 방식이 상이하여 세부 명세서의 추적이 불가능한 27개 기관의 경우에는 자료 부족으로 부가가치 산출이 불가능
- 공기업의 자회사 21개 기관 목록은 <표 III-1> 참조
  - 공기업의 자회사일 경우, 연결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공기업의 부가가치 포함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에서는 제외

- 통·폐합 후 세부자료 추적이 어렵거나, 기관 사정으로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명세서를 입수하기 불가능한 기관의 명단(27개 기관)
- 방송영상산업진흥원(준정부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준정부기관)
  - 한국과학재단(준정부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준정부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준정부기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준정부기관)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준정부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준정부기관)
  - 한국환경기술진흥원(준정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준정부기관)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준정부기관)
  - 중소기업진흥원(준정부기관)
  - 국방기술품질원(기타공공기관)
  - 노사발전재단(기타공공기관)
  - 한국과학기술원(기타공공기관)
  -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기타공공기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기타공공기관)
  - 국방과학연구소(기타공공기관)
  - 대한결핵협회(기타공공기관)
  - 대한에이즈예방협회(기타공공기관)
  - 대한체육회(기타공공기관)
  - 한국갱생보호공단(기타공공기관)
  - 코레일전기(기타공공기관)
  - 코레일엔지니어링(기타공공기관)
  - 인천항부두관리공사(기타공공기관)
  - 한국기술정책연구원(기타공공기관)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기타공공기관)

## 나. 부가가치 추정방법

- GDP 대비 비중 추계를 위해, 한국은행이 GDP를 추계할 때 나누는 기준을 따라 산출법과 비용접근법으로 나누어서 계산
- 비용접근법: 산출물의 시장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며,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190개의 기관에 대해서 비용접근법을 사용하여 추계
  - 결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및 중간투입을 계산하며 이들을 합해 총산출을 추계
    - 손익계산서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 일반적으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영업잉여를 제외
  - 복리후생비 계정에서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와 중복되어 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급여성/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구분한 뒤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만 사용하여 추계
- 산출접근법: 생산하는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관의 경우 산출법으로 접근
  - 대한지적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40개 기관에 적용
- 공기업의 자회사일 경우, 연결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공기업의 부가가치에 포함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에서는 제외

## 다. 산출접근법 추정

-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 총산출은 영업수익 혹은 사업수익, 그리고 영업외 이익 중 이자수익, 임대료수익, 잡이익을 반영

- 이자수익의 경우 이자수익을 총산출에 넣고 이자비용을 중간투입에 넣은 것이 아니라 순금융수익(이자수익-이자비용)을 구하여 총산출로 합산
- 중간투입은 매출원가 혹은 제조원가상의 중간투입 항목, 판관비 혹은 일반관리비상의 중간투입 항목을 선정하여 차감
  - 공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인하기 애매한 부분은 0~100% 반영으로 구분하여 계산
  - 특정한 상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원가 혹은 매출원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는 판관비 혹은 일반관리비 항목에서만 중간투입 선정하여 차감
- 준정부/기타공공기관 산업분류
  - 정부의 목적별 분류(COFOG) : 일반 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 개발, 보건, 오락 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호
  - 산출법 대상 준정부/기타공공기관 50개 중 경제업무(금융거래)기관이 13개(26%), 보건(대학병원)이 12개(24%)로 절반 정도를 차지

#### 1) 경제업무(금융거래)

- 산은자산운용(주), 산은캐피탈(주), 기은캐피탈,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
- 총산출: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을 총산출로 계산
  - 벤처투자수익, 투자조합수익, 할부금융수익, 팩토링금융수익, 이자수익, 기업일반금융수익, 일반자금대출수익,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익, 투자조합수익, 벤처투자자산영업수익, 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인수채권처분이익, 인수유형자산처분이익, 배당금수익, 카드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파생상품거래이익 등

- 중간투입: 영업 및 서비스 과정에서 투입물로서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 가액
  - 모든 중간투입 항목은 확실한 중간투입 해당항목과 집합계정으로서 그 성격이 모호한 계정들은 나누어 계산
  - 매출원가: 이자비용및금융수수료, 카드비용,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리스자산보험료, 운용리스자산감가상각비, 리스자산처분손실, 무형자산상각비, 외환차손, 대손상각비, 과생상품거래손실, 과생상품평가손실, 추심원지급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임대차조사비, 신용회복원가, 기타영업비용 등
  - 판매관리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비급여성),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행사비, 소모품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등
  -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 중간투입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계정
    - 매출원가: 협력비, 기타잡비
    - 판매비와 관리비: 부서운영비, 회의비, 잡비

## 2) 보건(대학병원)

-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이 해당
- 총산출: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 수익을 총산출로 계산
  -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 등
- 중간투입: 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투입물로서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 가액
  - 모든 중간투입 항목은 확실한 중간투입 해당항목과 집합계정으로서 그 성격이 모호한 계정들은 나누어 계산
  - 매출원가: 대부분 재료비로서 약품비, 진료재료비, 의료소모품비, 급식재료비, 환자식재료비 등을 포함

- 판매관리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환경관리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비급여성),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행사비, 소모품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등
- 세부사항 부족으로 인해 중간투입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계정
  - 매출원가: 없음.
  - 판매비와 관리비: 부서운영비, 접대비, 회의비, 의료사회사업비, 잡비, 연구비 등

## 라. 비용접근법 추정

- 비용접근법은 한국은행 산업분류상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업의 경우 사용
  - 비용접근법이란, 생산한 산출물이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비시장 산출물일 경우 이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생산에 투입된 각종 비용을 근거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처럼 투입비용의 파악을 통해 산출액을 추계하는 방법
  - 이 분류에 해당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영업잉여를 갖지 않으며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투입된 총비용에 의해 산출물을 추계
- 한국은행의 GDP추계방법으로 볼 때, 비용접근법상 명목 부가가치는 피용자 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 생산세를 합산하여 추계
- 결산상 손익계산서를 기본으로 하되, 기타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일반기업과 회계방식이 틀리므로 각 기관을 통해 세부명세서를 따로 받아서 처리
  - 대부분의 준정부기관의 경우 손익계산서에서 인건비, 세금, 감가상각 등이 기관 전체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 경비에 나누어져 있으

므로 기관별로 요청하여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비를 합산

-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원의 경우, 연구사업에서 내부 연구인력과 외부 연구인력의 인건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외부 연구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

□ 피용자보수는 인건비, 퇴직금, 급여성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 인건비성 지출의 합으로 구함.

-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볼 때 피용자보수는 인건비(급여 및 퇴직금, 비정규직 포함)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합계로 구함.
-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관별로 급여성 복리후생비 명세서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알리오상의 공시된 금액을 항목별로 표시
  - 급여성 · 비급여성 구분은 다음과 같음<sup>17)</sup>.

<표 III-10> 복리후생비의 급여성 · 비급여성의 구분

	내역
급여성	자가운전비, 경조금, 학자금, 보육수당, 교육훈련비, 당직비, 여비, 상품권, 통근비, 선택적복지, 가계지원비, 급식보조비, 명절상여금, 자기개발비, 격려금, 직급보조비, 4대보험 <sup>1)</sup>
비급여성	건강진단, 체육행사, 야식대, 장래지원서비스, 명절선물, 동호회지원, 기념품비, 재해단체보험, 피복비, 문화여가지원, 학자금대부, 단체보장 보험 등

주: 1) 4대 보험의 경우 많은 기관에서 비급여성으로 넣고 있으나, 급여성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급여성으로 처리함.

□ 알리오상 급여성/비급여성 항목을 빼고 남은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70%, 비급여성 30%로 계산

- 이는 계산 가능한 기관에서의 급여성/비급여성 비율을 적용한 것이나 실제적으로 그 편차는 매우 큼.

17) 동일항목에 대해서 기관별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항목들도 있으나, 아래 기준으로 통일하여 알리오 금액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음.

- 고정자본소모의 경우, 원래는 재정집행실적 중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자본지출경비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총고정자본형성을 구한 뒤 여기에 고정자산의 형태별(건물·기계부품, 차량과 운반구) 내용연수로 나누어 연간고정자본소모가 계산
  
-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정자본소모를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관의 보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고정자본상각 등의 항목으로 고정자본소모를 구성
  - 모든 기관에서 감가상각비는 존재하였고, 대손상각비와 고정자본상각비의 경우 항목이 있는 기관에 적용
  
- 기타 생산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세금과 공과' 항목으로 처리함. 준정부기관의 경우 대부분 기관이 사업별로 세금과 공과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 요청을 통해서 각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 세금과 공과금을 합산하여 추계
  
- 한국보건의료 국가시험원
  -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차감하여 추계

<표 III-11>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2008년	
I. 영업이익		6,065,183,458
1. 수수료수익	6,065,183,458	
II. 영업비용		5,806,093,830
1. 급여	2,230,533,750	인건비
2. 잡급	53,470,200	
3. 퇴직급여	273,078,333	
4. 복리후생비	254,131,700	중간투입
5. 여비교통비	61,867,940	
6. 통신비	114,066,820	
7. 수도광열비	47,141,087	
8. 세금과공과	88,190,274	
9. 감가상각비	251,158,761	
10. 무형자산상각비	20,318,246	
11. 임차료	286,888,520	
12. 수선비	16,190,759	
13. 보험료	16,500,983	
14. 차량유지비	11,039,513	경상이익 (영업이익)
15. 교육훈련비	1,515,600	
16. 연구비	61,890,105	
III. 영업이익		
IV. 영업외수익		338,032,483
1. 임대료수익	58,441,230	
2. 이자수익	171,538,847	
3. 잡이익	108,052,406	
V. 영업외이익		14,403,524
1. 이자비용	14,403,524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82,718,587
VII. 법인세비용		33,908,837
VIII. 당기순이익		548,809,750

## 6. 추정결과: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 부가가치와 비중

- 본장에서는 산출접근법 또는 비용접근법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를 추정
- 분석대상은 2008년 현재 ‘공운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97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 분석대상 기간은 2005~2008년
  - 중점 추정대상은 (경상)부가가치 및 GDP 대비 비중

### 가. 공기업

#### 1) 개별 기업단위의 부가가치 추정결과

-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를 추계
  - 산출접근법: 부가가치 = 총산출 - 중간투입
  - 각 기관의 상세재무제표(결산서)를 토대로 총산출로부터 중간투입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추계
- 단, 일부 항목의 경우 중간투입에 해당하는지 또는 총산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항목이 존재하는바, 임의적인 배분으로 인한 추정오류의 가능성 존재
  - 분류가 불분명한 항목에 대해서는 각 기관 회계담당자들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중간투입 여부를 판단
  - 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배분을 위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지만 각 항목에 대한 특성 및 상세자료 등에 대해 각 기관 회계담당자에 문의해보아도 분류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추가적인 작업이 불가

- 이런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해당 항목중 0%, 25%, 50%, 75%, 100%가 중간투입에 배분되는 다섯 가지의 가상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부가가치를 추정
  - 따라서 부가가치 추정결과는 사실상 최대치와 최소치의 형태로 해석 가능
  
- 다만 상세정보의 부족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석탄공사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비용접근법으로 추계
  
- 2005년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는 12.5조~13.4조원에 이르러 24개 공기업(단, 2008년 현재 공기업 기준) 부가가치 총액의 약 절반 정도를 점유
  - 이런 추이는 2006~2007년에도 유사
  
- 2008년의 경우 한국전력의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
  - 이는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발전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력가격 동결 또는 인상억제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영업손실에 기인
  - 2009년 이후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유가 안정으로 인해 발전원가 상승에 의한 영업손실로 한전의 부가가치 급감 현상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

<표 III-12> 공기업의 부가가치 추정결과(개별기업 단위)

(단위: 억원)

2005	분류미상항목 중간투입 반영률	0%	25%	50%	75%	100%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6.8	-15.0	-13.2	-11.3	-9.5
2	부산항만공사	1,194.4	1,194.2	1,194.0	1,193.8	1,193.6
3	인천항만공사	119.8	113.5	107.1	100.7	94.3
4	인천국제공항공사	4,161.6	4,161.6	4,161.5	4,161.5	4,161.5
5	한국공항공사	390.6	413.9	437.2	460.5	483.8
6	한국철도공사	13,286.8	13,520.5	13,754.1	13,987.8	14,221.5
7	한국석탄공사	314.2	323.2	332.3	341.3	350.3
8	한국석유공사	5,361.4	5,402.0	5,442.7	5,483.3	5,524.0
9	한국도로공사	51,207.5	51,252.7	51,297.8	51,343.0	51,388.1
10	한국수자원공사	10,517.6	10,403.5	10,289.3	10,175.1	10,061.0
11	한국방송광고공사	552.8	552.2	551.5	550.8	550.1
12	한국산재의료원	899.1	865.8	832.5	799.2	765.9

13	한국관광공사	1,162.5	1,161.6	1,160.8	1,160.0	1,159.2
14	한국조폐공사	1,299.7	1,298.1	1,296.5	1,294.8	1,293.2
15	한국주택보증	4,851.4	4,847.9	4,844.5	4,841.1	4,837.7
16	한국주택공사	-1,971.8	-2,005.8	-2,039.8	-2,073.8	-2,107.8
17	한국토지공사	5,042.7	4,242.3	3,441.9	2,641.4	1,841.0
18	한국전력공사	134,356.8	132,046.6	129,736.4	127,426.2	125,116.0
19	한국가스공사	9,729.2	9,582.7	9,436.2	9,289.6	9,143.1
20	한국지역난방공사	965.3	956.0	946.7	937.3	928.0
21	한국광물자원공사	227.0	223.2	219.4	215.7	211.9
2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75.0	461.7	448.3	434.9	421.5
23	한국감정원	790.7	787.1	783.5	779.9	776.4
24	한국마사회	12,782.8	12,708.0	12,633.2	12,558.4	12,483.6
	계	257,700.4	254,497.4	251,294.5	248,091.5	244,888.5
2006	분류미상항목 중간투입 반영률	0%	25%	50%	75%	100%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79.0	-78.9	-78.8	-78.7	-78.6
2	부산항만공사	1,013.7	1,013.2	1,012.8	1,012.3	1,011.8
3	인천항만공사	329.7	330.0	330.3	330.5	330.8
4	인천국제공항공사	4,693.7	4,664.4	4,635.1	4,605.8	4,576.5
5	한국공항공사	436.4	462.4	488.3	514.3	540.3
6	한국철도공사	16,319.2	16,547.9	16,776.7	17,005.5	17,234.3
7	한국석탄공사	207.9	220.1	232.2	244.4	256.5
8	한국석유공사	4,924.4	5,014.9	5,105.4	5,196.0	5,286.5
9	한국도로공사	51,861.2	51,914.8	51,968.4	52,022.1	52,075.7
10	한국수자원공사	11,898.3	11,814.2	11,730.0	11,645.8	11,561.7
11	한국방송광고공사	527.3	527.1	526.9	526.7	526.5
12	한국산재의료원	926.5	892.2	857.9	823.6	789.3
13	한국관광공사	2,084.4	2,082.9	2,081.3	2,079.8	2,078.3
14	한국조폐공사	1,646.4	1,642.3	1,638.2	1,634.0	1,629.9
15	한국주택보증	5,108.9	5,104.1	5,099.2	5,094.4	5,089.6
16	한국주택공사	-1,694.5	-1,848.3	-2,002.2	-2,156.1	-2,310.0
17	한국토지공사	10,382.7	8,345.1	6,307.5	4,269.9	2,232.3
18	한국전력공사	135,401.3	133,924.2	132,447.1	130,970.1	129,493.0
19	한국가스공사	9,935.3	9,768.4	9,601.4	9,434.5	9,267.5
20	한국지역난방공사	1,166.0	1,163.5	1,161.0	1,158.4	1,155.9
21	한국광물자원공사	321.2	312.6	303.9	295.3	286.7
2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33.5	619.7	605.8	591.9	578.1
23	한국감정원	773.0	771.7	770.3	769.0	767.7
24	한국마사회	13,259.8	13,202.4	13,145.0	13,087.6	13,030.2
	계	272,077.4	268,410.6	264,743.9	261,077.2	257,410.5
2007	분류미상항목 중간투입 반영률	0%	25%	50%	75%	100%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93.4	-93.1	-92.8	-92.5	-92.2
2	부산항만공사	1,376.7	1,376.6	1,376.5	1,376.4	1,376.3

3	인천항만공사	460.5	461.7	463.0	464.3	465.5
4	인천국제공항공사	5,423.5	5,424.7	5,425.9	5,427.1	5,428.3
5	한국공항공사	495.4	519.8	544.2	568.6	593.0
6	한국철도공사	14,454.3	15,483.5	16,512.8	17,542.1	18,571.4
7	한국석탄공사	385.5	402.4	419.2	436.1	452.9
8	한국석유공사	5,045.3	5,130.7	5,216.0	5,301.4	5,386.8
9	한국도로공사	49,819.0	49,912.3	50,005.7	50,099.1	50,192.4
10	한국수자원공사	12,698.2	12,642.3	12,586.3	12,530.4	12,474.5
11	한국방송광고공사	569.3	569.3	569.3	569.3	569.3
12	한국산재의료원	1,106.4	1,065.5	1,024.6	983.7	942.8
13	한국관광공사	1,759.4	1,758.1	1,756.8	1,755.5	1,754.2
14	한국조폐공사	1,705.3	1,700.5	1,695.7	1,690.8	1,686.0
15	한국주택보증	5,359.5	5,323.3	5,287.0	5,250.8	5,214.5
16	한국주택공사	26.3	144.0	261.7	379.4	497.0
17	한국토지공사	13,593.4	9,576.4	5,559.3	1,542.2	-2,474.9
18	한국전력공사	133,355.4	131,078.6	128,801.8	126,525.0	124,248.2
19	한국가스공사	11,508.5	11,358.5	11,208.5	11,058.5	10,908.5
20	한국지역난방공사	730.8	725.1	719.4	713.7	708.0
21	한국광물자원공사	264.6	253.3	242.1	230.8	219.5
2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28.3	688.1	647.8	607.5	567.3
23	한국감정원	768.7	766.3	763.8	761.3	758.8
24	한국마사회	16,144.9	16,076.0	16,007.1	15,938.1	15,869.2
	계	277,685.9	272,343.8	267,001.7	261,659.6	256,317.4
2008	분류미상항목 중간투입 반영률	0%	25%	50%	75%	100%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13.1	-211.5	-210.0	-208.4	-206.9
2	부산항만공사	1,432.8	1,433.4	1,434.1	1,434.8	1,435.4
3	인천항만공사	503.6	503.7	503.8	503.9	503.9
4	인천국제공항공사	5,863.7	6,066.5	6,269.4	6,472.3	6,675.2
5	한국공항공사	425.9	424.8	423.7	422.6	421.5
6	한국철도공사	15,982.1	15,632.6	15,283.1	14,933.7	14,584.2
7	한국석탄공사	49.5	69.4	89.2	109.0	128.9
8	한국석유공사	8,635.8	9,497.4	10,358.9	11,220.5	12,082.0
9	한국도로공사	37,510.8	37,601.8	37,692.7	37,783.7	37,874.6
10	한국수자원공사	13,955.7	13,895.0	13,834.3	13,773.6	13,712.9
11	한국방송광고공사	546.1	546.2	546.3	546.3	546.4
12	한국산재의료원	1,188.0	1,146.6	1,105.1	1,063.7	1,022.3
13	한국관광공사	1,136.6	1,136.1	1,135.6	1,135.1	1,134.6
14	한국조폐공사	1,914.9	1,888.4	1,861.9	1,835.4	1,809.0
15	한국주택보증	6,252.1	6,251.6	6,251.1	6,250.6	6,250.0
16	한국주택공사	10,309.2	10,315.2	10,321.3	10,327.4	10,333.4
17	한국토지공사	17,400.5	13,194.4	8,988.2	4,782.1	576.0
18	한국전력공사	82,453.3	80,336.5	78,219.6	76,102.8	73,986.0
19	한국가스공사	10,570.4	10,452.8	10,335.2	10,217.6	10,100.0

20	한국지역난방공사	246.8	241.3	235.9	230.4	224.9
21	한국광물자원공사	1,177.9	1,167.3	1,156.7	1,146.1	1,135.5
2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12.5	687.3	662.0	636.8	611.5
23	한국감정원	819.1	816.0	813.0	809.9	806.9
24	한국마사회	18,469.1	18,391.3	18,313.6	18,235.9	18,158.1
	계	237,343.1	231,483.9	225,624.8	219,765.6	213,906.4

주: 2007~2008년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당시에 지정된 297개 공공기관 중 2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추정한 것임. 2005~2006년의 경우에는 2007~2008년의 기관을 역추적한 것.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당시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

## 2) 집계기준 부가가치 추정결과

- 2008년 현재 24개 공기업의 부가가치는 총 21.4조~23.7조원으로 추정
  - 2008년 GDP (1,026.5조원) 대비 2.1~2.3% 수준
  - 2005년 (24.5조~25.8조원)에 비해 약 2조~3조원 정도 감소
    - 2005년의 경우 공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8~3.0% 수준
  
- 2005~2008년 동안 공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감소
  -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폭이 상당히 큼.
  - 통계학적 관점에서는 그런 변화가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추정

<표 III-13> 공기업의 부가가치 추정결과(집계표 및 GDP 대비 비중)

	분류미상항목 중간투입 반영비율	GDP	0%	25%	50%	75%	100%
GDP · 부가가 치 (억원)	2005	8,652,409	257,700	254,497	251,294	248,091	244,889
	2006	9,087,438	272,077	268,411	264,744	261,077	257,410
	2007	9,750,130	277,686	272,344	267,002	261,660	256,317
	2008	10,264,520	237,343	231,484	225,625	219,766	213,906
	분류미상항목 중간투입 반영비율	GDP	0%	25%	50%	75%	100%
증감률 (%)	2005	-	-	-	-	-	-
	2006	5.0	5.58	5.47	5.35	5.23	5.11
	2007	7.3	2.06	1.47	0.85	0.22	-0.42
	2008	5.3	-14.53	-15.00	-15.50	-16.01	-16.55
	분류미상항목 중간투입 반영비율	GDP	0%	25%	50%	75%	100%
GDP 대비 비중 (%)	2005	-	2.98	2.94	2.90	2.87	2.83
	2006	-	2.99	2.95	2.91	2.87	2.83
	2007	-	2.85	2.79	2.74	2.68	2.63
	2008	-	2.31	2.26	2.20	2.14	2.08

주: 2007~2008년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당시에 지정된 297개 공공기관 중 2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추정한 것임. 2005~2006년의 경우에는 2007~2008년의 기관을 역추적한 것.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당시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

## 나. 준정부기관

### 1) 개별기관 기준 부가가치 추정결과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273개 중 공기업의 자회사 21개 기관과 정보부족으로 분석이 곤란한 27개 기관을 제외한 225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추정

○ 21개의 공기업 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공기업의 부가가치로 계산되며, 중복계산을 회피하기 위해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분석에서는 제외

-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산출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비용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
  - 준정부기관: 65개 분석기관 가운데 산출접근법은 16개 기관, 나머지 49개 기관은 비용접근법으로 부가가치를 추정
  - 기타공공기관: 160개 분석기관 가운데 산출접근법 37개 기관, 나머지 123개 기관은 비용접근법으로 부가가치를 추정
  
- 준정부기관 가운데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를 추정
  - 개별 기관 중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의 부가가치가 큰 편
  - 공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간투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에 대하여 중간투입으로 간주하는 비율을 0~100%의 범위 사이에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추정한 결과, 2008년 현재 이들의 부가가치는 6조~6.2조원 정도로 추정
  - 시계열적으로는 2006년에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을 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시현

<표 III-14> 준정부기관 부가가치 추정결과(산출접근법)

(단위: 억원)

2005년	0%	25%	50%	75%	1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8,118	7,401	6,684	5,967	5,251
기술신용보증기금	5,014	5,014	5,014	5,014	5,014
농수산물유통공사	127	125	123	121	119
대한지적공사	2,931	2,775	2,618	2,461	2,30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9,383	9,381	9,378	9,376	9,374
신용보증기금	9,721	9,721	9,721	9,721	9,721
예금보험공사	442	442	442	442	442
우편물류지원단	246	237	227	218	208
우편사업지원단	116	113	110	108	105
한국가스안전공사	708	695	682	669	656
한국수출보험공사	6,735	6,734	6,732	6,731	6,730
한국예탁결제원	1,112	1,089	1,067	1,044	1,022
한국자산관리공사	9,736	9,736	9,736	9,736	9,736

한국전기안전공사	1,541	1,536	1,531	1,526	1,521
한국전력거래소	446	432	418	403	389
한국주택금융공사	216	211	206	200	195
합계	56,592	55,640	54,689	53,737	52,786
2006년	0%	25%	50%	75%	1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7,725	6,717	5,710	4,703	3,696
기술신용보증기금	4,394	4,394	4,394	4,394	4,394
농수산물유통공사	164	163	161	160	159
대한지적공사	3,058	2,906	2,754	2,602	2,4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7,137	7,133	7,130	7,126	7,123
신용보증기금	8,846	8,846	8,846	8,846	8,846
예금보험공사	456	456	456	456	456
우편물류지원단	240	234	228	223	217
우편사업지원단	80	81	82	83	84
한국가스안전공사	745	730	716	701	687
한국수출보험공사	4,041	4,024	4,007	3,991	3,974
한국예탁결제원	1,334	1,307	1,280	1,254	1,227
한국자산관리공사	10,148	10,148	10,148	10,148	10,148
한국전기안전공사	1,687	1,680	1,673	1,666	1,658
한국전력거래소	477	465	452	439	426
한국주택금융공사	495	489	483	477	472
합계	51,028	49,774	48,521	47,267	46,014
2007년	0%	25%	50%	75%	1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940	5,647	5,355	5,063	4,771
기술신용보증기금	4,997	4,997	4,997	4,997	4,997
농수산물유통공사	168	164	160	156	152
대한지적공사	3,317	3,157	2,997	2,838	2,67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9,231	9,227	9,223	9,219	9,215
신용보증기금	6,012	6,012	6,012	6,012	6,012
예금보험공사	464	464	464	464	464
우편물류지원단	266	260	254	247	241
우편사업지원단	95	94	94	93	93
한국가스안전공사	878	864	850	836	822
한국수출보험공사	7,430	7,427	7,424	7,421	7,418
한국예탁결제원	1,874	1,844	1,815	1,785	1,755
한국자산관리공사	10,326	10,326	10,326	10,326	10,326
한국전기안전공사	1,834	1,827	1,819	1,811	1,803
한국전력거래소	511	497	483	469	455
한국주택금융공사	615	607	599	592	584
합계	53,956	53,414	52,871	52,329	51,786
2008년	0%	25%	50%	75%	1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81	-507	-733	-959	-1,186
기술신용보증기금	7,437	7,437	7,437	7,437	7,437
농수산물유통공사	188	181	174	167	160

대한지적공사	3,622	3,426	3,229	3,033	2,8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606	6,602	6,598	6,595	6,591
신용보증기금	5,436	5,436	5,436	5,436	5,436
예금보험공사	457	457	457	457	457
우편물류지원단	268	261	254	247	241
우편사업지원단	112	109	106	103	101
한국가스안전공사	913	900	887	873	860
한국수출보험공사	20,054	20,047	20,040	20,033	20,026
한국예탁결제원	1,790	1,765	1,741	1,717	1,692
한국자산관리공사	14,543	14,543	14,543	14,543	14,543
한국전기안전공사	2,009	1,999	1,988	1,977	1,967
한국전력거래소	546	529	512	496	479
한국주택금융공사	-2,047	-2,056	-2,065	-2,074	-2,083
합계	61,654	61,130	60,605	60,081	59,556

- 49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비용접근법으로 부가가치를 추계
  - 개별 기관 가운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부가가치가 큰 기관
    - 2008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가가치는 1조 397억원으로 추정되어 비용접근법에 의한 49개 준정부기관의 부가가치 중 약 1/3을 점유
  - 49개 기관의 총부가가치는 2005년 2.3조원에서 2006~2008년 동안 각각 2.6조원, 2.8조원, 3.0조원으로 지속적 증가추세를 시현

<표 III-15> 준정부기관 부가가치 추정결과(비용접근법)

(단위: 억원)

	2005	2006	2007	2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07	940	1,064	1,311
교통안전공단	727	830	954	1,004
국립공원관리공단	328	350	345	339
국민건강보험공단	8,333	8,919	8,799	10,397
국민연금공단	2,531	3,004	4,396	3,418
국민체육진흥공단	1,079	1,161	1,241	1,196
국제방송교류재단	124	98	103	111
근로복지공단	1,283	1,628	1,689	1,68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01	689	721	847
도로교통공단	727	830	954	1,004
독립기념관	76	97	43	74
부품소재산업진흥원	9	33	37	2
선박안전기술공단	121	138	150	152
에너지관리공단	36	37	42	41
영화진흥위원회	124	108	121	112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7	7	9	11
축산물등급판정소	582	610	654	662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46	60	72	74
한국고용정보원	0	185	139	157
한국과학창의재단	32	40	40	43
한국광해관리공단	0	85	137	173
한국농어촌공사	246	245	244	125
한국디자인진흥원	56	60	73	62
한국문화위원회	80	87	3	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60	63	28	4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2	65	79	7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97	127	154	18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5	120	125	105
한국산업기술재단	8	11	13	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4	15	20	13
한국산업단지공단	303	396	432	45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66	746	776	861
한국산업인력공단	1,157	764	571	618
한국세라믹기술원	66	66	68	7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11	126	138	162
한국소비자원	120	139	168	15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76	198	224	216
한국시설안전공단	36	43	47	46
한국원자력문화재단	9	10	10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53	282	308	30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86	320	346	361
한국전과진흥원	23	31	11	1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81	181	163	172
한국철도시설공단	960	1,085	2,020	2,177
한국청소년상담원	21	24	31	31
한국청소년수련원	32	32	61	5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8	89	87	88
한국환경자원공사	172	178	199	195
환경관리공단	158	168	208	207
합계	23,229	25,518	28,319	29,649

- 주요 국공립병원, 일부 금융기관 등 37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산출접근법으로 부가가치를 추정
  - 2008년 현재 부가가치가 가장 큰 기관은 산업은행으로, 부가가치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 내외 정도로 추정
    - 2005~2007년 기간 동안 연간 부가가치가 4천억~5천억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데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
  - 반면에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2005~2007년 동안 연간 부가가치가 1.8조~2.6조원 정도로 추정되었던 반면 2008년에는 2천억~4천억원 정도의 마이너스 값을 시현
  - 전체적으로도 연간 부가가치 규모가 2005~2007년 동안의 4조~5조원 내외에서 2008년에는 2.0조~2.8조원 정도로 대폭 감소
    -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 때문으로 전반적인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표 III-16> 기타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정결과(산출접근법)

(단위: 억원)

2005년	0%	25%	50%	75%	100%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33	32	31	29	28
88관광개발	25	24	24	24	24
강릉대학교치과병원	33	32	31	29	28
강원대학교병원	97	94	91	88	85
강원랜드	5,089	4,967	4,845	4,722	4,600
경북대학교병원	1,080	1,066	1,052	1,039	1,025
경상대학교병원	699	678	657	637	616
기은신용정보	32	32	31	31	30
기은캐피탈	287	280	273	266	259
부산대학교병원	754	755	756	757	758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48	46	45	43	41
산은캐피탈주식회사	1,763	1,636	1,509	1,382	1,255
서울대학교병원	2,552	2,528	2,503	2,478	2,45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58	235	212	189	16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97	294	291	288	285
아이비케이시스템	29	28	28	28	28
울산항만공사	0	0	0	0	0
전남대학교병원	1,401	1,378	1,355	1,333	1,310
전북대학교병원	826	802	778	754	730

정리금융공사	8,156	8,232	8,308	8,384	8,460
제주대학교병원	-27	-32	-38	-43	-48
중소기업은행	19,422	19,192	18,963	18,733	18,503
충남대학교병원	832	813	794	775	755
충북대학교병원	326	310	295	279	263
코레일개발	20	21	22	22	23
코레일투어서비스	0	0	0	0	0
코스콤	900	884	868	852	835
한국기술거래소	16	15	14	13	1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91	376	362	347	333
한국산업은행	5,205	5,124	5,043	4,963	4,882
한국생산성본부	153	152	151	150	149
한국수출입은행	1,167	1,881	2,594	3,308	4,021
한국체육산업개발	0	-1	-2	-3	-5
한국투자공사	1	1	0	-1	-2
(주)한국토지신탁	1,547	1,144	741	338	-65
(주)한국건설관리공사	925	924	923	923	922
한국기업데이터(주)	15	12	9	6	2
합계	54,353	53,956	53,559	53,162	52,765
2006년	0%	25%	50%	75%	100%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40	39	38	36	35
88관광개발	27	27	26	26	26
강릉대학교치과병원	40	39	38	36	35
강원대학교병원	147	144	140	137	133
강원랜드	4,650	4,449	4,248	4,047	3,846
경북대학교병원	1,225	1,208	1,191	1,173	1,156
경상대학교병원	622	597	573	549	524
기은신용정보	48	48	47	47	46
기은캐피탈	516	507	497	488	479
부산대학교병원	1,115	1,150	1,184	1,219	1,254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83	80	76	73	70
산은캐피탈주식회사	1,635	1,500	1,365	1,229	1,094
서울대학교병원	2,868	2,804	2,740	2,676	2,61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00	266	232	198	16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12	308	304	300	296
아이비케이시스템	50	50	50	50	50
울산항만공사	0	0	0	0	0
전남대학교병원	1,267	1,228	1,189	1,150	1,111
전북대학교병원	941	907	873	839	805
정리금융공사	7,653	7,785	7,917	8,049	8,180
제주대학교병원	211	206	201	197	192
중소기업은행	21,949	21,735	21,522	21,308	21,095
충남대학교병원	945	927	909	891	873
충북대학교병원	395	378	362	345	329

코레일개발	12	13	13	14	14
코레일투어서비스	0	0	0	0	0
코스콤	873	855	836	817	799
한국기술거래소	12	10	8	5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05	392	378	365	351
한국산업은행	5,070	4,884	4,698	4,512	4,326
한국생산성본부	153	151	149	147	145
한국수출입은행	1,527	1,981	2,435	2,889	3,342
한국체육산업개발	-1	-1	-2	-2	-3
한국투자공사	17	15	13	11	8
(주)한국토지신탁	1,475	1,269	1,064	858	653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97	896	896	895	894
한국기업데이터(주)	47	47	47	47	46
합계	57,526	56,892	56,256	55,620	54,984
2007년	0%	25%	50%	75%	100%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38	37	35	34	33
88관광개발	27	26	26	26	26
강릉대학교치과병원	38	37	35	34	33
강원대학교병원	181	177	173	169	165
강원랜드	6,748	6,509	6,270	6,031	5,791
경북대학교병원	1,248	1,232	1,216	1,199	1,183
경상대학교병원	720	688	656	625	593
기은신용정보	55	54	54	53	52
기은캐피탈	707	637	567	497	426
부산대학교병원	1,005	1,003	1,002	1,000	998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102	100	97	95	93
산은캐피탈주식회사	1,919	1,145	371	-404	-1,178
서울대학교병원	3,128	3,057	2,987	2,916	2,84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17	284	251	218	18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56	530	504	479	453
아이비케이시스템	53	53	52	52	51
울산항만공사	32	31	30	28	27
전남대학교병원	1,385	1,329	1,273	1,218	1,162
전북대학교병원	1,024	972	921	869	817
정리금융공사	0	0	0	0	0
제주대학교병원	234	227	220	213	206
중소기업은행	26,025	25,506	24,988	24,469	23,951
충남대학교병원	1,026	1,006	985	964	943
충북대학교병원	1,290	1,273	1,256	1,239	1,222
코레일개발	10	11	12	13	14
코레일투어서비스	197	196	194	193	192
코스콤	968	958	949	940	931
한국기술거래소	5	3	1	-1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31	505	479	454	428

한국산업은행	4,748	4,624	4,499	4,374	4,249
한국생산성본부	182	180	178	177	175
한국수출입은행	-3,620	-3,631	-3,642	-3,652	-3,663
한국체육산업개발	16	16	16	15	15
한국투자공사	141	136	131	126	121
(주)한국토지신탁	1,547	1,377	1,206	1,035	864
(주)한국건설관리공사	1,073	1,070	1,067	1,064	1,062
한국기업데이터(주)	76	75	75	75	74
합계	53,731	51,432	49,134	46,836	44,538
2008년	0%	25%	50%	75%	100%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38	36	35	34	33
88관광개발	27	27	27	27	27
강릉대학교치과병원	38	36	35	34	33
강원대학교병원	202	197	192	187	182
강원랜드	5,783	5,491	5,198	4,906	4,613
경북대학교병원	1,371	1,355	1,339	1,324	1,308
경상대학교병원	756	720	684	647	611
기은신용정보	53	52	51	51	50
기은캐피탈	553	447	341	236	130
부산대학교병원	960	971	981	991	1,002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110	108	106	104	101
산은캐피탈주식회사	4,630	4,031	3,432	2,833	2,233
서울대학교병원	3,527	3,397	3,266	3,136	3,00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25	291	258	224	19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44	539	534	530	525
아이비케이시스템	38	38	38	38	38
울산항만공사	311	310	308	306	304
전남대학교병원	1,485	1,426	1,368	1,309	1,251
전북대학교병원	1,131	1,117	1,104	1,090	1,077
정리금융공사	0	0	0	0	0
제주대학교병원	244	237	229	221	214
중소기업은행	-2,257	-2,709	-3,161	-3,612	-4,064
충남대학교병원	1,116	1,091	1,067	1,042	1,017
충북대학교병원	1,379	1,360	1,341	1,322	1,302
코레일개발	19	18	18	18	17
코레일투어서비스	281	280	278	276	275
코스콤	1,255	1,240	1,225	1,210	1,195
한국기술거래소	9	9	8	7	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04	576	549	521	494
한국산업은행	12,371	12,242	12,113	11,984	11,855
한국생산성본부	192	190	189	188	186
한국수출입은행	-9,834	-9,847	-9,860	-9,874	-9,887
한국체육산업개발	20	20	19	19	19
한국투자공사	473	466	459	451	444

(주)한국토지신탁	1,153	1,010	868	725	582
(주)한국건설관리공사	1,131	1,129	1,126	1,124	1,122
한국기업데이터(주)	105	104	104	103	102
합계	30,142	28,005	25,868	23,731	21,594

□ 대다수의 기타공공기관(123개 기관)에 대해서는 비용접근법으로 부가가치를 추계

- 전반적으로 비용접근법에 의한 부가가치는 비용투입분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결과 또는 경기 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
-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123개 기관의 연간 부가가치 총계규모는 2005~2008년 동안 1.2조~1.4조원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

<표 III-17> 기타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정결과(비용접근법)

(단위: 억원)

	2005	2006	2007	2008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4	3	2	3
(재)명동,정동극장	14	15	17	16
(주)농지개발	4	5	4	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89	104	115	1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	13	15	15
광주과학기술원	197	199	229	246
국립암센터	568	561	756	865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15	18	21	27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5	1	20	21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0	-1	1	5
국토연구원	86	90	22	118
기초기술연구회	0	7	9	16
기초전력연구원	7	6	9	10
녹색사업단	0	2	6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	20	23	31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3	12	20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9	73	13	14
대한법률구조공단	203	231	246	254
대한장애인체육회	1	10	16	21

	2005	2006	2007	2008
대한적십자사	1,113	1,213	1,293	1,345
동북아역사재단	0	6	8	3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6	17	25	25
별정우체국연합회	14	16	18	18
산업기술연구회	7	8	10	12
산업연구원	97	94	45	50
시장경영지원센터	9	17	19	21
신문발전위원회	0	4	5	6
신문유통원	0	10	19	25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15	19	24	24
에너지경제연구원	53	52	24	27
영상물등급위원회	16	18	13	15
예술의전당	95	111	114	119
재외동포재단	12	13	17	29
저작권위원회	13	15	16	0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0	0	0	0
전략물자관리원	0	0	8	13
전쟁기념사업회	58	61	61	58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0	0	12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7	93	34	30
정부법무공단	0	0	0	29
친환경상품진흥원	12	19	25	26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6	26	26	3
통일연구원	10	9	10	9
학교법인한국폴리텍	472	5	6	7
한국개발연구원	107	115	43	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3	111	119	131
한국게임산업진흥원	30	25	28	30
한국고전번역원	0	0	4	3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4	78	86	9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65	634	582	70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3	115	118	120
한국교육개발원	71	76	28	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2	194	47	51
한국교통연구원	59	60	15	16
한국국방연구원	0	0	0	158
한국국제교류재단	40	46	48	5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0	2	2	12

	2005	2006	2007	2008
한국국제협력단	106	121	125	353
한국기계연구원	186	204	149	158
한국기술거래소	12	19	15	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60	195	225	108
한국노동교육원	0	0	15	16
한국노동연구원	56	59	6	1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	9	14	28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5	6	6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3	84	36	34
한국문학번역원	6	10	16	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7	1	1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	13	9	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6	8	8	8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49	48	1	2
한국발명진흥회	41	38	43	36
한국법제연구원	19	4	5	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	8	14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	13	19	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1	28	29	29
한국사학진흥재단	6	6	3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5	5	5	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	15	13	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53	273	312	28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57	244	322	337
한국석유품질관리원	34	31	33	3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72	112	101	172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70	142	105	116
한국식품연구원	94	101	72	58
한국어촌어항협회	18	19	21	24
한국언론재단	100	105	104	11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3	97	109	1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2	55	19	25
한국영상자료원	18	15	16	26
한국원자력연구원	1,062	1,104	1,212	1,238
한국원자력의학원	196	205	202	21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0	26	32	39
한국장애인개발원	31	27	38	44
한국전기연구원	182	212	205	214

	2005	2006	2007	2008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88	100	100	1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58	1,899	1,965	2,005
한국전자과연구원	23	29	38	39
한국정보화진흥원	127	202	121	131
한국조세연구원	60	62	65	68
한국지질자원연구소	306	115	134	13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2	79	83	86
한국천문연구원	32	35	40	4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5	62	71	7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	18	6	6
한국청소년진흥센터	5	9	9	9
한국특허정보원	248	288	321	33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3	231	222	231
한국표준협회	56	59	64	76
한국학중앙연구원	87	90	94	104
한국한의학연구원	34	47	64	8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61	227	312	36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7	56	58	25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0	1	2	4
한국해양연구원	145	248	198	180
한국행정연구원	28	9	6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7	5	7
한국화학연구원	372	391	447	47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4	57	15	2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6	6	6	7
향로표지기술협회	6	7	7	8
호국장학재단	3	4	4	3
중소기업유통센터	64	84	85	84
합계	12,503	12,735	12,706	13,880

## 2) 집계기준 부가가치 추정결과

-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부가가치를 합산한 규모는 2005년 14.1조~14.7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2006~2007년에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에는 12.5조~13.5조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
- 2008년의 부가가치 감소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컸기 때문인 것으로

로 추정

- 전반적으로 비용접근법을 이용하여 추계한 기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의 변동이 작은 반면 산출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의 변동(감소) 현상이 심한 편
- 후자의 경우에는 영업잉여 등이 경기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출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변동폭이 크게 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표 III-18> 준정부/기타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정결과

(단위: 억원)

2005년	0%	25%	50%	75%	100%
준정부기관(산출법)	56,592	55,640	54,689	53,737	52,786
준정부기관(비용접근법)	23,229	23,229	23,229	23,229	23,229
준정부기관 합계	79,821	78,870	77,918	76,966	76,015
기타공공기관(산출법)	54,353	53,956	53,559	53,162	52,765
기타공공기관(비용접근법)	12,503	12,503	12,503	12,503	12,503
기타공공기관 합계	66,856	66,460	66,063	65,666	65,269
준정부/기타 합계	146,678	145,329	143,981	142,632	141,284
2006년	0%	25%	50%	75%	100%
준정부기관(산출법)	51,028	49,774	48,521	47,267	46,014
준정부기관(비용접근법)	25,518	25,518	25,518	25,518	25,518
준정부기관 합계	76,545	75,292	74,038	72,785	71,532
기타공공기관(산출법)	57,526	56,892	56,256	55,620	54,984
기타공공기관(비용접근법)	12,735	12,735	12,735	12,735	12,735
기타공공기관 합계	70,261	69,627	68,991	68,355	67,719
준정부/기타 합계	146,807	144,919	143,029	141,140	139,250
2007년	0%	25%	50%	75%	100%
준정부기관(산출법)	53,956	53,414	52,871	52,329	51,786
준정부기관(비용접근법)	28,319	28,319	28,319	28,319	28,319
준정부기관 합계	82,275	81,732	81,190	80,647	80,105
기타공공기관(산출법)	51,034	48,910	46,786	44,662	42,538
기타공공기관(비용접근법)	12,706	12,706	12,706	12,706	12,706
기타공공기관 합계	63,740	61,616	59,492	57,368	55,244
준정부/기타 합계	146,015	143,348	140,682	138,015	135,349
2008년	0%	25%	50%	75%	100%
준정부기관(산출법)	61,654	61,130	60,605	60,081	59,556
준정부기관(비용접근법)	29,649	29,649	29,649	29,649	29,649
준정부기관 합계	91,303	90,779	90,254	89,730	89,205
기타공공기관(산출법)	30,142	28,005	25,868	23,731	21,594
기타공공기관(비용접근법)	13,880	13,880	13,880	13,880	13,880
기타공공기관 합계	44,023	41,885	39,748	37,611	35,474
준정부/기타 합계	135,326	132,664	130,002	127,341	124,679

#### 다. 공공기관 종합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2005년 38.6조~40.4조원 정도로 추정
  - 2005년의 총GDP가 865.2조원이므로 2005년 현재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비중은 4.5~4.7%로 추정
  
- 2008년에는 33.9조~37.3조원으로 GDP(1,026.5조원) 대비 3.4~3.6% 정도를 점유하였던 것으로 추정
  
-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2006~2007년 동안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국제유가 급등 및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
  - 2008년의 공공기관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약 5.1조~5.3조원 정도 감소
  -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은 2007년 4.1~4.4% 수준에서 약 0.8%p 정도 감소한 3.3~3.6%로 급전직하
  
- 2008년 부가가치 감소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 각각의 경영여건과 실적,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한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함.
  - 그러나 원인분석 연구는 본 연구의 분석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함.
  - 다만 2007~2008년의 국제유가 급등과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유형별 부가가치 추정결과를 놓고 짐작해보건대, 전반적으로 산출접근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추정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이들 기관의 경우 대부분 명시적인 시장이 존재하고 산출과 중간투입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며, 각각의 시장가치 또한 명확하게 규명되는

가운데,

- 국제유가의 급등은 중간투입(비용)을 크게 상승시킨 한편, 경기여건 등의 악화로 산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양자간의 차이로 정의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한 기관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표 III-19> 공공기관 전체의 부가가치 추정결과

(단위: 억원)

2005년	0%	25%	50%	75%	100%	경상GDP
공기업	257,700	254,497	251,294	248,091	244,889	
준정부기관	79,821	78,870	77,918	76,966	76,015	
기타공공기관	66,856	66,460	66,063	65,666	65,269	
전체	404,378	399,827	395,275	390,724	386,172	8,652,409
2006년	0%	25%	50%	75%	100%	경상GDP
공기업	272,077	268,411	264,744	261,077	257,410	
준정부기관	76,545	75,292	74,038	72,785	71,532	
기타공공기관	70,261	69,627	68,991	68,355	67,719	
전체	418,884	413,329	407,773	402,217	396,661	9,087,438
2007년	0%	25%	50%	75%	100%	경상GDP
공기업	277,686	272,344	267,002	261,660	256,317	
준정부기관	82,275	81,732	81,190	80,647	80,105	
기타공공기관	63,740	61,616	59,492	57,368	55,244	
전체	423,700	415,692	407,683	399,675	391,666	9,750,130
2008년	0%	25%	50%	75%	100%	경상GDP
공기업	237,343	231,484	225,625	219,766	213,906	
준정부기관	91,303	90,779	90,254	89,730	89,205	
기타공공기관	44,023	41,885	39,748	37,611	35,474	
전체	372,669	364,148	355,627	347,106	338,586	10,264,520

<표 III-20>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GDP 비중

(단위: %)

2005년	0%	25%	50%	75%	100%
공기업	2.98	2.94	2.90	2.87	2.83
준정부기관	0.92	0.91	0.90	0.89	0.88
기타공공기관	0.77	0.77	0.76	0.76	0.75
전체	4.67	4.62	4.57	4.52	4.46
2006년	0%	25%	50%	75%	100%
공기업	2.99	2.95	2.91	2.87	2.83
준정부기관	0.84	0.83	0.81	0.80	0.79
기타공공기관	0.77	0.77	0.76	0.75	0.75
전체	4.61	4.55	4.49	4.43	4.36
2007년	0%	25%	50%	75%	100%
공기업	2.85	2.79	2.74	2.68	2.63
준정부기관	0.84	0.84	0.83	0.83	0.82
기타공공기관	0.65	0.63	0.61	0.59	0.57
전체	4.35	4.26	4.18	4.10	4.02
2008년	0%	25%	50%	75%	100%
공기업	2.31	2.26	2.20	2.14	2.08
준정부기관	0.89	0.88	0.88	0.87	0.87
기타공공기관	0.43	0.41	0.39	0.37	0.35
전체	3.63	3.55	3.46	3.38	3.30

<표 III-21>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2006	0%	25%	50%	75%	100%	GDP증감률
공기업	5.6	5.5	5.4	5.2	5.1	
준정부기관	-4.1	-4.5	-5.0	-5.4	-5.9	
기타공공기관	5.1	4.8	4.4	4.1	3.8	
전체	3.6	3.4	3.2	2.9	2.7	5.0
2007년	0%	25%	50%	75%	100%	GDP증감률
공기업	2.1	1.5	0.9	0.2	-0.4	
준정부기관	7.5	8.6	9.7	10.8	12.0	
기타공공기관	-9.3	-11.5	-13.8	-16.1	-18.4	
전체	1.1	0.6	0.0	-0.6	-1.3	7.3
2008년	0%	25%	50%	75%	100%	GDP증감률
공기업	-14.5	-15.0	-15.5	-16.0	-16.5	
준정부기관	11.0	11.1	11.2	11.3	11.4	
기타공공기관	-30.9	-32.0	-33.2	-34.4	-35.8	
전체	-12.0	-12.4	-12.8	-13.2	-13.6	5.3

## 7. 주요 공기업의 산업내 부가가치 비중 비교

- 본절에서는 2005~2008년의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비교적 산업분류가 명확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비중을 산출·비교함.
  -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 중 공기업의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공기업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데 참고자료를 제공함.
  - 다만 공기업의 특성상 공기업의 가격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정책가격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공존하는 부분에서의 부가가치 비중이 해당 공기업의 위상을 반영해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공기업이 해당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부가가치 비중)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임(<표 III-22> 참조).
  
-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부가가치 포함)의 경우에는 전력산업 부가가치의 85~97%를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 산업점유율이 높음.
  -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 비중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하락하는 추세
    - 예전에는 발전시장이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독점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자가소비용 발전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정도 발전
  - 특히 2008년에는 부가가치 비중이 84.6%로 대폭 하락
    - 유가급등에 따라 중간투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기가격 규제로 인해 원가상승분이 가격에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가 크게 하락
    -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원가상승분 중 일부가 보전되어 부가가치 감소효과가 한국전력공사보다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2008년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 대폭 감소는 유가급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의 생산활동 자체가 부가가치 감소율만큼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아님에 유의 필요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05~2007년에는 부가가치 비중이 30%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82.2%로 대폭 상승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원료비 상승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증가 및 가스요금 동결 또는 인상 억제 등에 따라 매출액 정체 및 중간투입 급증으로 인해 부가가치 감소요인이 크게 발생하였으나,
- 공공요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회계처리상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함에 따라 부가가치의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

□ 전체적인 특징

-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2008년에 부가가치가 크게 급감
-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과거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부가가치 점유율도 높은 편
- 반면에 시장경쟁이 높은 부문이거나 산업분류의 특성상 여러 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된 업종에 해당되는 공기업은 부가가치 비중이 작은 편

<표 III-22> 주요 공기업 부가가치의 해당 산업내 비중 비교

(단위: %)

	2005	2006	2007	2008
부산항만+인천항만+인천공항+한국공항	11.0	11.3	12.5	13.5
한국철도공사	70.5	80.0	70.2	63.5
한국석탄공사	25.2	15.1	25.2	4.7
한국도로공사	52.8	52.3	48.7	34.4
한국방송광고공사	2.0	1.8	1.8	1.7
한국주택보증	1.3	1.3	1.3	1.4
한국주택공사	-1.1	-1.1	0.1	5.7
한국전력공사	97.4	97.3	93.4	84.6
한국가스공사	33.3	28.3	30.1	82.2

- 주: 1. 공기업 부가가치는 중간투입 또는 총산출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편입 비율을 50%로 가정한 경우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작성
2. 산업별 부가가치는 2005년의 경우 산업연관표, 2006~2008년은 연장표 기준임.
3. 부산항만+인천항만+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는 운수보조서비스+하역부문을 기준으로 함.
4.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부문을 기준으로 함.
5. 한국주택보증공사는 금융부문을 기준으로 함.
6. 한국주택공사는 주택건축 부문을 기준으로 함.
7.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도시가스 부문을 기준으로 함.

## 8. 기존 연구와의 비교

-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를 추정한 연구로는 사공일(1979)과 송대희·송명희(1988)가 대표적
  - 전자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공기업(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추정
  - 후자는 그 시기와 함께 1980년대의 공공기관(주로 공기업) 부가가치를 추정
  
- 사공일(1979)은 재무제표 분석 및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
  - 산업분류가 정확히 공공기관 분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연관분석 시 오차 개입 가능성
  
- 송대희·송명희(1988)는 본 연구의 경우와 유사하게 재무제표로부터 추정
  
- 추계방법, 자료 및 분석대상기간, 경제발전 단계 및 그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 등의 차이로 인해 기존 연구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큰 의미 없음.
  - 포항제철(POSCO), 한국통신(KT),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등 규모가 큰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직접 비교는 곤란
  - 그 밖에 경제발전단계에 따라서도 공기업 GDP 비중이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
  
- 즉, 시대별로 공공기관의 범위와 구성 기관들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 기관 대상의 부가가치 비교는 불가능
  - 공공기관의 범위 자체가 시대적 상황과 당시의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만큼 민영화, 통폐합, 기관 신설 등의 요인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 변화에 의한 오차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아래에서는 각 시대별 공공기관(또는 공기업)에 대한 부가가치 추정결과를 비교함.

□ 사공일(1979)의 추정결과

○ GDP 대비 공기업의 비중은 1960년대 6%대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1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8%대로 완만하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

○ 공기업(공공기관) 대상의 부가가치 GDP 비중

1960	1970	1973	1975	1977
6.7%	9.2%	8.7%	8.3%	8.0%

<표 III-23> GDP 및 공기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십억원, %)

	1960	1964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부가가치(A)	31.41	41.57	220.75	253.82	315.37	417.30	537.56	737.52	1,014.58	1,191.16
GDP(B)	469.40	678.05	2,405.05	2,976.55	3,676.22	4,808.64	6,844.21	8,855.53	11,659.46	14,854.04
비농림어업 GDP(C)	253.45	346.27	1,695.20	2,103.32	2,637.93	3,538.77	5,079.92	6,553.54	8,702.10	11,286.34
A/B	6.7	6.1	9.2	8.5	8.6	8.7	7.9	8.3	8.7	8.0
A/C	12.4	12.0	13.0	12.1	12.0	11.8	10.6	11.3	11.7	10.6

원자료: 대한민국정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963~1977.

대한민국정부, 『기금결산보고서』, 1963~1977.

재무부, 『정부투자기관결산서』, 1963~1977.

기타공기업부문의 결산서, 1963~1977.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 1978.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970, 1975.

자료: 사공일(1979)

□ 송대희·송명희(1988)의 연구에서 공기업이라고 지칭한 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현재의 공공기관에 대응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은 현재의 공기업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송대희·송명희(1988)에 의하면 공공기관 전체의 GDP 대비 비중은 1985년 현재 9.4%로 추정

□ 현재의 공공기관 전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공기업부문(정부기

업,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자회사 등)의 부가가치 GDP 대비 비중은 1970년 9.2%에서 다소의 등락을 보인 뒤 1985년 9.4%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

○ 공기업(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자회사 등) 부가가치의 GDP 비중

1970	1975	1980	1985
9.2%	8.3%	9.1%	9.4%

□ 현재의 공기업에 대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로 한정하면, 부가가치의 GDP 비중은 1980년 3.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86년에는 6.5%로 추정

○ 정부투자기관 부가가치 GDP 대비 비중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3.2%	3.2%	4.6%	5.0%	5.7%	6.3%	6.5%

<표 III-24> 공기업 부문 부가가치의 GNP 점유율

(단위: %)

	1970(A)	1975(B)	1970년대 상반기 평균, (A+B)/2	1980(C)	1985(D)	1980년대 상반기 평균, (C+D)/2
GNP 점유율	9.2	8.3	8.8	9.1	9.4	9.3
비농림GNP 점유율	13.0	11.3	12.1	10.7	11.4	11.1

주: 1. 공기업부문에는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회사,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 등을 포함. 서울지하철공사 및 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은 제외. 만약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면 GNP점유율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

2. 1985년 점유율은 1984년 점유율과 1986년 점유율의 평년치에 해당.

원자료: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8.

각 개별공기업 결산서, 1970~1986.

자료: 송대희·송명희(1988)

<표 III-25> 정부투자기관 부가가치의 GNP 점유율

(단위: 십억원, %)

	GNP		정부투자기관 부가가치		점유율
	금액(A)	성장률	금액(B)	성장률	
1980	36,673	△5.2	1,159	△7.1	3.2
1981	49,088	6.6	1,218	5.1	3.2
1982	41,211	5.4	1,912	57.0	4.6
1983	46,109	11.9	2,308	20.7	5.0
1984	50,003	8.4	2,385	22.8	5.7
1985	52,705	5.4	3,337	17.7	6.3
1986	59,289	12.5	3,849	15.3	6.5
(1980~86평균)	-	(6.4)	-	(18.8)	(4.9)

주: 1. 정부투자기관의 수는 연도별로 상이. 1980년에 26개 기관이었으나 1981년에 한국은행과 포항제철이 특별법인과 출자회사로 각각 전환되었고, 1982년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984년에 가스공사가 각각 신설되었고, 1984년에는 준설공사가 매각.

2. 198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송대희·송명희(1988)

- 추정방법과 공공기관의 포괄범위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2005~2008년의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GDP 비중이 3.3~4.7%로 1960~1980년대의 수치보다는 확연하게 낮은 수치를 시현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의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 등의 영향과, 민간부문의 급성장 등이 공공기관 부가가치 비중 하락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추측
- 위의 추정결과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공기업(공공기관) GDP 비중이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비중을 더욱 축소

시킬 것으로 전망

- 향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경우 비중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

## IV. 경제적 기여도 관점의 성과평가 관련 정책과제

### 1. 배경

#### 가. 공공기관의 목적·존재이유와 역할

- 공공기관의 주된 목적·존재이유·역할은 공공의 이익증대(공공성·공익성), 독과점 폐해 방지, 시장의 실패 교정,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 고위험 투자, 정부업무의 대행·위탁관리, 산업진흥 등
- 이 중 공공의 이익증대와 관련해서는 공기업의 경영활동이 일반 민간기업의 ‘이윤극대화’, ‘매출극대화’등과 달리 일종의 ‘(국민)후생극대화’로 볼 수 있음.
  - ‘이윤’도 총체적으로 후생의 일부분인 만큼 ‘이윤극대화’도 공기업(공공기관)의 기본목적이 될 수 있으나,
  - 현실에서는 다른 목적이 우선시되는 것이 일반적
- ‘후생극대화’의 예
  - 소비자 측면: 소비자잉여의 극대화
  - 여타 부문 생산자 측면: (공기업 산출물 투입비용 감축을 통한) 생산자잉여의 극대화
- 따라서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는 공공기관의 설립취지나 기능·역할 등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
  - 예: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공공기관의 GDP 기여도의 합
  - 공기업(공공기관)의 부가가치(GDP)는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
  - 그러나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등은 금전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추정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수요·공급 함수에 대한 추정이 필수적
- 그러나 수요·공급곡선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

#### 나.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와 성과평가

- 공공기관의 주된 존재이유·목적이 공공성·공익성인 만큼,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경제적 기여도는 기관외부에 대한 파급효과가 대부분을 차지
  - 예: 소득분배·재분배, 소비자후생, 타 산업·타 부문의 생산자잉여 증대, 생산성 증대, 원가절감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등
-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외부적 성과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관 내부의 성과평가에 주력하는 경향
  - 외부적 성과와 내부 성과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음.
  - 예: 내부 성과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독점력 강화시 내부의 부가가치는 증대되지만, 외부효과인 소비자잉여의 축소와 원가상승으로 인한 타부문의 경쟁력 약화 효과가 상충
- 그러므로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평가와 내부 평가(예: 부가가치 등)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경영평가체계의 개선 요망
  - 현재 기초연구가 부족: 수요·공급 분석(소비자·생산자잉여 등), 공공요금 귀착, 타부문 원가·생산성 영향 분석 등
-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계량평가를 시행중
  - 부가가치는 비용접근법에 의거하여 투입비용분을 중심으로 추계
- 최근 공공기관 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의 필요성과 각계의 요구가 증대되

는 가운데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평가지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부가가치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

- 그러나 객관적으로 작성되는 지표가 과연 공공기관의 기능·역할·존재 이유 등에 비추어볼 때 소기의 성과를 잘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

- 아래에서는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창출액에 기초한 계량평가지표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성과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

## 2. 공공기관 성과평가 관련 쟁점

### 가. 공공기관의 목적에 비추어본 성과의 종류

- 공공기관 중에서는 생산물(산출물)의 형태가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여 시장이 형성되고 거래·유통·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생산성·공공성 등에 기초하여 결과물에 대한 양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
  - 주로 시장이 존재하는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
  -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부의 경우에는 공기업과 유사하게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해당
    - 예: 국공립병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 이런 경우 부가가치가 하나의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상당한 정도 의미를 지님.
  
- 그러나 대다수의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반적 의미에서 통용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장에서의 교환가치 등에 기초한 산출물의 가치를 측정(measure)할 수 없음.
  -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 등 비용투입분(영업잉여는 제외)을 부가가치로 간주하여 산출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예산구조·인건비 기준 등을 고려할 때 비용투입분에 기초한 부가가치는 예산 편성 당시에 상당 부분이 미리 결정되어 버리는 구조를 지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시장이 존재하는 공기업이나 일부 준정부/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잠재적으로 이윤 극대화나 부가가치 극대화 등의 성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성 또는 민간과의 경쟁보다는 공공재·국가 기간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 등을 우선시하는 경우 이윤·부가가치가 현저하게 낮게 실현될 수도 있음.
  - 이런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이윤이나 부가가치보다는 소기의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성과의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 이런 문제는 공기업 유형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 기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존재 목적이나 기능·역할에 대한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성과평가의 기준도 달라질 필요
  - 일률적으로 결과(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부가가치 창출액으로 고정시킨다면 기관유형에 따라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해당 기관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음.
- 기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기능 등의 대행이나 지원·진흥사업, 위탁업무, 연구업무 등이 주된 산출물(또는 성과물)
  - 이와 같은 산출물은 시장평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 기관별 주된 사업영역이 별개이므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상호비교가 어렵다는 것도 한 특징

#### 나. 부가가치의 의미

- 부가가치는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다양한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한 시장가치

의 순증가분으로 정의 가능

- 총부가가치는 각 생산·유통단계별 부가가치의 합
- 이는 최종산출물의 가치의 합과 일치

□ 부가가치는 생산 측면에서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 측면에서는 임금, 이윤, 생산세, 고정자본소모 등의 합

- 총산출은 매출, 임대료수입, 이자·배당금 수입 등의 영업수입 및 영업외 수입 등을 포괄하며 재고변동 등도 포함

□ 총산출은 기회비용적 의미에서의 최대치 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회계학적인 의미에서 시장에서 실현된 총산출을 의미

- 중간투입의 경우도 마찬가지

□ 부가가치는 일반적 의미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정부부문 및 공공부문(상당수의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중 상당수의 경우에는 산출물에 대한 정의가 어렵거나 금전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투입분을 부가가치로 산정하고 있음.

#### 다. 문제 제기: 공공기관 부가가치의 특성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는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산출)을 의미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가가치가 클수록 해당 기관의 생산성 또는 시장성 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부가가치의 특성에 주목하여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예: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그 이면에는 공공기관의 설립취지나 기능·역할에 대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성과물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마땅히 존재하

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 아울러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성평가 부분에 비해 부가가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
- 바로 이 점이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 생산액 중 개별 공공기관의 기여도·비중을 평가지표로 사용하여 올바른 평가가 가능한지 또는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시장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문에 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렇게 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핵심 논의사항

□ 만약 부가가치를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할 때 예상되는 장단점

- 장점
  - 뛰어난 객관성·투명성
  - 시장성·자율성 커질수록 기관 내부의 성과평가지표로서의 효과성 증대
- 단점
  - 시장성·자율성이 약할수록 부가가치의 성과 반영이 곤란
  - 인건비 과다지급 등 방만경영을 할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폐단
  - 이 경우 ‘성과 vs 방만’의 구분이 곤란

□ 공기업(주로 산출법으로 추정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소위 ‘공공요금’이라는 제명하에 가격규제(통제) 및 공공사업 전개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의 기여도’ 개념이 일반 민간기업과 상이

- 즉, 산출가격이 시장가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의 종류나 유형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정책의지를 반영
- 따라서 명시적인 시장이 존재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 중 일부

는 정책효과를 반영하여 결정

- 공공기관의 존재목적은 해당기관의 부가가치 또는 생산자잉여 등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소비자후생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경우 총체적으로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총합의 극대화를 도모하거나,
  - 또는 주어진 공급 조건하에서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나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의 최소화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도 함.
  
- 흔히 공공기관의 존재목적으로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에 대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부가가치는 생산자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비자잉여와의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두 가지 잉여의 극대화와 부가가치의 극대화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괴리가 존재
  
- 따라서 직접적으로 산출된 부가가치가 기업의 성과나 존재이유·목적 등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일반적
  - 일례로 저렴한 공공요금 책정을 통해 소비자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 총체적 기여도는 크지만,
  - 소비자후생 확대를 위한 가격 하향평준화로 인해 해당 공기업의 부가가치는 오히려 가상적으로 독점적 시장가치에 있었을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될 수도 있음.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또는 초과부담, 사중손실 등은 현실적으로 측정이 용이하지 않아, 이들의 극대화 또는 최소화를 공공기관의 존재목적으로 설정하더라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음.
  - 백보양보하여 수요·공급곡선을 성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대한 현금화(또는 quantify)가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기여도의 성과에 대한 비교형량이 어렵고 절대적 기준 설정도 곤란하여 평가가 쉽지 않은 상황

- 공공성이 강조되어 공기업(또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에 이윤극대화 또는 생산자잉여의 극대화 등과 달리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여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규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조건이 없는 경우에 비해 시장교환가치 등에 입각한 부가가치 규모는 민간부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성과물에 대한 금전적·회계학적 추정이 곤란한 경우 부가가치는 해당기관의 성과 반영에 미흡
  - 따라서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 등을 성과평가지표로 직접 연결은 곤란
  - 왜냐하면 비용투입분을 부가가치로 인식하므로 부가가치가 성과와 무관하게 기관의 예산 등으로부터 직접 결정되기 때문
  
-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민간부문 등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수익률, 자본수익률 등을 공기업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공성이 강조될수록, 가격통제 등 규제가 강화될수록 더욱 그러함.
  
- 아래에서는 공공성에 입각하여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지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책개선과제에 대해 논의
  - 다양한 경제적 기여도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위한 고도의 평가방법 개발이 성과평가 개선의 궁극적 목표이나,
  - 현실 여건상 이런 평가체계는 높은 비용을 요구할 뿐더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연구가 필요
  - 부가가치 계량평가 지표 등은 현재 공공기관 평가작업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서, 낮은 비용으로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에 비해 평가의 범위가 좁은 것이 단점

- 다음 절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개선과제에 대해 논의

### 3. 공공기관 성과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가. 현황과 특성

-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에는 투입분에 기초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성과 평가에 활용중
  -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산출물에 대한 측정(measure)이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비용접근법으로 부가가치를 추정
  - 비용법에 의한 부가가치 추정은 주로 요소투입분을 부가가치로 간주
    - 임금 등이 큰 비중 차지
- 성과관리 방안 또는 평가지표로서, 비교적 손쉬운 부가가치 지표 하나만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부작용 예상
  - 공공기관 산출물(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자들로 구성된 소비자 또는 여타 부문의 생산자들의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를 축소하고 (독점)이윤 제고를 추구
    - 공기업(공공기관)의 설립목적·존재이유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
  - 특히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은 임금 과다지급 등 경영을 방만하게 할수록 오히려 평가지표(예: 직원 1인당 부가가치액)가 좋게 나타나는 문제점 발생
  -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부가가치 내재화(internalization)를 도모할 가능성
    - 외주작업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외부기관의 부가가치로 간주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외주억제·내부생산 촉진을 통해 저효율 또는 비효율적인 생산비중을 높일 가능성
    - 왜냐하면 분업·전문성에 기초한 아웃소싱의 효과가 저감되기 때문

- 특히 비용접근법으로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금을 과다지급할수록 1인당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 일반적으로 임금을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면 방만경영 등으로 비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과다지급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의 값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실제와 정반대의 성과평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적절한 성과지표로 공공기관, 특히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음.
  
-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국공립병원 등과 같이 일부의 경우 시장이 존재하여 민간부문과 일정한 정도 경쟁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음.
  - 이런 경우에도 진료·치료의 목적 중 하나가 서민·빈곤층 대상의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영리추구와 일정한 괴리를 보이는 만큼 1인당 부가가치를 성과평가지표로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
  
- 종합하면, 공공재·국가 기간재 등의 원활한 공급·저가 공급, 정부업무 대행, 무형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장기능의 원활화, 경쟁력 촉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등의 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장가치의 평가가 곤란
  - 일부의 경우에는 비용투입분을 부가가치로 산정함에 따라 부가가치가 생산성을 반영하는지 또는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방만경영의 결과인지 등에 대한 구분이 곤란
  
-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를 위해 적절한 방안은 내부 평가요소(예: 부가가치 등)와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복합적인 성과평가체계 구축이 바람직

#### 나. 핵심정책과제

-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는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설립목적이나 취지, 기능·역

할 등에 입각하여 해당 목적이 잘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경제시장에서 기업활동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1인당) 부가가치 또는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설립취지·존재목적·주요기능이 시장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성에 기초한 부가가치만으로는 성과평가가 제한적
  
-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의 경영성과와 파급효과를 적절히 결합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 주요 정책과제 목록
  - 외부 파급효과 측정지표의 개발
    - 소비자후생·소비자잉여: 수요·공급·생산함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필요
    - 타부문·타기업 생산자잉여: 외부기관, 공급·생산함수 분석,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필요
    - 소득분배 및 재분배: 공공요금 등의 귀착 분석 필요
  - 내부성과 평가 개선·보완
    - 현행 제도(부가가치 계량평가)의 개선: 정책 부가가치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기관의 시장성·자율성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 평가지표의 적용 범위, 비중, 정성·정량평가의 여부 등에 대한 개선 요망
    - 아울러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및 결합지표 개발이 긴급
  
- 부가가치만으로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공공성·공익성에 기반한 외부 파급효과 측정지표와의 연계 바람직
  - 현재 경영평가체계하에서 부가가치를 계량평가
    - 정책적으로 미리 결정되는 부분이 많아 정량평가지표로는 다소 부적절
    - 정량평가를 정성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외부 파급효과 측정지표와 연계하여 새로운 평가방법·지표 개발
  -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외부 파급효과가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내부평가(예: 부가가치)와 외부 파급효과 평가지표를 결합한 지표 개발이 요청
  - 외부 파급효과의 종류
    - 소비자후생(또는 소비자잉여)
    - 타 부문 생산자잉여
    - 생산성
    - 원가절감 효과 등
- 상기의 정책과제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기여도 각 항목별 기여도의 실체 및 이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구체적·실체적인 기초연구가 선행될 필요
- 이를 위한 학술연구 및 정책응용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
  - 분야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만큼 학계에서 중장기 프로젝트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부가가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외부적 요인(예: 공공요금 규제와 같은 정책가격적 요소, 예산편성시 인건비 등 투입비용분의 상당 부분이 예산편성단계에서 미리 결정되는 경우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
-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기관 자체의 생산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공공성·공익성 등이 강조되는 경우 독점이윤을 낮추어 부가가치를 감축함으로써 외부효과를 확대하는 것이 기본 목표인 경우가 많음.
- 이런 이유로 인해 공공기관을 부가가치 창출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를 별도로 발표하거나 성과지표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정부기능의 대행·위탁관리 등의 경우 부가가치는 경영성과와 관계

없이 사실상 정책적(예산)으로 결정

- 그러므로 기관의 유형·성격·역할·기능 등에 따라 재분류하여 성과지표로서의 부가가치 역할을 차등화할 필요
  
- 다만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는 공공기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투명성 등도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정량지표에 대해서도 개발 노력이 부단히 경주될 필요

## V. 맺음말

- 공기업(공공기관)의 (존재)목적과 기능은 공공재·공공서비스 또는 국가 기간재·서비스 등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 정부업무의 대행, 위탁관리, 산업진흥, 국가경쟁력 제고 등 매우 다양
  - 공기업(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라 함은 상기와 같이 공기업(공공기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
  
-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란 금전적으로 환산·평가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무형의 성과로서 계량화·수량화·금전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 공기업(공공기관)의 존재이유가 민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윤극대화,’ ‘시장점유율 극대화’ 등 외형적인 면보다는 ‘국민후생(또는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의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
  - 이런 경우 민간기업에 비해 오히려 이윤을 적게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음.
    - 왜냐하면 기관 내부의 경영성과보다 기관 외부로의 파급효과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부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주된 목표(경제적 기여도)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공기업(공공기관)의 성과를 민간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기능·존재이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반드시 외형적으로 큰 것만을 공공기관의 성과로 평가하기는 곤란

- 공공기관의 범위와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민간부문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거나 민간부문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한 경우에는 민간에 적용되는 잣대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
  - 반면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성과(부가가치 등)와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결합평가방법의 개발·적용이 바람직
    - 이를 위해 중장기 기초연구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제적 비중 측면에서 공기업(공공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함.
- 그럼으로써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제적 위상을 점검해보고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시대 변천에 따른 공기업(공공기관)의 비중 변화추이를 고찰
  - 다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관별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 등이 해당 기관의 성과평가지표로서 활용하기는 부적절함에 유의할 필요
- 2005~2008년 기간을 대상으로 297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 24개 기관,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73개 중 자료추적·수집이 곤란한 27개 기관을 제외한 246개 기관(21개 기관은 모회사인 공기업에 통합하여 추정, 나머지 225개 기관은 별도 추정)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추계
- 부가가치 추정결과 2005~2008년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GDP 대비 3.3~4.7%로 추정
- 사공일(1979), 송대희·송명희(1988)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대에는 공기업(공공기관)의 GDP 비중이 10%를 다소 상회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조금 하락하여 10%에 조금 미달하는 수준
- 1980년대에는 그 비중이 더욱 하락하여 공공기관(당시에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9% 내외, 공기업(당시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3.2~6.5% 정도로 추정

- 분석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부가가치 추정결과를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분석상의 한계성을 인정하더라도, 시계열적으로 공기업(공공기관)의 부가가치 비중은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내릴 수 있음.
-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비중 축소 추세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며, 그 가운데 아래의 세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추정
  - 1990년대~2000년대 초에 걸쳐 대형공기업(포스코, KT, KT&G 등)의 민영화에 따라 공기업 비중이 크게 축소된 측면이 있기 때문
  - 아울러 민간부문의 성장이 매우 빨랐기 때문
  -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
- 부가가치가 일종의 순산출 또는 순생산의 의미도 일부 지니는 만큼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비중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측면도 일부 존재
- 상당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외형적 성장이나 생산물의 가치 극대화보다는 정부업무 대행 또는 산업진흥이나 국민경제의 총체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밑거름 제공 등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나 이런 것 중에는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음.
  -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으로 환산·평가할 수 없는 부분의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무형의 가치에 대한 계량화가 어려워 자칫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기여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 공공기관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시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공공기관의 성과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도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백서』, 2002.
- \_\_\_\_\_, 『공공기관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성과』, 2007.
- 김현숙·민희철·박기백,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 국민경제적 관점의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 \_\_\_\_\_. \_\_\_\_\_ . \_\_\_\_\_,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 개별기업 관점』, 한국조세연구원, 2007.
- 박기백·김현숙·민희철, 『공기업 민영화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사공일, 「한국 공기업부문의 국민경제적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1979, pp. 2~12.
- 송대회,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94, pp. 121~140.
- 송대회·송명희, 「우리나라 독점공기업의 성장요인분석: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88, pp. 39~59.
- 유훈, 『공기업론』, 2000.
- 윤성식, 『공기업론』, 1998.
- 임원혁·남일충·이혜훈,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한국개발연구원, 2000.
-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1996.
- 한국공기업학회, 『우리나라 공기업 관리제도의 평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20년사』, 2003.
- 한국조세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내부자료, 2004.
- \_\_\_\_\_,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2009.

함시창, 「영국 공기업 민영화의 교훈」, 『경제발전연구』, 제5권 제1호, 1999.

Bös Dieter, “Pricing and Price Regulation: An Economic Theory for Public Enterprises and Public Utilities,” *Advanced textbooks in economics*; 34, 1994.

Brown Stephen J. and David S. Sibley, *The Theory of public utility pricing*,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1986.

Coase, R.H.,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960, pp. 1~44.

Jones, Steven, William L. Megginson, Robert C. Nash and Jeffrey M. Netter, “Share Issue Privatizations as Financial Means to Political and Economic End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3, 1999.

OECD, “Privatising State-owned Enterprises: An Overview of Policies and Practices in OECD Countries,” 2003.

OECD, “Reforming Public Enterprises: Case Studies,” 1998.

Samuelson,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 1954, pp 387~389.

Sappington, David, and Joseph Stiglitz, “Privatization, Information and Incentive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 6, 1987.

Shapiro, Carl, and Robert Willig, “Economic Rationales for the Scope of Privatization,” in E. N. Suleiman and J. Waterbury,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Sector Reform and Privatization*, 1990.

Vickers, John and George Yarrow, “Economic Perspectives on Privatiz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2, 1991.

Webb, Michael G, *Pricing policies for public enterprises*, London: Macmillan, 1976.

## 부록: 개별공기업 현황

### 1. 한국전력공사

#### 가. 전력산업 개관

##### 1) 전력산업의 역사

-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사업은 1887년 경복궁에 전등을 설치하는 것에서 시작
  - 경복궁 내에 전등이 설치된 이듬해인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사업체인 한성전기회사가 설립
  - 1910~1930년대 전국에 수십 개의 전기사업체가 난립하는 과정 경험
  
- 1943년 들어 전기사업체들은 통폐합의 과정을 거치는데 발전과 송전은 조선전업주식회사가 독점하게 되었고 배전분야에서는 합동전기, 경성전기, 서선합동전기, 북선합동전기 등 4개의 배전회사가 시장을 분할하여 지역독점으로 사업을 수행
  - 해방 이후 발전 및 송전을 담당하는 조선전업주식회사와 배전을 담당하는 남성합동전기, 경성전기의 3개 회사체제가 유지되다가 1961년 7월 3사는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폐합
  
- 이후 전력설비의 부족에 따라 1967년 민간의 발전부문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동해전력, 경인에너지, 호남전력 3사가 시장에 진입
  - 곧 이어 전력설비의 과잉문제로 동해전력과 호남전력은 한전이 인수하고 경인에너지만 민자 발전소로 남게 됨.

- 이후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체제로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독점하는 수직적 통합의 공기업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일부 민자 발전소가 소규모로 발전에 참여하는 형태로 30년 이상을 유지
- 1999년 1월 국민의 정부 시절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구조개편이 추진된 이후에는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한전의 독점체제 유지
  - 발전부문은 한전의 6개 자회사가 약 90%에 가까운 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포스코 파워, GS 파워, GS EPS 등의 소규모의 민자 발전소들이 10%를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하면서 사업을 영위

## 2) 전기사업 관련 법안

- 법률 9017호인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정의, 목적, 사업내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전기사업관련 대표 법안임. 전기사업의 허가 및 업무, 전력수급의 안정, 전력시장, 전력산업 기반조성, 전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등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
  - 전기사업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포괄
  - 그 외에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0년 12월 31에 제정된 법률 3304호인 「한국전력공사법」이 존재
  - 1980년에 한국전력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전환되면서 한국전력주식회사법과 한국원자력공사법을 일원화한 것으로 2009년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
- 1999년 구조개편을 시작한 이후에 2000년 12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 관련 절차를 제시
  -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주로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3) 전력산업 관련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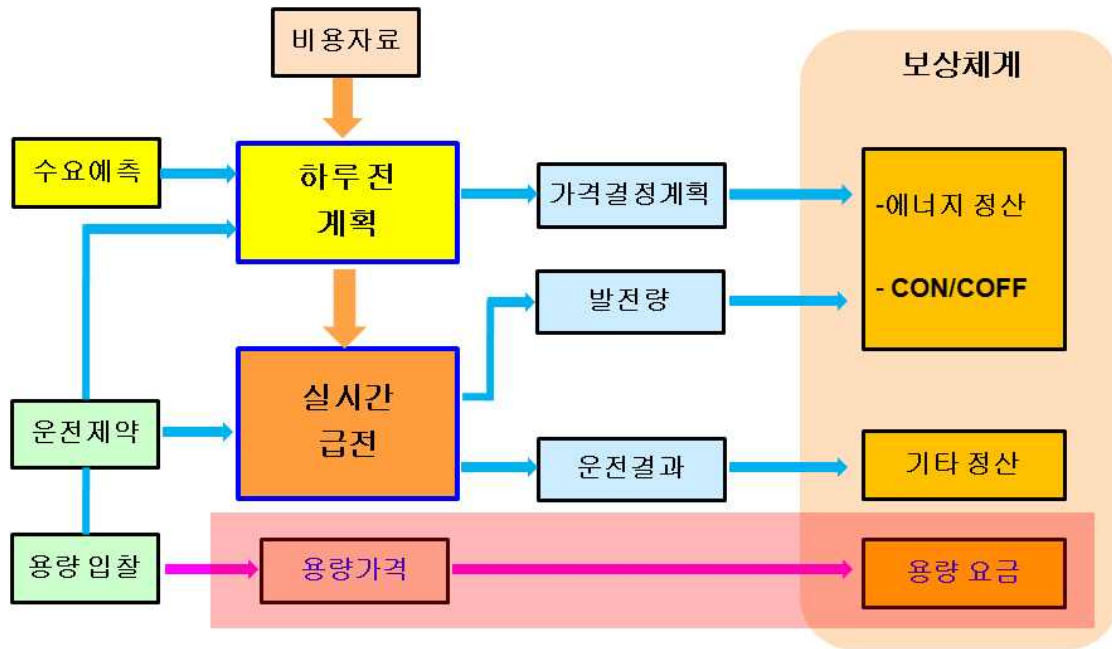
- 한전 이외에 현재 전력산업을 구성하는 주요기관으로는 구조개편으로 인해 설립된 전력거래소와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가 존재
  - 전력거래소는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기관으로 발전사업자, 배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대용량 수용가를 회원으로 구성
  -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에 따른 시장운영의 기능을 담당하고 이에 따른 계량과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급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각 발전소에 급전을 명령하며 전력계통의 안정을 유지하는 계통운영의 업무도 동시에 담당
  
- 전기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비자 보호와 전력의 공급 안정성을 담당하는 전문소위원회와 상시기구인 사무국을 두고 있음.
  - 전기위원회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발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독립된 규제기관

## 나. 전력산업 현황

### 1) 전력시장 제도

- 현 우리나라 풀(pool)제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모든 발전업자들이 강제로 참여하여 독점의 배전업체인 한전과 전력거래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음.
  - 전력도매장의 가격정산시스템은 크게 계통한계가격, 용량요금, ASP 정산요금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부그림 1] 우리나라 전력도매거래 시스템



- 우선 하루 전 계획을 세울 때 수요예측을 기준으로 다른 운전제약이나 운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가격 결정계획을 수립
  - 이 과정에서 결정되는 계통한계가격은 발전업자들이 제시한 변동비 정보에 기초하여 실제 발전에 투입될 발전기 중 가장 값비싼 변동비를 가진 발전기의 가격으로 설정
  - 현재 송전손실계수를 다소 감안하여 시장가격으로 조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반영률이 경미하여 거의 단일계통한계가격에 기초하여 가격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음.
  
- 운전 당일에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발전량을 재조정하게 되고 이렇게 두 개의 단계를 걸쳐 이루어진 가격과 발전량에 따라 에너지 정산
  - 제약발전(scon)과 제약비발전(coff), 자기제약(가격결정에서 제외되는 발전기, gcon)의 발전기는 변동비와 시장가격을 참작하여 제약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차별화하여 보상

- 용량요금(capacity payment)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기저발전기와 일반발전기에 대해 서로 다른 용량정산시스템을 채택하였으나 2005년 이후 가스터빈 발전기의 고정비를 기초로 하여 단일화하였으며 지역별 예비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발전소 입지에 대한 신호를 용량가격을 통해 제공하고자 시도
  - 용량요금은 입찰량에 따라 계통한계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발전비용이 싼 발전기가 입찰에 참여하여 계통한계가격을 낮추고 동시에 신규설비투자를 유인한다는 취지에서 지급
  
- 기타정산은 기동비용조정에 대한 정산, 한계조정발전기 조정에 대한 정산, 계통한계가격 결정시 제외된 발전기에 대한 추가정산, 대체연료사용 발전기에 대한 정산, 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 (주파수추종서비스, 자동발전제어서비스, 예비력서비스 등)이 있음.
  - 전체 정산금의 약 13~14%를 차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보조서비스 시장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고 일종의 uplift 형태로 부과

<부표 1> 전력정산단가 항목 및 내용

정산항목	정산방법
전력량정산금(에너지 가격) - SEP 단가 - 기타단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생산된 시간기준 전력량 * 시장가격 (1일전 결정)
용량정산금	입찰(전력생산 준비선언)량을 기준으로 kWh당 약 7.46원을 지급하고 각종 계수에 따라 변동
부가정산금	보조서비스 시장 등

주: 시장가격은 계통한계가격에 송전손실계수를 일부 반영하여 설정. 시장가격=계통한계가격\*(1-(1-손실계수)\*완화계수)

- 가격정산체제는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부분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2007년 채택된 개선안에 따라 운영중에 있음.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남일총 외(2005)의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정리

- 첫째, 2007년 이전에는 계통한계가격이 기저발전기와 일반발전기에 대해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를 표면적으로는 일원화
    - 현재 계통한계가격은 기저와 일반발전기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가격으로 설정되기는 하나 보정계수의 도입을 통해 한전 발전자회사와 한전 간에는 발전기별로 조정하여 회수
  - 둘째, 발전기의 위치가 소비자에서 멀어질수록 송전손실이 많은데도 모든 발전기가 동일한 가치로 정산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송전손실계수를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도록 수정
    - 이 결과 수도권과 중부지역에 위치한 일반발전기의 에너지 정산가격은 다소 증가하고 중부 이남에 위치한 기저발전기의 에너지 정산가격은 다소 감소
    - 현재 송전손실계수 반영은 2007년 기준으로는 약 10% 수준(200억원 미만)에 머물고 있어 그 반영수준이 경미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100% 반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셋째, 용량가격이 발전소 입지에 대한 지역적 시그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용량가격에 차이를 두어 예비율에 연동되는 용량계수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북상전력을 수도권 발전용량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예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낮지 않은 관계로 정확하게 작동되지는 않고 있음.
- 2007년의 제도개선의 내용을 요약하면 현행 변동비에 기초한 전국 단일의 가격체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송전손실이나 발전소 입지에 대한 시그널을 고려하도록 에너지 가격과 용량가격 정산시스템을 소폭 개선한 것으로 해석 가능
- 개선된 정산제도에 따른 2009년 4월 기준 에너지 및 용량정산단가의 수준은 다음과 같음.

<부표 2> 정산요소별 정산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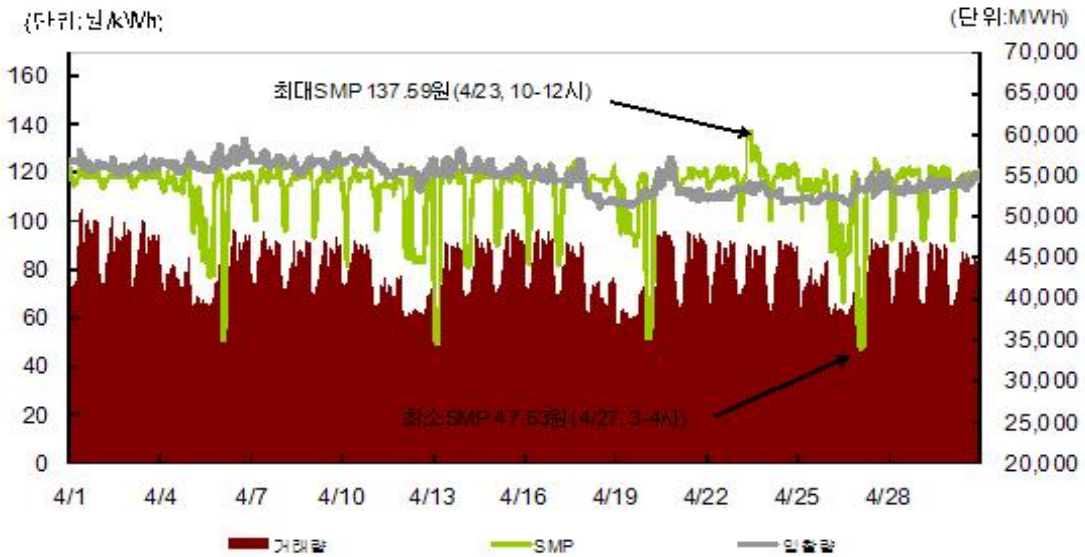
(단위: 원/kWh, %)

구분	09. 4월	전월대비		과거동월		비교
		09. 2월	09. 3월	07. 4월	08. 4월	
정산	원/kWh	64.57	84.93	71.24	54.85	60.69
단가	%	-9.4	-7.1	-16.1	-3.6	10.6
변동비	SEP 단가	48.77	65.43	55.27	39.38	43.62
		-11.8		-15.5		10.8
	기타단가	1.10	1.07	0.61	6.13	7.85
		79.4		-42.9		27.9
용량정산금단가	8.08	7.94	8.00	9.34	9.22	
	1.1		0.7		-1.3	

주: 1. SEP(Scheduled Energy Payment. 계획발전 전력량정산금) :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어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2. 정산단가는 전체 거래금액을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의미

□ 변동비를 반영한 계통한계가격은 최근 자료인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137.59원과 최소 47.53원을 기록

[부그림 2] 계통한계가격 추이 (2009년 4월)



□ 에너지 가격 정산방식은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자 발전회사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 민자 발전회사의 경우에는 생산량 1kWh에 대한 시간대별 가격

인 계통한계가격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며 참고로 2009년 1사분기의 평균 계통한계가격은 148.8원/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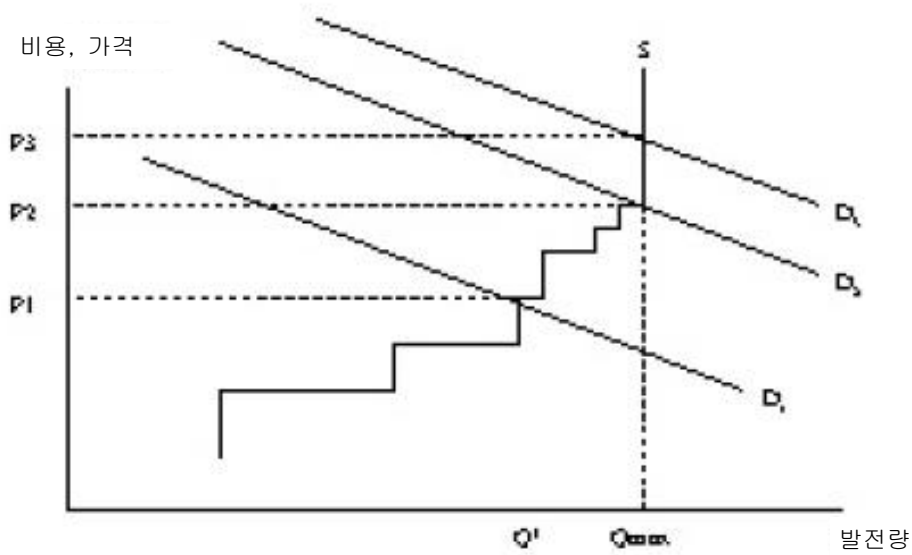
- 한편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발전기별로 비용과 적정이윤을 보상받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고 있어 한전과의 관계로 인해 민자 발전업자와는 다른 유인구조 정산시스템을 갖고 있음.

□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및 정산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에너지 시장과 용량에 대한 보상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봄.

#### 가) 에너지 한계가격 결정(SMP) 방식

- 현재 거래소가 수행하는 최적화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 하나는 실제 급전 하루 전날 송전제약, 예비력 제약, 자기제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급전가능한 발전기의 용량을 예측된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발전량 중 변동비가 가장 싼 것부터 시작하여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를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는 가격결정단계
  - 두 번째는 급전 당일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운영발전을 수행하는 단계로 현재 시스템은 가격결정과 운영과정이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부그림 3] 에너지 시장의 SMP 결정과정



- 에너지 시장의 시장가격결정은 실제 급전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제약 등을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첫 번째 최적화 단계에 해당
  - 최적화는 현실적인 제약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제약 하의 최적화 문제로 설정

$$\max W(q) \sum_{k=1}^k \sum_{i \in I} q_{ki} (v_i - c_k)$$

s.t.

$$\sum_{k=1}^k q_{ki} \leq I_i \quad \forall i \in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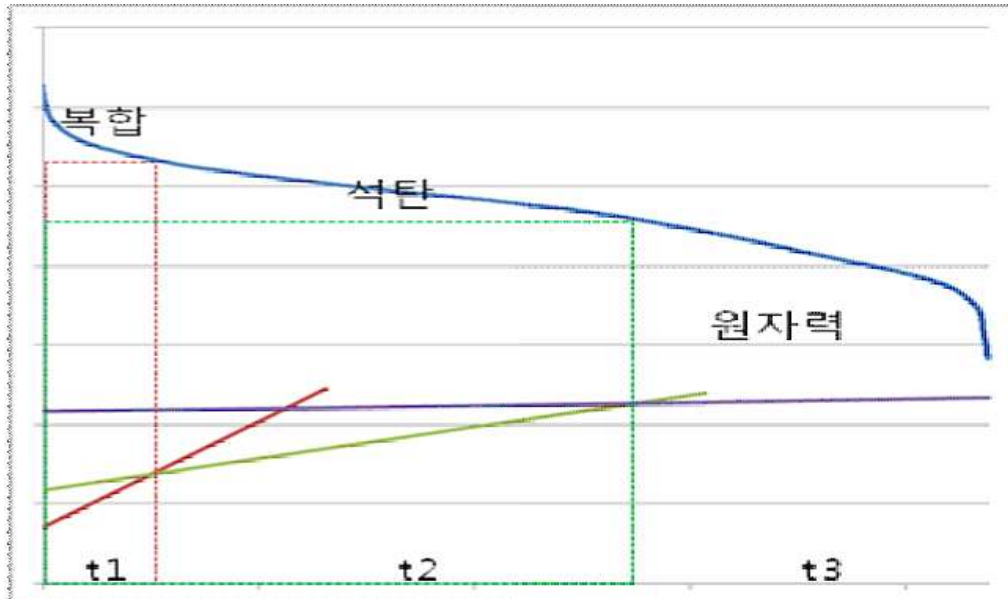
$$\sum_{i \in I} q_{ki} \leq \bar{q}_k \quad \forall k \in K$$

- 위의 식에서  $v_i$ 는 zone i의 소비자의 reservation value이고,  $I_i$ 는 zone i의 수요전력량이며,  $q_{ki}$ 는 k발전기가 zone i에 제공하는 발전량으로 모든 지역에 제공한 발전량은 그 발전기의 용량인  $\bar{q}_k$ 를 초과할 수 없음.
  - 위 사회후생 극대화 문제 대신 수요량을 충족해야 하는 공급 제약과 발전

용량에 대한 제약하의 발전비용 최소화 해를 풀어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됨.

- 결국 시장가격 SMP는 한계발전기의 변동비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중앙급전 발전기는 많으나 이를 연료원별로 크게 대별해보면 원자력, 석탄, LNG가 대부분인데 위의 최적화 문제에 따른 시장가격은 만약 수요가 아주 높은  $t^1$  시기에는  $c^1$ , 값비싼 LNG는 가동할 필요없이 석탄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  $t^2$  시기에는  $c^2$ , 수요가 원자력만으로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t^3$  시기에는  $c^3$ 가 됨.

[부그림 4] 부하지속곡선에 기초한 한계가격결정



- 따라서 수요를 충족하는 한계발전기의 변동비가 시장가격수준
  - 각 발전기의 한계발전기의 변동비 수준을 정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 북동부의 시장과 그 기본항목이 다름.
  - PJM과 같은 ISO는 연료비에 따른 발전기의 증분비용과 변동운전유지비를 더한 값을 기초로 비용 최소화나 사회후생극대화 최적화 문제의 해를 도출

- 미국 북동부 지역의 전력시장은 전력도매거래에 가격입찰방식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한계비용에 기초한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시장지배력의 제어나 시장의 경쟁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한계비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수시로 분석하고 있음.
- 따라서 mark-up을 계산하고 그 수준을 결정할 때 한계비용은 연료비를 기초로 한 증분비용에 변동운전유지비를 더하여 산출
- 반면 우리나라의 SMP는 일종의 평균비용으로 무부하 비용(idling cost)과 기동비용(start up cost)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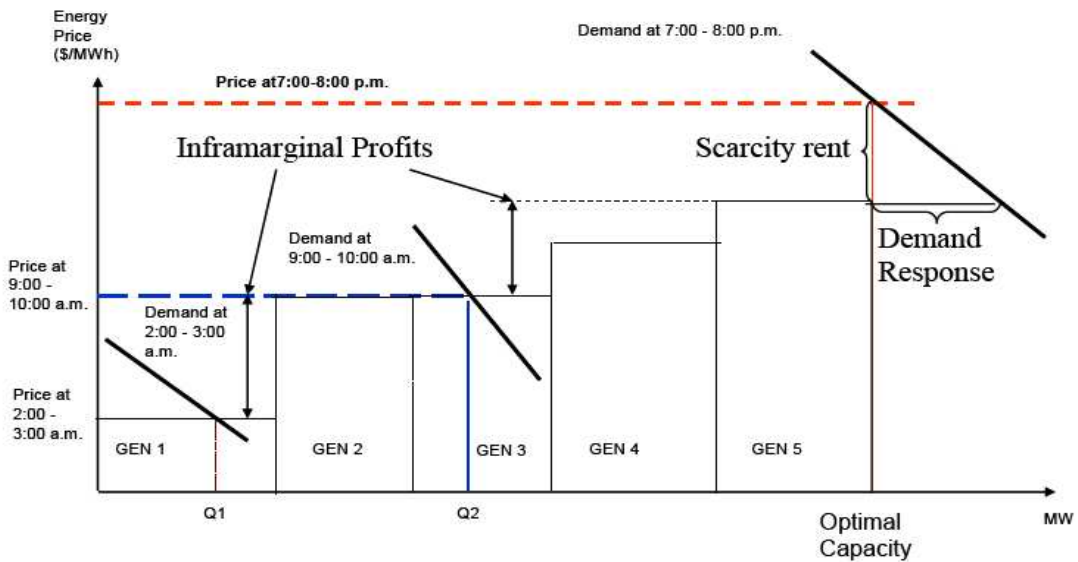
$$MC_{i,t} = \frac{(2aq_{i,t} + b) + \frac{\sum_{t=t_1}^{t_2} (-aq_{i,t}^2 + c) + S_{t_1}}{\sum_{t=t_1}^{t_2} q_i^t}}{1 - (1 - TLF_i)IMF_i}$$

- 위의 산식 분자의 앞의 두 항은 증분비용에 해당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항은 발전기별 비용함수의 상수항의 값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
  - 또한 운전유지비를 고정과 변동으로 나누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운전유지비를 용량요금에 포함하여 산정
- 변동비 수준을 고려할 때 포함하는 항목들의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이점이 발생
  - 첫째, 일반적으로 변동운전유지비의 수준은 매우 낮으므로 우리나라의 SMP 산식과 미국 북동부 시장에서 발전기의 변동비 산식을 단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변동비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한계발전기를 정할 때 단순히 연료비와 발전기의 물리적인 열효율성에만 기초할 것인지, 아니면 변동운전유지비를 포함하여 발전기 운영상의 효율성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의 차이가 존재
    - 기술적 효율성 외에 경영상의 효율성까지 고려하여 한계발전기를 설정하는 것이 한계비용이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여 발전비용을 최소화하는 논리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임.

나) 용량요금 결정방식

- 전통적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계비용에 기초한 가격이론(즉, 에너지단일시장에서의 한계비용에 기초한 가격체계)에 기초하면 인프라마진과 소위 희소성 렌트(scarcity rent)에 의하여 발전설비는 투자비, 기동비, 무부하비용 등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여기서 발전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 가격이 공급시장비용(VOLL)까지 상승할 수 있어야 함.
  - 이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최적 예비력 수준 및 전원구성이 결정
  -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인프라마진과 희소성 렌트 개념을 설명

[부그림 5] 인프라 마진과 희소성 렌트



- 실제로 미국 북동부와 같이 가격입찰에 기초하여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급용량이 부족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매가격 형성이 가능하여 이로부터 발전업자는 고정비를 회수
  - 물론 미국 북동부 시장은 에너지 입찰시장에서 일종의 가격상한제(offer capping)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용량시장에서 입찰을 통해 고정비 회수
  - 가격입찰시장을 운용하지만 용량시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에너지 시

장만 존재하는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공급용량이 부족한 경우 에너지 시장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사례가 존재

□ 반면 우리나라의 CBP시장에서는 입찰가격이 변동비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급등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 현 CBP시장은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한계발전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이 월등하게 좋거나 연료비가 매우 저렴한 발전기를 제외한 한계발전기들은 고정비를 회수하기가 어려운 시장구조

○ 이러한 CBP시장의 구조를 감안하여 2001년 3월 28일에 개최된 제1차 전력시장운영위원회에서 용량요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전력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원수급의 적정성(adequacy), 특히 공급 적정성 확보를 위해 용량요금제도가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용량요금은 발전입찰에 참여한 발전기들의 시간별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보상 기준가격으로서 발전회사의 한계고정비용(Marginal Fixed Cost)을 추정하여 보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용량요금의 지불은 발전회사의 실제 발전량에 관계없이 입찰량, 즉 최대 가용능력 신고량에 의해서 지급

□ 용량요금의 지급단위인 기준용량가격은 연간고정비를 정격용량입찰가능시간으로 나누어 결정

○ 연간고정비는 건설투자비 연금액에 고정운전유지비를 더하여 산정되는데 사실상 고정운전유지비와 변동운전유지비를 나누고 있지 않아 전체 운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위 식에서 건설 투자비 연금액은 건설 투자비에 자본회수계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

○ 연간 입찰 가능 시간은 다음 식과 같이 8,760시간에 발전기 정비율과 고장정지율을 보정한 시간으로 입찰가능시간 = 8,760시간 × (1-예방정비율) × (1-고장정지율)로 산출

- 한편, 단위 가능출력당 건설투자비연금액은 연금화된 연간자본비용을 8,760 시간에 가용률을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
  - 연금화금액(annuity)은 발전소 자본(건설)투자비에 대하여 내용연수 동안 할인율을 기초로 하여 연간 등가액으로 환산한 값으로 연간 자본투자비 회수금액이 됨.
  - 운전유지비는 발전기 운영비용 중 연료비 및 기동비를 제외한 제반 비용을 포함
  - 운전유지비 구성요소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경비, 일반관리비, 공통비 그리고 운전자본에 대한 보수 등이 포함되며, 운전자본에 대한 보수는 투자 자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투입부터 회수까지의 시간지연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지급금액을 지칭
  
-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초기 CBP시장에서는 기저발전기와 일반발전기를 구분하여 용량요금이 차등 지급
  - 여기서 기저발전기는 원자력, 유연탄 및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기들을 지칭하며 일반발전기는 기저발전기 이외의 발전기 즉, 복합, LNG, 중유, 수력 및 양수발전기와 기타 신재생에너지 등이 해당

<부표 3> 단위출력당 기준용량가격(초기 디자인)

구 분		기저발전기	일반발전기
표준발전기		신규석탄화력 (500MW)	울산 제2복합 GT
기준 용량 가격	단위 가능출력당 자본비용 ①	14.47원/kW-h	4.22원/kW-h
	단위 가능출력당 운전유지비 ②	7.02원/kW-h	2.95원/kW-h
	① + ② 용 량 가 격	21.49원/kW-h	7.17원/kW-h

- 2007년 이후 시장 제도개선안에서 에너지 시장가격이 단일 한계가격으로 전환된 이후, 기저발전기들은 에너지 시장가격으로도 고정비의 일부를 회수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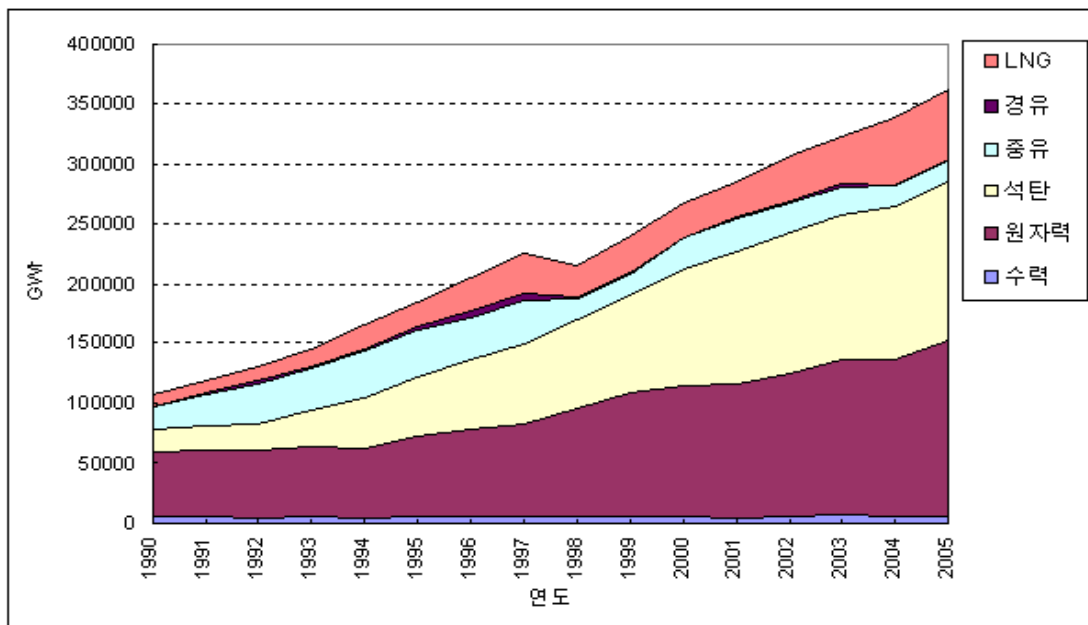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한계발전기의 용량가격은 초기의 7.17원을 조정한 7.46 원에 기초하여 모든 발전기에 동일하게 제공

- 현재 단일 SMP와 단일 용량가격이 제공되므로 발전원별로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원 간 분배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소매요금규제로 인한 한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에는 발전원별로 보정계수를 통해 발전자회사의 이윤을 한전이 회수하고 있고, 일반 민간 발전사업자는 단일 SMP와 단일 용량가격으로 정산

## 2) 전력산업 현황

- 구조개편 전후의 전력생산설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석탄과 원자력의 발전량이 각각 1990년대 초반과 중반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 LNG의 발전량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가
  - 반면 수력은 정체상태, 경유와 중유에 의한 발전량은 감소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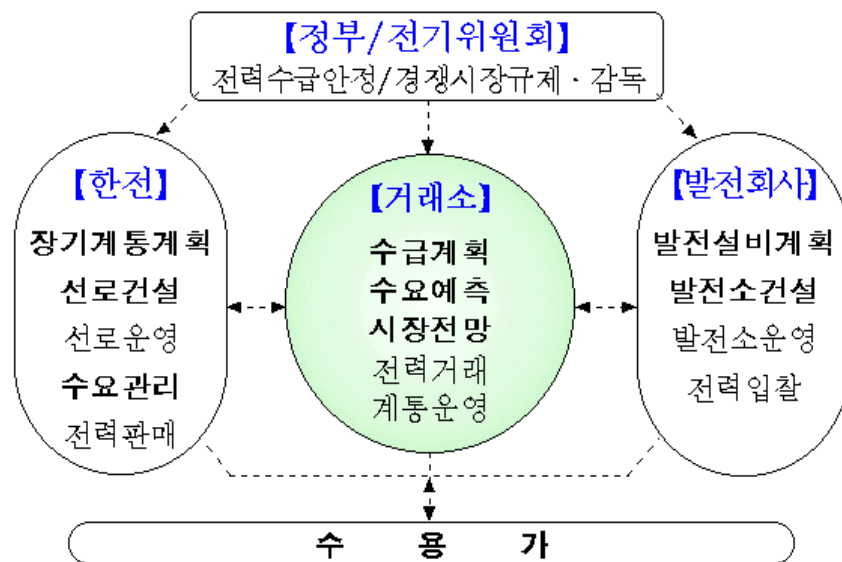
[부그림 6] 연도별 발전량 변화 추이



자료: 『에너지 통계연보』, 2006.

- 발전원별 발전량의 변화는 구조개편 자체로 인한 발전업체들의 유인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간 지속된 정부의 전력수급계획과 전원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분이 더 큼.
  - 경유와 등유발전의 감소는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강화와 유류가격의 변화에 따른 비용절감 때문에 발생
  
- 발전소 건설은 다음 그림과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데 발전회사 측에서 발전소 건설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면, 한전은 장기계통설비와 수요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통합하여 전력거래소에서 수요예측을 통해 수급균형을 이루는 발전소 건설계획을 허가
  - 현 용량요금제도를 통한 발전소 건설 유인제도는 위 수급계획 내 발전소 건설계획 제출단계에서 반영
  - 실제 발전회사가 제시한 발전소 건설계획의 일부만이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의 수급계획에 반영되고 있어 구조개편 이후 발전원별 발전량 변화가 시장의 유인제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 최적전원구성에 비해 LNG 복합발전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요예측의 오차와 수도권 전원 규제가 주원인

[부그림 7] 우리나라 전원수급계획 결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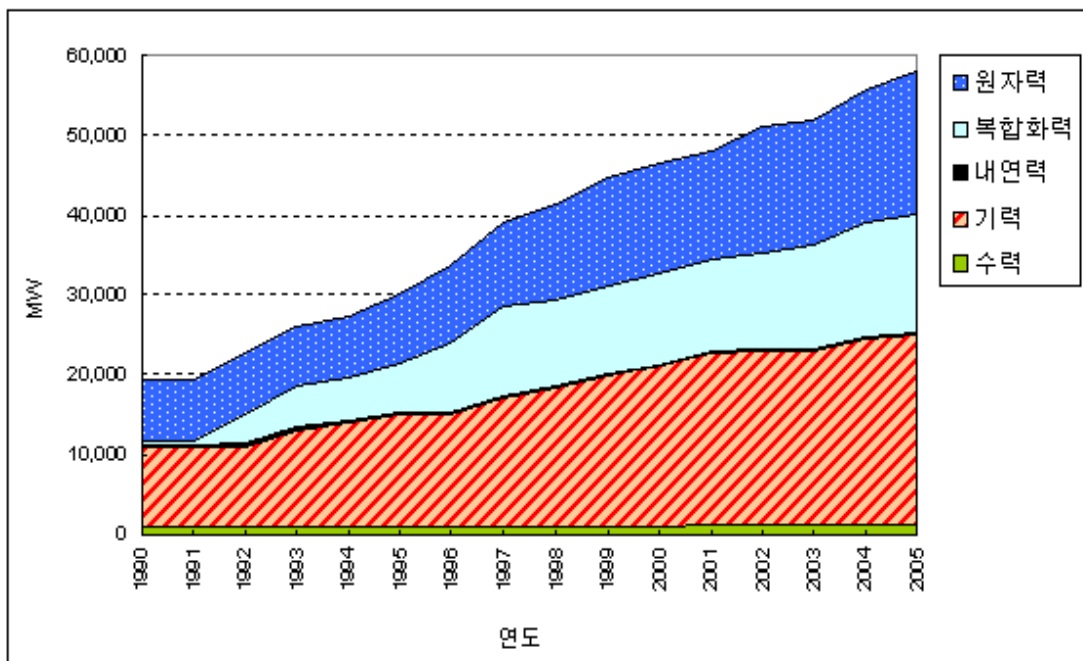


□ 발전설비(발전용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연 8%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이보다는 낮은 연 4%대의 발전설비의 증가율 시현

○ 원자력과 복합화력 및 기력에 의한 발전설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매년 발전설비 규모는 다음 그림과 같음.

- 수력이나 내연력 발전설비의 증가세는 매우 미미
- 복합화력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이미 지적했듯이 대기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LNG를 주원료로 사용함으로써 환경규제의 강화에 대응하고 또 수요예측오차로 인해 최단기에 건설이 가능한 발전기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

[부그림 8] 연도별 발전설비 규모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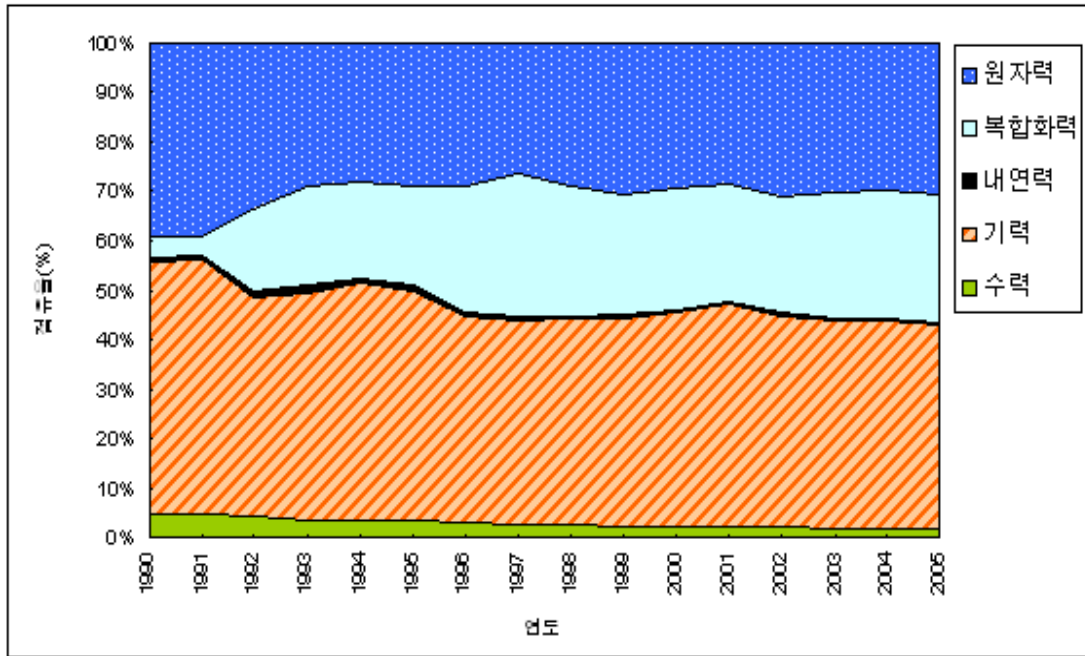
자료: 『에너지 통계연보』, 2006.

□ 발전설비의 증가에 따른 발전원별 발전설비 점유율의 변화

○ 발전설비가 주로 복합화력과 원자력, 기력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복합화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원자력과 기력은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발전원별로 차이

[부그림 9] 연도별 발전설비 점유율의 추이



자료: 『에너지 통계연보』, 2006.

- 최근 2009년 4월 기준으로 전체 발전설비용량은 7,223만kW이며 사업자별로는 한수원이 1,826만kW(25.3%)로 가장 많음.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민자 발전사업자 중에는 포스코(주)가 243만kW로 가장 많으며 케이파워(주)는 989.2 MW의 발전설비를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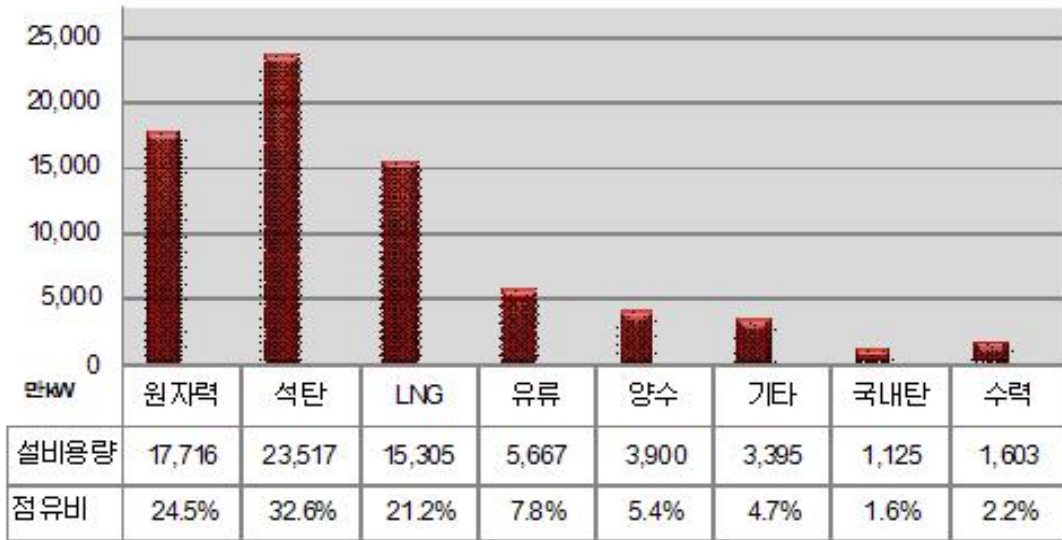
<부표 4> 발전업자별 설비용량 및 점유비율

사업자명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기타
설비용량(만kW)	1,826	894	982	889	878	950	804
점유비(%)	25.3	12.4	13.6	12.3	12.2	13.2	11.1

- 연료별로 살펴보면 원자력은 전체 설비용량의 24.5%, 석탄은 32.6%, LNG는

21.2%를 차지하고 있어 LNG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

[부그림 10] 발전원별 발전설비 비중 (2009년 4월 기준)



- 전력공급능력을 살펴보면 최대전력시 공급능력은 4,644만kW로 공급예비율은 1,031만kW에 달해 19.1%를 차지
  -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는 최대전력 공급능력은 증가하였으나 공급예비율은 다소 감소
  - 2009년 동계기간의 한파로 인해 최대전력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갱신되면서 공급예비율이 더욱 낮아지고 있음.

<부표 5> 전력공급능력

(단위: 만kW, %p)

구분	'08년 4월(4.2(수))	'09년 4월(4.1(수))	전년대비 증감
최대전력	5,279.6	5,406.3	2.4
평균전력	4,546.7	4,644.2	2.1
공급능력	6,395.3	6,437.0	0.7
공급예비력 (예비율, %)	1,115.7 21.1	1,031.0 19.1	(7.6) (2.0)

#### 다. 한전의 주요사업 및 재무상황

-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한전의 주요사업은 전력 관련 전체 산업을 망라한다고 볼 수 있음. 다음의 표는 한전의 2010년 분기보고서에 나타난 한전의 사업영역에 해당
  - 한전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배전관련 사업 및 판매, 연구 및 개발, 해외사업, 정부위탁사업을 모두 주요한 사업영역으로 설정
  - 발전자회사가 발전업무를 수행하고,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자와 도매전력 거래를 매개하는 시장운영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전은 송전망의 보수 및 운영, 배전 및 판매업을 담당하는 주체

#### <부표 6> 한전의 주요사업 영역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제3호 관련 사업에 대한 해외사업
5. 제1호~제4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제5호에 딸린 사업
5.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배전사업을 전담하는 한전의 재무구조나 수익성은 전력 도매시장과 소매가격에 크게 연동
  - 도매시장에서 결정되는 계통한계가격의 수준, 용량요금, 정산금은 한전의 영업비용으로 계상되고, 수용가가 지불하는 전력소매요금은 한전의 주요한 수입원천
- 전력소매요금은 용도별로 달리 책정되는데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일반용으로 구성
  - 몇 차례에 걸친 전력요금의 조정을 통해 종별 차이나 교차보조의 문제가

많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비용에 기초한 요금산정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기초한 요금산정 기조 유지

- 또한 전력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이부제 요금제도로 운영
  - 기본요금은 적정설비 가용성 유지를 위한 설비투자비용과 고정비용 회수를 위한 것으로 주택용은 전력소비의 크기에 따라 차등제가 적용
  - 일반용과 산업용은 계약전력의 크기에 따라 정액요금이 적용
  - 전력량 요금은 실제 전기소비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단기변동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인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제를 적용
  
- 2008년 이후 연료비의 급상승에 따라 도매시장의 가격은 상승한 반면, 소매 요금은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동결되거나 소폭 상승하여 한전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어 2008년에 들어 처음으로 손실이 발생
  - 이러한 손실은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보정계수를 통해 도매시장에서 발전 회사의 이윤을 조정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소매 요금이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
  
- 소매거래를 통한 수입과 도매거래를 통한 전력구매비용에 기초한 한전의 재무구조를 분석해보면 다음 표와 같음.

1) 비연결재무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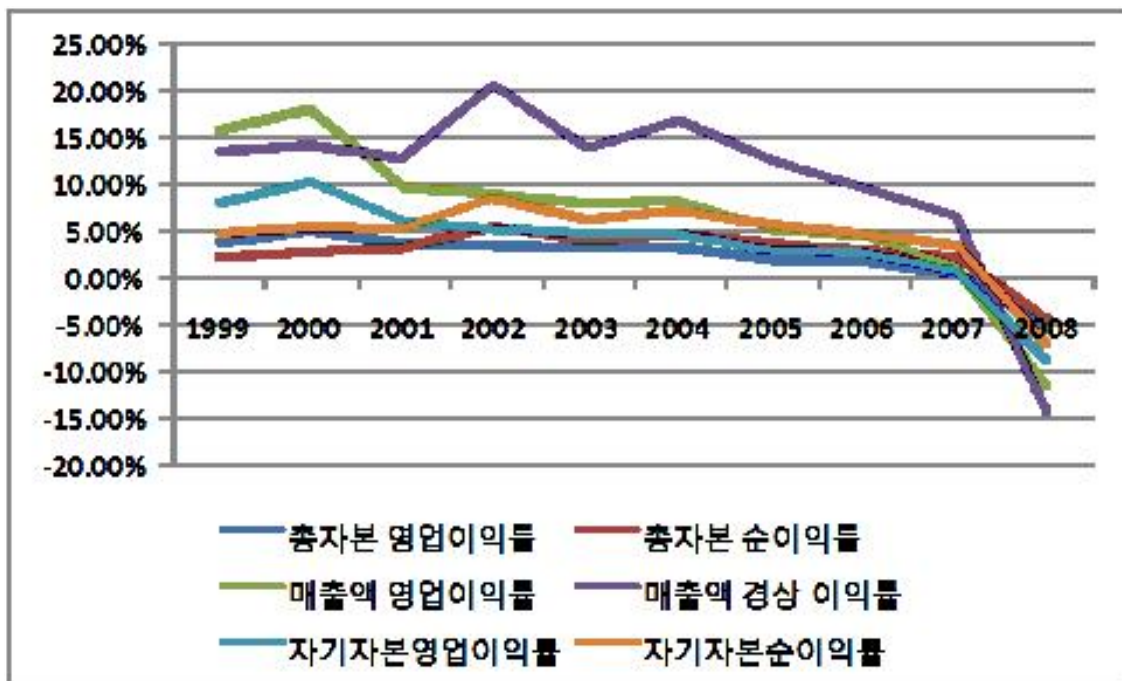
<부표 7> 한전의 재무구조(1999~2008) : 비연결재무제표

(단위: %)

수익성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자본 영업이익률	3.79	5.09	3.85	3.49	3.21	3.35	2.15	1.94	0.50	-5.47
총자본 순이익률	2.29	2.78	3.49	5.67	4.10	4.89	3.97	3.26	2.37	-4.42
매출액 영업이익률	15.68	17.98	9.90	8.95	8.09	8.36	5.28	4.56	1.14	-11.61
매출액 경상이익률	13.61	14.26	12.74	20.56	13.84	16.90	12.67	9.73	6.50	-14.30
자기자본 영업이익률	8.02	10.31	5.95	5.24	4.82	4.90	3.14	2.87	0.75	-8.94
자기자본 순이익률	4.84	5.63	5.39	8.51	6.15	7.15	5.80	4.82	3.54	-7.21
안정성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유동비율	29.04	31.92	54.40	44.78	38.55	47.13	51.48	53.50	52.83	53.72
부채비율	111.50	102.70	54.27	50.02	50.01	46.28	46.02	47.89	49.08	63.34
이자보상비율	257.01	245.48	243.54	299.82	310.65	314.93	249.48	198.99	54.77	-486.36
자기자본비율	47.28	49.33	64.82	66.66	66.66	68.36	68.49	67.62	67.08	61.22
차입금의존도	33.34	31.23	23.03	18.52	17.22	17.61	17.10	16.66	17.16	23.39
성장성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자본 증가율		0.59	-21.12	5.98	4.68	4.33	4.60	3.10	3.32	1.87
경상이익 증가율		23.22	-2.95	71.36	-28.39	28.69	-20.25	-17.51	-28.21	-339.21
순이익 증가율		22.12	-0.80	72.06	-24.31	24.39	-15.00	-15.44	-24.81	-289.65
매출액 증가율		17.64	8.59	6.19	6.41	5.37	6.41	7.43	7.43	8.76
종업원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30.59	54.16	44.61	-25.48	4.73	-17.54	-11.04	-23.66	-211.78
종업원수 증가율		-2.33	-43.66	0.79	2.08	18.03	0.76	0.17	3.02	-0.16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		20.44	92.72	5.36	4.24	-10.73	5.61	7.25	4.28	8.93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증가율		11.01	5.32	54.55	8.05	5.70	11.79	4.89	10.38	8.41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라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에 해당하는 각 지표들을 분석하였는데 우선 수익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수익성은 총자본, 자기자본, 매출액에 대비하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비율로 측정
  - 1999~2008년의 10년간의 수익성을 보면 2004년까지는 대체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으면서도 일정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4년 이후로는 모든 지표가 하향추세를 시현
  - 특히 2008년 들어서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모두 (-)를 나타내어 수익성 관련 지표들도 음(-)의 값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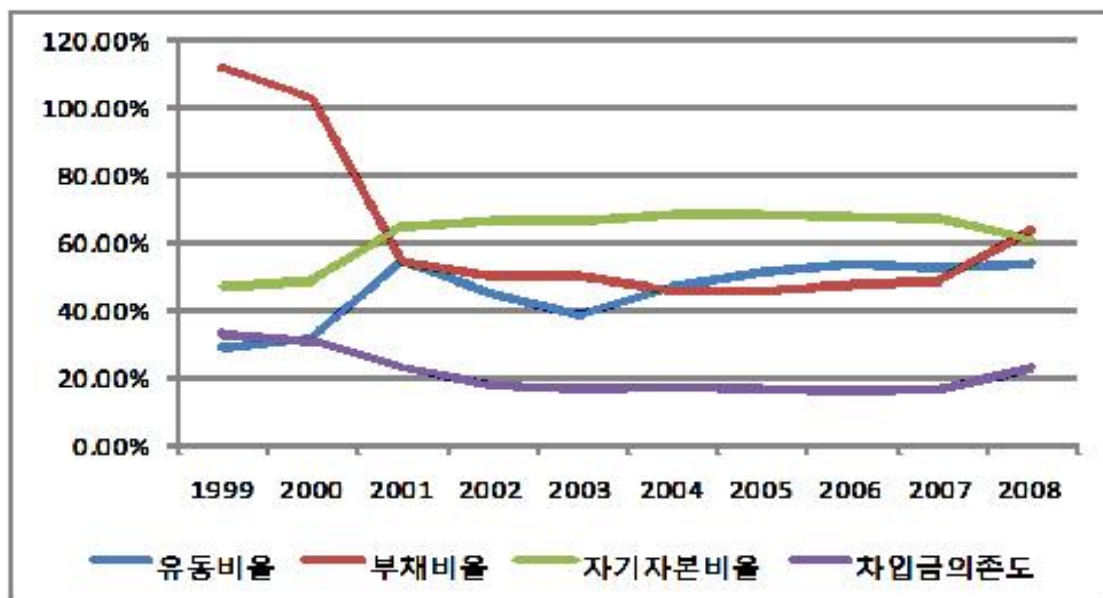
[부그림 11] 한전의 수익성 지표변화 (1999~2008)



-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나 부채비율 등에 기초한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안정적인 추세
  - 2001년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부채비율은 현저히 낮아져 2002년부터는 50% 수준을 유지하다 2008년 들어 63.3%로 다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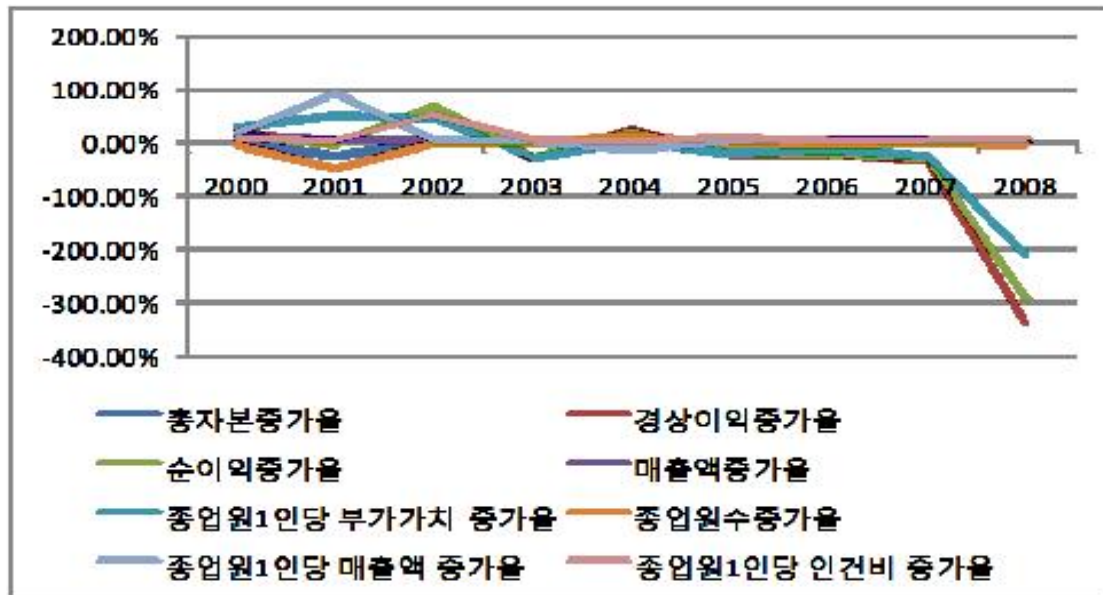
- 자기자본비율은 2001년부터 60% 후반대를 유지하다 2008년 약간 떨어졌고, 반대로 차입금 의존도는 17%대를 유지하다 2008년 들어 23.4%로 다소 증가
- 따라서 안정성 관련 지표들은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임.
- 다만 2008년 들어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안정성 지표들의 수치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해석 가능

[부그림 12] 한전의 안전성 지표 변화 (1999~2008)



- 마지막으로 성장성은 자본증가율, 경상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매출액, 인건비 증가율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확인 가능

[부그림 13] 한전의 성장성 지표 변화 (1999~2008)



- 한전의 성장성은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인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 가능
  - 특히 경상이익, 순이익,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음(-)의 값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증가율이나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증가에 따른 전력판매량의 증가와 공기업의 종업원 수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종업원 수는 2005년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고 2008년에는 종업원 수가 감소
  - 다만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종업원 수는 감소한 반면 인건비 수준은 유지되고 있어 양(+)의 증가율을 유지
  
- 한전의 재무구조는 소매가격의 규제와 공기업의 인원조정, 인건비 조정의 정부원칙에 따라 수익성이나 성장성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안정성은 수익성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

## 2) 연결재무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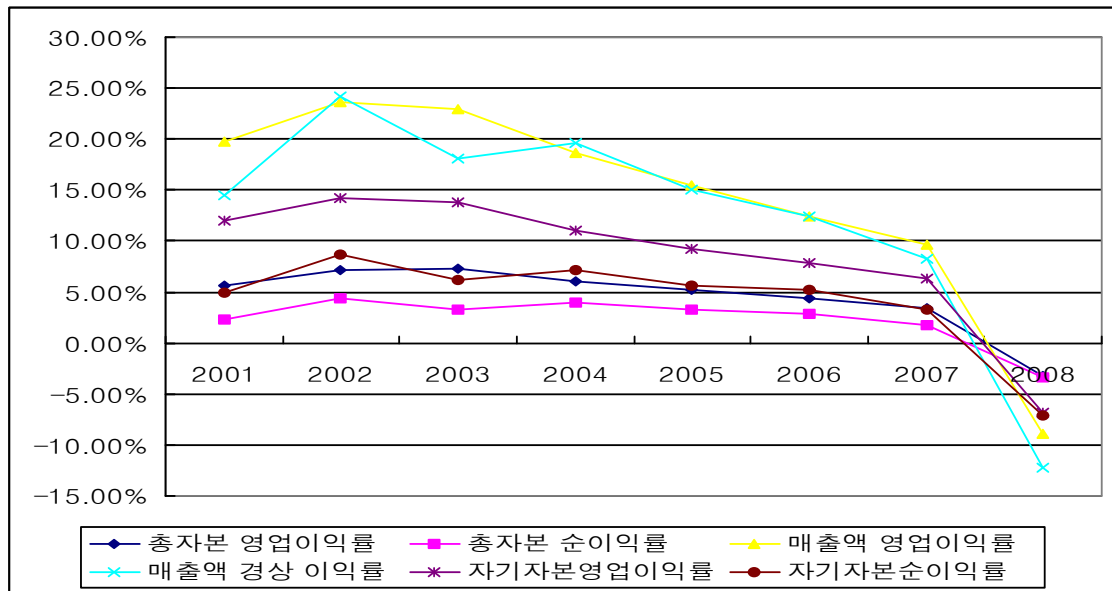
- 위 재무제표 중 2001년 이후의 내용은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분할된 이후 한 전자체만의 수익구조를 살펴본 것으로 발전자회사를 통합한 한전과 자회사 전체의 재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가 필요
- 한전과 자회사를 연결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음.

<부표 8> 한전의 재무구조(1999~2008) : 연결재무제표

(단위: %)

수익성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자본 영업이익률			5.65	7.16	7.28	6.07	5.25	4.38	3.40	-3.17
총자본 순이익률			2.32	4.35	3.27	3.94	3.22	2.87	1.72	-3.35
매출액 영업이익률			19.72	23.62	22.94	18.65	15.41	12.39	9.68	-8.87
매출액 경상 이익률			14.50	24.20	18.05	19.62	15.06	12.37	8.21	-12.18
자기자본영업이익률			12.02	14.19	13.83	11.00	9.26	7.85	6.37	-6.78
자기자본순이익률			4.94	8.62	6.21	7.15	5.69	5.15	3.22	-7.16
안정성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유동비율			57.87	48.63	60.00	72.26	98.19	101.98	99.97	98.13
부채비율			112.65	98.28	89.85	81.40	76.53	79.10	87.34	113.69
이자보상비율			331.52	496.52	629.57	605.48	609.97	484.40	382.80	-279.59
자기자본비율			47.02	50.43	52.67	55.13	56.65	55.83	53.38	46.80
차입금의존도			32.13	25.35	22.09	20.77	21.10	19.42	19.36	26.95
성장성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자본증가율				-0.07	1.72	2.69	1.47	3.61	7.09	6.35
경상이익증가율				76.38	-20.52	14.35	-18.47	-11.55	-29.38	-260.60
순이익증가율				87.18	-23.49	23.78	-17.11	-7.56	-35.91	-307.18
매출액증가율				5.64	6.59	5.19	6.22	7.72	6.31	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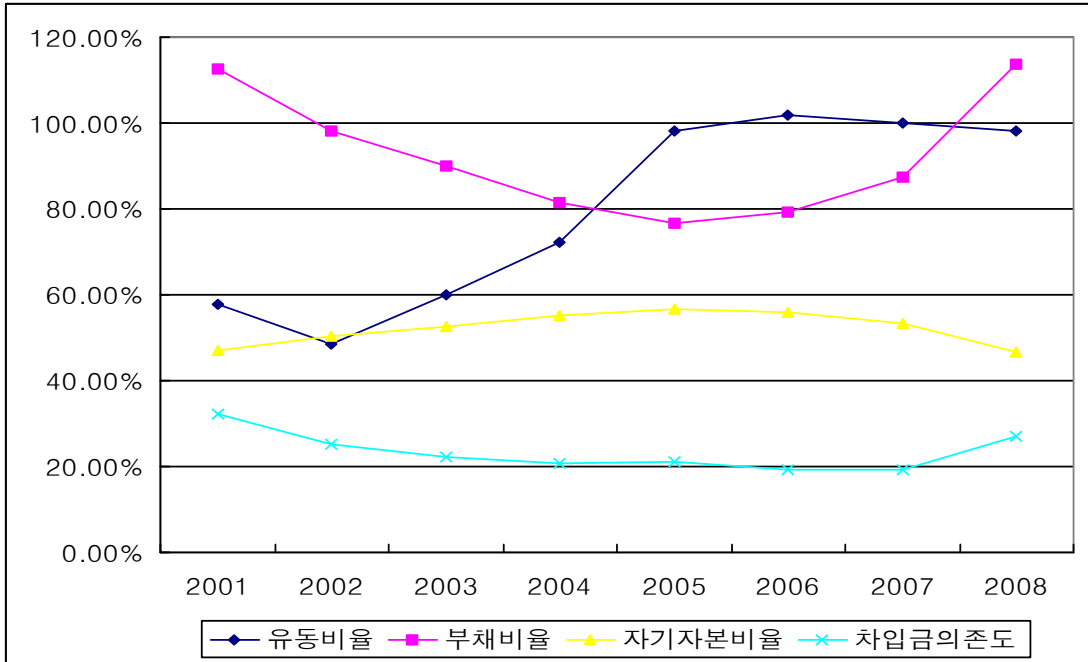
[부그림 14] 한전의 수익성 지표변화 (2001~2008) : 연결재무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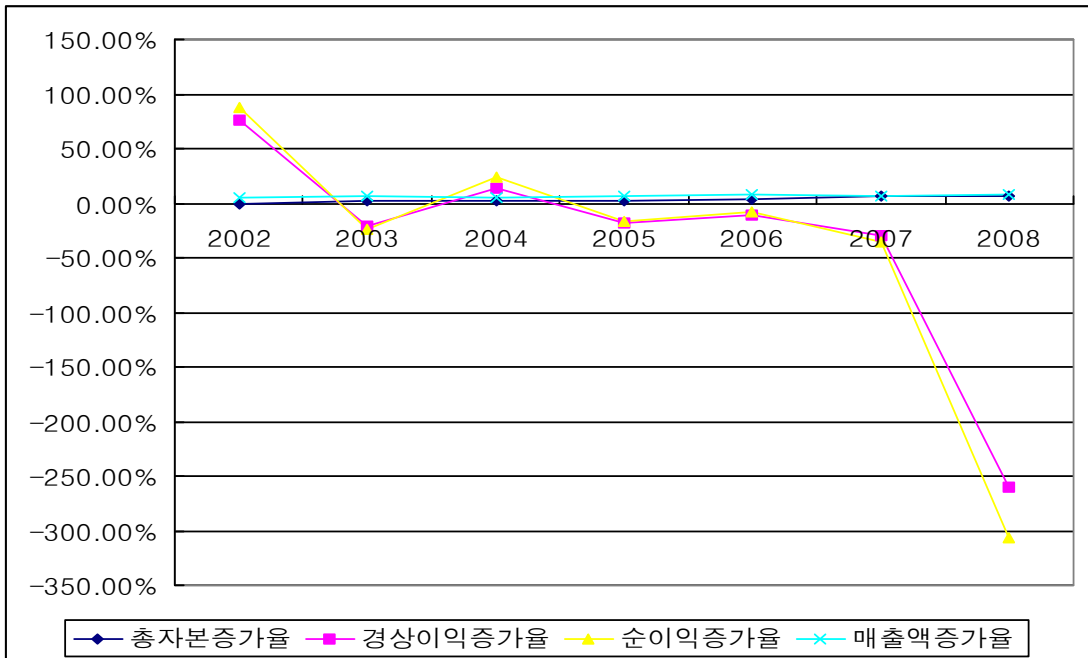
-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한전 전체의 수익성은 한전만의 수익성에 비해서는 좋은 편임.
  - 2008년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발전자회사와 기타 자회사를 포함한 한전의 영업실적은 한전만의 실적보다는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
  
- 한전의 안정성의 지표들은 그와는 반대
  - 대규모의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자회사들의 부채규모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지표들은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통합하여 살펴볼 경우 한전만의 지표보다 안정성은 낮은 것
  - 자회사를 포함한 한전의 성장성 지표들은 한전 자체만의 지표들과 유사하거나 약간 양호한 수준
  
- 결론적으로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한전 전체의 수익구조는 발전을 제외한 한전의 수익성보다는 다소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안정성은 발전자회사의 부채규모로 인해 자회사를 포함할 경우 더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

성은 자회사를 포함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간에 큰 차이가 없음.

[부그림 15] 한전의 안전성 지표변화 (2001-2008) : 연결재무제표



[부그림 16] 한전의 성장성 지표변화 (2002~2008) : 연결재무제표



## 2. 한국가스공사

### 가. 가스산업의 역사와 관련 법령

#### 1) 가스산업의 역사

-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역사는 19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 경성전기에서 석탄가스를 제조하여 취사용 연료를 공급하였다는 기록이 존재
  - 그러나 해방 이후 가스 공급은 중단되었고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정유공장이 준공되고 LPG가 도입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
  - 1964년 유공 울산정유공장이 설립되면서 LPG가 대량생산되었고 이를 주로 취사용으로 공급
  - 1970년대 초까지 산업용과 취사용으로 사용되었으나 국내수요가 적어 주로 해외에 수출
  
- 1972년 도시가스사업이 출발
  - 서울시가 나프타 분해가스와 LPG를 배관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업이 시작
  - 1974년 서울시가 택시사업에 LPG 도입
  - 1978년 도시가스사업법을 제정하고 1980년 민간주체인 대한도시가스가 설립
  
-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해외로부터 가스 도입을 전담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출범
  - 정부가 나서서 가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계약체결
    - 인도네시아와 1981년 장기도입계약 원칙적 합의
    - 1983년에 1986~2006년까지 20년간 장기계약을 한국전력공사 주체로 체결

- LNG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도입을 전담 추진
  - 우선 발전용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가정용으로 공급
  - 1987년에 평택에 LNG 인수기지를 설립하고 배관망이 완성되어 수도권에 천연가스 공급 시작
  - 한국가스공사가 인수기지과 배관망을 관리
- 1982년 4월 30일 LNG 추진위원회는 가스사업을 도매와 소매사업으로 구분
- 도매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하여 가스공급계약 및 주배관을 관리하면서 일반도시가스사와 대량 수요처인 한전의 발전자회사 및 민간발전자회사에 천연가스를 공급
  - 소매사업은 권역별 민간독점으로 형성된 도시가스회사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며 안전을 관리

## 2) 가스사업 관련 법안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
  - 한국가스공사는 이 법에 근거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
- 공기업 경영구조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한국가스공사는 적용대상기업으로 이 법이 대상기업의 조직·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한국가스공사법

- 한국가스공사법은 한국가스공사의 설립근거법이 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음.
- 동법에서는 가스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제11조), 투·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6조에서는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계획 등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는 범위도 규정
- 천연가스의 공급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 제16조의 3에서는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는 등의 가스산업 지원에 관한 내용 포함

□ 도시가스사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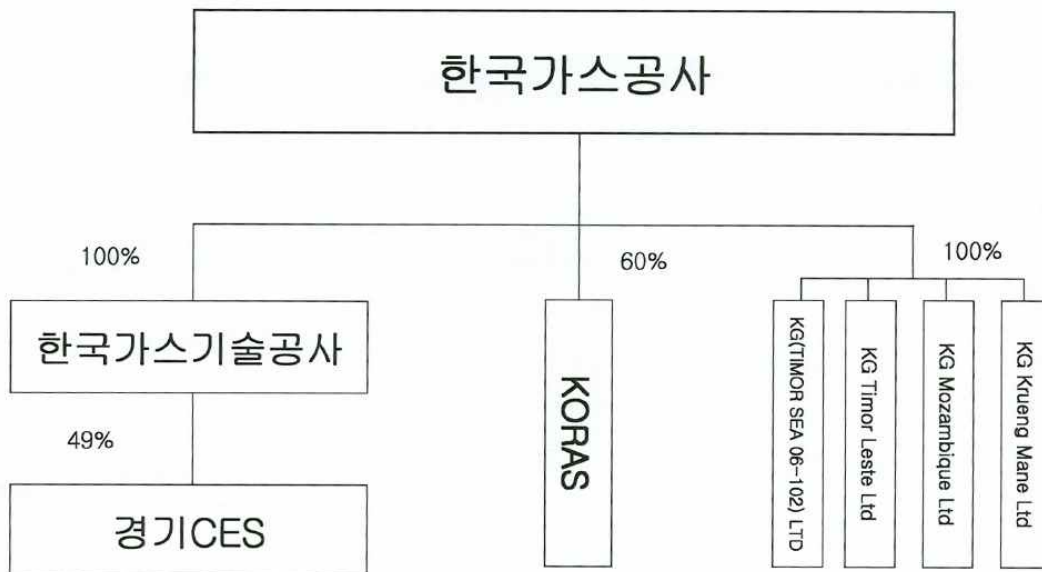
-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
- 사업자의 자격요건, 의무사항 등 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가스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안정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부과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 포함

3) 가스산업 관련 기관

□ 한국가스공사

- 가스인수기지과 배관망을 관리하며 가스의 도입 및 공급 담당
- 한국가스공사 소속 회사 (15개) : 한국가스공사, (주)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CES(주), SAKOTEC, KORAS, KG(TIMOR SEA 06-102) LTD, KG Timor Leste Ltd, KG Mozambique Ltd, KG Krueng Mane Ltd, KOMAN ENERGY FZCO, KOGAMEX Investment Manzanillo B.V., KOGAS AUSTRALIA PTY LTD, KOMEX-GAS S.de R.L.de C.V.,Kogas Vostok Limited Liability Company, KOGAS Iraq BV
- 한국가스공사와 주요 소속회사의 계통도는 다음과 같음.

[부그림 17] 한국가스공사 계통도



□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 지역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천연가스 혹은 제조가스(LPG air)를 공급하고 가스공급관련 시설을 설치하며 안전관리를 담당
- 지역별 민간독점체제로 32개의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존재

나. 가스산업 현황

<부표 9> 천연가스 공급량 증가 추세

(단위: 천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증가율 (1987~2009)
도시가스	11,979 (7.0)	12,504 (4.4)	14,033 (12.2)	13,957 (-0.5)	14,449 (3.5)	15,316 (6.0)	15,510 (1.3)	27.4%
발전용	6,468 (-0.6)	8,818 (36.3)	8,821 (0.03)	9,543 (8.2)	11,011 (15.4)	11,029 (0.2)	9,134 (-17.2)	8.4%
계	18,447 (4.2)	21,322 (15.6)	22,854 (7.2)	23,500 (2.8)	25,460 (8.3)	26,345 (3.5)	24,644 (-6.5)	13.2%

주: ( )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며 단위는 %임.

- 1987년 천연가스 공급 개시 후 판매는 연평균 13.2%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
  -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는 공급 초기 천연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천연가스 가격 최소화 정책과 연료 선진화를 위한 천연가스 공급권역 확대,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고급에너지 선호경향에 의한 수요자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천연가스 보급 확대 시책, 지속적인 청정연료 의무사용 대상 확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연평균 27.4%의 증가세를 시현
  - 발전용 판매는 수도권지역 발전소에 대한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및 수도권지역 천연가스 발전소 신·증설 등으로 연평균 8.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 들어서는 그 공급량이 크게 감소
  - 특히 발전용 판매는 발전용 수요가 경제급전원칙의 심화 및 원자력 및 석탄 등 기저발전기 준공 등으로 수요증가율이 연도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상 2007~2022년간 발전용 LNG 수요는 연평균 증가율이 -3.0% 수준으로 전망
  
- 가스사업은 계절간 수요격차가 매우 심한 사업
  - 동절기 난방수요 집중으로 인해 계절간 수요격차는 3배 이상
    - 산업용, 수송용은 연중 수요가 균일한 편
    - 난방에 필요한 열병합은 동기에 집중

- 수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냉방용 수요개발이 필요
- 발전용 수요는 심야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동절기 수요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중유발전소와의 단가경쟁으로 이용률이 불규칙적

<부표 10> 계절별 수요격차

(단위: 배)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요격차	3.9	4.4	3.6	3.3	3.3	3.4

□ 위와 같은 수요격차는 설비이용률 저하, 공급 및 저장설비 확충의 필요성을 확대

- 도시가스의 용도별 수요는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주택용 및 업무용 난방이 총수요의 51.5%를 차지

<부표 11> 도시가스의 용도별 수요추이

(단위: 백만m<sup>3</sup>)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용 (업무난방용포함)	7,332(59)	8,192(58.4)	7,857(56.3)	7,818(54.1)	7,962(52.0)	7,985(51.5)
일반용	1,112(9)	1,281(9.1)	1,322(9.5)	1,386(9.6)	1,412(9.2)	1,413(9.1)
냉방용	242(2)	268(1.9)	264(1.9)	298(2.1)	276(1.8)	270(1.7)
산업용	3,545(28)	3,872(27.6)	4,093(29.3)	4,483(31.0)	5,146(33.6)	5,332(34.4)
열병합 1.2 및 열전용설비용	273(2)	420(3.0)	419(3.0)	464(3.2)	520(3.4)	510(3.3)
계	12,504(100)	14,033(100)	13,957(100)	14,449(100)	15,316(100)	15,510(100)

주: ( ) 안은 비중임.

□ 천연가스의 수요는 2002년 도시가스용 공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요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도시가스용:발전용 비율이 6:4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

- 현재 천연가스 도매사업은 한국가스공사 독점사업이나 자가소비용 LNG의 경우 일정 설비요건을 충족하면 직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발전사업자나 대량수요처에서 직도입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
  - 정부에서 2008년 발표한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이 실행되는 경우 천연가스 도매시장에서 일부 시장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부표 12> 가스공급 시장점유율 (2009년 기준)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K-Power	합 계
95.1%	2.0%	2.9%	100%

#### 다. 가스공사의 주요 사업 및 재무현황

- 가스공사의 주요사업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천연가스의 도입 및 판매

<부표 13> 주요판매 제품의 구성 및 실적 (2008년)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출액(비율)
천연가스제조판매	자사제품	도시가스용	주택용, 업무난방용, 일반용, 냉방용, 산업용(수송용), 열병합용1, 열병합용2, 열전용보일러	12,476,077 (64%)
		발전용	발전소의 발전연료	6,745,902 (35%)
	기타매출	기타 천연가스 및 설비공동이용료	직공급, 이동충전 설비공동이용, 시험용매출, LNG선 시운전 등	155,430 (0.8%)

- 가스공사에서 취급하는 발전용 연료와 도시가스용 연료의 가격추이
  - 도시가스용 연료비는 1998년부터 유가 및 환율변동폭을 반영하여 3개월 단위로 연료비 연동제가 실시되어 2002년부터 2개월 단위로 조정

- 그러나 2008년부터 서민물가안정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유보되고 있으며 2008년 11월, 200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
- 2010년 3분기부터는 다시 연료비 연동제를 실행할 계획
- 발전용 연료비는 매월 도입추정치로 연료비를 산정하여 연말에 정산하고 있어 도입시점과 정산시점의 시차가 발생
  - 이는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전력생산 발전기의 가격정산에도 영향 미침.

<부표 14> 도시가스용 가격변동 추이

(단위: 원/m<sup>3</sup>)

구 분		'07.1	'07.3	'07.5	'07.7	'07.9	'07.11	'08.1	'08.7	'08.9	'08.11	'08.12	'09.3	'09.6.27
주택 난방 용	주택용	532.0	517.9	540.6	557.1	597.5	613.75	586.9	601.5	601.55	601.55	617.94	632.5	667.24
	업무 난방	0	4	5	2	9		4	5		654.55	654.55	654.5	719.63
일반용		480.8	466.8	489.5	506.0	546.4	562.63	545.9	545.9	545.92	545.92	598.92	598.9	661.22
산업용		462.9	448.8	417.5	488.0	528.5	544.69	526.6	526.6	526.63	526.63	579.63	579.6	638.75

<부표 15> 발전연료용 가격변동 추이

(단위: 원/m<sup>3</sup>)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27기	762.32	718.92	618.07	487.10	424.65	506.96	476.79	531.36	620.72	-	-	-
제26기	572.30	609.98	608.97	658.50	698.82	721.48	769.97	791.58	900.02	940.96	1,007.7	1,002.5
제25기	495.89	482.46	475.90	449.04	430.18	439.28	455.14	464.34	497.67	482.75	501.37	572.99
제24기	449.73	453.13	474.34	421.11	441.27	457.60	469.47	491.31	517.72	506.84	488.55	470.39
제23기	355.71	333.63	358.19	345.73	353.67	364.72	374.19	396.73	439.24	428.89	452.81	447.43

□ 가스공사의 생산설비용량은 하역설비, LNG 탱크, 기화설비의 기화능력과 송출설비의 송출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평택, 인천, 통영 기지별 생산설비 실

적은 다음과 같음.

- 전체 지역의 설비를 모두 합할 경우 2009년 현재 시간당 9,006톤의 천연 가스 생산 가능

<부표 16> 기지별 생산설비 추이

구분		제27기 3분기 (‘09. 1. 1 ~ ‘09.9.30)	제26기 (‘08. 1. 1 ~ ‘08.12.31)	제25기 (‘07. 1. 1 ~ ‘07.12.31)
하역 설비	평택	12만7천톤급 1선좌 7만5천톤급 1선좌	12만7천톤급 1선좌 7만5천톤급 1선좌	12만7천톤급 1선좌 7만5천톤급 1선좌
	인천	12만7천톤급 1선좌 7만5천톤급 1선좌	12만7천톤급 1선좌 7만5천톤급 1선좌	12만7천톤급 1선좌 7만5천톤급 1선좌
	통영	7만5천톤급 1선좌	7만5천톤급 1선좌	7만5천톤급 1선좌
	계	12만7천톤급 2선좌 7만5천톤급 3선좌	12만7천톤급 2선좌 7만5천톤급 3선좌	12만7천톤급 2선좌 7만5천톤급 3선좌
LNG 탱크	평택	10만kℓ급 10기 14만kℓ급 4기	10만kℓ급 10기 14만kℓ급 4기	10만kℓ급 10기 14만kℓ급 2기
	인천	10만kℓ급 10기 14만kℓ급 2기 20만kℓ급 8기	10만kℓ급 10기 14만kℓ급 2기 20만kℓ급 7기	10만kℓ급 10기 14만kℓ급 2기 20만kℓ급 6기
	통영	14만kℓ급 12기	14만kℓ급 12기	14만kℓ급 10기
	계	10만kℓ급 20기 14만kℓ급 18기 20만kℓ급 8기	10만kℓ급 20기 14만kℓ급 18기 20만kℓ급 7기	10만kℓ급 20기 14만kℓ급 14기 20만kℓ급 6기
기화 설비	평택	- 해수식기화기(ORV) 저압 : 90톤/시간 3기 고압 : 180톤/시간 12기 - 연소식기화기(SMV) 고압 : 68톤/시간 2기 90톤/시간 10기 120톤/시간 3기	- 해수식기화기(ORV) 저압 : 90톤/시간 3기 고압 : 180톤/시간 12기 - 연소식기화기(SMV) 고압 : 68톤/시간 2기 90톤/시간 10기 120톤/시간 3기	- 해수식기화기(ORV) 저압 : 90톤/시간 3기 고압 : 180톤/시간 11기 - 연소식기화기(SMV) 고압 : 68톤/시간 2기 90톤/시간 10기 120톤/시간 3기
	인천	- 해수식기화기(ORV) 고압 : 180톤/시간 9기 - 연소식기화기(SMV) 고압 : 90톤/시간 21기 120톤/시간 3기	- 해수식기화기(ORV) 고압 : 180톤/시간 9기 - 연소식기화기(SMV) 고압 : 90톤/시간 21기 120톤/시간 3기	- 해수식기화기(ORV) 고압 : 180톤/시간 8기 - 연소식기화기(SMV) 고압 : 90톤/시간 21기 120톤/시간 3기
	통영	- 해수식기화기(ORV)	- 해수식기화기(ORV)	- 해수식기화기(ORV)

<부표 17> 기지별 생산설비 추이(계속)

		고압 : 180톤/시간 8기 - 연소식기화기(SMV) 고압 : 90톤/시간 3기	고압 : 180톤/시간 8기 - 연소식기화기(SMV) 고압 : 90톤/시간 3기	고압 : 180톤/시간 7기 - 연소식기화기(SMV) 고압 : 90톤/시간 3기
	계	- 해수식기화기(ORV) 저압 : 90톤/시간 3기 고압 : 180톤/시간 29기 - 연소식기화기(SMV) 고압 : 68톤/시간 2기 90톤/시간 34기 120톤/시간 6기	- 해수식기화기(ORV) 저압 : 90톤/시간 3기 고압 : 180톤/시간 29기 - 연소식기화기(SMV) 고압 : 68톤/시간 2기 90톤/시간 34기 120톤/시간 6기	- 해수식기화기(ORV) 저압 : 90톤/시간 3기 고압 : 180톤/시간 26기 - 연소식기화기(SMV) 고압 : 68톤/시간 2기 90톤/시간 34기 120톤/시간 6기
송출 설비	평택	-1차펌프:150톤/시간 32기 -2차펌프:80톤/시간 6기 110톤/시간 30기	-1차펌프:150톤/시간 32기 -2차펌프:80톤/시간 6기 110톤/시간 30기	-1차펌프:150톤/시간 28기 -2차펌프:80톤/시간 6기 110톤/시간 28기
	인천	-1차펌프:150톤/시간 52기 -2차펌프:110톤/시간 34기	-1차펌프:150톤/시간 49기 -2차펌프:110톤/시간 34기	-1차펌프:150톤/시간 46기 -2차펌프:110톤/시간 34기
	통영	-1차펌프:150톤/시간 27기 -2차펌프:110톤/시간 18기	-1차펌프:150톤/시간 27기 -2차펌프:110톤/시간 18기	-1차펌프:150톤/시간 23기 -2차펌프:110톤/시간 16기
	계	-1차펌프:150톤/시간 111기- 2차펌프:80톤/시간 6기 110톤/시간 82기	-1차펌프:150톤/시간 108기 -2차펌프:80톤/시간 6기 110톤/시간 82기	-1차펌프:150톤/시간 97기 -2차펌프:80톤/시간 6기 110톤/시간 78기
최대 생산 용량	평택	3,556톤/시간	3,556톤/시간	3,376톤/시간
	인천	3,740톤/시간	3,740톤/시간	3,690톤/시간
	통영	1,710톤/시간	1,710톤/시간	1,530톤/시간
	계	9,006톤/시간	9,006톤/시간	8,596톤/시간

-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을 크게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측면에서 분석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이용하는 재무지표들을 사용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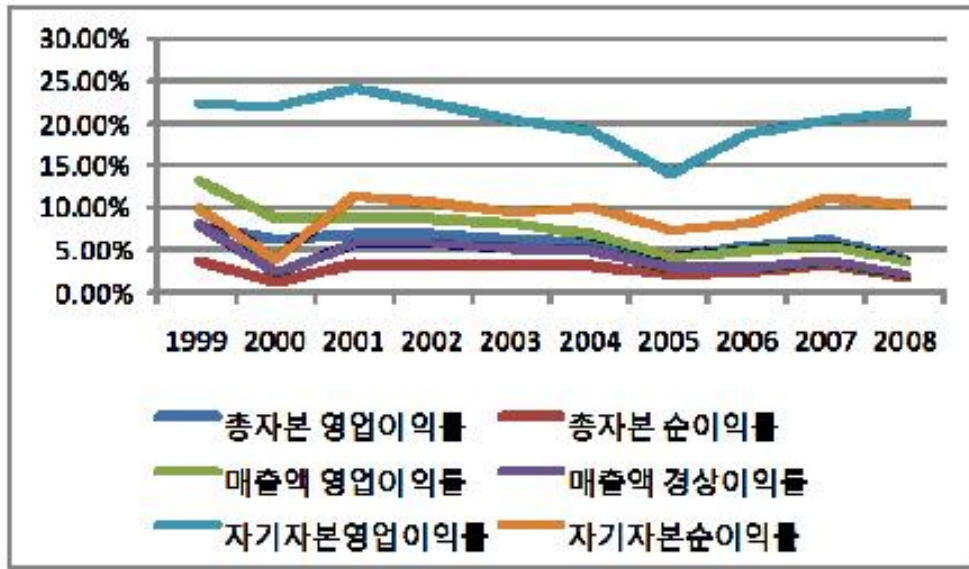
<부표 18>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1999~2008)

(단위: %)

수익성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자본 영업이익률	7.85	6.30	6.97	6.80	6.40	6.12	4.20	5.43	6.24	3.99
총자본 순이익률	3.57	1.12	3.26	3.20	2.99	3.20	2.18	2.38	3.36	1.91
매출액 영업이익률	13.26	8.66	8.78	8.72	8.29	6.75	4.29	5.11	5.47	3.75
매출액 경상 이익률	8.23	2.41	5.90	5.88	5.28	4.87	2.91	2.77	3.69	2.16
자기자본영업이익률	22.34	22.12	24.18	22.44	20.42	19.17	14.17	18.88	20.48	21.40
자기자본순이익률	10.16	3.95	11.31	10.56	9.52	10.03	7.36	8.28	11.02	10.23
안정성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유동비율	90.70	106.99	112.73	105.37	125.18	119.58	104.78	124.57	151.70	141.76
부채비율	184.68	251.08	246.72	230.03	219.06	213.21	237.87	247.78	228.04	436.61
이자보상비율	239.74	178.47	248.11	263.74	254.12	262.99	209.47	224.60	260.94	199.33
자기자본비율	35.13	28.48	28.84	30.30	31.34	31.93	29.60	28.75	30.48	18.64
차입금의존도	50.91	55.98	56.83	53.33	54.38	53.18	56.10	55.08	50.32	58.87
성장성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자본증가율		19.82	8.29	2.44	3.61	4.48	12.15	8.47	2.92	74.38
경상이익증가율		-56.86	189.47	0.22	-7.84	13.06	-27.58	12.01	47.19	-4.83
순이익증가율		-62.26	214.30	0.49	-3.36	12.05	-23.72	18.63	45.23	-1.07
매출액증가율		47.28	18.21	0.64	2.56	22.71	20.97	17.76	10.62	62.37
종업원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17.39	54.40	-4.06	-4.21	-3.02	-15.38	15.92	18.90	10.58
종업원수증가율		-0.13	-0.59	2.91	1.56	9.64	-0.66	1.07	2.93	-0.11
종업원1인당 매출액 증가율		47.47	18.91	-2.21	0.99	11.92	21.77	16.51	7.47	62.54
종업원1인당 인건비 증가율		-0.51	35.12	14.82	-6.43	16.32	12.03	2.44	2.17	1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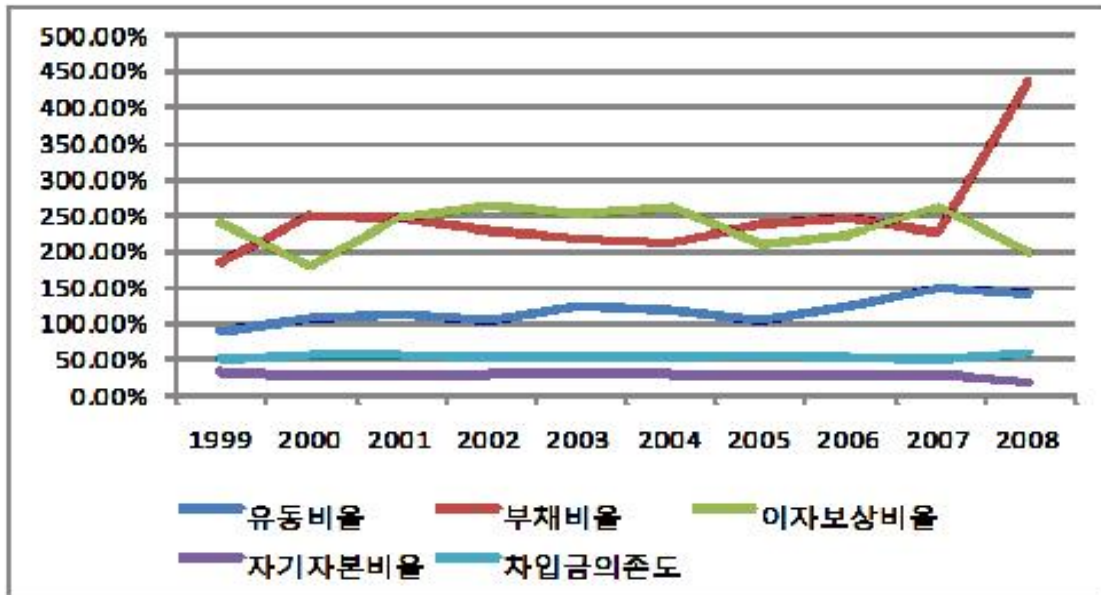
- 수익성은 대부분의 지표가 유사한 시계열적 특성
  - 수익성 관련 지표들은 2001년 이후 하향세를 유지하다가 2005년에 가장 최저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다소 회복

[부그림 18] 가스공사의 수익성 지표변화 (1999~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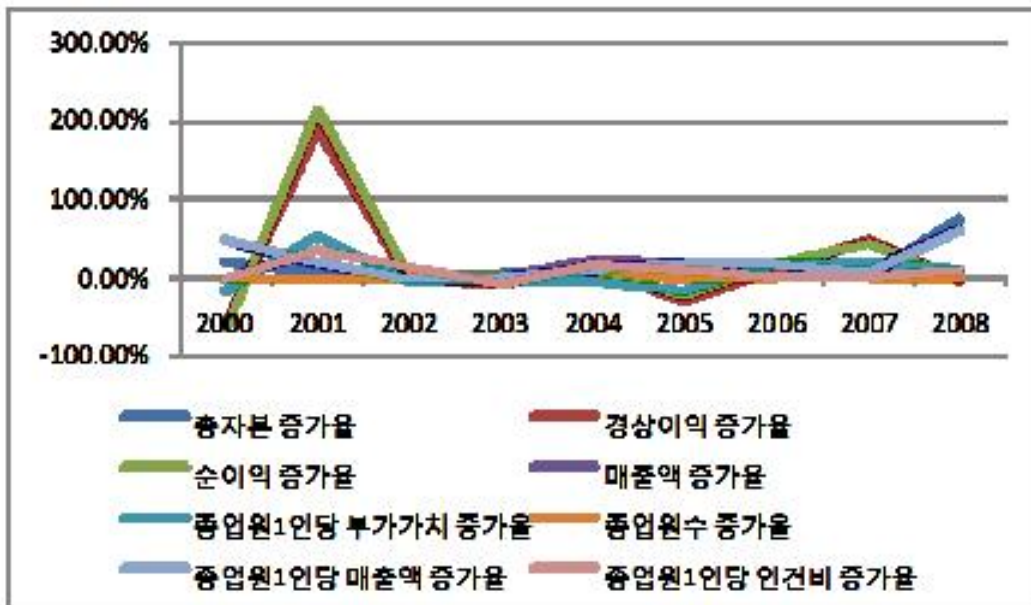
- 가스공사의 안정성 관련 지표들은 최근 들어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
  - 특히 부채비율은 2007년의 228%에서 436.6%로 크게 상승
  - 이에 따라 차입금 의존도도 증가

[부그림 19] 가스공사의 안정성 지표변화 (1999~2008)



□ 성장성 관련 지표들은 2001년 이후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표별로 다소 등락

[부그림 20] 가스공사의 성장성 지표변화 (1999~2008)



## 라. 향후 시장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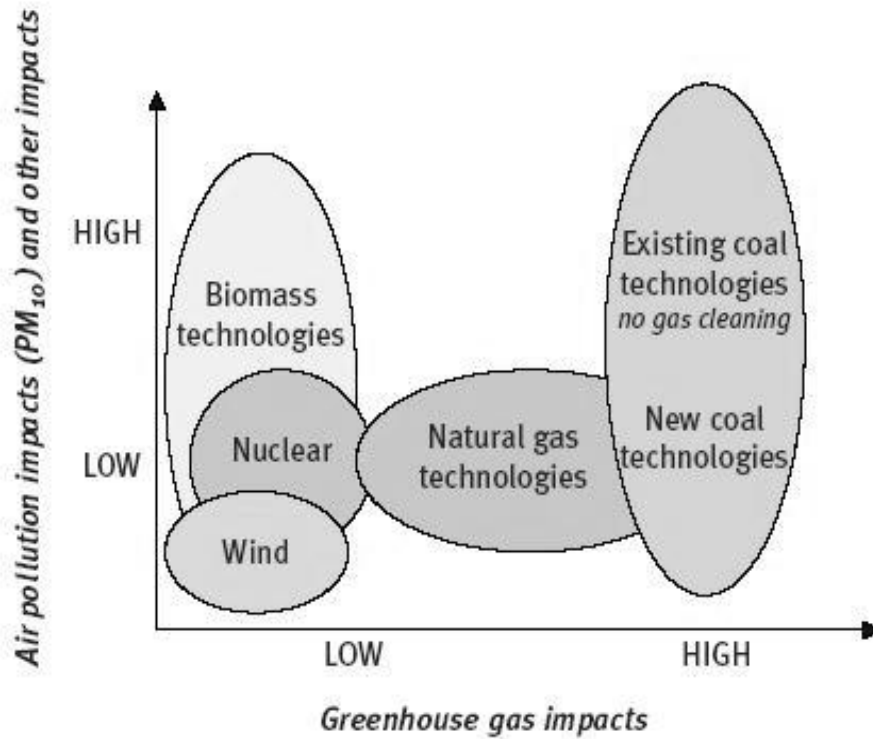
### 1) 장기적 시장전망

- 향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으로 인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998년 기후협약 당시 당사국 회의(COP3)에서 선진공업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8년~12년 사이에 1990년 배출수준의 평균 5.2%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
  -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999년 8월에 발표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의하면 1차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에서 2010년 에너지 소비는 1990년의 2.8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비화석연료의 사용 확대(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수력 등), 에너지 효율향상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 화석연료 중 청정연료 사용의 확대가 필요
  - 획기적인 기술혁신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화석연료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확대 불가피

<부표 19> 1차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

	1990	2000	2010	2020
1차에너지수요(백만toe )	93.2	193.7	260.2	309.1
CO <sub>2</sub> 배출전망(백만TC)	65.2	123.7	164.4	191.1

[부그림 21] 발전연료별 온실가스 배출수준



## 2) 국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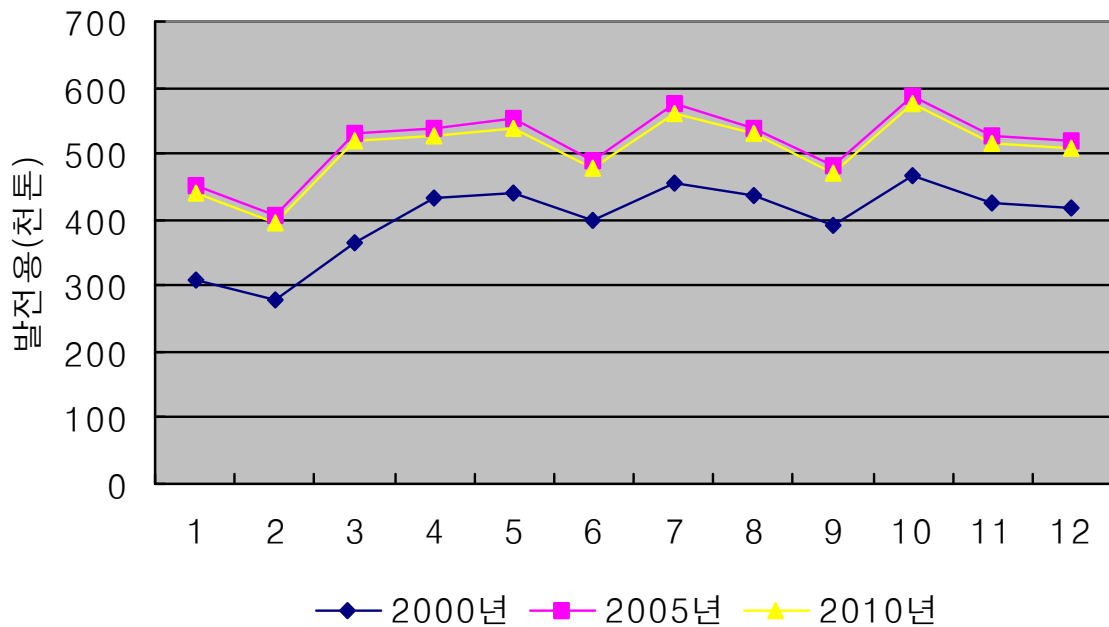
-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스산업의 구조개편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국내사업은 기존의 발전연료 공급부문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기저발전기의 비중이 증가하면 발전연료부문의 사업성은 정체될 가능성
  - 기존의 발전소에 대한 가스공사의 LNG 공급은 20년의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큰 변화없이 지속될 전망
  - 따라서 발전용 연료의 수요증가는 전력산업의 전원구성 등에 의해 변화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전력산업의 전원 구성이 기저발전기(원자력 및 석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LNG 발전기의 비중이 감소한다면 발전용 연료판매를 통한 성장성은 둔화될 가능성 존재

- 전력산업 수급기본계획에 따를 경우 2020년 원자력발전기의 용량은 17,716MW에서 27,316MW, 석탄발전기의 용량은 22,890MW에서 24,880MW로 증가하며, LNG 발전기의 용량은 큰 변화가 없음.

<부표 20> 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의 장기계약 사례

계약회사	공급지역	계약기간	'09년 약정물량 (천톤)	비고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소	'07.1~'26.12	639	발전용
한국중부발전(주)	서울, 인천, 인천북합, 보령발전소	'07.1~'26.12	2,032	발전용
한국서부발전(주)	평택, 서인천발전소	'07.1~'26.12	1,539	발전용

[부그림 22] 발전용 월별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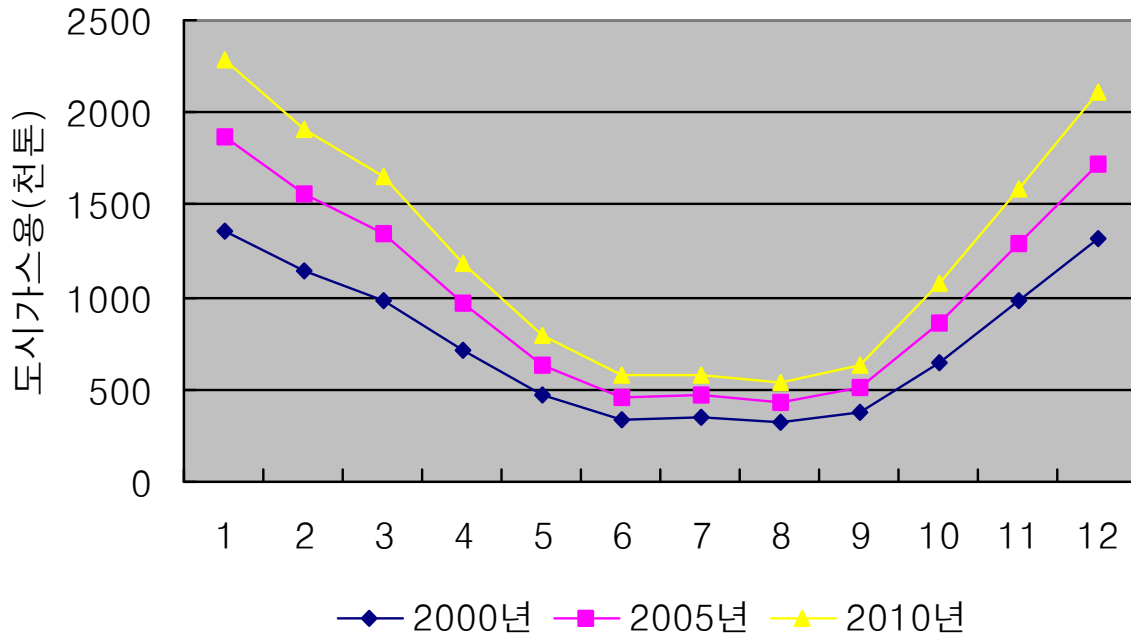


- 도시가스용 연료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사업전망이 밝은 편
- 도시가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509만톤에 이를 것

으로 전망

○주택용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일반용 및 산업용은 증가세가 유지

[부그림 23] 도시가스용 월별 수요 전망



### 3) 해외사업 전망

#### □ 미얀마 A-1/A-3광구 지분참여 사업

- 한국가스공사는 2001년 11월 30일 지분 10% 참여를 위해 대우인터내셔널과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
- 2002년 1월28일 인도의 OVL (ONGC Videsh Limited)과 GAIL(GAIL India Limited)이 각각 20%, 10%의 지분 참여를 위해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개 참여사 모두 공동운영협약을 맺음
- 2008년 12월 참여사들은 중국CNUOC와 가스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11월 1일 상업성 선언과 동시에 개발단계로 전환하여 현재 건설작업이 진행 중으로 "개발승인 단계"
- 건설이 완료되는 2013년 5월부터 가스전 생산 및 판매를 개시할 예정

- 그 외 다양한 해외 탐사 및 개발사업을 진행 중
  - 캐나다 혼리버 및 웨스트 컷뱅크 탐사개발생산 사업
    - 약 2,000만톤의 가스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성사 여부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한·러 양국정부는 2004년 9월 양국 정상회담시의 합의사항인 “정부간 가스분야 협력협정”을 2006년 10월 17일 서울에서 체결하였고, 동 협력협정의 PNG 공급분야 위임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은 2006년 10월 17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양사 간 '협력 의정서'를 체결
  - 2008년 3월 양사 부사장급 정례회의시 가스프롬은 북한을 통과하는 배관으로 한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
  - 2008년 9월 양국 대통령 임석하에 양사간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 양사간 공동 타당성조사 및 상업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5년~2017년경부터 연간 약 750만톤(10 Bcm/년)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 예정

### 3. 한국철도공사(KORAIL)

#### 가. 개요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청 공사화 계획에 따라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1월 1일에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하여 정부기관에서 정부투자기관으로 전환되어 설립되었음.

- 1894년(고종 31) 공무아문 내에 설치되었던 최초의 철도행정기관인 철도국에서 비롯되었음.
  - 이후 1906년 통감부에 철도관리국이 설치되었으며, 1943년 철도국이 교통국으로 개편되었으며, 1946년 교통국이 미군정청 운수부로 개편되었음.
  -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운수부가 교통부로 개편되었으며, 1963년 9월 교통부 외청인 철도청으로 독립하였다가 2005년 1월 1일 철도청 공사화 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
  - 철도청이 폐지되고, 철도 영업 부문은 한국철도공사로, 철도 시설 건설·관리·연구 개발 부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할됨.
- 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가운데 다음의 사항과 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철도시설·철도차량·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100% 출자하도록 되어 있음(한국철도공사법 제4조).
-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 운영자산 및 부채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따라 현물로 출자를 받고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 자본은 9조 2,112억원
- 한국철도공사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 5개의 출자회사가 있음.

<부표 21> 타법인 출자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주요사업	지분율	출자금액
코레일유통(주)	역구내 식음료 판매 및 자판기 운영 등 유통사업 및 광고대행업	100	910
코레일로지스(주)	물류사업	59.67	3,000
코레일투어서비스(주)	국내외 관광사업, 열차내 서비스	51	2,000
코레일네트웍스(주)	철도회원 관리, 승차권 위탁발매, 컨택센터 운영, 역세권개발, 주차장 운영	89.47	7,154
코레일테크(주)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및 건널목 관리, 철도전기시설관리, 철도차량유지보수	96.12	1,179

자료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참조. (<http://www.korail.com/>)

- 한국철도공사는 본사에 5본부 8실 2단 63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지역본부(12개)·연구원·정보기술단·인재개발원·철도교통관제센터·특별동차운영단·사무소(4개)가 설치되어 있음.

[부그림 24] 한국철도공사 조직도



- 한국철도공사의 인원은 30,910명이며, 이 가운데 별정직과 특정직을 포함한 4급 이하가 22,11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부표 22> 인원현황

구분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7급			
정원(명)	7	173	444	8,169	21,968	13	136	30,910
구성비(%)	0.02	0.55	1.44	26.43	71.08	0.04	0.44	100

자료: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2008철도통계연보』, 2009, p. 24. 참고하여 본 보고서에 맞게 재구성.

#### 나. 주요사업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여객사업·화물운송사업·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 운송 사업이 주요 핵심 사업이며, 그 이외에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 등의 부대사업과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 철도여객사업 등의 운송 사업은 KTX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용객의 감소추세에 있던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철도는 연휴기간 임시열차 투입,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를 활용한 임시정차 등의 서비스 연계 등으로 여객운송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물류수송에 있어서는 주력품목인 양회에 대한 수송안정화, 컨테이너, 철강품 등 중량화물 중시의 종합물류수송체계 등을 구축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부대사업부문에 있어서는 용산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역세권과 철도연변 개발과 계열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폐합 등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 철도건설 등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선로유지보수 및 시설개량·관제·방호업무 수탁 등 정부수탁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원자로부터 위탁받아 철도횡단시설의 설치·확장·개량 및 건널목입체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부표 23> 주요사업의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년 결산	2008년 결산
운송사업	2,463,600	2,561,295	2,671,234	2,787,973
부대사업	66,159	82,198	88,117	81,921
수탁사업	873,150	886,712	810,932	761,546
계	3,402,910	3,530,206	3,570,285	3,631,441

자료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참조. (<http://www.korail.com/>)

다. 재무현황

□ 매출/손익

- 한국철도공사의 매출은 2005년도 36,528억원에서 2008년도 62,251억원으로 25,723억원 증가
- 비용은 2005년도 42,589억원에서 2008년도 57,111억원으로 14,522억원 증가
- 당기순이익은 2005년도 -6,062억원에서 2008년도 5,140억원으로 증가되었음.
  - 당기순이익은 정부보조의 영향에 따른 변동이 큼.

□ 정부 출연/출자/보조

-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출연과 출자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없으며, 보조만 되고 있음.

- 정부보조는 2005년도에는 1,046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761억원으로 285억원 감소되었음.
  - 정부보조는 2007년도 3,571억원으로 2005년도와 2006년도의 배로 증가되었으며, 2008년도에 761억원으로 다시 감소
- 정부보조 제외 손익은 2006년도에는 -6,062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5,140억원으로 큰 증가를 가져옴.
  -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손실은 정부보조로 감소되었으며, 2007년도에 와서 정부보조를 제외하고도 1,3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가져오고 급기야 2008년도에는 정부보조를 제외하고도 5,140억원이 당기순이익의 증가를 가져왔음.

#### □ 자산/부채

- 한국철도공사의 총자산은 2005년도의 14조 555억원에서 2008년도 16조 75억원으로 1조 9,521억원 증가
  - 이러한 증가요인은 유형자산이 2005년도에 비하여 1,570억원 순증가한 것으로 이는 용산에 위치한 토지 중 일부를 자회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 매각하여 발생한 장기 미수금 1조 3,000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부채는 2005년도 5조 7,944억원에서 2008년도 6조 7,963억원으로 9,969억원 증가
  - 그 원인은 금융성부채가 2005년의 5조 2,520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5조 8,738억원으로 6,218억원 증가하였고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이 2005년도에는 2,000억원대였으나 2008년도에는 4,518억원으로 2,5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부표 24> 한국철도공사의 재무제표

(단위: 억원)

	2005	2006	2007	2008
정부지분	86,408			96,411
출자	0	0	0	0
보조	1,046	1,097	3,571	761
출연	0	0	0	0
자산	140,495	137,646	142,136	160,075
부채	57,995	56,157	59,485	67,963
자본	82,500	81,488	82,651	92,112
매출	36,528	39,389	45,176	62,251
비용	42,589	44,649	43,844	57,111
당기순이익	-6,061	-5,259	1,332	5,140
보조 제외 순익	-7,107	-6,356	-2,239	4,379

□ 성장성 분석

- 한국철도공사의 총자산은 2006년도에 전년 대비 2% 감소하였다가 2007년도에는 3.2%의 증가
  - 용산에 위치한 토지 중 일부 매각에 의해 발생한 장기 미수금에 의해 2008년도에는 12.6%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적으로도 유형자산의 증가 등에 의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매출액은 2005년 3조 4,030억원에서 2008년도 3조 6,314억원으로 6.7%가 증가하였지만 매년 증가폭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임.

<부표 25>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단위: %)

	2006	2007	2008
매출액증가율	3.7	1.1	6.7
총자산증가율	-2.0	3.2	12.6

□ 수익성분석

- 영업이익은 2006년도 이후 계속하여 감소추세이며 2007년도에는 무려 약

20%나 감소하고 2008년도에도 약 14%나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음.

- 자본대비영업이익비율은 매년 약 6% 이상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부표 26>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

(단위: %)

	2006	2007	2008
영업이익증가율	0.80	-20.1	-14.9
자본대비영업이익률	6.5	7.7	8.0

주: 1. 영업이익증가율 =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

2. 자본대비영업이익비율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100

□ 안정성 분석

-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2005년 70.2%에서 2008년 73.7%로 증가하고 있으며, 차입금 의존도도 2006년 35.2%에서 2008년 36.6%로 확대
- 하지만 정부의 100%로의 출자로 자본금이 2005년도 설립시 8조 6,408억 원에서 2008년도 9조 6,411억원으로 증가되어 부채비율의 증가율은 약 2% 내외로 그리 높지 않으며, 현재 2008년도 부채비율이 73.7%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부표 27> 부채비율

(단위 : 억원, %)

	2005	2006	2007	2008
부채	57,994	56,157	59,485	67,963
자기자본	82,560	81,489	82,652	92,112
부채비율	70.2	68.9	71.9	73.7

□ 한국도로공사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철도 사용 정도인 수송실적이 적합한 성과지표

- 최근 5년간 여객운송 실적은 2004년도 921백만명에서 2008년도 1,018백만명으로 약 10.6% 증가
- 최근 5년간 화물운송 실적은 2004년도 44,512천톤에서 2008년도 46,805톤

으로 약 5.1% 증가

<부표 28> 최근 5년간 수송실적 추이

(단위: 백만명, 천톤)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여 객	921	950	969	989	1,018
화 물	44,512	41,668	43,340	44,530	46,805

- 최근 5년간 인력추이를 살펴보면, 임원급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직원 수는 2005년도 30,963명에서 2009년 30,579명으로 약 1.5%로 감소
  - 직원정원은 2009년도 현재 27,247명이지만, 현원은 30,579명으로 3,332명이 초과되었음.
  - 정원 초과분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비정규직은 2005년도 3,020명에서 2009년도 447명으로 2,573명(약6.7배)이 감소

<부표 29> 최근 5년간 인력추이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임원	기관장	상임	1	1	1	1
		비상임	0	0	0	0
	이사	상임	6	6	5	6
		비상임	8	8	8	8
	감사	상임	1	1	1	1
		비상임	0	0	0	0
	기타	0	0	0	0	
상임임원계(A)	8	8	7	8		
직원	정원(B)	31,472	31,472	32,084	31,474	
	현원	30,963	30,499	31,671	30,903	
임직원총계(a+b)		31,480	31,480	32,091	31,482	
비정규직		3,020	2,972	1,140	1,084	

- 최근 3년간 인건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도 1,703,384백만원에서 2009년

1,712,587백만원으로 약 0.5%가 증가

<부표 30> 최근 3년간 인건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인 건 비	1,703,384	1,898,261	1,712,587

#### 4. 한국도로공사

##### 가. 현황

-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969년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
  - 1969년 2월 15일 창립 후 1973년 11월에 관리연장 1,000km 시대를 개막 하였으며, 1994년 3월에 통행료 수납의 기계화를 전면 시행하고 2005년 12월에 전자지불 및 하이패스를 도입한 후 2007년 12월에 관리연장 3,000km 시대에 진입함과 동시에 하이패스를 전국적으로 구축
  
- 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중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
  -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주요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 한국도로공사의 자본금은 22.5조원이며,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한국도로공사법 제4조).

- 2008년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총 22조 4,925억원이며, 이 가운데 정부에서 도로건설재원으로 18조 5,270억원을 출자하여 납입자본금의 82.37%를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정부투자기관

<부표 31> 납입자본금 및 주주현황

구분	국토 해양부	기획 재정부	한국정책 금융공사	한국수출입 은행	중소기업 은행	국민 은행	계
납입자본금 (억원)	177,713	7,557	19,298	18,061	2,249	44	22,4925
지분율 (%)	79.01	3.36	8.58	8.03	1	0.02	100

자료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참조. (<http://www.ex.co.kr/>)

- 한국도로공사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 2개와 지분율이 50% 미만인 6개의 출자회사가 있음.

<부표 32> 타법인 출자현황

회사명	관계	주요사업	지분율 (%)	출자금액(백만원)		출자 형태
				장부 가액	취득 가액	
하이플러스카드(주)	자회사	전자카드발행 및 관리	100	6,536	6,000	주식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자회사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51.00	28,872	24,990	주식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출자회사	건설공사 책임감리	42.50	8,533	4,000	주식
DB정보통신(주)	출자회사	정보통신 시설 유지보수	18.98	1,635	1,139	주식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출자회사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10.00	32,380	32,380	주식
행담도개발(주)	출자회사	행담도 복합휴게시설 개발 및 운영	10.00	9,667	9,667	주식
(주)고속도로관리공단	출자회사	건설 및 도로 유지 보수	8.28	10,543	3,069	주식 현물
드림라인(주)	출자회사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 등	4.23	5,991	44,028	주식

자료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참조. (<http://www.ex.co.kr/>)

□ 한국도로공사는 5본부 3실 19처로 구성

- 산하조직은 지역본부(6), 지사(42), 도로관리소(7), 영업소(305), 도로교통연구원, 건설사업단(14), 교통센터, 연수원 등

□ 인력추이

- 최근 3년간 인력추이를 살펴보면, 임원급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 직원수는 2007년도 정원 4,551명에서 2009년 4,044명으로 약 12%가 감소

<부표 33> 최근 3년간 인력추이

(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장	상임	1	1	1
이사	상임	6	6	6
	비상임	8	8	8
감사	상임	1	1	1
직원수	정원	4,551	4,551	4,044

□ 인건비추이

- 최근 5년간 인건비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 220,281백만원에서 2009년 255,297백만원으로 약 16% 증가

<부표 34> 최근 5년간 인건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인건비	220,281	257,068	262,434	283,412	255,297

<부표 35> 인원현황

구분	임원	1급	2급	3급	4급 이하	계
인원(명)	8	31	333	964	2,716	4,052
구성비(%)	0.2	0.8	8.2	23.8	67.0	100

자료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참조. (<http://www.ex.co.kr/>)

## 나. 주요사업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신설·확장·관리가 가장 핵심적 사업이며, 이밖에 부대편의시설이나 고속도로 인접시설개발 등의 사업도 수행<sup>18)</sup>.
- 고속도로 신설사업 : 1968년 12월 경인선이 처음 개통된 이후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국제공항선, 천안논산선, 대구부산선 및 서울외곽순환선을 포함 2010년 1월말 현재 31개 노선 3,776km(비관리 노선 295km)
- 도로의 유지관리사업 : 건설된 도로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차량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을 일상정비하고 손상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 주요 핵심사업 이외 : 도로의 부지 및 시설을 이용한 사업인 휴게소개발사업·화물유통 및 보관시설의 설치·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

18) 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에 근거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측량·설계·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유지관리·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10. 유료도로의 효율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11. 유료도로 연결지역에의 화물유통·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율 증진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3. 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부표 36> 주요사업의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 결산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년 결산	2008년 결산
도로관리사업	1,530,684	1,590,332	1,454,448	1,665,363	1,591,208
도로건설사업	2,745,569	3,144,827	3,123,095	2,819,555	2,515,999
도로개량사업	238,417	191,920	335,888	315,871	373,931
부대사업운영	25,405	26,509	36,857	44,320	48,931
수탁용역	2,095	2,985	19,847	58,236	87,108
수탁공사	144,655	172,141	397,398	666,013	546,355
계	4,686,825	5,128,714	5,367,533	5,569,358	5,163,533

자료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참조. (<http://www.ex.co.kr/>)

다. 재무상황

□ 매출 / 손익

- 한국도로공사의 매출은 2004년도 28,779억원에서 2008년도 44,740억원으로 15,961억원이 증가
- 매출과 대비되는 비용은 2004년도 28,251억원에서 2008년도 44,118억원으로 15,867억원이 증가
- 이러한 매출과 비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2004년도 528억원에서 2008년도 622억원으로 94억원이 증가

□ 정부 출연/출자/보조

-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출연과 보조는 없으며, 출자만 되고 있음.
- 출자는 2004년도 13,945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8,806억원으로 5,139억원 감소
  - 정부출자는 2005년도에 전년 대비 약 7%,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18%, 2007년도에는 약 15%, 2008년도에는 전년 대비 7%의 감소

□ 자산 및 부채

- 한국도로공사의 총자산은 2004년도 32조 3,371억원에서 2008년도 현재

42조 689억원으로 9조 7,318억원이 증가

- 자산증가는 대부분이 건설중인 자산과 유료도로관리권<sup>19)</sup>의 증가에 기인
- 2004년도 건설중인 자산과 유료도로관리권을 포함하는 무형자산은 31조 709억원이었으나 도로공사의 확장에 따라 2008년도에는 39조 3,135억으로 8조 2,426억원이 증가
- 2008년도 현재 부채는 20조 2,095억원으로 2004년도 14조 8,814억원에서 5조 3,381억원 증가
  - 부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성부채는 2004년말 13조 9,186억원에서 2008년도 현재 19조 1,445억원으로 약 5조 2,259억원이 증가
- 2008년도 현재 자본은 21조 8,594억원으로 2004년도 17조 4,557억원에 비하여 4조 4,037억원이 증가
  - 매년 500억원에서 600억원의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이익잉여금의 증가와 더불어 유상증자를 통한 정부보조로 인하여 전체 자본이 증가

<부표 37>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정부지분	150,894	158,970	169,813	179,142	177,086
출자	13,945	13,076	10,844	9,320	8,806
보조	0	0	0	0	0
출연	0	0	0	0	0
자산	323,270	345,975	367,497	387,713	420,688
부채	148,813	158,050	167,935	178,302	202,094
자본	174,456	187,924	199,561	209,410	218,593
매출	28,779	27,325	30,761	34,621	44,740
비용	28,251	26,799	30,174	34,083	44,118
당기순이익	528	525	586	537	622
보조제외 순익	-	-	-	-	-

19) 도로를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성장성

- 한국도로공사의 총자산증가율은 매년 약 5% 이상 꾸준히 증가
  - 2004년도 32조 3,371억원에서 2008년도 42조 689억원으로 약 30%가 증가
- 매출비율은 2005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2007년도 19.2%까지 증가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전년 대비 1.2%가 감소
  - 매출은 크게 고속도로관리사업(77.1%), 지원사업(16.7%), 부대사업(6.1%)으로 구분되며, 매출에 대비되는 매출원가율은 전체 매출의 77.1%를 차지하고 있는 고속도로관리사업부문의 원가율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음.
- 총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하여 그 성장성을 분석해보면 우선 2005년도 이후 총자산은 매년 평균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매출액에 있어서도 계속 증가추세이므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부표 38>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증가율	1.7	11.7	19.2	-1.2
총자산증가율	6.9	6.2	5.5	8.5

□ 수익성

-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히 증가
  - 2007년도에는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지만 2008년도에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하여 2006년도의 증가율을 다시 회복
- 자본 대비 영업이익비율은 매년 평균 약 3.6% 증가

<부표 39> 영업이익증가율과 ROE

(단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영업이익증가율	5.4	12.7	-1.7	12.8
자본대비영업이익비율	3.6	3.5	3.8	3.8

주: 1. 영업이익증가율 =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

2. 자본대비영업이익비율 =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 안정성

-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부채는 매년 평균 약 6%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비율 역시 매년 약 5% 이상씩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
- 2004년도 이후 평균 부채비율은 약 86%이므로 재무구조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조달하여 부채비율의 감소 노력을 하고 있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

<부표 40>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의 추이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부채	148,814	158,051	167,936	178,302	202,195
자기자본	174,557	187,928	199,561	209,411	218,594
부채비율	85.2	84.1	84.1	85.1	92.4

□ 소비자 후생은 고속도로 교통량으로 파악 가능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 1,602,303천대에 서 2009년 1,817,687천대로 약 13%가 증가

<부표 4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량

(단위: 천대)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용차량	1,602,303	1,646,399	1,751,972	1,726,673	1,817,687

-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 직원수는 2007년도 정원 4,551명에서 2009년 4,044명으로 약 12%가 감소
  - 인건비는 2005년도 220,281백만원에서 2009년 255,297백만원으로 약 16% 증가

## 5. 인천국제공항공사

### 가. 개요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운영함으로써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난 1999년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됨.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 10월 누적 여객 1억명 달성을 시작으로 2006년 3월 자유무역지역으로 개장하여 동년 8월에는 1일 이용객 10만명을 달성하였으며, 2009년 2월에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 컨설팅’에 진출하고 동년 3월 누적 여객 2억명을 달성하였음.
  - 2009년 4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4년 연속 1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동년 8월에는 Skytrax 선정 최우수 공항상을 수상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6조).
  -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7조).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가 100% 소유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음(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4조).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행가능 주식 수는 16억주, 수권자본금은 8조원
- 2008년말 현재 발행 주식주는 723,569,096주, 납입자본금은 3조 6,178억원

<부표 42> 발행주식 및 납입자본금 현황

수권자본금	정부지분	주식수(주)	납입자본금(억원)
8조원	100%	723,569,096	36,178

자료 : 인천국제공항홈페이지, 『경영공시』참조. (<http://www.airport.kr/>)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 1개와 지분율이 50% 미만인 2개의 출자회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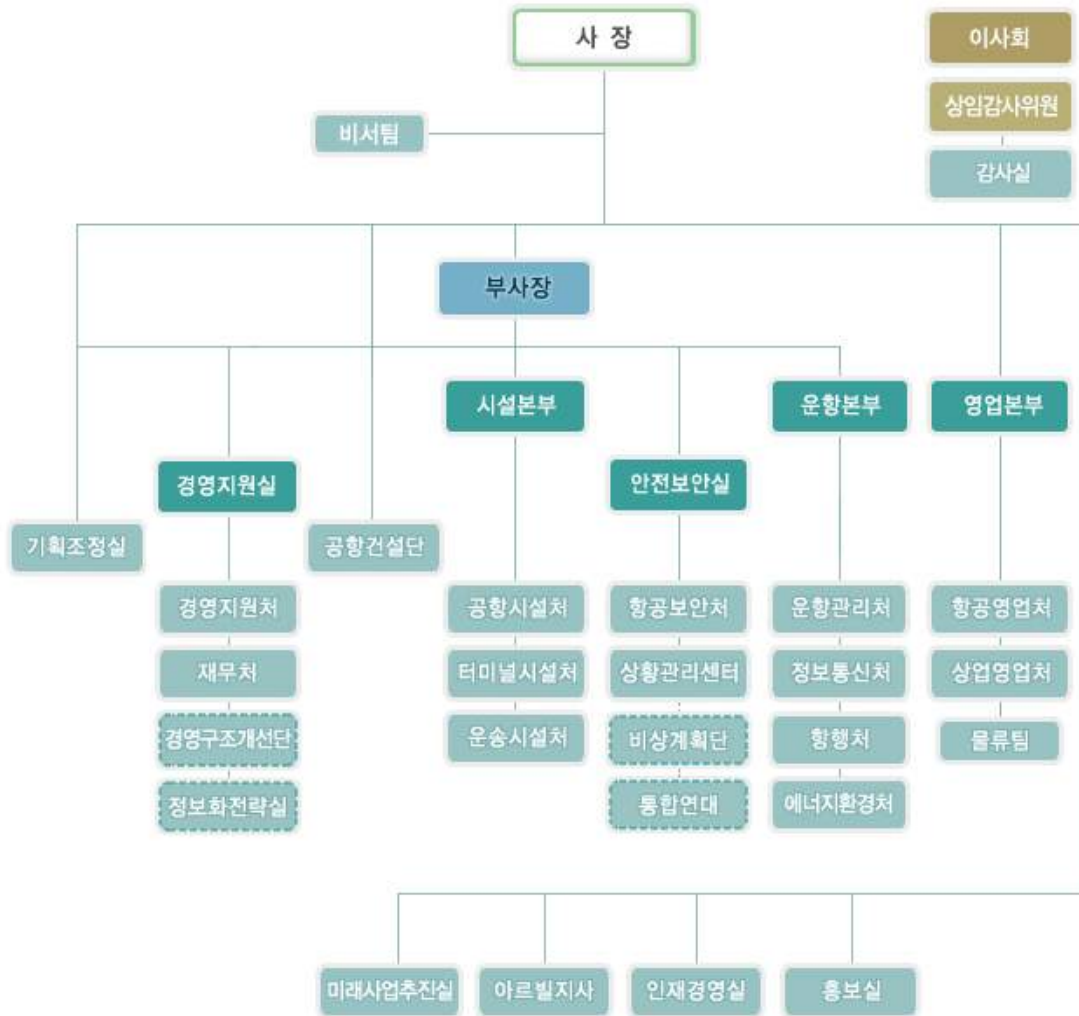
<부표 43> 투자 및 출자현황

회사명	관계	주요사업	지분율 (%)	출자액 (억원)
인천공항에너지(주)	자회사	공항운영에 필요한 전력 및 냉난방용 열에너지 공급	99	524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출자회사	항공기 급유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34	136
(주)인천유나이티드	출자회사	축구 및 그 외 각종 스포츠 흥행 및 중계산업	0.3	0.2

자료 : 인천국제공항홈페이지, 『경영공시』참조. (<http://www.airport.kr/>)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본부 2실 19처(실/센터/단) 74팀으로 조직되어 있음.

[부그림 25]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직도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원은 851명이며, 이 가운데 계약직 포함 4급 이하가 54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부표 44> 인원현황

구분	임원	1급	2급	3급	4급~7급	계약직	계
인원(명)	6	20	72	209	501	43	851 <sup>1)</sup>
구성비(%)	0.7	2.4	8.5	24.5	58.8	5.1	100

주: 1) 이라크 해외사업 인력(12명 : 정규직 11명, 비정규직 1명)은 별도정원으로 제외한 숫자임.

자료 : 인천국제공항홈페이지, 『경영공시』참조. (<http://www.airport.kr/>)

## 나. 주요사업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이 핵심 사업이며, 그 이외에 주변지역개발·부대사업 및 기타 국가위탁사업, 공항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조사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공항건설 등의 사업은 토목, 건축, 전기, 전자, 통신 등 전 기술영역을 망라하는 복합공종적 시설 구축 즉 부지조성, 설계, 공사, 감리 등 시공과정을 의미
  - 공항운영분야 사업에 있어서는 여객 및 화물수송 수요의 처리, 공항시설물의 유지관리, 공항 이용자에 대한 각종 부대서비스 제공 및 그에 따른 영업활동을 의미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가운데 핵심사업인 공항건설사업의 현황
  - 인천공항건설 3단계가 총공사비는 4조 386억원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부지조성 1,105천㎡·여객터미널 350천㎡·여객계류장 648㎡·화물터미널 27천㎡·화물계류장 418천㎡ 건설
  - 또한 자유무역지역 2단계 사업이 총공사비 1,267억원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부지조성 922천㎡·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부표 45> 주요사업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년 예산
인천공항건설(2단계)	554,600	935,878	657,000	259,025	54,682
자유무역지역(2단계)	-	-	-	3,000	3,383
인천공항건설(3단계)	-	-	-	-	600

자료 : 인천국제공항홈페이지, 『경영공시』 참조. (<http://www.airport.kr/>)

## 다. 주요 재무 지표

### □ 매출/손익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출은 2004년도 7,639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13,714억원으로 6,075억원이 증가
- 매출과 대비되는 비용은 2004년도 6,143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12,180억원으로 6,037억원이 증가
- 당기순이익은 2004년도 1,495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1,533억원으로 38억원이 증가

### □ 정부 출연/출자/보조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출연이나 보조는 없고, 출자만 있는 상태
- 출자는 2004년 1,622억원에서 2006년 3,021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이후에는 출자가 감소하여 2008년에는 655억원으로 감소

### □ 자산 및 부채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총자산은 2004년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도 6조 2,702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8조 2,100억원으로 약 26% 증가
  - 총자산은 8조 2,100억원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이 1,227억원(1.5%), 장기투자자산·지분법적용투자주식, 파생상품자산 등 투자자산이 2,165억원(2.6%),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이 7조 8,253억원(95.3%),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이 454억원(05%)임.
- 2008년도 현재 부채는 4조 1,099억원으로 2004년도 3조 5,632억원보다 5,467억원 약 14% 증가
  - 건설비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한 금융성부채와 사채발행 등에 의해 그 부채규모가 큰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부표 46>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제표

(단위 :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정부지분	28,044	30,502	33,523	35,523	36,179
출자	1622	2,457	3,021	2,000	655
보조	0	0	0	0	0
출연	0	0	0	0	0
자산	62,702	66,855	73,581	78,675	82,100
부채	35,632	36,095	38,349	39,402	41,099
자본	27,070	30,760	35,231	39,272	41,000
매출	7,639	8,340	9,064	10,038	13,714
비용	6,143	7,101	7,613	7,967	12,180
당기순이익	1,495	1,238	1,451	2,070	1,533
보조제외 순익	-	-	-	-	-

□ 성장성 분석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총자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도 6조 2,702억원에서 2008년도 8조 2,100억원으로 1조 9,398억원 증가되어 약 24%가 증가
- 매출비율은 2005년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되고 있으며, 2004년도 7,051억원에서 2008년도 1조 727억원으로 3,676억원 증가되어 약 36%가 증가
- 총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하여 성장성을 분석해보면 우선 총자산은 매년 평균 약 5% 이상씩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매출액 역시 매년 평균 약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이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부표 47>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증가율	12.3	10.4	10.9	10.4
총자산증가율	6.6	10.0	6.9	4.3

□ 수익성 분석

- 영업이익증가율은 2005년도 24.6%의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다가 2006년도 이후 증가율이 낮아지고 급기야 2008년도에는 전년 대비 12.3%나 감소
  - 2008년도 영업이익이 감소된 이유는 공항확장공사 소요액을 포함한 투자활동에 3,981억원, 차입금 상환 등에 2,965억원을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벌어들인 수익으로 충당한 결과
- 자본대비영업이익비율은 매년 10% 이상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 2008년도에는 9.8%로 그 증가율이 감소

<부표 48>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

(단위: %)

	2006	2006	2007	2008
영업이익증가율	24.6	18.2	13.3	-12.3
자본대비영업이익률	11.2	11.5	11.7	9.8

주: 1. 영업이익증가율 =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

2. 자본대비영업이익비율 =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 안전성 분석

- 부채비율은 2004년도 131.6%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100.2%로 31.4%가 감소하고 있어 재무구조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부채비율은 정부의 유상증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는 2006년도 까지 정부의 유상증자가 계속 증가되고 동년 최고 3,021억원의 유상증자로 부채비율을 감소시켰으나, 2007년도 이후 정부로부터 유상증자가 감소되기 시작하여 2008년도에는 655억원까지 크게 감소하여 부채비율의 감소폭 역시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부표 49>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채비율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부채	35,632	36,095	38,350	39,402	41,099
자기자본	27,070	30,761	35,231	39,273	41,001
부채비율	131.6	117.3	108.8	100.3	100.2

□ 소비자 후생과 가장 밀접한 분야는 수송실적

- 최근 3년간 운항 횟수는 2007년도 211천회에서 2009년도 198천회로 약 6.5%가 감소
- 최근 3년간 여객운송 실적은 2007년도 31,227천명에서 2009년도 28,549천명으로 약 9.3% 감소
- 최근 3년간 화물운송 실적은 2007년도 2,555천톤에서 2009년도 2,313천톤으로 약 10.4% 감소

<부표 50>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근 3년간 수송실적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운항(천회)	211	211	198
여객(천명)	31,227	29,973	28,549
화물(천톤)	2,555	2,423	2,313
환승여객(천명)	3,793	4,421	5,200
환승률(%)	12.3	15.0	18.5
환적화물(톤)	1,280,192	1,193,022	1,090,612
환적률(%)	50.1	49.2	47.2

□ 인력추이: 임원급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직원 수는 2006년도 704명에서 2009년 842명으로 약 19.6%로 증가

- 직원정원은 2009년도 현재 816명이지만, 현원은 842명으로 26명이 초과
- 정원 초과분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
- 비정규직은 2006년도 101명에서 2009년도 9명으로 92명이 감소

<부표 5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근 4년간 인력추이

(단위: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임 원	기관장	상임	1	1	1
		비상임	-	-	-
	이사	상임	5	5	5
		비상임	7	7	7
	감사	상임	-	-	-
		비상임	-	-	-
기타	-	-	-	-	
직 원	정원	709	825	882	816
	현원	704	764	831	842
	비정규직(현원)	101	92	48	9

□ 인건비추이

- 최근 3년간 인건비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도 36,868백만원에서 2009년 58,330백만원으로 약 58%가 증가되었음.

<부표 5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근 4년간 인건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인건비	36,868	46,775	56,509	58,330

## 6. 한국산업은행

### 가. 설립 목적 및 기능

- 설립 목적: 산업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할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1954년 4월 1일에 설립
- 법정자본금: 10조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전액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
  - 2008년 현재 자본금: 8조 7,419억원

○ 수차의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현재 8조 7,418.61 억원

□ 산업개발과 국민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산업자금 공급·관리를 주목적으로 1954년 4월 설립

- 전신은 1906년 설립된 농공은행(農工銀行)을 1918년 합병한 조선식산은행
- 1962년 외자도입에 대한 대내지급보증업무, 1967년 외국환은행업무 취급
- 1989년 신탁업무 취급, 2003년 방카슈랑스 업무 취급
- 2008년 민영화가 추진되어 2009년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분할되었고, 지주회사인 산은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

□ 민영화 이전에는 장기산업 금융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으로서 주로 사회간접 자본 형성과 중화학공업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장기성 자본을 융통해 주는 데 주력

- 이를 위해 산업금융채권 발행권을 독점
- 소요자금의 원활한 동원을 위해 금융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자본시장에 진출

□ 민영화 이후 기존의 정책금융 업무는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이관

- 주요 업무는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국제금융, 기업 구조조정 및 컨설팅, 수신 및 개인금융 등
- 개인 수신은 하지만 대출은 하지 않음.

□ 대주주: 100% 정부 소유

<부표 53> 한국산업은행의 대주주 (200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주주명	소유주식수 (주)	소유비율
정 부	-	100

## 나. 역할

### □ 주요 역할

- 1950년대: 전재복구·경제부흥을 위한 기간산업(전력·석탄 등) 시설기반 증강 중점 지원
- 1960~70년대: 한국경제의 자립 및 공업화와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체제 구축을 중점 지원 (개발금융기관)
- 1980년대: 경제운용기조가 안정성장기조로 전환되면서 경제 체질개선 및 산업구조조정을 중점 지원 (장기설비금융기관)
- 1990~96년: 경제의 국제화 진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집약산업, 미래지향적 산업 및 기업의 국제화를 적극 지원(종합기업금융기관)
- 1997년~현재: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기업금융 확대, 외자 도입, 기업구조조정 추진

<부표 54> 한국산업은행의 역할 변화 추이

구 분	산업은행의 지원분야와 역할	
1950년대	전재복구 및 기간산업	재정자금공급
1960~1970년대	중화학공업, 수출전략산업 지원	개발금융
1980년대	산업구조조정과 중화학공업의 고부가가치화	장기설비금융
1990~1996년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해외투자 지원	종합기업금융
1997~현재	경제 재도약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금융 선도	종합기업금융

## 다. 자금조달 및 공급

### □ 정부전액출자기관으로 정부계 은행으로 분류

- 1977~2003년 6월: 대부분 시장에서 조달하고 정부차입금·기금은 1.4%, 2.5%
- 시장조달은 원화산업금융채권 발행이 59.9%로 대부분을 차지
  - IBRD, ADB 등 국제기구 차관자금, 은행단차관, 외화산업금융채권 발

행 등 외자도입 비중은 25.0%

<부표 55>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조달 추이

(단위: 억원, %)

	자기자본	정부차입금	원화산금채	예수금	기금	외국자본	합계
합계	53,692 (4.5)	16,928 (1.4)	724,587 (59.9)	81,010 (6.7)	30,453 (2.5)	302,238 (25.0)	1,209,252 (100.0)

주: 1. 예수금은 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의 증감액  
 2. 외국자본은 외화산금채, 공공차관, 은행단차관의 합  
 자료: 한국산업은행 50년사(2004년)

- 국내 최대 설비자금 공급기관으로 국내금융권 시설자금대출의 26% 공급 (2004년 6월말)
  - 2004년 6월말 금융채 발행 시장점유율 27.8%
  -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관으로서 1995년 이후 총 12조 1,952억원 주선
    - 2003년 기준 시장점유율 70%
  
- 국내 최대 벤처투자은행으로 1998년 이후 총 446건의 5,585억원 투자(은행권 전체 대비 약 58%, 2002년 말 기준)
  - 회사채 주선 주도기관 중 시장점유율 약 23%
  - 우리나라 외자도입의 약 10%(2004년 6월 기준)
  -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선도은행으로서 거래량의 약 30% 점유

라.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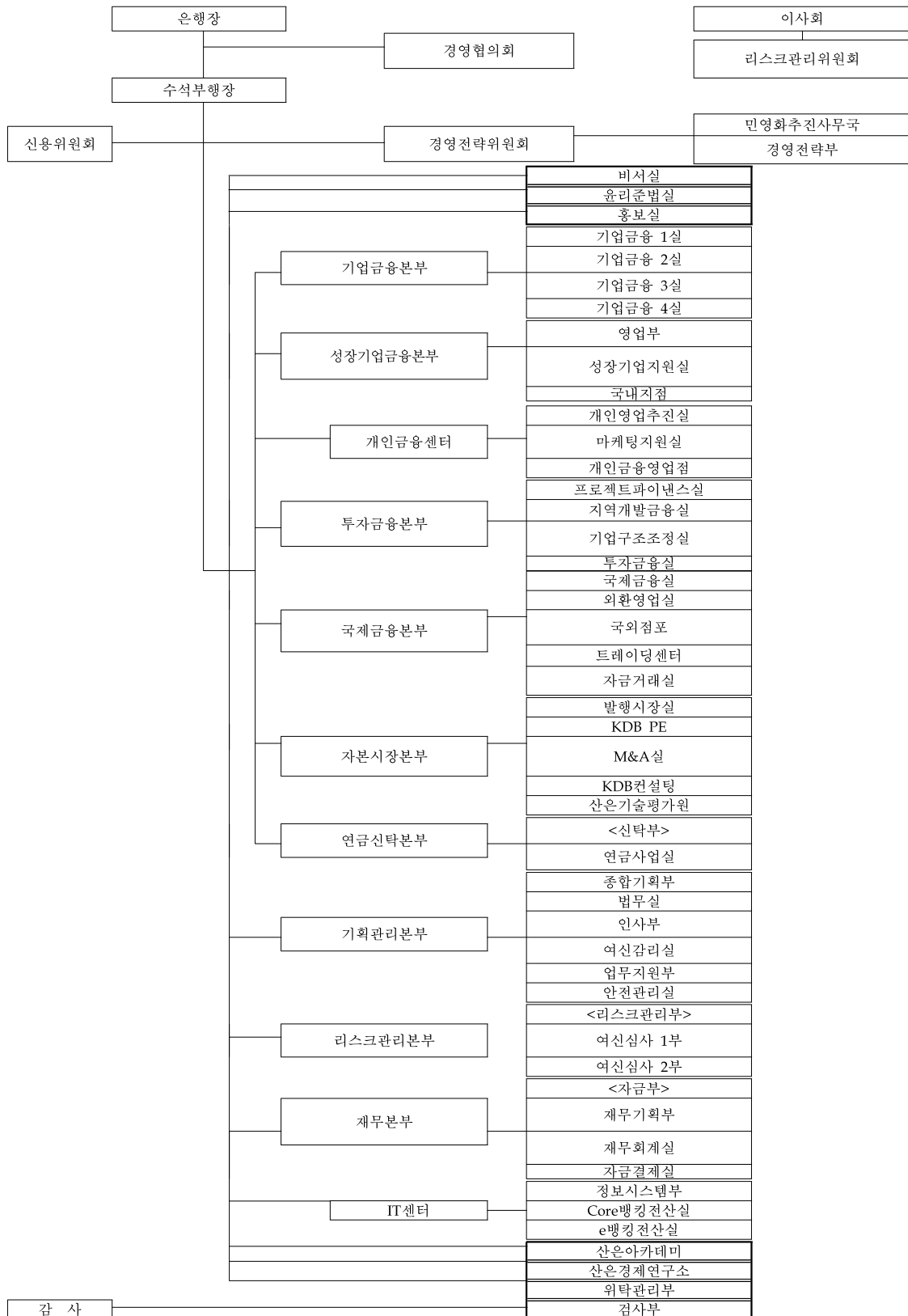
- 조직: 9본부 1센터 10부 11실(19분실)
  - 국내 44개 지점, 해외 7개 지점과 2개 사무소
  - 2014년 민영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민간이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국영은행 형태로 운영

<부표 56> 본점 조직의 기능적 변천

	주요 기능의 변천
창립 초기 (1954~1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4년 창립</li> <li>· 영업부, 관리부 신설</li> <li>· 심사부서 폐지(제1·2업무부가 심사업무 담당)</li> <li>· 기획조사부, 감정부를 조사부로 통합</li> </ul>
외자업무 개시 (1958~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원조 감소 및 내자조달 어려움 타개를 위해 외자도입을 위한 외자제 1· 2부 신설</li> <li>· 기술부 신설</li> </ul>
투자업무의 기반조성 (1962~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부→투자개발부→투자부→증권부(투자부와 저축추진부 통합)</li> <li>· 기업분석부 및 제1· 2금융부 신설을 통한 대출업무의 전문성 제고</li> </ul>
차관도입 및 외국환업무 취급 (1965~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차관부 및 외국부의 신설을 통한 외자도입 및 외국환 관련 업무역량의 강화</li> <li>· 외자제 1· 2· 3부의 세분화 등 차관도입 관련부서의 확충</li> </ul>
관리업무 심화와 경영합리화 추진 (1968~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부실 및 정부투자기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수관리부, 관리통합부, 출자관리부, 산업관리부 등 관리부서 확충</li> <li>· 「8· 3조치」에 따른 본점 부서 축소 및 통폐합</li> </ul>
지원업무 확충 (1974~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계획실, 사무관리부, 용역개발부, 연수부 등 신설</li> </ul>
업무추진기능 강화 (1984~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대비와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부를 종합기획부로 확대</li> <li>· 지점심사부 신설, 국제금융부 개편</li> <li>· 수신업무의 기반확충을 위해 업무추진부 신설</li> <li>· 불건전채권관련 기획· 통할업무를 관리부로 일원화</li> </ul>
수신· 국제투자업무 확충 (1988~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확충을 위해 수신개발부, 신탁부 신설</li> <li>· 국제 및 투자업무 조직의 정비</li> <li>· 기술개발지원팀 등 6개의 부서단위 팀 신설</li> </ul>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구조조정 (1997~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제 도입 등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구축</li> <li>· ALM실, 역외자금실, 금융공학실 등 전문조직 신설</li> <li>· 외환위기에 대응한 구조조정 추진</li> <li>·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업무본부제로의 개편 및 부점내 팀 상설화</li> </ul>
선진형 조직으로의 이행 (1999~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관리센터 신설, CO/RM제도 도입</li> <li>· 신탁부문 독립, 정보시스템부· 전산실 분리, RB팀 신설</li> <li>·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수익창출을 위해 컨설팅부문, 투자업무개발실, M&amp;A실, 방카슈랑스실 등 신설</li> </ul>

[부그림 26] 한국산업은행의 조직: 9본부 2센터 9부 12실(22분실)

(2010년 현재)



<부표 57>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점 현황 (2009년 2월 28일 현재)

(단위: 개)

구 분	지 점	수신전문지점	사무소	계
국 내	44	1	-	45
국 외	7	-	2	9
계	51	1	2	54

<부표 58> 한국산업은행의 지점 변천

(단위: 개)

	연도	신설	지점전환	폐쇄	지점수
창립기	1954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삼척, 전주, 청주, 영등포, 홍성, 군산, 여수, 포항, 마산		영등포, 홍성, 군산, 여수, 포항, 마산	8
중화학공업·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확충기	1973	울산			9
	1978	창원			10
	1980	여천(여수)			11
	1986	포항			12
	1987	반월(시화), 구미			14
여수신업무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확충기	1989	수원, 천안, 군산			17
	1990	안양, 대구성서, 목포, 부산 북부			21
	1991	부천, 구로, 동광양, 서산	진주		25
	1992	강남, 충주, 동울산			29
	1993	평택, 인천남동, 동대문(노원)			32
	1996 1997	서초, 시화		여의도 명동(압구정) 성남(분당)	34 37
구조조정 및 내실화기	1998			서산, 인천남동	35
	1999			평택, 시화, 동울산	32
	2001	종로, 제주		광양	33
	2002			삼척	32
	2003	안산			33
	2004		서교		34

□ 임직원수

<부표 59>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 수

(단위: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06	
임 원	기관장	상임	1	1	1	1	
		비상임					
	이사	상임	7	7	7	7	3
		비상임	2	2	2	2	5
	감사	상임	1	1	1	1	1
		비상임					
	기 타						
소 계		11	11	11	11	10	
직 원	정 원	2,190	2,239	2,309	2,359	2,123	
	현 원	2,091	2,124	2,173	2,190	2,261	
	비정규직	244	273	156	208	212	
	소 계	2,335	2,397	2,329	2,398	2,473	
총 계		2,346	2,408	2,340	2,409	2,483	

□ 자회사

- 연결대상자회사: 산은캐피탈, 대우증권 등 2008년 말 현재 16개
- 비연결대상자회사: 나노비전, 노바마그네틱스 등 2008년 말 현재 71개

□ 자본금 변동

<부표 60>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변동현황

(단위 : 억원)

년도	주식의 종류	증·감자 금액	증·감자 내용	증·감자후 자본금
2000. 2.25	출자증권	1,000	현금출자	50,717
2000.12.29	출자증권	-9,598	무상감자	41,119
2001. 6.20	출자증권	30,000	현물출자	71,119
2001.12.29	출자증권	500	현금출자	71,619
2003. 8.13	출자증권	800	현금출자	72,419
2004. 4.30	출자증권	10,000	현금출자	82,419
2005.12.31	출자증권	-	-	82,419
2006.12.31	출자증권	-	-	82,419
2007.12.31	출자증권	-	-	82,419
2008.12.31	출자증권	5,000	현물출자	87,419

주: 최근 3개년간의 자본금 증·감자내용 및 증·감자후 자본금 금액

## 마. 주요 업무

□ 한국산업은행의 주요 업무는 자금조달, 전통적 기업금융, 대출, 투자, 보증 등

□ 자금조달 업무

- 설립 당시 자본금, 정부차입금, 산업금융채권, 기한부 예금으로 자금 조달
- 이후 산은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차관, 은행단차관, 외화산업금융 채권 등의 외국자본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신규 재원으로 추가
- 자체재원 조달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천
  - 제1단계(1954~1968년): 대부분 정부 차입·전액출자에 의한 자본금납입 조달
  - 제2단계(1969~1985년): 원화산업금융채권 재발행, 은행단차관 도입, 외화산업금융채권 발행 등 자체재원조달 규모 및 비중이 확대되었고, 조달수단 다양화
    - 정부차입 비중이 10.9%로 하락하고, 원화산금채(17.5%), 외자(38.9%) 비중은 56.4%로 증가
  - 제3단계(1986~1996년): 원화산금채가 주자금조달 수단으로 부상(비중 48.6%)
    - 1980년대 후반부터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외자도입 비중은 11.8%로 감소
    - 외자도입방안: 은행단차관 위주 → 직접금융방식(외화산금채 발행) 위주
  - 제4단계(1997년~): 내자조달 기반을 확충하고 외자조달구조를 고도화
    - 내자: 자산 증가와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응하여 자기자본 증액 추진
    - 원화산금채 발행 및 예수금에 의한 조달규모의 확대 추진
    - 외자: 외환위기 이후 투자자의 저변 확대와 외자 조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시조달체제의 구축, 조달수단의 다양화, 국제시장의 다변화

- 원화산금채(59.9%)와 외자도입(25.0%)을 통한 자금조달이 약 85% 점유

□ 전통적 기업금융부문에서 대출, 투자,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

□ 대출업무(산은법 제18조): 설립 초기 대출대상을 중요산업의 개발에 기여할 시설의 취득, 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곤란하거나 취급이 불가능한 1년 이상의 시설자금과 부수 운영자금의 공급에 한정

- 6차례의 조항 개정을 통해 자금지원 대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 1968년 3차 개정: 시설자금 공급대상을 1호와 2호 산업으로 구분
- 1981년 7차 개정: 기술개발자금의 공급근거를 명문화
- 1997년 11차 개정: 1·2호 구분 폐지, 운영자금대출 대상 첨단제품사업자 추가
- 2002년 15차 개정: 운영자금 대출대상에 ‘제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자’ 포함
- 산업금융기능을 확대 강화
  - 1954~1961년: 산업시설 복구 및 기간산업 건설에 자금공급이 집중
  - 1962~1971년: 공업화의 촉진 및 수출산업 지원 강화
  - 1970년대(중화학공업·수출전략산업 집중 육성시기): 조선, 철강, 기계공업 등 중심의 중화학공업 부문과 전기, 가스, 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집중
  - 1980년대: 산업구조조정·국제경쟁력 강화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해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중화학공업 내실화, 경공업 균형성장 유도, 사양산업 합리화, 중화학공업부문 투자 조정 등 산업구조조정에 자금을 우선 지원
  - 1990~1996년: 개방화·국제화의 급진전 대응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
  - 1997년~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금경색 해소와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성장산업의 육성 지원에 주력

- 산업구조 고도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1999~2003년간 6T산업, R&D 및 생산성향상자금, 유통·물류산업 등 특별펀드(5조 4천억원) 조성·공급

○ 자금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신제도 개선

- 1997년 담보취득제도를 개선하고, 1998년 지점소관 계열기업을 본점으로 이관하여 계열별 심사체계를 구축
- 2000년대 들어 대출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금융제도를 도입

□ 투자금융업무: 산은의 투자업무는 형태별로 사채인수, 공채인수, 주식투자(산은법 제18조 4호 및 5호)

○ 공사채인수업무: 산은법 제정시에 본업무로 규정되고 1961년 제1차 개정시 주식투자업무를 신규 추가

○ 투자업무 발전과정

- 1단계(~1980년대 중반): 중요 산업 주식투자와 사모공사채인수를 중심 투자
  - 1968년 주식투자한도가 납입자본금의 100%로 증가하였고, 현물출자 및 경유출자에 의한 투자와 중화학산업체에 대한 대출금 출자 전환 투자가 주
  -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자금 공채인수도 증가
- 2단계(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회사채 관련 업무가 확충되면서 투자수단 다양화
  - 1988~1997년간 사채인수를 통한 자금공급 (3조 2,306억원)
  - 산은의 기능 보완을 위한 자회사 출자도 크게 증가
- 3단계(1990년대 중반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에 의한 금융자문 및 주선, 회사채 주간사업무 취급, M&A업무 및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투자업무 확대를 통해 투자은행업무 활성화

## □ 국제금융업무

-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외자조달업무를 중심으로 발전
  - 외자조달업무는 본래 부대업무였으나 1961년 본업무로 명시
  - 초기에는 공공차관을 통한 외자조달업무가 주
  - 경제성장으로 자금수요 확대에 따라 은행단차관, 외화산금채발행 등 다양화
- 공공차관 도입: 1960년 4월 AID차관자금 500만달러 도입을 계기로 본격 추진
  - 1960년대 외자조달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
  - 은행단차관(1970년 6월 도입)은 1980년대 중반까지 외자조달 주류를 형성
- 1990년대 외화산금채 발행이 활성화되면서 공공차관 및 은행단차관 도입이 일시 중지되었으나, 1997년 도입 재개되어 금융·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기여
- 급증하는 기업자금수요에 대응하여 1974년 10월 외화산금채 발행 통한 외자도입(1974년 발행된 외화산금채는 국내 최초의 국제채 발행)
- 외화산금채의 공모발행(1976), 일괄등록제도(1991), 유로 중기채 프로그램 설정(1992) 등을 통해 채권발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
- 국제여신업무: 1980년대 후반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본격 추진
  - 1989년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M&A중개, 관련자금 지원 업무 개시
  - 1990년대 중반 국제 신디케이트론 주간사업무 취급, 리스금융, 국제 프로젝트파이낸스,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 국제 M&A업무 등
  -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신용도 급락 및 부실여신 급증, 기업의 해외투자 격감 등으로 국제여신업무가 크게 위축
  - 이후 기업들의 해외진출 증가,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점차 활성화
  - 국제 유가증권 및 보증업무의 국제여신업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변화
- 기업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해 여신거래처에 대한 외국환업무를 지속 확충

□ 기업구조조정 · 컨설팅 업무

- 컨설팅: 기업금융, 투자금융, 국제금융업무와의 연계성 제고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2003년 신규 핵심업무로 설정 · 추진
- 경제 · 산업조사: 경제발전 단계별로 중요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
  - 1990년대 들어 금융연구 및 동북아연구를 강화
- 산업기술조사: 산은의 자금공급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투융자의 실행 여부 판단 등 여신관리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의 검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 2003년 6월 현재 기술조사업무: 기술검토, 소요자금사정, 기성고조사, 가격조사, 기술진단 등
  - 2000년대 행내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산업기술관련 분석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대외 컨설팅업무 시작
    - 기술조사관련 용역업무: SOC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기술용역과 기술력평가, 기술성심사,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평가용역
-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여신관리업무
  - 부실여신관리업무: 경영부진업체가 증가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본격 추진
  - 부실여신관리를 위해 1961년 관리기업체 직원 파견, 1965년 기업진단을 통한 경영지도, 1962년 성업공사를 설립하여 불건전기업 정비
  - 1998년 부실여신 전담 관리조직(특수관리부) 신설
    - 부실기업 정상화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CRC 등 부실정리기구앞 부실채권 매각,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M&A 등 부실여신정리활동 적극 전개
    - 1998년말 총여신의 9.5%인 5조 6,895억원에 달하였던 산은의 부실여신은 2002년말 1.9%인 9,940억원으로 축소
  - 부실여신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과 제도 정비
    - 1998년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전담팀(Workout Team) 설치하고 동년 9월 「기업개선작업 업무처리요강」을 제정

- 2000년 담당조직을 부실여신을 집중 관리하는 특수관리부와 워크아웃기업을 담당하는 기업개선관리실로 확대 개편
- 2003년 관련 업무를 기업구조조정실로 통합·일원화

#### □ 신탁업무

- 1988년 10월 부대업무로 신탁업 경영인가, 1989년 1월부터 신탁업무 개시하여 수신업무기능을 크게 보장
- 수탁고는 1991년 1조 4,252억원에서 1997년 2조 8,216억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

#### □ 지원업무

- IT업무: 1970년 전산담당조직 신설을 계기로 본격 추진
  - 1970년대: 인력 및 전산기기가 확충되면서 전산화 기반 구축
  - 1980년대: 각 단위업무의 온라인 시스템 개발 등 업무전산화와 사무자동화
  - 1990년대: 종합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IBM신전산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계정계업무의 종합온라인체제가 구축
  - 2000년대: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IT분야에 투자 확대
- 홍보업무
- 법률지원업무
  - 법률의 조사·연구, 계약서의 사전검토, 소송업무 대행, 준법감시업무 등 수행
  - 법률분쟁 소지의 방지, 은행내 법규준수실태모니터링, 임직원 준법감시교육, 윤리강령 제정·운영, 경영공시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검토, 자금세탁방지업무 등 준법감시업무를 수행
- 대고객금융서비스 강화
  - 1996년 5월 주요 영업점에 「산은VIP클럽」을 개설·운영
  - 1998년 8월에는 「산은VIP고객우대제도」 도입
  - PB업무 활성화

바. 경영실적

□ 수익성

<부표 61> 한국산업은행의 수익성

(단위: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당금적립전이익(A)	-1,173	7,951	7,741	14,839	25,926	20,367	28,457	8,006
제총당금전입액(B)	132	6,860	6,582	3,432	1,644	721	2,395	4,280
대손상각비	-	5,517	6,139	3,151	838	131	1,711	3,281
지급보증충당금	-	-	-	72	275	106	256	376
퇴직급여	132	155	168	209	218	226	279	310
미사용약정충당금	-	-	-	-	-	-	149	313
기타충당금	-	1,188	-	-	313	258	-	-
제총당금환입액(C)	2,464	769	585	-	-	-	-	-
대손충당금	1,413	-	-	-	-	-	-	-
지급보증충당금	1,051	769	585	-	-	-	-	-
미사용약정충당금	-	-	-	-	-	-	-	-
기타충당금	-	-	-	-	-	-	-	-
법인세비용(D)	69	21	75	1,432	65	-1,362	5,586	223
당기순이익(A-B+C-D)	1,090	1,893	1,669	9,975	24,217	21,008	20,476	3,503
총자산순이익률(R.O.A.)	0.14	0.23	0.20	1.11	2.58	2.08	1.75	0.24
자기자본순이익률(R.O.E.)	1.78	2.61	2.34	11.02	19.29	13.37	11.31	2.05
원화예대금리차(A-B)	1.85	1.32	1.15	1.46	1.77	1.43	0.85	0.85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	9.15	7.78	6.71	6.18	5.18	5.51	5.65	6.17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	7.30	6.46	5.56	4.72	3.41	4.08	4.80	5.32
명목순이자마진(N.I.M.)	0.17	0.16	0.16	0.47	0.61	0.44	0.20	0.74

□ 생산성

<부표 62> 한국산업은행의 생산성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직원 1인당	총당금 적립전이익	-1	4	4	8	13	10	13	4
	예 수 금	59	61	63	62	56	57	59	64
	원화예수금	55	57	59	58	53	54	57	60
	대 출 금	202	165	170	176	162	150	152	201
	원화대출금	114	87	81	89	88	91	98	128
	평균 국내인원(명)	1,906	1,908	1,928	1,957	2,027	2,061	2,173	2,265
1영업점당	예 수 금	3,014	3,119	3,363	3,287	2,921	2,842	3,140	3,542
	원화예수금	2,830	2,954	3,170	3,092	2,769	2,689	2,992	3,314
	대 출 금	10,387	8,508	9,117	9,287	8,396	7,565	8,073	11,087
	원화대출금	5,852	4,502	4,329	4,724	4,594	4,584	5,202	7,098
	평균 국내영업점수(개)	37	37	36	37	39	41	41	41

주: 국내분 기중 평잔 기준

□ 건전성

<부표 63> 한국산업은행의 건전성

(단위: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여신	597,043	513,445	559,217	539,997	538,773	572,568	673,100	899,683	
기업	-	-	-	-	538,147	571,946	672,449	899,001	
가계	-	-	-	-	626	622	651	682	
신용카드	-	-	-	-	-	-	-	-	
고정이하여신	26,449	9,940	16,575	8,604	5,436	4,834	6,601	10,688	
고정이하여신비율	4.42	1.94	2.96	1.59	1.01	0.84	0.98	1.19	
기업	-	-	-	-	5,435 (1.01)	4,834 (0.84)	6,601(0.98)	10,688(1.19)	
가계	-	-	-	-	1 (0.16)	-(-)	-(-)	-(-)	
신용카드	-	-	-	-	-(-)	-(-)	-(-)	-(-)	
무수익여신	19,417	10,175	10,565	8,975	5,439	5,703	6,709	7,220	
무수익여신비율	3.25	1.98	1.89	1.66	1.01	1.00	1.00	0.80	
기업	-	-	-	-	5,438 (1.01)	5,703 (1.00)	6,709(1.00)	7,220(0.80)	
가계	-	-	-	-	1 (0.16)	-(-)	-(-)	-(-)	
신용카드	-	-	-	-	-(-)	-(-)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100.00	100.00	67.83	113.24	117.64	135.44	126.75	104.24	
무수익여신산정대상 기준제충당금총계(A)	21,076	11,779	11,242	9,744	6,547	4,834	8,367	11,141	
고정이하여신(B)	21,076	11,779	16,575	8,604	5,436	4,834	6,601	10,688	
연 체 율 <sup>1)</sup>	총대출채권 기준 (계절조정후)	-	-	-	-	0.75 (1.10)	0.81 (1.13)	0.65 (0.92)	0.93 (0.94)
	기업대출기준 <sup>2)</sup> (계절조정후)	-	-	-	-	0.60 (0.95)	0.93 (1.32)	0.80 (1.12)	1.31 (1.11)
	가계대출기준 <sup>2)</sup> (계절조정후)	-	-	-	-	0.24 (0.26)	0.10 (0.12)	0.71 (0.15)	0.19 (0.02)
	신용카드채권기준 [1개월 이상] (계절조정후)	-	-	-	-	-	-	-	-
	신용카드채권기준 [1개월 이상]	-	-	-	-	-	-	-	-

주: 1)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

2)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계정 기준 국내분 기준 평균 기준

□ 유동성

<부표 64> 한국산업은행의 유동성

(단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원화유동성비율 <sup>1)</sup>	99.01	87.58	81.49	90.84	95.13	95.95	96.3	87.4
외화유동성비율 <sup>2)</sup>	110.83	98.52	97.92	115.82	121.10	139.70	130.2	101.3
업무용유형자산비율	10.18	9.64	6.20	4.98	4.19	3.93	3.54	4.13

주: 1) 원화유동성비율 : 2007년은 3개월 기준, 2008년 1개월 기준

2. 외화유동성비율 : 3개월 기준

□ 자본적정성

- B/S상 자기자본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BIS기준 자기자본
- 리스크별 익스포져 및 위험가중자산 현황(내부등급적용)
- 트레이딩목적 자산·부채 현황
- 영업규모

<부표 65> 한국산업은행의 B/S상 자기자본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납입자본금	71,619	71,619	72,419	82,416	82,419	82,419	82,419	87,419
자본잉여금	444	444	444	444	444	444	444	444
자기자본조정	-3,822	-5,598	-1,766	6,859	24,310	-	-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	-	-	-	24,870	32,037	△2,491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1,094	2,941	2,932	12,907	40,277	57,329	70,967	71,781
자본총계	69,335	69,406	74,029	102,629	147,450	165,062	185,867	157,153

주: 주요변동요인

- 정부의 출자로 자본금 5,000억원 증가
- 투자유가증권의 시가 감소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크게 감소

<부표 66> 한국산업은행의 BIS상 자기자본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BIS자기자본(A)	119,767	115,221	118,088	136,010	157,306	168,114
위험가중자산(B)	709,191	685,571	727,922	752,227	874,877	980,458
신용위험가중자산(내부등급) <sup>1)</sup>	709,191	675,979	712,673	735,829	856,166	957,096
시장위험가중자산(표준) <sup>1)</sup>	-	9,592	15,249	16,398	18,711	23,362
BIS자기자본비율(A/B)	16.88	16.81	16.22	18.08	17.98	17.15
기본자본비율	10.91	10.86	10.57	13.34	14.49	14.77
보완자본비율	6.43	5.95	5.65	4.74	3.49	2.37
단기후순위채무자본비율	-	-	-	-	-	-

구 분	2007		2008	
	Basel I	Basel II	Basel I	Basel II
BIS자기자본(A)	191,929	-	179,509	171,734
위험가중자산(B)	1,162,989	-	1,438,097	1,261,810
신용위험가중자산(내부등급) <sup>1)</sup>	1,136,762	-	1,399,883	1,189,864
시장위험가중자산(표준) <sup>1)</sup>	26,227	-	38,214	38,214
운영위험가중자산(표준) <sup>1)</sup>	-	-	-	33,732
BIS자기자본비율(A/B)	16.50	-	12.48	13.61
기본자본비율	13.99	-	11.04	12.16
보완자본비율	2.51	-	1.44	1.45
단기후순위채무자본비율	-	-	-	-

주: 1. ( ) 내에는 BASEL II에서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기재

2. Bsel I 기재란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한 BIS비율을 기재

<부표 67> 한국산업은행의 BIS상 자기자본

(단위: 억원, %)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자기자본(A+B+C)		171,734
자기자본(A)		153,386
자본금		87,419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71,052
신중자본증권		-
외부주주지분		17,631
기 타		-
공제항목		△ 22,716
보완자본(B)		18,348
재평가적립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4,846
평가이익의 45%		-
기한부후순위채권		13,129
기 타		5,729
공제항목		△ 5,356
단기후순위채무(C)		-

<부표 68> 한국산업은행의 리스크별 익스포저 및 위험가중자산 현황  
(내부등급 적용)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도 말	
	익스포저	위험가중자산
신용리스크(A)	2,005,125	1,189,864
정부	64,935	109
은행	154,769	33,917
기업	939,397	642,655
대기업	756,951	478,177
중소기업	150,735	132,403
기타	31,711	32,075
소매	-	-
주거용주택담보	-	-
적격회전	-	-
기타	-	-
개인	-	-
중소기업	-	-
주식	194,432	206,958
간접투자증권	19,064	5,670
자산유동화	59,112	24,573
장외파생상품	202,213	67,323
기타	371,203	208,659
시장리스크(B)	표준방법	38,214
운영리스크(C)	표준방법	33,732
합계(A+B+C)	2,005,125	1,261,810

주: 익스포저(EAD) : 차주의 부도 발생시 차주에게 노출되는 여신금액

<부표 69> 한국산업은행의 트레이딩 목적 자산·부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결총자산(A)	880,414	842,997	947,950	979,189	1,077,763	1,157,325	1,379,420	1,741,399
트레이딩자산(B)	50,254	75,305	68,822	133,468	96,141	126,503	158,287	426,869
트레이딩비율(B/A)	5.71	8.93	7.26	13.63	8.92	10.93	11.47	24.51

<부표 70> 한국산업은행의 영업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대출금	367,770	340,353	360,395	347,249	354,501	344,555	425,900	603,789
은행계정	366,725	339,562	359,832	346,643	354,054	344,166	425,445	603,310
신탁계정	1,045	791	563	606	447	389	445	479
유가증권	280,393	324,469	343,724	392,296	450,075	512,724	595,843	573,689
은행계정	253,080	263,783	280,224	335,302	394,348	461,816	539,886	534,030
신탁계정	27,313	60,686	63,500	56,994	55,727	50,908	55,957	39,659
총여신	597,043	513,445	559,217	539,997	538,773	572,568	673,100	899,683
은행계정	591,942	506,855	558,077	538,429	537,978	571,973	671,891	899,057
신탁계정	5,101	6,590	1,140	1,568	795	595	1,209	1,626
총수신	127,488	116,788	141,232	116,707	135,693	123,295	130,629	194,583
은행계정	98,112	85,060	107,163	89,330	113,220	99,250	96,213	167,685
신탁계정	29,376	31,728	34,069	27,377	22,473	24,045	34,416	26,898
총자산	820,031	787,823	1,030,602	1,083,411	1,141,505	1,201,957	1,369,994	1,696,916
은행계정			892,632	922,272	965,107	1,045,233	1,226,159	1,576,127
신탁계정			141,197	164,312	179,123	162,897	150,490	123,449
상호거래(△)			△3,227	△3,173	△2,725	△6,173	△6,655	△2,660
고정자산	7,288	6,902	6,893	6,770	6,797	6,719		

주: 주요변동요인

- 환율 상승 및 자금공급 증가로 대출금 증가
- 보유주식 매각 및 시가 감소 등으로 유가증권 감소
- 중소기업지원 등 대출, 투자 확대로 총자산 증가
- 신탁계정 감소 : 신한카드 등 금전채권신탁 1.4조원 감소 및 대우조선해양 등 원화특정금전 신탁 0.9조원 감소

□ 신용평가등급

<부표 71> 한국산업은행의 신용평가등급

변동사항	Moody's		S&P		Fitch		기 타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2001.11	Baa2	P-3	BBB+	A-2	BBB+	F2		
2002. 2	Baa2	P-3	BBB+	A-2	BBB+	F2	BBB+	
2002. 3	A3	P-2	BBB+	A-2	BBB+	F2	BBB+	
2002. 4	A3	P-2	BBB+	A-2	BBB+	F2	A-	
2002. 6	A3	P-2	BBB+	A-2	A	F1	A-	
2002. 7	A3	P-2	A-	A-2	A	F1	A-	
2004. 7	A3	P-2	A-	A-2	A	F1	A	
2005. 7	A3	P-2	A	A-1	A	F1	A	
2005.10	A3	P-2	A	A-1	A+	F1	A	
2006. 4	A3	P-2	A	A-1	A+	F1	A+	
2006. 8	A3	P-2	A	A-1	A+	F1	A+	
2007. 5	Aa3	P-1/P-2 <sup>1)</sup>	A	A-1	A+	F1	A+	
2007. 7	Aa3	P-1/P-2 <sup>1)</sup>	A	A-1	A+	F1	A+	
2008. 8	Aa3	P-1	A	A-1	A+	F1	A+	a-1
2009. 2	A2	P-1	A	A-1	A+	F1	A+	a-1

주: 1) P-1: CP, other short-term / P-2: Bank Deposit

□ 요약재무제표

<부표 72> 한국산업은행의 요약대차대조표(은행계정)

(단위: 억원)

과 목	2005	2006	과 목	2005	2006
자 산			부 채		
현금및예치금	18,662	14,484	예수부채	113,220	99,250
상품 유가증권	11,115	15,624	차입부채	208,181	241,636
투자 유가증권	383,233	446,192	사 채	431,639	470,696
대출채권	498,299	507,400	기타부채	64,617	68,589
고정자산	6,891	6,853	부채총계	817,657	880,171
기타자산	46,907	54,680			
			자 본		
			자 본 금	82,419	82,419
			자본잉여금	444	44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0,277	57,329
			이익잉여금	24,310	24,870
			자본총계	147,450	165,062
자산총계	965,107	1,045,233	부채와자본총계	965,107	1,045,233
과 목	2007	2008	과 목	2007	2008
자 산			부 채		
현금및예치금	44,371	28,938	예수부채	167,685	96,213
유가증권	534,030	539,886	차입부채	1,004,850	843,331
대출채권	760,658	570,319	기타부채	246,439	100,749
유형자산	6,366	6,346	부채총계	1,418,974	1,040,293
기타자산	230,702	80,671			
			자 본		
			자 본 금	87,419	82,419
			자본잉여금	444	44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91	32,037
			이익잉여금	71,781	70,967
			자본총계	157,153	185,867
자산총계	1,576,127	1,226,160	부채와자본총계	1,576,127	1,226,160

<부표 73> 한국산업은행의 요약손익계산서(은행계정)

(단위: 억원)

과 목	2005	2006	2007	2008	과 목	2005	2006	2007	2008
영업수익	107,304	113,156	125,787	441,309	경상이익	24,282	19,646	-	-
영업비용	105,037	111,214	114,370	432,409	특별이익	-	-	-	-
영업이익	2,267	1,942	11,417	8,900	법인세차감 전손익	24,282	19,646	26,062	3,726
영업외수익	23,639	20,326	14,802	3,764	법인세비용	65	-1,362	5,586	223
영업외비용	1,624	2,622	157	8,938	당기순이익	24,217	21,008	20,476	3,503

## 7. 한국토지공사(통합전)

### 가. 설립 목적 및 기능

#### □ 설립 목적

-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법률 제 5109호, 1995.12.29)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법률 제1조에 그 설립 목적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정하고 있음.
  1.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2.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 □ 소관부서: 국토해양부

#### □ 기관연혁

- 1975년: 한국토지공사의 전신 “토지금고” 설립, 발족
- 1978년: 최초 산업단지인 “안성시범공단” 기공식
-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 개편
-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본격 착수
- 1988년: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른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건설 착수
- 1996년: “한국토지공사”로 사명 변경
- 2001년: 계획 개발을 위한 수도권 2기 신도시(판교, 동탄, 양촌, 옥정)건설 본격 착수
- 2002년: 개성공단조성사업 착수
- 2007년: 6개 혁신신도시 사업 시행, 수도권 3기 신도시(송파, 동탄, 검단) 건설 추진
-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통폐합 결정

- 2009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국회 통과
-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합쳐져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 조직 구조 및 지배 구조:

- 자체기구로는 2008년 말 현재, 6명의 이사, 1개의 연구원, 28개의 처·실, 12개의 지역본부, 그리고 8개의 사업본부를 가지고 있음.



- 주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으로서, 정부와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이사회: 역시 공운법과 이사회 관련 법률 및 자체 규정에 의해 이사회가

운영되며, 이사회는 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되고,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음.

- 출자회사로 1996년 3월에 설립된 (주)한국토지신탁이 있어,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대리사무, 자산운용업무 등의 사업을 담당

□ 자금의 조달:

- 「한국토지공사법」의 제10조에 한국토지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토지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3-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토지의 매각 또는 관리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7. 기타의 수입금
-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이고 납입자본금은 5조원으로, 정부 재정의 추가 부담 없이 자체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나. 주요 사업

- 주요 업무: 「한국토지공사법」의 제9조에 한국토지공사의 주요업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 『한국토지공사법』의 제9조

-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3. 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나.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 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 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라. 간척 및 매립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5.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6. 토지채권의 발행
  7.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8. 국토 및 부동산에 관한 조사·연구, 조사·연구용역의 제공 및 정보화 사업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2)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3) 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위의 「한국토지공사법」에 명시된 주요 업무 방침에 따라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

에 따라서 국토개발부문과 국토관리부문, 그리고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부표 74>는 토지의 넓이를 통한 사업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 소요 금액을 통해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면, 2008년 회계연도에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총 6조 1,817억원을 사용
- 이는 국토지역발전사업에 2조 5,923억원, 생활환경도시조성사업에 2조 9,647억원, 남북 및 동북아 협력사업에 2,192억원, 일반토지비축사업에 4,054억원 등이 사용

<부표 74> 2008년 한국토지공사의 사업별 경영목표 (토지의 면적 기준)

(단위: 천제곱미터)

구분		취득	개발	공급	
전체		55,320	31,560	29,210	
국토개발 부문	국토지역 발전사업	소계	25,675	6,243	12,2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01	1,410	5,456
		혁신도시 건설사업	11,958	545	2,354
		산업단지개발사업	111	3,638	4,260
		물류단지개발사업	-	180	166
		연구단지개발사업	-	-	-
		신규포괄	13,105	470	-
	주거도시 환경조성 사업	소계	24,153	19,304	14,641
		택지개발사업	4,265	18,296	12,039
		도시개발사업	60	41	48
		신규포괄	19,828	967	2,554
	남북 및 동북아 협력사업	소계	3,553	6,013	2,173
		북한사업	-	-	180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618	6,013	1,993
		신규포괄	1,935	-	-
	국외사업	국외사업	939	-	-
국토관리 부문	토지비축사업	1,000	-	160	

- 토지개발부문에는 총 5조 3,028억원이 2008년 회계연도에 사용
  - 국토지역발전사업에 4,427억원, 생활환경도시조성사업에 4조 4,187억원, 남북및동북아협력사업에 4,414억원 등이 사용되었음.

- 토지공급부문에는 총 9조 6,258억원이 사용
  - 이 중에 국토지역발전사업에 7,418억원, 생활환경도시조성사업에 7조 7,878억원, 남북 및 동북아협력사업에 9,885억원, 그리고 토지비축사업에 1,097억원이 사용

#### 다. 재무 상황

<부표 75> 기본 재무 현황 (1999~2008)

(단위: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산총계	140,910	142,600	147,354	146,543	41,938	153,825	73,994	249,719	33,398	411,071
부채총계	112,108	112,570	115,960	111,250	102,255	109,357	23,868	95,016	70,353	339,244
자본총계	28,802	30,029	31,395	35,293	39,683	44,469	50,126	54,703	63,046	71,827
매출액	32,771	33,845	35,352	49,331	44,595	42,339	42,714	53,740	68,063	90,092
영업이익	5,011	6,641	4,646	8,377	9,146	10,615	7,268	11,865	16,655	22,513
당기순이익	1,556	1,160	1,087	3,720	4,384	4,867	6,078	5,831	6,157	6,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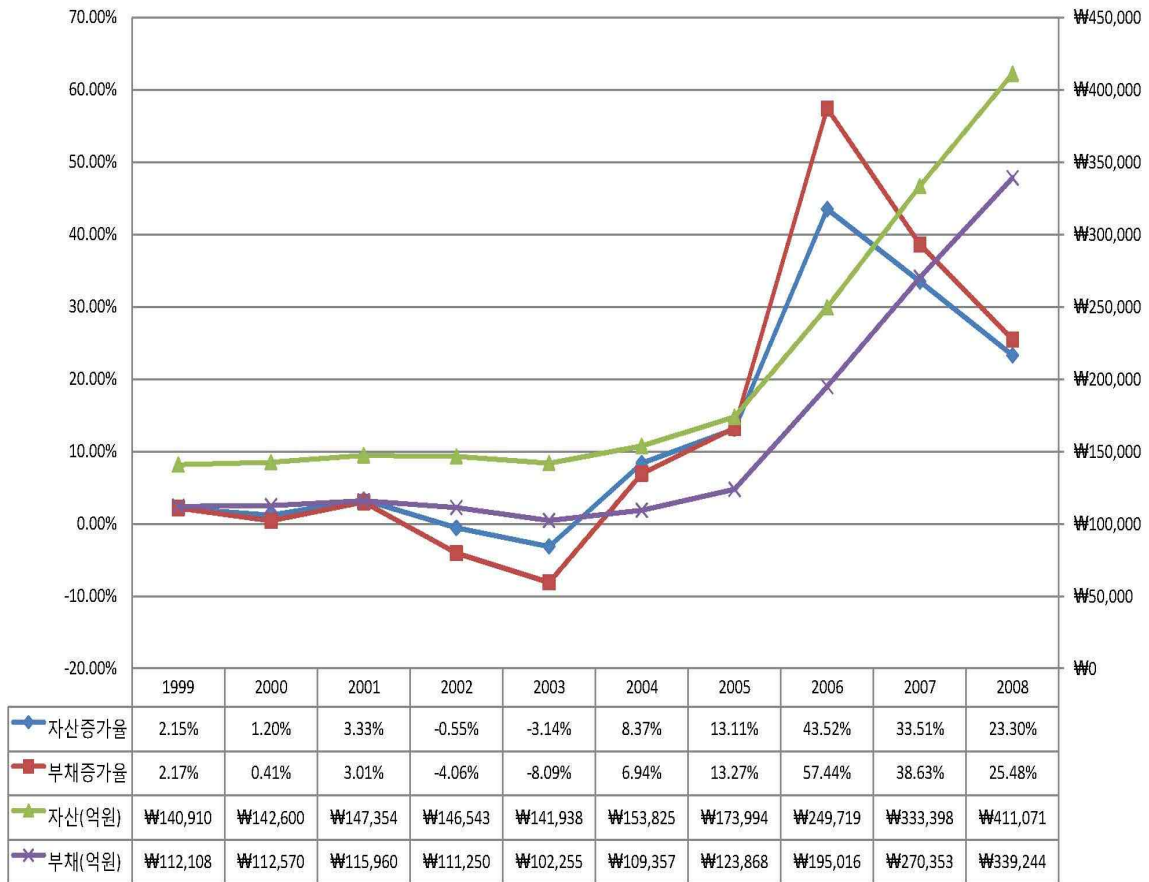
-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한 후, “한국토지공사”만의 독립된 재무제표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부표 75>에 나타난 수치들은 2008년 결산까지의 자료만 사용되었음.

- 2008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은 41조 1,071.5억원으로, 이 대부분인 39조 415.7억원(95%)이 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5%인 2조 655.8억원

이 장기성매출채권, 업무용 건물, 장기투자증권 등의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동자산의 내역을 보면, 2008년 말 현재 재고자산, 특히 미완토지가 총유동자산의 79%인 약 30.8조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말 기준 6조 4,572.5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특히 2004~2007년에 걸쳐 연평균 45.6%씩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음. 이러한 재고자산의 급격한 증가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사업과 3번에 걸친 수도권 신도시개발사업, 혁신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큰 원인으로 작용
- 2008년 말 현재 부채는 총 33조 9,244.5억원으로 선수금, 특히 미완토지매각 선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56.8%인 19조 2,678.8억원, 자금조달용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유동부채가 나머지 43.2%인 14조 6,565.6억원으로 구성
- 비유동부채의 많은 부분이 앞의 재고자산의 증가 원인이 되었던 개발 계획들과 연계되어, 200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것이 2006년 3.8조원 증가 이후 2007년 3.1조원, 2008년에는 2.4조원 가량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부그림 27] 부채와 자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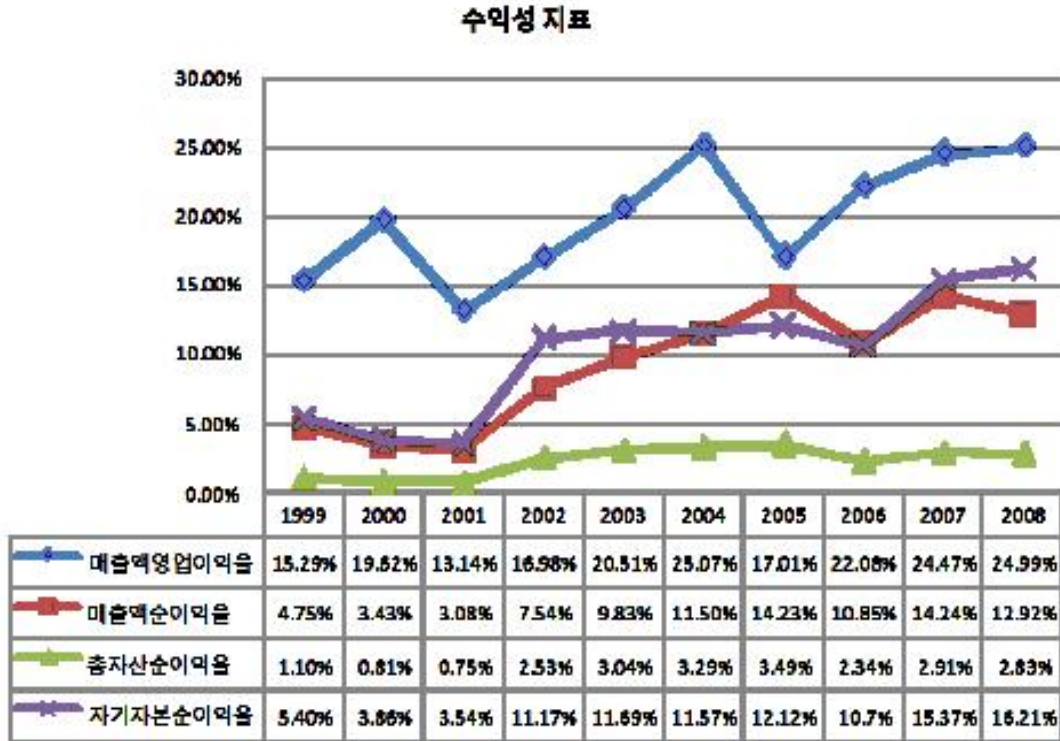
□ 이러한 꾸준한 사업확장에 따른 재고자산 및 토지매각대금 관련 선수금이 증가해 왔고,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발행도 증가하는 등 2004년 이후 부채 및 자산 증가율이 모두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2006년에 43.5%의 증가를 보인 이후 2007년 33.5%, 2008년 23.3%의 높은 증가세로, 부채 수준이 2003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옴.

□ 수익성 지표

○ [부그림 28]에 나타난 수익성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을 이용한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s), 그리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은 2000년 이후 전반

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

[부그림 28] 수익성 관련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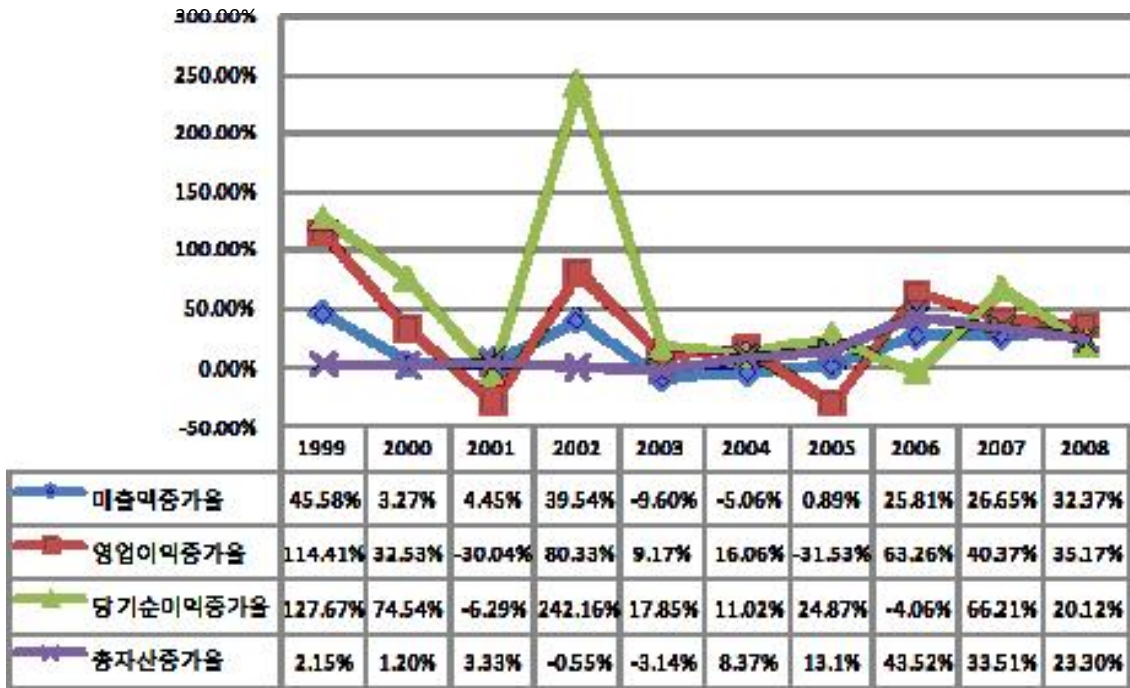


□ 성장성 지표

- [부그림 29]에서는 기업의 외형적 성장세를 보여주는 매출액증가율이나, 수익의 변화를 나타내는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그리고 기업의 전체적 성장성 측정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의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2001년까지의 지표들의 전반적 하락세는, 판교, 동탄, 양촌, 옥정 등의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 된 2002년에 영업이익(80.33%)과 당기순이익(242.16%)이 크게 증가한 이후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
- 특히, 2000년대 들어 신도시·혁신도시·개성공단 등 대규모 건설공사들이 지속되어, 미완토지매출이나 공급금액이 증가하고 이러한 결과들이 꾸준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음.

[부그림 29] 성장성 관련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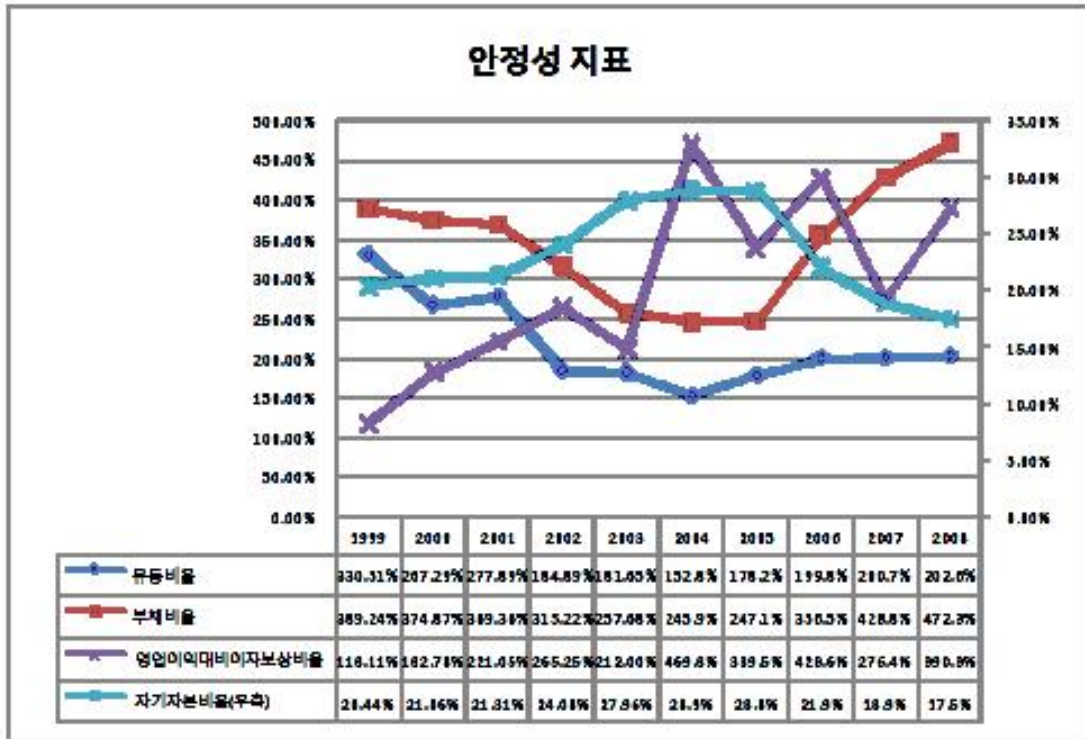
성장성 지표



□ 안정성 지표

- [부그림 30]의 안정성 관련지표들을 살펴보면 2003~2006년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볼 수 있음.
- 꾸준히 줄어들던 부채비율이 2006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2007년에는 1999년 수준을 넘어섬.
- 자기자본비율은 증가세를 접고, 2006년 이후 하락세로, 유동비율은 200% 정도로 하향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자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비율은 지속적인 사업 확장에 따른 부채 및 이자비용의 증가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

[부그림 30] 안정성 관련 지표들



## 8. 한국주택공사(통합전)

### 가. 목적 및 기능

- 대한주택공사는 1941년 7월에 설립된 조선주택영단을 전신으로 하며, 1962년 1월 대한주택공사법이 법률 제985호로 제정되면서 같은 해 7월 설립
-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은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대한주택공사법은 2009년 10월에 폐지되기 전까지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 및 운영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으며, 폐지된 이후부터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운영

□ 추진사업관련 법령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 재개발법,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이 있음.

□ 주택·도시 및 주거복지 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주요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대지의 조성 및 공급
-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 도시의 조성·정비 등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전세주택지원, 그룹홈 등 주거복지사업
-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의 수탁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조직 및 인원

<부표 76> 대한주택공사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임원	기관장	상임	1	1	1	1	1
		비상임	0	0	0	0	0
	이사	상임	5	5	6	6	6
		비상임	7	7	8	8	8
	감사	상임	1	1	1	1	1
		비상임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상임임원계(A)	7	7	8	8	8	8	
직원	정원(B)	3,489	3,834	4,238	4,377	4,377	4,377
	현원	3,414	3,716	3,973	4,269	4,196	4,167
임직원총계(a+b)		3,496	3,841	4,246	4,385	4,385	4,385
비정규직		556	684	835	905	1,090	1,014

출처 : 알리오

- 임원현황 : 정원 기준
- 비상임이사 : 정원에 불포함
- 무기 계약근로자 : 정원 및 현원에 포함(이사회 승인)
- 비정규직 : 현원에 불포함

## 나. 사업현황

### 1) 대지조성

- 매년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기 사업을 위한 택지로 비축, 이를 위해 전국의 개발 가능한 토지를 전산화하여 조사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보유 택지매수, 지자체와 공동개발, 구릉지 개발, 소규모 주택지 활동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택지를 조달하고 있음.
- 택지 매수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연도별로 변동이 있음.
  - 협의매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단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도별로 토지수용 비율이 높았을 때 단가가 낮게 나타남.

<부표 77> 택지매수 현황 (취득방법별)

(단위: m<sup>2</sup>, %)

연도	계	협의매수	토지수용	토지수용 비율
1990	6,967,445	3,451,863	3,515,582	50.5
1991	3,496,087	2,237,287	1,258,800	36.0
1992	1,352,473	793,156	559,317	41.4
1993	3,758,195	3,599,458	158,737	4.2
1994	4,392,840	3,081,721	1,311,119	29.8
1995	4,686,594	3,540,930	1,145,664	24.4
1996	5,781,981	4,482,933	1,299,048	22.5
1997	3,352,511	2,828,589	523,922	15.6
1998	2,516,544	2,220,036	296,508	11.8
1999	4,476,940	4,202,694	274,246	6.1
2000	7,303,755	6,019,309	1,284,446	17.6
2001	3,683,385	2,838,091	845,294	22.9
2002	6,538,477	5,425,176	1,113,301	17.0
2003	7,224,283	5,819,784	1,404,499	19.4
2004	22,427,510	19,299,289	3,128,221	13.9
2005	12,506,613	9,899,126	2,607,487	20.8
2006	23,864,610	20,340,168	3,524,442	14.8
2007	15,740,398	14,348,644	1,391,754	8.8
2008	18,376,867	16,300,281	2,076,586	11.3

자료: 『토지주택통계편람』

<부표 78> 택지매수 현황 (지구별)

연도	면적(제곱미터)	금액(천원)	단가(원)
1990	6,967,445	979,566,932	140,592
1991	3,496,087	600,942,344	171,890
1992	1,352,473	248,745,879	183,919
1993	3,758,195	835,902,843	222,421
1994	4,392,840	754,164,436	171,680
1995	4,686,594	955,215,834	203,819
1996	5,781,981	1,012,492,907	175,112
1997	3,352,511	604,788,277	180,399
1998	2,516,544	587,417,739	233,422
1999	4,476,940	572,026,667	127,772
2000	7,303,755	1,288,935,702	176,476
2001	3,683,385	749,346,470	203,440
2002	6,538,477	1,394,236,906	213,236
2003	7,224,283	1,786,430,914	247,281
2004	15,421,879	5,051,014,064	327,523
2005	12,506,613	3,610,859,094	288,716
2006	23,864,610	9,092,543,296	381,005
2007	15,663,129	6,314,808,565	403,164
2008	18,276,082	6,136,878,890	335,787

자료: 『토지주택통계편람』

## 2) 건설사업

<부표 79> 아파트 건설 현황

(단위: 호)

	합계	장단기 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양	공공분양	사원 임대	근로 복지	수탁	재개발
1990	79,702	12,117	0	40,754	0	8,618	0	5,153	13,060	0	0
1991	66,531	8,352	0	34,175	0	8,060	0	2,653	12,716	0	575
1992	75,305	1,898	5,222	35,123	0	18,046	5,109	1,044	8,100	0	763
1993	70,288	0	5,055	0	0	0	46,813	2,347	16,073	0	0
1994	69,734	0	14,864	0	0	0	33,727	1,668	17,902	0	1,573
1995	70,048	0	14,277	0	0	0	31,818	2,700	17,054	840	3,359
1996	60,140	0	13,379	0	0	0	26,021	0	14,066	0	6,674
1997	60,180	0	15,941	0	0	0	30,421	0	13,818	0	0
1998	40,280	0	10,822	0	2,501	0	26,657	0	300	0	0
1999	50,480	0	10,229	0	20,226	0	20,025	0	0	0	0
2000	50,174	0	20,141	0	10,009	0	20,024	0	0	0	0
2001	61,079	0	15,125	0	35,227	0	10,727	0	0	0	0
2002	70,042	0	6,403	0	48,617	987	14,035	0	0	0	0
2003	80,985	0	1,638	0	63,501	1,086	14,760	0	0	0	0
2004	109,117	0	2,242	0	84,812	0	22,063	0	0	0	0
2005	103,358	0	4,276	0	75,455	0	23,627	0	0	0	0
2006	116,185	0	5,028	0	82,216	0	28,941	0	0	0	0
2007	141,817	0	12,793	0	83,102	0	45,922	0	0	0	0
2008	130,069	0	15,674	0	64,896	0	49,499	0	0	0	0

주: 주택건설수치는 사업승인 기준임

자료: 『토지주택통계편람』

## 3) 분양 및 임대사업

□ 내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서민과 도시근로자를 위해 저금리의 대폭적 용자와 함께 영구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등 소득계층별로 주택 유형을 달리하여 공급

<부표 80> 아파트 분양 및 임대 현황

(단위: 호)

구분	계	국민 (분양)	장기 임대	영구 임대	사원임대 (분양)	근로복지 (분양)	공공 임대	국민임대
1990	59,602	11,768	13,577	23,583	3,424	7,250	-	-
1991	54,504	4,623	13,316	24,837	3,330	8,398	-	-
1992	74,698	19,902	4,042	37,313	1,126	12,315	-	-
1993	59,721	26,684	1,020	21,673	466	9,878	-	-
1994	80,907	34,225	-	26,728	133	10,607	9,214	9,214
1995	60,248	31,109	-	5,944	52	7,207	15,936	15,936
1996	42,837	18,414	-	-	2,319	10,568	11,536	-
1997	58,400	42,256	-	-	9	3,929	12,206	-
1998	24,695	14,837	-	-	-	698	9,160	-
1999	43,096	22,240	-	-	-	637	20,219	-
2000	60,852	22,601	-	-	-	22	32,873	5,356
2001	61,174	25,983	-	-	-	2	26,499	8,690
2002	48,997	18,915	-	-	-	-	17,284	12,798
2003	48,175	13,048	-	-	-	-	12,496	22,631
2004	38,159	13,358	-	-	-	-	3,845	20,956
2005	39,368	13,844	-	-	-	-	2,330	23,194
2006	45,433	15,170	-	-	-	-	3,650	26,613
2007	52,226	8,812	-	-	-	-	1,307	42,107
2008	70,450	11,516	-	-	-	-	3,979	54,955

주: 미분양을 제외한 실적치임

출처 : 『토지주택통계편람』

4) 주택관리사업

<부표 81> 아파트 관리현황

(단위 : 호)

구분	계	외인	장기 임대	영구 임대	분양	근로 복지	사원 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국민임대
1990	96,524	2,496	73,886	10,736	9,406	-	-	-	-	-
1991	129,370	2,496	78,093	37,248	5,965	3,318	2,250	-	-	-
1992	163,440	2,496	76,146	73,679	9,597	982	540	-	-	-
1993	188,761	2,496	72,982	100,578	8,420	3,505	780	-	-	-
1994	212,072	2,017	55,578	125,795	15,212	7,038	1,256	2,836	2,040	-
1995	214,640	2,017	34,763	140,078	11,981	12,013	1,000	7,749	5,039	-
1996	207,281	2,017	25,548	140,078	2,487	6,238	941	15,406	14,566	-
1997	194,327	2,017	14,758	140,078	1,302	2,285	738	24,979	8,170	-
1998	208,281 (185,680)	2,017 (2,017)	8,394 (887)	140,078 (140,078)	1,210 (720)	2,161 (-)	646 (-)	40,323 (40,323)	13,452 (1,655)	-
1999	229,234 (216,139)	1,517 (1,517)	887 (887)	140,078 (140,078)	- (960)	2,292	-	56,049 (56,049)	28,411 (16,648)	-
2000	242,497 (235,854)	1,517 (1,517)	-	140,078 (140,078)	-	1,495 (759)	-	78,016 (77,564)	21,391 (15,936)	-
2001	264,686 (252,884)	1,415 (1,415)	-	140,078 (140,078)	-	-	-	99,306 (99,288)	20,861 (9,077)	3,026 (3,026)
2002	282,361 (251,424)	1,085 (1,085)	-	140,078 (140,078)	-	-	-	113,650 (93,169)	16,720 (6,264)	10,828 (10,828)
2003	310,991 (254,150)	1,085 (1,085)	-	140,078 (140,078)	-	-	-	126,488 (87,430)	22,478 (4,695)	20,862 (20,862)
2004	337,233	1,385 (1,385)	-	140,078 (140,078)	-	-	-	128,992 (76,805)	20,074 (4,482)	46,700 (37,854)
2005	356,549 (250,650)	1,385 (1,385)	-	140,078 (140,078)	-	-	-	125,613 (66,704)	18,907 (2,675)	70,566 (39,808)
2006	374,545 (233,133)	1,385 (1,385)	-	140,078 (140,078)	-	-	-	112,420 (49,656)	23,383 (2,206)	97,279 (39,808)
2007	382,742	1,251	-	140,078	-	-	-	96,631	11,905	132,877
2008	406,443	1,251	-	140,078	-	-	-	69,931	12,854	182,329

주: 1.연말기준 관리 호수임

2. ( )안은 공사관리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1998.9. 설립)에 위탁관리하는 호수임

자료: 『토지주택통계편람』

#### 다. 경영실적

- 90년대 초반 분양주택 공급물량 증가와 택지분양의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
- 2000년, 2001년 당기순손실이 대량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한양 등 3개 자회사의 파산 또는 매각예정에 따른 손실 때문

<부표 82> 대한주택공사의 자산·부채 추이

(단위 : 십억원)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b>자산</b>	<b>6,048</b>	<b>6,992</b>	<b>7,809</b>	<b>9,814</b>	<b>10,507</b>	<b>11,454</b>	<b>12,198</b>	<b>14,343</b>	<b>14,565</b>	<b>14,514</b>	<b>14,374</b>	<b>15,403</b>	<b>16,790</b>	<b>24,857</b>	<b>30,750</b>	<b>40,626</b>	<b>51,043</b>	<b>64,122</b>
유동자산	2,535	2,742	2,936	4,018	4,835	5,354	5,619	5,843	6,142	6,358	5,385	5,762	6,237	11,651	14,252	19,756	24,728	30,053
고정자산	2,873	3,712	4,242	4,628	4,772	5,138	6,580	8,500	8,423	8,156	8,989	9,641	10,553	13,206	16,498	20,870	26,315	34,069
투자자산	641	538	631	1,168	899	962												
<b>부채</b>	<b>3,223</b>	<b>3,861</b>	<b>3,972</b>	<b>5,606</b>	<b>5,931</b>	<b>6,731</b>	<b>7,447</b>	<b>9,536</b>	<b>9,310</b>	<b>9,351</b>	<b>9,301</b>	<b>9,766</b>	<b>10,129</b>	<b>17,165</b>	<b>21,996</b>	<b>30,928</b>	<b>39,874</b>	<b>51,828</b>
유동부채	1,331	1,814	1,553	2,303	2,944	3,593	3,314	3,091	2,973	3,503	2,033	2,140	1,777	2,802	2,790	5,113	6,797	9,796
고정부채	1,887	2,047	2,419	3,303	2,986	3,138	4,133	6,445	6,337	5,848	7,269	7,626	8,352	14,363	19,206	25,815	33,077	42,033
이연부채	5																	
<b>자본</b>	<b>2,825</b>	<b>3,132</b>	<b>3,837</b>	<b>4,208</b>	<b>4,576</b>	<b>4,723</b>	<b>4,751</b>	<b>4,807</b>	<b>5,255</b>	<b>5,163</b>	<b>5,073</b>	<b>5,637</b>	<b>6,662</b>	<b>7,693</b>	<b>8,754</b>	<b>9,698</b>	<b>11,169</b>	<b>12,294</b>
자본금	2,090	2,338	2,986	3,243	3,441	3,463	3,463	3,463	3,548	3,702	3,939	4,377	5,088	5,908	6,757	7,564	8,532	9,581
자본잉여금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이익잉여금	734	792	849	963	1,133	1,259	1,287	1,343	1,706	1,460	1,133	1,259	1,572	1,783	1,996	2,132	2,641	2,716
자본조정																	-5	-5

자료: 감사원 「정부투자기관 결산검사서」 각 연도

<부표 83> 대한주택공사의 손익 추이

(단위 : 십억원)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	1,183	1,386	2,136	1,765	2,758	3,356	3,822	3,537	4,165	3,160	3,275	3,001	2,677	3,094	3,894	5,191	6,374	7,869
매출원가	905	1,145	1,845	1,460	2,333	2,790	3,451	3,374	4,017	3,046	3,049	2,586	2,183	2,606	3,362	4,470	5,402	7,093
<b>매출총이익</b>	<b>277</b>	<b>241</b>	<b>290</b>	<b>305</b>	<b>424</b>	<b>566</b>	<b>371</b>	<b>162</b>	<b>148</b>	<b>114</b>	<b>225</b>	<b>416</b>	<b>494</b>	<b>488</b>	<b>532</b>	<b>721</b>	<b>973</b>	<b>776</b>
판매비	62	78	92	94	116	139	152	120	113	127	133	136	124	153	175	201	242	272
<b>영업이익</b>	<b>215</b>	<b>163</b>	<b>198</b>	<b>211</b>	<b>309</b>	<b>426</b>	<b>219</b>	<b>42</b>	<b>35</b>	<b>-14</b>	<b>92</b>	<b>280</b>	<b>370</b>	<b>335</b>	<b>357</b>	<b>520</b>	<b>731</b>	<b>504</b>
영업외수익	87	82	100	129	204	201	195	275	332	428	264	209	177	191	237	182	296	853
영업외비용	133	141	160	185	195	226	248	176	298	302	250	268	254	215	261	401	365	1,038
<b>경상이익</b>	<b>169</b>	<b>103</b>	<b>138</b>	<b>156</b>	<b>317</b>	<b>401</b>	<b>166</b>	<b>141</b>	<b>70</b>	<b>112</b>	<b>107</b>	<b>221</b>	<b>293</b>	<b>311</b>	<b>333</b>	<b>302</b>	<b>662</b>	<b>319</b>
특별이익	4	6	6	86	28	26	11	46	187									
특별손실	23	0	0	1	0	1	49	131	1	449	377							
<b>법인세차감전 순이익</b>	<b>150</b>	<b>109</b>	<b>144</b>	<b>240</b>	<b>345</b>	<b>427</b>	<b>129</b>	<b>56</b>	<b>257</b>	<b>-337</b>	<b>-270</b>	<b>221</b>	<b>293</b>	<b>311</b>	<b>333</b>	<b>302</b>	<b>662</b>	<b>319</b>
법인세등	87	64	70	110	156	228	55	0	89	-89	57	88	89	77	88	106	102	85
<b>당기순이익</b>	<b>63</b>	<b>45</b>	<b>73</b>	<b>131</b>	<b>189</b>	<b>199</b>	<b>73</b>	<b>56</b>	<b>168</b>	<b>-249</b>	<b>-327</b>	<b>133</b>	<b>203</b>	<b>235</b>	<b>245</b>	<b>196</b>	<b>560</b>	<b>234</b>

자료: 감사원 「정부투자기관 결산검사서」 각연도

3) 경영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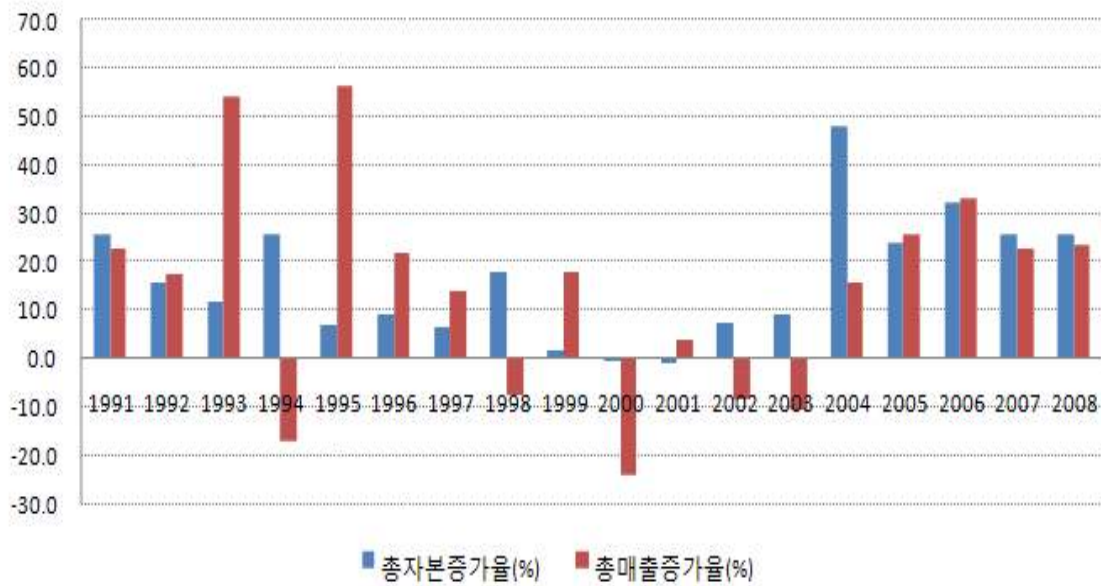
<부표 84> 대한주택공사의 경영지표 추이

(단위 : %)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생산성지표	
	총자본 증가율	총매출 증가율	유동 비율	부채 비율	고정 비율	고정장 기적합 률	총자본 순이익 률	자기자 본순이 익율	매출액 순이익 율	총자본회 전율(회)	노동생산 성(천원)	자본 생산성
1991	25.5	22.4	190.5	114.1	124.4	74.6	1.0	2.2	5.3	0.2	61,890	5.8
1992	15.6	17.2	151.2	123.3	135.7	82.1	0.6	1.4	3.2	0.2	57,044	5.4
1993	11.7	54.1	189.0	103.5	127.0	77.9	0.9	1.9	3.4	0.3	61,467	5.2
1994	25.7	-17.3	174.5	133.2	137.7	77.2	1.3	3.1	7.4	0.2	78,121	5.2
1995	7.1	56.2	164.2	129.6	123.9	75.0	1.8	4.1	6.9	0.3	93,240	5.9
1996	9.0	21.7	149.0	142.5	129.2	77.6	1.7	4.2	5.9	0.3	129,794	7.2
1997	6.5	13.9	169.5	156.7	138.5	74.1	0.6	1.5	1.9	0.3	120,903	5.7
1998	17.6	-7.5	189.0	198.4	176.8	75.5	0.4	1.2	1.6	0.2	158,560	5.3
1999	1.5	17.8	206.6	177.2	160.3	72.7	1.2	3.2	4.0	0.3	296,820	6.5
2000	-0.4	-24.1	181.5	181.1	158.0	74.1	-1.7	-4.8	-7.9	0.2	88,113	1.8
2001	-1.0	3.6	264.9	183.4	177.2	72.8	-2.3	-6.5	-10.0	0.2	80,960	1.7
2002	7.2	-8.3	269.2	173.3	171.0	72.7	0.9	2.4	4.4	0.2	239,110	4.6
2003	9.0	-10.8	351.0	152.0	158.4	70.3	1.2	3.1	7.6	0.2	253,880	4.6
2004	48.0	15.6	415.8	223.1	171.7	59.9	0.9	3.1	7.6	0.1	299,860	4.0
2005	23.7	25.8	510.8	251.3	188.5	59.0	0.8	2.8	6.3	0.1	335,280	4.0
2006	32.1	33.3	386.4	318.9	215.2	58.8	0.5	2.0	3.8	0.1	384,000	3.6
2007	25.6	22.8	363.8	357.0	235.6	59.5	1.1	5.0	8.8	0.1		
2008	25.6	23.5	306.8	421.6	277.1	62.7	0.4	1.9	3.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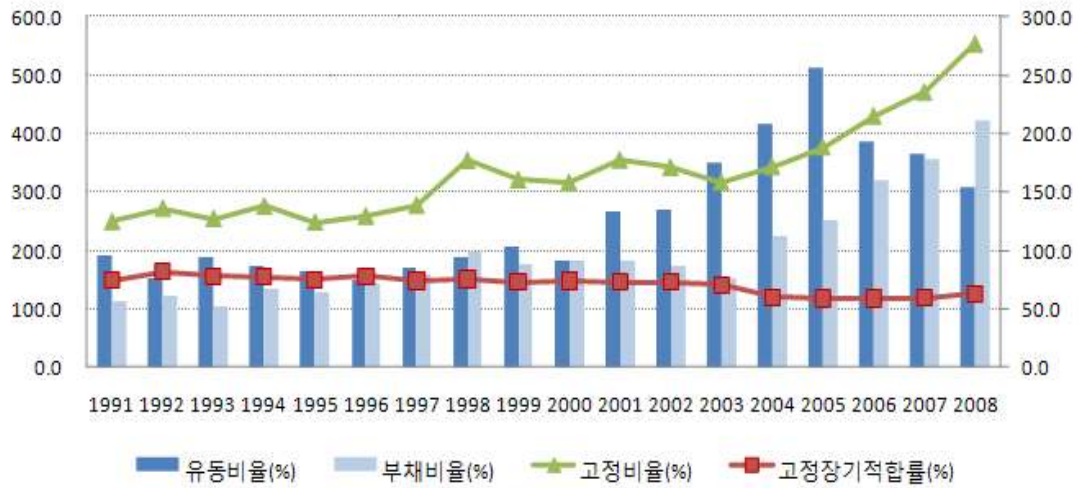
- 2000년, 2001년에만 총자본증가율이 감소했을 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성장이 주춤했으나 최근 다시 20%를 상회하고 있음.
  
- 2000년 초반까지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률이 낮았으나 최근 다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1999년 매출액이 일시 증가한 것은 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여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부그림 31] 대한주택공사의 성장성 지표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며, 주택공사는 유동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정부투자기관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로 자기자본으로 부채를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음.
- 고정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고정자산의 비율로, 유동비율이 고정비율보다 높음.
- 고정장기적합률은 장기자본(자기자본+고정부채) 대비 고정자산의 비율로 자본배분의 안정성 측정하는 지표임. 고정장기적합률이 낮을수록 기업자본의 배분상태가 양호하며, 표준비율은 100% 이하임.
- 주택공사는 고정장기적합률이 100%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음.

[부그림 32] 대한주택공사의 안정성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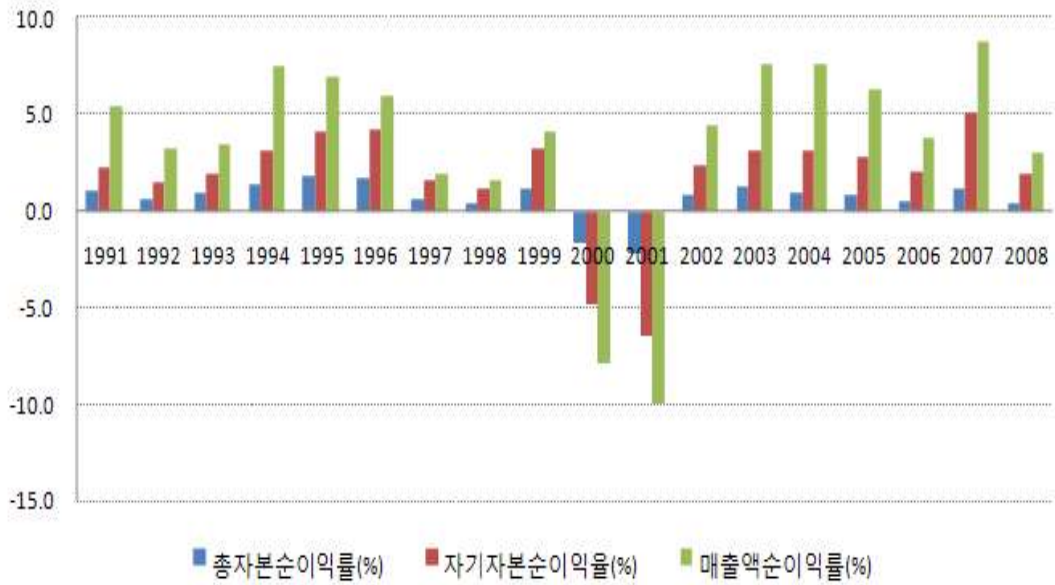


□ 총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의 수익성지표가 모두 2000년, 2001년 두 해에 걸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매출순이익률의 하락폭이 가장 컸음.

□ 그러나 2000년, 2001년을 제외한 해에는 수익성이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출액순이익률은 2001년 이후 급격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총자산회전율은 총자본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로 기업의 자본회전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점차 둔화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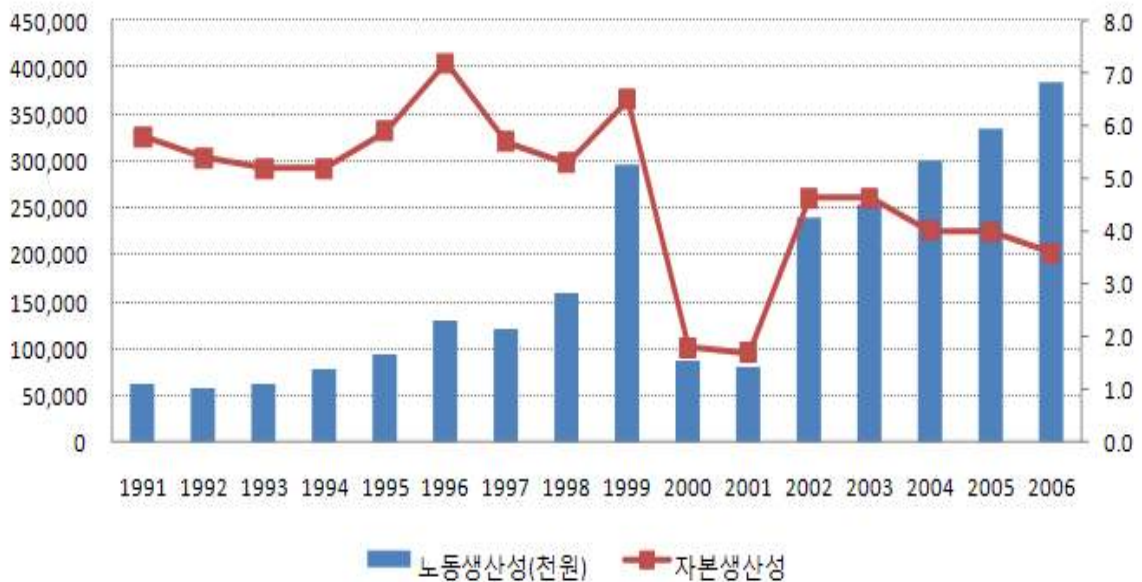
[부그림 33] 대한주택공사의 수익성 지표



□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으로, 1999년과 2002년에 노동생산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당시 대규모 인력감축이 있었음.

□ 자본생산성은 총자본에 대한 부가가치생산비율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부그림 34] 대한주택공사의 생산성 지표



□ 1999년부터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객만족도조사」<sup>20)</sup>결과 점수의 절대적인 수치가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공기업들 중의 순위 역시 상승하고 있음.

<부표 85> 대한주택공사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점수	50	51	59	69	77	78	83	84	91	83
평균점수	59	63	67	72	76	79	81	84	89	89
등수	18	19	20	16	10	10	3	7	8	
대상공기업	19	19	20	20	19	16	17	17	24	23

출처 : 한국능률협회

[부그림 35] 대한주택공사 고객만족도 결과 추이



20) 1999년부터 매년 시행

■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계와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과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정의 및 성과평가 방법 등을 정리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하였음. 아울러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제적 비중에 대한 회고적 고찰도 시도하여 공공기관의 위상을 점검하였음. 공공기관의 성과와 역할,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법에 대한 기본정책방향과 기초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므로, 향후 공공정책방향 및 정책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용역발주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임해종
	정책총괄과장	이승철
	정책총괄과 사무관	민경신

■ 용역수주계약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윤희
용역연구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지영
	고려대학교	교수	이만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기백
	숭실대학교	교수	김현숙

■ 138-774 서울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 전화번호 02)2186-2114/ FAX 02)2186-2129